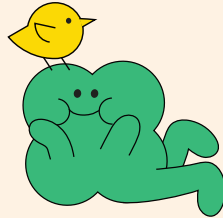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10063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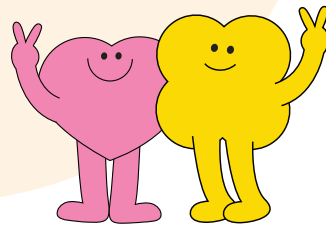


2026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Child Protection Service Manual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아동권리보장원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안내 |

본 매뉴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서비스 원칙 및 기준·절차 등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아동보호서비스의 전문성 및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아동복지법 제4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매뉴얼 활용범위

- 주 사용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 참고 사용자
시·도 및 시·군·구(아동보호팀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포함), 읍·면·동 아동복지(사회복지) 담당 공공부문 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등), 아동보호 관련 기관 담당자(지역상담기관, 아동학대전전문기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기타 지역사회 아동복지 관계자 등

● 매뉴얼 활용방법

- 매뉴얼은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보호되는 보호대상아동(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계획 수립 및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업무 가이드라인임
- 매뉴얼은 아동에게 효과적인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 참고 사용자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및 민간 담당자들은 아동보호 흐름과 절차를 인지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업함

| '26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4	I.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2. 추진경과 ● <신설>	I.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2. 추진경과 ● 아동보호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조성' 국정과제 반영('25.9.)
7	III.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기관 의뢰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III.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12-13	IV.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다. 가정위탁 - 전문가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 경계선지능(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등으로써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자세한 내용은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참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생략> • <신설>	IV.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다. 가정위탁 - 전문가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 경계선지능(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ADHD, 우울증, 자·타해 위험, 폭력성 등) 등으로써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자세한 내용은 당해연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가정위탁 유형 참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생략> • (학대피해아동쉼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심리상담·치료, 학습 및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
14	바. 입양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입양특례법	바. 입양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15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2021.12.30. 시행> <생략> • <신설> <생략>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2025.7.19. 시행> <생략>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생략>
19	※ 피해아동이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의한 분리보호 후 원가정복귀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제외	※ 피해아동이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의한 분리보호 되는 경우 및 명령 종료로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제외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24	사후 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는 5년 동안 자립수준 평가에 대해 안내(전화, 내방, 가정방문 실시)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후 아동의 특이사항이 발생 되지 않아 사후관리 종료함	사후 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아동보호전담요원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후 아동의 특이사항이 발생 되지 않아 사후관리 종료함
36-61	〈신설〉 이하 생략	1. 입양의뢰 및 상담 (본문 참조) 2. 입양의 승낙 및 동의 (본문 참조) 3. 입양대상아동 결정 (본문 참조) 4. 입양대상아동 보호 및 양육상황 점검 (본문 참조) 5. 입양절차 진행 관련 단계별 협조 요청사항 (본문 참조) 6. 입양의 취소 (본문 참조)
66	⑤ 최종 보호조치, (필요시) 사례이관 ■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보호조치 ■ 필요시, 사례 이관* 및 후견인 변경 선임** * (예) 입양대상아동 결정 및 입양기관 인도 시, 또는 최종 보호조치 결과 아동의 보호 시·군·구가 달라지는 경우 ** 「시설미성년후견법」, 「입양특례법」 등에 따라 후견인 변경	⑤ 최종 보호조치, (필요시) 사례이관 ■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보호조치 ■ 필요시, 사례 이관* 및 후견인 변경 선임** * (예) 입양대상아동 결정 시 또는 최종 보호조치 결과 아동의 보호 시·군·구가 달라지는 경우 ** 「시설미성년후견법」, 「국내입양특별법」 등에 따라 후견인 변경
74-82	참고 ②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 임신·출산 (이하 표 생략)	참고 ②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 임신·출산 (본문 참조)
91-92	4. 교육 ● 4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중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입문교육 : 신규채용 인력 및 기 채용 인력 중 미이수자 대상 아동보호체계 개편 취지, 업무 프로세스 등 기초역량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실무교육 : 입문교육 수료자 대상 현장 실무능력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교육 : 실무교육 수료자 대상 고난도 현장 사례 등 전문성 강화 지원	4. 교육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중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입문교육 : 신규채용 인력 및 기 채용 인력 중 미이수자 대상 아동보호체계 개편 취지, 업무 프로세스 등 기초역량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실무교육 : 입문교육 수료자 대상 현장 실무능력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교육 : 실무교육 수료자 대상 고난도 현장 사례 등 전문성 강화 지원

| '26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쪽	현행(2025년)	개정(2026년)
	- 아동보호팀장 과정 :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 연차별 교육 운영(신규/경력), 시·군·구 아동보호팀 간 연계협력 등 현장 실무 교육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신설〉	- 아동보호팀장 과정 :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 연차별 교육 운영(신규/경력), 시·군·구 아동보호팀 간 연계협력 등 현장 실무 교육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u>신규 채용 인력이 과거 아동보호전담요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실무교육부터 수강 (희망하는 경우 입문교육부터 수강 가능)</u> ● <u>교육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edu.kohi.or.kr)</u> • 교육 이수 기준 관련 유의사항 ①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 임용 후 6개월 이내 입문교육 필수 이수 및 입문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 필수 이수 ② 아동보호팀장의 경우 연차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아동보호신규팀장과정 필수 이수, 2년 이상 근무자는 아동보호경력팀장 필수 이수 ③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연 1회 이상 교육 필수 이수 ④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아동보호체계 평가 교육 실적 부문 감점 ⑤ 아동보호팀장 경력과정 이수 시 아동보호체계 평가 교육 실적 부문 가점 부여 ※ (퇴사 후 2년 이후 재입사자) 아동보호 교육단계인 입문-실무-보수교육 전단계 재수강 필요
93	6. 예산 운영 - 기본급 : 단일급 지급('25년 기준, 약 월 225.9만원) - 시간외 수당 : 월 10시간 이내 지급하며,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적극 편성 - 〈신설〉	6. 예산 운영 - 기본급 : 단일급 지급('26년 기준, 약 월 235만원) - 시간외 수당 : 월 10시간 이내 지급하며,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적극 편성 - 다만, 인건비 집행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비지원기준 한도내에서 추가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95	● 사업비 - 편성 기준 : 전담요원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편성 • 단, 전담요원 미배치 지역도 아동의 의료비 및 서비스 연계비 등 서비스 운영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예산 지원 〈신설〉	● 사업비 - 편성 기준 : 전담요원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편성 • 전담요원 미배치 지역도 아동의 의료비 및 서비스 연계비 등 서비스 운영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예산 지원 가능 ● <u>사업비 편성시 서비스제공비가 반드시 포함되어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조치(전담요원의 출장비, 수당으로만 구성한 사업비 편성 불가)</u>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107	TIP • 입양 의뢰한 친생부모 상담 시 고려사항 - 미성년 친생부모, 혼외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결정, 장소 선정, 면담 환경 조성 등에 최대한 배려(필요시 입양기관 담당자와 동행하여 실시) -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답변 강요 등은 지양 - 부모 등 보호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에도, 아동의 입양과 직결된 부분은 향후 아동의 건강권·알 권리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과 비밀보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친생부모에게 설명하여 최대한 기록될 수 있도록 함	TIP • 입양 의뢰한 친생부모 상담 시 고려사항 - 미성년 친생부모, 혼외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결정, 장소 선정, 면담 환경 조성 등에 최대한 배려 -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답변 강요 등은 지양 - 부모 등 보호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에도, 아동의 입양과 직결된 부분은 향후 아동의 건강권·알 권리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과 비밀보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친생부모에게 설명하여 최대한 기록될 수 있도록 함
110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담당하는 아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 • 피해아동이거나,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 받지 못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라 분리 보호를 하고자 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 *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담당하는 아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6 • 피해아동이거나,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 받지 못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라 분리 보호를 하고자 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 *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분리보호하는 경우 및 명령 종료로 가정복귀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불필요. 단, 피해아동보호계획(개별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양육 상황 점검 및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111	입양의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 또는 친생모만 등재되어있을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6 • 입양 동의를 하지 않은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추후 인지 청구를 통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측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 • 다만, 연락두절 또는 소재 미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동의만으로 입양 진행	입양의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 또는 친생모만 등재되어있을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나요? 6 • 입양 동의를 하지 않은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추후 인지 청구를 통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측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 • 다만, 연락두절 또는 소재 미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동의만으로 입양 진행(단, 증빙서류나 '미첨부 사유서' 제출 필요) * 친권 상실에 대한 판결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경찰 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 '26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111	 외국인 부모의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출생신고 안내 → 직접 양육 시 지원 안내 → 보호조치 안내(입양, 가정위탁, 시설) ② 외국아동 출생확인(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국/영문 출생확인서 발급),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를 해당 국가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해당 국가 법률상 보호 조치 요청 ※ (참고) 미등록 외국인도 시설보호 가능(단, 지방비 또는 민간자원 필요) ③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아동을 학대한 경우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 (참고) 출입국 관리법 제25조의4, 아동의 비자확인 관련 정보는 하이코리아, 대한민국 비자포털 등 활용	 외국인 부모의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출생신고 안내 → 직접 양육 시 지원 안내 → 보호조치 안내(입양, 가정위탁, 시설) ② 외국아동 출생확인(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국/영문 출생확인서 발급),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를 해당 국가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해당 국가 법률상 보호 조치 요청 ※ (참고) UN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제2조(비차별)에 따라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등에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미등록 외국인도 임시로 행복e음 전산관리번호 부여 하고 시설보호 등의 보호조치 가능(단, 지방비 또는 민간자원 필요) ③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아동을 학대한 경우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 (참고) 출입국 관리법 제25조의4, 아동의 비자확인 관련 정보는 하이코리아, 대한민국 비자포털 등 활용
113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가. 주체 ●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총괄하여 수립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를 의뢰할 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과 협업하여 작성 <신설> ※ 아동을 보호하게 될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가. 주체 ●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총괄하여 수립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를 의뢰할 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과 협업하여 작성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보호 결정(보호 조치 변경 포함) 후 위탁가정(신청인)과 해당 가정위탁 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서 포함한 관계 서류를 7일 이내에 센터로 발송 ※ 아동을 보호하게 될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114	다. 수행 방법 <신설>	다. 수행 방법 - 입양의 경우, 해당 시·도는 입양대상아동 보호가 가능한 인프라 현황을 사전 파악, 보호 가능 현황 등 총괄 관리
115	 • 보호조치 유형 - 원가정 보호 : 아동을 원가정내에서 보호하며, 아동과 그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지원, 필요시 드림 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및 이관 - 원가정외 보호 · 입양 : 유기 아동 등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 영구적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조치 · 가정위탁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 보호조치 유형 - 원가정 보호 : 아동을 원가정내에서 보호하며, 아동과 그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지원, 필요시 드림 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및 이관 - 원가정외 보호 · 입양 : 유기 아동 등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 영구적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조치 · 가정위탁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있도록 보호조치하며, 지속적인 원가정 지원을 통해 가정내 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호조치 ※ 2세 이하(36개월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 아동양육시설 :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가 어려울 시 고려하는 보호조치 - 아동치료시설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시설 및 요양원 등의 입원·입소를 결정	있도록 보호조치하며, 지속적인 원가정 지원을 통해 가정내 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호조치 ※ 2세 이하(36개월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 배치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 아동양육시설 :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가 어려울 시 고려하는 보호조치 - 아동치료시설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시설 및 요양원 등의 입원·입소를 결정 - 기타 아동 관련 복지시설: 장애, 친족 성폭력 피해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관련 보호시설로 보호 계획 수립(종결 후 사후관리)
119	작성예시 〈생략〉	작성예시 (본문 참조)
125	나. 수행시기 〈신설〉	나. 수행시기 * 재판단의 의미가 반드시 기존의 판단을 변경하라는 의미는 아님
126	다. 심의 내용 및 방법 〈신설〉	다. 심의 내용 및 방법 - 보호조치가 입양으로 결정된 경우,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서식 42)를 발급하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시스템을 통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내용은 타 보호조치 아동과는 구분하여 개인별로 작성하되, 회의록이나 회의 내용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사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추가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승낙서, 상담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입양대상아동결정 확인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원본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하여야 함
130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 내 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팀원(아동보호전담 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가정위탁 담당 등) 전체 참석 필요 • 그 외 보호계획에 따라 ① 아동을 보호 의뢰할 시설 담당자, ② 아동 또는 가정에 사례관리를 의뢰(ex.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등)할 담당자, ③ (타 시·군·구 시설 입소 시) 시설 주소지 아동보호전담 요원	 시·군·구 사례회의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 내 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팀원(아동보호전담 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가정위탁 담당 등) 전체 참석 필요 • 그 외 보호계획에 따라 ① 아동을 보호 의뢰할 시설 담당자, ② 아동 또는 가정에 사례관리를 의뢰(ex.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가정위탁지원센터 등)할 담당자, ③ (타 시·군·구 시설 입소 시) 시설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④ (보호출산아동의 입양을 고려할 경우)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 '26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131	 입양대상아동(6호)의 보호조치 변경(3호, 4호) 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입양 알선 곤란 등으로 보호조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현재 후견인인 입양기관장(또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변경(3호 또는 4호)함 * 입양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시 친권자의 동의는 필수는 아님 • 이후 아동은 「보장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됨 *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입양 동의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친권이 정지된 상태임	 입양대상아동(6호)의 보호조치 변경(3호, 4호) 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양이 곤란한 아동으로 결정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확인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변경 또는 유지(입양)를 검토하여야 함 *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므로 친권자의 동의는 필수가 아니며, 입양동의를 철회한 때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133	다. 수행방법 - (입양) 아동보호를 의뢰한 입양기관 또는 양육시설 등에 아동에 대한 입양의뢰 및 입양대상아동 확인서(서식 42) 송부 ※ 부모가 없는 경우 등 원가정 복구가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5호 보호조치를 하면서 제6호(입양)를 병행하여 조치하여 추후에라도 영구적인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다. 수행방법 - (입양) 아동보호를 의뢰한 위탁가정 또는 양육시설 등에 아동 인도시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및 입양대상아동 입소 확인서 발급, 관계기관 등의 요청 시 입양대상 아동 결정 확인서(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급
136	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주기적으로 양육상황 점검(아동 양육상황 및 원가정 모니터링) 실시 ※ 원가정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원가정 주소지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원가정 모니터링 협조요청 가능 ● 읍·면·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복지시설 등 아동보호 담당자 - 방문 동행, 자료 제출 등 양육상황 점검에 협조 ※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은 입양기관이 아동양육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하되, 입양대상아동이 입양기관이 아닌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중인 경우,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양육상황점검 실시(보호자가 입양으로 의뢰한 아동 참고)	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제6호에 따라 보호중인 아동을 주기적으로 양육상황 점검(아동 양육상황 및 원가정 모니터링) 실시 ※ 원가정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원가정 주소지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원가정 모니터링 협조요청 가능 ● 읍·면·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복지시설 등 아동보호 담당자 - 방문 동행, 자료 제출 등 양육상황 점검에 협조 ※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은 입양허가 전까지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양육시설, 위탁가정, 원가정 등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양육상황점검 보고서(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 참고)를 작성하여야 함(보호자가 입양으로 의뢰한 아동 참고)
138- 139	라. 수행방법 〈신설〉	라. 수행방법 - (위탁가정 수급비 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의 영양·위생상태, 발달부진 등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경우, 시·군·구 급여담당 부서(급여관리과 등)에 생계급여 관리 점검을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생계급여 담당 공무원은 급여관리 점검 실시(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2715(‘26.3.24.)호,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 실태점검 이행 개선사항 안내)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 (이상징후 예시) 영양·위생상태, 발육부진, 위생상태 불량, 낡은 옷차림, 영양부족 및 건강문제 방치 등 ⇨ 위탁부모가 아동 양육에 지원금(양육보조금 등)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심됨 ※ 점검 의뢰를 받은 생계급여 담당 공무원은 일제 조사대상해 해당 위탁가정을 포함하여 근시일 내 점검 실시(위탁 부모에게 사전 통보 필요) 필수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점검표」 '점검결과 및 총평'란에 관련 내용 기재 필요 〈중략〉 ※ 친인척 가정으로 조치한 경우, 해당 가정의 양육 환경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가정환경조사서(일시보호)를 활용 하거나 필요한 경우 축약형 가정복귀 절차 적용
139	- (추가 연장)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가 25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 의3의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 가능 〈신설〉	- (추가 연장)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가 25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 의3의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 가능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호에 따른 추가 연장 사유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후·서면 심의 통해 결정
141	- (재보호조치)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동복지 시설장, 위탁부모에게 대상자 인도하고 원가정 외 보호 기관에 접수상담지(서식 1), 아동카드(서식 12), 개별보호·관리계획 (서식 11), 가정위탁보호신청서 (서식 29) 또는 시설입소신청서(서식 40) 또는 입원의뢰서 (서식 41) 송부 ※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 등 재보호조치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 수급 변동사항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 (재보호의 종결) 보호연장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종료 하되, 보호종료 신청 및 보호종료 내역을 자립지원전담 기관, 자립수당 담당 부서에 통보할 때에 재보호 종료 자임을 안내(자립수당 지급 기간 산정 등 참고) ※ 재보호 종료 대상자 명단은 재보호조치 시 담당 사후관리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송부	- (재보호조치)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장, 위탁부모에게 대상자 인도하고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접수상담지 (서식 1), 아동카드(서식 12), 개별보호·관리계획 (서식 11), 가정위탁보호신청서(서식 29) 또는 시설 입소신청서(서식 40) 또는 입원의뢰서 (서식 41) 송부 ※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 등 재보호조치에 따른 기초생활 급여 수급 변동사항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 (재보호의 종결) 보호연장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종료 하되, 보호종료 신청 및 보호종료 내역을 자립지원전담 기관, 자립수당 담당 부서에 통보할 때에 재보호 종료 자임을 안내(자립수당 지급 기간 산정 등 참고)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중 재보호조치 된 아동의 경우 재보호조치 이전에 사후관리를 담당했던 지역 자립 지원전담기관으로 재보호 종료 대상자 명단 송부
142	TIP • 소년법상 보호처분(제32조)을 받은 아동 관련 조치사항 ①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주소지에서는 보호 일시중지, 보호처분 종료 후 보호조치 또는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②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주소지에서는 보호 일시중지 후 감호위탁 된 시설과 연락체계 유지하며 아동 모니터링 실시(건강 및 생활환경, 처분 종료 및 위탁 기간 연장 여부 등(퇴소예정일), 기타 특이사항)	TIP • 소년법상 보호처분(제32조)을 받은 아동 관련 조치사항 ①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지자체에서는 보호 일시중지, 보호처분 종료 후 보호조치 또는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②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지자체에서는 보호 일시중지 후 감호위탁 된 시설과 연락체계 유지하며 아동 모니터링 실시(건강 및 생활환경, 처분 종료 및 위탁 기간 연장 여부 등(퇴소예정일), 기타 특이사항)

| '26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 사례결정위원회 생략, 아동상황 모니터링 시 유선·메일 등 비대면 방법 활용 가능 ③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주소지에서는 보호처분 종료 전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점검, 보호처분 종료 후 아동 보호서비스 재개 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 조치(변경) 또는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신규〉 ④ 보호처분 중 18세 도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종결 및 연장 여부 결정 ※ 형사처분(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보호종인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동일 절차 적용. 단, 아동이 만 18세 이상(보호연장)인 경우 종결 후 사후관리(5년) 실시	* 사례결정위원회 생략, 아동상황 모니터링 시 유선·메일 등 비대면 방법 활용 가능 ③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지자체에서는 보호처분 종료 전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점검, 보호처분 종료 후 아동 보호서비스 재개 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 조치(변경) 또는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 기존 동일한 시설 및 위탁가정으로 복귀 시 사례결정 위원회는 생략하되, 보호조치 변경 및 위탁가정 자격 재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진행 ④ 보호처분 중 18세 도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종결 및 연장 여부 결정 ※ 형사처분(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보호종인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동일 절차 적용. 단, 아동이 만 18세 이상(보호연장)인 경우 종결 후 사후관리(5년) 실시
149	 입양 관련 가정법원의 허가 후에도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대상인가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으로 입양대상아동(법원 허가 전까지)을 의미 • 입양 성립 후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현황 모니터링 실시 (1년간 6회)	 입양 관련 가정법원의 허가 후에도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대상인가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으로 입양대상아동(법원 허가 전까지)을 의미 • 아동 주소지에서는 입양 허가 후 위탁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모니터링(1년간 6회)하고, 필요시 가정방문 또는 유선·대면 상담을 통해 입양가정의 안정적 적응 지원
158	4) 가정법원 허가로 인한 종료(입양)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시 입양을 진행(입양기관)한 시·군·구에서 종결(사례결정위원회 단순보고)하며, 이후 입양가정(양부모) 시·군·구로 사례 이관 ※ 종결일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일자	4) 가정법원 허가로 인한 종료(입양)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양자입양 신고 시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종결(사례결정위원회 단순보고)하며, 이후 입양가정(양부모) 시·군·구로 사례 이관 ※ 종결일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일자(친양자 입양신고) - 새로운 아동(입양가정) 주소지 시·군·구는 이관받은 정보를 확인하고, 양부모에게 각종 급여·수당 신청을 안내하여야 함
159	● 아동 거주지(타 법상 시설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이후 최초 1주일 내 시설 방문을 포함하여 5년간(단, 아동이 18세 도래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종료) 연 1회 사후관리 실시하여 아동의 보호상태 정기적으로 확인	● 아동 거주지(타 법상 시설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이후 최초 1주일 내 시설 방문을 포함하여 5년간(단, 아동이 18세 도래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종료) 연 1회 사후관리 실시하여 아동의 보호상태 정기적으로 확인 ※ 타법상 시설이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등 비공개시설인 경우 소재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주소지를 유지함. 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시설 소재지)가 불일치하므로, 아동 주소지 지자체에서 사후 관리 시 시설 소재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업무 수행 가능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164	 보호대상아동을 연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와 25세 이상의 경우 추가 연장을 위한 증빙서류(대학입학증명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증명서 등) 확인 후 내부 회의(연장사유 충족여부 검토)를 통해 연장사유 충족 여부 등 사전 검토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서면·사후심의)	 보호대상아동을 연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4세 이하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서 징구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사후 보고 • (25세 이상 추가 연장) 내부 회의를 통해 추가 연장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대학입학증명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증명서 등) 사전 확인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사후·서면심의)
167	● 입양이 성립된 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진행 참고 ● 사후서비스 제공(입양특례법 제25조)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1.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한 관찰 및 이에 필요한 서비스 2.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 요원의 배치 ②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국가의 협력기관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입양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③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 방문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입양이 성립된 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진행 참고 ● 사후서비스 제공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양부모와 양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지원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 요원의 배치
168	02. 연령 초과 전 종료되어 원가정 복귀한 아동	02. 연령 초과 전 종료된 아동(원가정 복귀/입양성립)
176	<신규> 사후관리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중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종결 이후 사후관리 중 원가정 전출, 타법 시설 간 전원, 취업 등으로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아동 주소지로 사례이관 및 사후관리 실시 • 단, 아동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보호처분 전 아동의 사후관리를 수행했던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 일시중지 및 보호처분 기간 중 아동상황 모니터링 실시 → 소년법 보호처분 종료 이후 아동의 보호체계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재개 또는 신규(재) 보호조치 실시 ※ 본 매뉴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 관련 조치 사항>과 동일 절차 적용

| '26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179	제3부 부록 I.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나. 주요기능 (4호) 법 제18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호) 법 제19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호)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부 부록 I.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나. 주요기능 (4호)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호)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호)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호) 법 제19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호)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84	라.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신규)	라. 사례결정위원회 운영(대면원칙) -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중 한명을 선임하여 회의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음 -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위원과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대리인이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음
185	● (심의방식)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전·대면 심의 의무안건” 외 안건은 지자체가 심의 방식(사전·사후/대면·서면) 결정 - ‘사전·대면 심사 원칙’인 안건의 긴급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 중심으로 참석 범위 조절하여 개최 가능(대면 심의가 원칙이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가능)	● (심의방식)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전·대면 심의 의무안건” 외 안건은 지자체가 심의 방식(사전·사후/대면·서면) 결정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사전·대면 심의 안건에 대한 긴급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동 보호 조치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수시 개최 * 위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 시 아동에 관한 정보 등 안건 내용이 제 3자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철저 필요 - 보호조치의 시의성을 고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안건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 중심으로 참석 범위 조절하여 개최 가능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최소 4명 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최소 3명 이상 찬성)
187	마. 세부 운영기준 ● 보호조치 종결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종결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의 의무사항임	마. 세부 운영기준 ● 보호조치 종결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종결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의 의무사항임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 연장보호아동 및 재보호아동의 종결심의도 사후·서면 심의 가능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적기능에 해당하는 아동(지능 지수가 84 이하)의 종결 심의 시 사전·대면 심의를 거쳐야 함. - 이런 경우 보호종료로 심의결정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 - 입양동의 철회에 따른 원가정 복귀의 경우 사후·서면 심의 가능하며, 입양 성립에 따른 보호조치 종결은 사례 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제외(법원 결정사항 단순 보고)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4호와 제6호 병행 조치 되었던 경우, 종결심사 시에도 함께 보고 ※ 원가정에서 양육중인 입양대상아동의 입양 동의 철회로 인한 종결 시 사후·서면 보고 가능	- 연장보호아동 및 재보호아동의 종결심의를 사후·서면 심의 가능 - 다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연장아동 및 추가연장 아동 또는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아동 중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아동(지능지수가 84이하)의 종결 심의 시 사전·대면 심의를 거쳐야 함 - 이런 경우 보호종료로 심의결정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 - 입양동의 철회에 따른 원가정 복귀의 경우 <u>현재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복귀점검표'를 작성(원가정에서 보호 중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원가정 복귀 조치 이후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 심의 가능</u> - <u>입양 성립에 따른 보호조치 종결은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제외(법원 결정사항 단순 보고)</u>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4호와 제6호 병행 조치 되었던 경우, 종결심사 시에도 함께 보고 ※ 원가정에서 양육중인 입양대상아동의 입양 동의 철회로 인한 종결 시 사후·서면 보고 가능
227	3.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 이후 절차 2)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 미성년후견인이 선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후견개시 신고서, 판결문(심판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과 함께 후견개시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제80조, 제82조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2018.10.23. 발령, 2018.11.16. 시행) 양식 16]	3.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 이후 절차 2)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 미성년후견인이 선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후견개시 신고서, 판결문(심판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과 함께 후견개시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제80조, 제82조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2025.7.19. 시행, 2025.7.7. 일부개정) 양식 16]
228	4)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 (「민법」 제942조제1항, 제943조, 제944조) -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2개월 이내 피후견인(위탁아동)의 재산 목록 작성 - 법원의 허가를 통해 기간 연장 가능 -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필요 - 재산목록은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www.gov.kr)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http://www.fss.or.kr) 조회결과를 활용하여 제출 -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4)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 (「민법」 제942조제1항, 제943조, 제944조) -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2개월 이내 피후견인(위탁아동)의 재산 목록 작성 - 법원의 허가를 통해 기간 연장 가능 -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필요 - <u>미성년후견인은 아동 명의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 재산목록을 작성</u> *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시 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 법원에서 아동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조회하여 확인된 '지적재산자료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아동 명의의 계좌,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재산 내역을 파악

| '26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주요 개정사항 |

쪽	현 행(2025년)	개 정(2026년)																																																						
	전까지 긴급상황 이외 재산에 관한 권한 행사 불가 및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 긴급상황 이외 재산에 관한 권한 행사 불가 및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230	● 후견 종료 통지 및 신고 - 후견 종료 1개월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와 함께 미성년후견 종 료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 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3호, 2018. 10. 23. 발령, 2018. 11. 16. 시행) 양식18]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 제외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미성년후견 종료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후견 종료 통지 및 신고 - 후견 종료 1개월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와 함께 미성년후견 종 료신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642호, 2025.7.19. 시행, 2025.7.7. 일부개정)양 식18]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 제외 ※ <u>아동이 입양된 경우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므로 별도의 후견 종료 신고 불필요</u>																																																						
237	제4부 서식 <table border="1"> <tr> <td>서식 42</td><td>입양대상아동 확인서</td><td>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5호</td></tr> <tr> <td>서식 43</td><td>입양동의서</td><td>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8호</td></tr> <tr> <td>서식 44</td><td>친생부모 상담기록지</td><td>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7호</td></tr> <tr> <td>서식 45</td><td>친생부모 상담확인서</td><td>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8호</td></tr> <tr> <td>서식 46</td><td>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td><td>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8-1호</td></tr> <tr> <td>서식 47</td><td>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td><td></td></tr> <tr> <td>서식 48</td><td>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td><td>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13호</td></tr> <tr> <td>서식 49</td><td>입양동의 철회서</td><td>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9호</td></tr> <tr> <td>서식 50</td><td>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td><td>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20호</td></tr> </table>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5호	서식 43	입양동의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8호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7호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8호	서식 4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8-1호	서식 47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서식 4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13호	서식 49	입양동의 철회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9호	서식 50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20호	제4부 서식 <table border="1"> <tr> <td>서식 42</td><td>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td><td>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td></tr> <tr> <td>서식 43-1</td><td>친생부모 입양동의서</td><td>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td></tr> <tr> <td>서식 43-2</td><td>입양 동의·승낙서</td><td>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td></tr> <tr> <td>서식 44</td><td>친생부모 상담기록지</td><td>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0]</td></tr> <tr> <td>서식 45</td><td>친생부모 상담확인서</td><td>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1]</td></tr> <tr> <td>서식 46</td><td>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td><td>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6]</td></tr> <tr> <td>서식 47</td><td>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 조치 현황</td><td></td></tr> <tr> <td>서식 48</td><td>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td><td>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33]</td></tr> <tr> <td>서식 49</td><td>입양 동의·승낙 철회서</td><td>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td></tr> </table> ※ [서식11]개별보호·관리계획서, [서식12]아동카드의 보호의뢰 사유 중 “혼외자” 삭제 * 아동 출생 배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혼외자’ 삭제 ⇒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인 경우 “기타” 항목에 체크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43-1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식 43-2	입양 동의·승낙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0]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1]	서식 4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6]	서식 47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 조치 현황		서식 4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33]	서식 49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5호																																																						
서식 43	입양동의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8호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7호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8호																																																						
서식 4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8-1호																																																						
서식 47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서식 4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13호																																																						
서식 49	입양동의 철회서	입양특례법 시행규칙별지9호																																																						
서식 50	사후서비스 제공 확인서	2022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20호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43-1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식 43-2	입양 동의·승낙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0]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1]																																																						
서식 4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6]																																																						
서식 47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 조치 현황																																																							
서식 4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33]																																																						
서식 49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제1부 아동보호 서비스의 이해

I.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3
1. 추진 배경	3
2. 추진 경과	3
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내용	4
II. 서비스 주요 대상 용어 정의	5
1. 아동	5
2. 보호대상아동	5
3. 피해아동	5
4. 보호자	6
5. 원가정 외 보호기관	6
III.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7
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7
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7
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8
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9
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9
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9
IV.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11
1. 개요	11
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12
3.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 주요사항	17
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17
나.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보호 의뢰된 아동(비학대)	22
다. 미아 또는 유기로 신고된 아동	25
라. 보호자가 입양으로 의뢰한 아동	35
마.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66
V.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83
1.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83
2.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85
3. 아동보호 추진체계(예시)	86
VI.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87
1. 채용	87
2. 업무수행 및 권한 부여	88
3. 복무	90
4. 교육	91
5. 보수	92
6. 예산 운영	93

CONTENTS

제2부 아동보호 서비스의 절차

I. 아동보호서비스 절차별 주요내용	99
II. 상담·조사·사정	102
1. 개요	102
2. 수행주체	102
3. 수행시기	103
4. 수행방법	103
III. 보호계획 및 결정	113
1. 개요	113
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113
3. 사례회의	123
4. 보호조치 결정	124
IV. 보호조치	132
1. 개요	132
2.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례관리	132
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136
V. 종결	152
VI. 사후관리	167
1. 개요	167
2. 연령 초과 전 종료된 아동(원가정 복귀/입양성립)	168
3. 연령 초과로 종료된 아동(자립지원)	169
4. 아동복지법 외 타 법상 시설에 입소한 아동	175

제3부 부록

I.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179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79
2. 사례결정위원회('21.6.30.~)	183
II.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197
1.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개요	197
2.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세부 절차	198
3.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표준내용(예시)	200
III. 채무 위기아동 등에 대한 법률지원(상담·소송) 안내 ...	207
1. 지원체계	207
2. 주요내용	207
3. (참고) 법률지원 필요사례	209
IV.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210
1.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업무 개요	210
2.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세부절차	211
V.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황	215
VI.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내서	216
1. 위탁아동의 친권 및 후견	216
2.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진행 절차	219
3.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 이후 절차	227

CONTENTS

제4부 서식

I. 아동보호서비스 서식

[서식 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238
[서식 2]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42
[서식 3] 일시 보호 의뢰서	244
[서식 4] 욕구조사표	246
[서식 5] 위기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256
[서식 6]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친권 관련)	258
[서식 6-1]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상속 관련)	259
[서식 7]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60
[서식 8] 친부모 상황 점검표	261
[서식 9] 아동 상황 점검표	267
[서식 10] 아동보호동의서	273
[서식 10-1]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설명 확인 및 아동 동의서(신설)	274
[서식 11] 개별보호·관리계획서	276
[서식 12] 아동카드	280
[서식 13] 서비스 제공 계획서	283
[서식 14]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285
[서식 15] 양육상황 점검표	287
[서식 15-1]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 보고서	291
[서식 16]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294
[서식 16-1]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295
[서식 16-2] 재보호조치 신청서	296
[서식 16-3] 재보호조치 신청 위임장	298
[서식 17] 가정 복귀 점검표	299
[서식 18]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용〉	303
[서식 19] 가정 복귀 의견서	306
[서식 20] 종결심사서(사례결정위원회 상정)	308
[서식 2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연령 도래)	310
[서식 21-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원가정복귀(비학대)/ 조기종료아동)	312

[서식 22] 양육계획서(보호자용)	313
[서식 23]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314
[서식 24] 사례회의록	316
[서식 24-1] 아동 재보호조치 의견서	318
[서식 25]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319
[서식 2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321
[서식 27]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322
[서식 28] 보호종결 사유별 사후관리 점검표	323
[서식 29]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328
[서식 30]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329
[서식 31]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331
[서식 3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332
[서식 3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333
[서식 34] 위탁부모 추천서	334
[서식 35]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335
[서식 36] 소재불명조사복명서	336
[서식 37]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337
[서식 38]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조회 동의서	338
[서식 39]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339
[서식 39-1]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340
[서식 40]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342
[서식 41]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343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344
[서식 43-1]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345
[서식 43-2] 입양동의·승낙서	346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347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349
[서식 4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	350
[서식 47]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351
[서식 4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354
[서식 49]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355
[서식 51]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356
[서식 52]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357
[서식 53]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359
[서식 54]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361

CONTENTS

[서식 5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362
[서식 56]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363
[서식 57]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서	364
[서식 58]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피해아동)	367
[서식 59]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동보호전담요원용) ..	368
[서식 60] 가정환경 조사서(아보전용)	369
[서식 60-1] 가정환경 조사서(일시보호)	372
[서식 6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	374

표 목차

〈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26
〈표 2〉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27
〈표 3〉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 내용	38
〈표 4〉 아동의 연령에 따른 입양 동의·승낙서 작성 서식	41
〈표 5〉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43
〈표 6〉 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62
〈표 7〉 사정 시 고려사항	108
〈표 8〉 사례회의 종류	124
〈표 9〉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127
〈표 10〉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업무분장	133
〈표 11〉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142
〈표 12〉 아동보호조치 재평가 시 점검	142
〈표 13〉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172
〈표 14〉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주요비교	173

그림 목차

〈그림 1〉 임시양육 결정 이후 임시양육결정 취소 절차	55
〈그림 2〉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100
〈그림 3〉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101

제1부

“ 아동보호 서비스의 이해 ”

- I.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 II. 서비스 주요 대상 용어 정의
- III.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 IV.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 V.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 VI.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제1부 | 아동보호서비스의 이해

I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요

01 추진 배경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및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등 지자체 역할이 법제화되어 있었으나 인력 부족으로 현실에서 미작동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양육상황 점검, 보호조치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 의뢰한 후 민간기관 위주의 보호가 지속되고, 보호자 의뢰가 없는 경우 아동 상황 변경에 따른 보호조치 변경 및 원가정 복귀 절차가 지자체 내에 부재

02 추진 경과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16.3. 개정, '18.3. 시행)
※ 아동의 원가정 보호원칙,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양육상황 점검, 보호 종료 후 사후관리 등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제정 및 지자체 배포('17.6.)
- 피해아동 및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중앙-지방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국정과제 반영('17.7.)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첫 번째 핵심과제로 하여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19.5.)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원가정 복귀 등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아동보호전담요원(334명) 시·군·구 배치('20.10.~)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21.1.)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요원(190명) 추가 배치 추진(~'21.10.), '22년부터 191명 추가 배치하여 전국에 총 715명 배치
- 국가의 아동·청소년 양육·보호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국정과제 반영('22.3.)
- 아동보호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조성' 국정과제 반영('25.9.)

03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주요 내용

-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을 통해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를 실시하고 적절성 평가 및 변경하는 환류체계 구축
 - (상담 및 가정조사) 보호조치 결정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 환경에 대한 조사
 - (개별보호·관리계획) 상담 및 가정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반영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양육상황 점검) 가정과 분리되어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아동보호조치 변경 필요성 및 종결 여부 지속적으로 확인
 - (사후관리) 연령도래 및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아동의 분리 사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가정 방문 및 필요한 조치 수행
-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 아동에 대해 전문적·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보호조치) 아동의 분리보호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 보호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조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적절한 보호유형 및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
 - (보호조치 변경 및 종결) 피해아동 등에 대한 가정복귀가 적절한지 여부 등 아동의 보호목적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보호조치 종결을 결정
-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자원투입 범위를 한정된 자원을 가진 개별시설에서 지역사회로 확대
 - (통합정보시스템) 아동에 대해 지자체-민간 간 분절적으로 관리되는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아동 중심의 사례관리 지원
 - (원가정 복귀 지원) 지자체-민간 간 협력을 통해 아동이 원만하게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아동-부모 간 만남 및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관계개선 프로그램 도입

II

서비스 주요 대상 용어 정의

01 아동

-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를 말하며,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나이로 계산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록한 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
- 다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보호(아동복지법 제16조의3)

02 보호대상아동

-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성폭력·방임 포함)하는 경우, 기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 넓은 의미로는 빈곤이나 부모의 수감·실직 등으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높은 취약 아동을 포괄(이하 '취약 아동'이라 함)
※ 빈곤 가구 아동,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부모의 수감·알콜중독·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방임되고 있거나 방임 위기에 있는 아동, 저소득 다문화 가정 아동 등

03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동을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

04 보호자

-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아동복지법 제3조)
- 보호자는 아동복지법 제5조에 따라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책무를 부담

05 원가정 외 보호기관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이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위탁가정 포함) 등 원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에게 보호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
- 넓은 의미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괄

III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01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 아동보호는 ‘시급성’과 ‘시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선 보호 후 행정 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호 원칙)

TIP

- 보호자가 특정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으로 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의 요구는 아동 배치 시 최대한 고려하되,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아동의 보호는 최대한 아동의 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자의 배치 요구 수용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아동 보호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호조치 결정

02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원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은 취약 아동(가구) 등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상담,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을 통해 가족 해체를 예방하여야 함
 - ※ 보호자가 아동을 아동복지시설 입소나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 등 절차를 진행하기 보다는 우선 원가정에서 보호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가능한 경우 최대한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서비스 연계·지원 등)
-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 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
 -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시에도 해당 아동이 최대한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

참고 9 아동의 '원가정 보호'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아동복지법 개정, '16.3.22./'18.3.23. 시행)

03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 아동을 불가피하게 분리 보호하는 경우, 아동의 개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아동의 권리와 자유를 최소한으로만 제한하는 순서로 대안양육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 (UN대안양육지침 21조) 시설 양육의 활용은 그 환경이 아동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이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 즉, 분리보호 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시설형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 생활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참고 9 원가정 보호 원칙과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다음 순으로 조치 고려

☞ 국내 입양(부모가 없는 경우 등) → 가정위탁 → 공동생활가정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조치 실시



04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함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05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취약 아동(가구)의 경우 빈곤, 질병, 이혼 등 복합적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약 아동(가구)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단순 신청에 의한 급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례관리 등을 통해 아동 및 가구에 대한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 또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단전, 단수, 단가스, 사회보험료 체납 등), 아동학대 정보, 의무 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를 활성화함(e아동행복지원시스템)

06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보호자 등의 신청 또는 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가구)을 발견한 경우 담당자가 해당 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통합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보호자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여러 번 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등에게 절차 등을 사전에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고, 보호자가 희망하는 시간·장소 등을 최대한 반영
- 또한, 아동을 보호조치 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

참고 9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의 4대 기본원칙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국가(196개국)가 비준한 인권협약**

- 유엔총회에서 아동권리협약 만장일치 채택('89.11.20.)
- 우리나라는 '91.11.20. 비준

- (2조 : 비차별)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함
- (3조 : 아동 이익 최우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6조 : 생존·발달권)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함
- (12조 : 아동 의견 존중)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함

IV

아동보호서비스 주요 내용

01 개요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① 아동발견 또는 보호자 의뢰 → ②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③ 원가정 복귀 → ④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요양소 입원·입소, 입양 등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실시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원가정을 통한 보호가 어렵거나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에 의한 보호를 추진(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등 가정형 보호가 어렵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시설형 보호 실시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아동이 원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을 최대한 연계·지원하도록 함
- 원가정에서 보호가 적합하지 않거나 어려운 경우,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하되, 원가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아동이 조속히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 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상황점검을 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의3)

02 아동보호서비스 유형

가 상담 및 지도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 주요 내용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실시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연계 등 필요한 조치 수행
 -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 동의하에 드림스타트에 우선적으로 연계
 -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나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 주요 내용 : 「민법」 제777조제1호(8촌 이내의 혈족) 및 제2호(4촌 이내의 인척)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친족의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13세 이상은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
 - 다만, 아동을 보호할 친족의 가정이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부합할 경우 법 제15조제1항제3호의 가정위탁 신청 가능

다 가정위탁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 일반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 중 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 경계선 지능(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으로 진단) 기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ADHD, 우울증, 자·타해 위험, 폭력성 등) 등으로써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 보호대상아동의 일시보호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

※ 자세한 내용은 당해연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1」 가정위탁 유형 참고

라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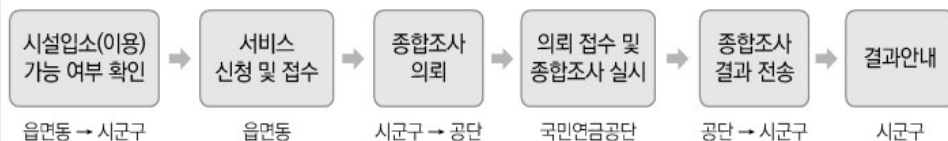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4호
- 주요 내용 :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 복지급여 연계 등 지원에도 불구하고 원가정 및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이 어렵거나 위탁가정의 부족 등 가정위탁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고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학대피해아동쉼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심리상담·치료, 학습 및 정서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

참고 ②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절차



※ 자세한 내용은 당해연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 참고

마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5호
- 주요 내용 : 약물 및 알콜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킴

바 입양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6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주요 내용 : 보호대상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친생부모가 입양을 결정하기 전,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으로 양육 및 정부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입양 외 다른 양육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인 입양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입양의뢰 된 아동은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됨

참고 ●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개요

〈개념〉

- (사업목표)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등)
- (사업대상) 0~12세 이하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등) 아동 및 가족, 임산부
 - 다만, 13세 이상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연령도래 종결시점(12세 이후)의 위기 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적인 사례관리 필요 아동(사례회의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하에 최대 15세까지 연장가능)
 - 13~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의 경우 사례관리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 요원)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청소년 지원 기관 등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 실시
- ※ 13~18세 미만의 취약계층아동은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우선 의뢰하되, 특화분야 아동복지 교사 미배치 시·군·구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수행

〈주요 내용〉

- (사업내용) 아동통합사례관리
 - 대상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기초정보,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상태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정기적 점검 및 지속적 모니터링 등 통합사례관리 지원
- (수행주체)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전담부서에 배치된 보건·복지·교육 분야별 전담 공무원 및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사업수행
- (영역별 지원내용) 보건·복지·교육 등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

영역	지원내용 예시
신체/건강	건강검진 및 예방, 성장발달 스크리닝, 구강교육, 심리검사, 정신건강 서비스, 산전산후관리, 영양교육 등
인지/언어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 경제교육, 인터넷 중독예방, 소방 및 안전교육, 독서지도 등
정서/행동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 관련 교육, 진로지도, 멘토링 프로그램 등
부모/가족 통합지원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등

- 사례관리 중 아동학대 의심·피해 발생 시 조치사항
 - (학대의심아동) 경찰(112)또는 시·군·구 긴급전화로 신고. 신고 이후 시·군·구(아동보호팀)를 통해 아동 및 가족의 현재 상황, 학대판단 여부 등 확인
 - (학대판단아동) 아동보호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례회의를 통해 개입방향, 기관 간 역할, 드림스타트 종결여부 등을 논의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2025.7.19. 시행>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0.12.29.>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 조치를 하기 전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6.3.22., 2020.12.29.>

1.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계획
2.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및 제6항의 일시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이하 “아동학대행위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16.3.22., 2017.10.24., 2020.12.29.>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제53조의2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이하 “일시보호조치”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기간 동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조치 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1.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종료되었으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아니한 경우
3. 현장조사 과정에서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경우
4. 그 밖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3.22., 2020.12.29.>

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또는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9.1.15., 2020.12.29.>

⑪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10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2020.12.29.>

03

발생 원인별 보호조치 주요사항

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

- (신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수사기관(112)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로 신고

참고 ● 아동학대 의심사례(예시)

〈아동, 보호자, 가정 내 관찰〉

-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신체적 상흔이 관찰되거나, 상흔에 대한 아동과 보호자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태도(고함, 욕설을 퍼붓거나 무시하는 등)가 관찰되는 경우
- 보호자에 대한 아동의 태도 : 대화 과정 중에 보호자 눈치를 과도하게 보거나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경직(긴장)된 태도를 나타내는 경우, 눈빛·표정·언어 등으로 보호자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경우
- 청결 상태 : 머릿니, 손·발톱 등에 묵은 때, 가정 내 쓰레기 등 방치
- 기타 영양결핍이 의심될 정도의 발육부진, 마른 체형, 계절·날씨에 맞지 않는 옷차림 등이 관찰될 경우

〈주변인 보고〉

- 아동(초등 이하)이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집 밖에 오래 서 있는 등)
- 싸우는 소리(고함, 욕설, 폭력 등)나 아동 우는 소리가 자주 들림
- 평소 아동의 옷차림이 남루하거나 집 안팎에 위험한 물건 방치 또는 냄새(악취)가 나는 것 같음

- (현장출동 및 조사)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례가 신고되거나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현장출동 및 조사 실시
- (응급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은 아동학대범죄 현장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의료기관으로 인도
 - 보호시설·의료기관에서 72시간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되는 경우 48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에서 보호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아동의 가정복귀 여부 또는 추가 보호 필요 여부를 판단하고, 피해아동의 보호근거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 등 조치하여야 함
 - 경찰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학대가 우려되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설담당 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상시 협의의 통해 관할 내 피해아동이 입소 가능한 보호시설(위탁가정 포함)을 파악해야 함
- (즉각분리, 일시보호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재학대 우려 등으로 피해(의심)아동을 보호조치 시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아동을 입소 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하여 보호
 - ※ 즉각분리를 실시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일시보호의뢰서(서식 3)를 작성하여 일시보호시설, 쉼터 등 시설에 송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분리(일시보호조치)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필수로 실시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자체 인력,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인력, 외부 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협조요청
 - ※ 아동학대사건의 특성상 사전에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분리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분리보호 후 빠른 시일 내에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진행
 - ※ 피해(의심)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일시보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의 보호조치 결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하며, 부득이하게 일시보호(즉각분리)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필수 심의대상임(일시보호연장 심의시 가정복지 및 장기보호 전환 여부도 검토해야 함)
 - ※ 최초 일시보호조치 결정 및 일시보호(3개월 미만) 후 추가적 분리보호가 아닌 원가정복귀인 경우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요시 사례결정위원회 안전 상정 가능함
-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조사내용 등을 통해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가정상황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서식 57 피해아동보호계획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자체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 아동학대 전문가자문단을 활용함
 -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계획 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각 문제 및 욕구 등에 따른 지원계획도 포함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가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 또는 관련기관들과의 회의를 진행하여 서비스 자원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연계 실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피해아동보호계획서를 공유하여야 함
 -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아닌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불필요하나,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피해아동 보호계획 공유
- (증장기 보호조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공유받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바탕으로 친부모 상황 점검표(서식 8), 아동 상황점검표(서식 9)를 작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안전 상정하여 보호조치 결정
 - ※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 친부모상황점검 생략가능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아동을 보호할 기관에 보호조치 결정통지서(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
 - ※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결정통지서에는 '시설(기관명)' 제외하여 송부
 - ※ 수용자 자녀를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를 의뢰한 지방 교정청 자녀지원팀 또는 교정시설에 보호결정(변경)통지서 송부
- (사례관리계획/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초기면접 및 사정 등 통해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 가족구성원 등에 대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 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공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 공유,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서식 13) 수립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 (사례관리/양육상황점검·원가정점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분리보호된 아동에 대하여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보호 조치된 아동의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
 - ※ 아동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에는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동 방문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 및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 또는 '관찰된 아동의 특성'란에 기입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안내함
- 장기보호조치가 이뤄진 후 일정기간이 초과하였으나 가정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담요원과 함께 사례관리 종결여부를 결정하고, 지자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종결보고서 등 종합적 검토 통해 사례종결 여부를 결정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종결 이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속 관리
- (보호 종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중 가정복귀 가능성 여부를 검토, 가정복귀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공유
 -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가 종결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 확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육환경 점검 내용, 가정복귀 프로그램 결과, 공공연계 사례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제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이를 확인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
- 지자체 가정복귀 승인결정에 따라 아동은 귀가조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결정 내용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함
 - ※ 사례결정위원회는 피해아동의 복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가정으로 복귀 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인이 가정복귀를 재신청하더라도 가정복귀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의결하도록 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함(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 ※ 피해아동이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의한 분리보호 되는 경우 및 명령 종료로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제외

TIP

- (원칙) 아동학대 사례 관할 기준은 피해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이며, 관련 지자체는 보조 사례 관할
- (예외) 단, 피해아동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응급조치·즉각분리 등 분리된 경우,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사건, 출생 미등록 아동 등 예외 상황 발생 시 실거주지 또는 사건발생지가 주사례관할이 될 수 있음(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1권 참고)
- * 사례특성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구간 협의를 통해 사례관할지 결정 가능

보호절차	피해아동 분리보호 사례예시
신고·접수	112접수 • 아동의 친부가 가정 내에서 아동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로 신고 접수 • 경찰은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학대신고 내용을 통보하며, 필요시 현장출동 동행 요청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 실시 • 아동 가정은 친부모와 아동으로 구성된 3인 가정으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피해(의심)아동(중2/여)과 학대행위(의심)자인 친부를 분리하여 조사 • 신고 당일 친부는 아동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사실을 알게 되어 훈육을 하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야구방망이로 아동의 온몸을 폭행했다고 진술함. 아동의 몸을 관찰했을 때 허벅지, 팔에 멍 등 상흔이 확인됨. 또한 평소 친부는 아동에게 욕을 하거나 손바닥을 이용해 아동의 머리를 때렸다는 내용도 확인됨. 평소 아동 가정은 친부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알코올 문제, 아동의 비행문제(술, 담배)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정 내 갈등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
아동학대 조사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조사 결과 학대로 의심되는 멍 등 상흔이 발견되었고, 아동의 분리보호 의사가 확인되고,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을 분리보호 조치하기로 판단하여 학대피해아동 쉼터로 인도 • 경찰은 친부의 성행 교정 및 양육 태도 개선 위해 임시조치(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 및 교육 위탁)를 검찰에 신청하였고 수사 개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친모, 학교 담임교사 등과 추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아동의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응급조치 효력 종료 전(72시간 이내)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일시보호 실시
	지자체 아동보호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자체사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판단여부,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추후 개입 방향 등 논의(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아동은 현재 가정 복귀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며, 학대행위자인 친부의 학대 발생 요인이 소거되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시설에 중장기 보호(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제4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전문요원에게 공유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 설명 • 아동보호전문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자에게 보호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유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피해아동, 아동학대 행위자 조치)	

보호절차	피해아동 분리보호 사례예시
사례관리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보호계획 통보 전이긴 하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공유받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바탕으로 초기면접 및 사정을 통해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공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이를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공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상시적인 사례관리 진행상황을 공유하여 필요한 지자체 자원 연계(아동의 원활한 시설적응 및 아동 부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친부 임시조치 결정에 따른 수탁프로그램 제공, 정신건강증진센터 통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연계, 가정 내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친모에 대한 양육기술프로그램, 심리상담 등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친부는 아동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어 보호처분(6개월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위탁) 결정 됨.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보호처분에 따른 상담위탁 프로그램을 제공 • 10개월 후, 친부는 지자체에 가정 복귀를 신청하였으나 아동이 가정 복귀를 거부하는 상황임에 따라 시설에서 지속 보호
사례관리 종결 및 사례종결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보호전문기관 • 15개월 후 아동, 아동 부는 주기적인 면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과의 논의 통해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최종적으로 사례를 종결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사례관리 종결 및 사례종결 됨을 안내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의 양육상황점검을 계속 실시
양육상황 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방문 및 유선상담 등을 통해 아동과 아동 부의 주기적 면회 여부 및 관계개선, 보호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여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함 • 36개월 후, 아동과 아동 부의 관계가 원만해져 가정복귀하기로 함
원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 의사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공유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 및 결과 제공을 요청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복귀 이후 3개월 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사후관리 진행하고 이후 단독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함(사후관리 총 1년)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육상황점검, 2개월 간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여 재학대 발생 가능성, 안전한 양육환경 마련 등 면밀한 검토 이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가정환경 조사서를 제출함 •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가정복귀 결정이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복귀 후 3개월 간(월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수행하여 적응상태 및 아동 안전 등을 확인함

나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으로 보호 의뢰된 아동(비학대)

- (발굴·접수상담) 빈곤 및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의뢰된 경우 최초 발견 담당자(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가 접수(초기)상담(**서식 1**) 실시
 - ※ 보호자(부모)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실제 원인인지와 함께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도 동시에 면밀히 파악
 - ※ 접수상담은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초기상담지 등 사용 가능
- 접수상담 결과 아동의 긴급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뢰하여 일시보호시설(일시위탁)입소(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후속조치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의뢰된 아동에 대해서 초기상담지 등을 참고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분리 여부를 결정
- 복합적 욕구·문제가 있거나 부모상담 및 양육지원, 서비스제공 등으로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할 경우 드림스타트로 의뢰
- 긴급지원 및 경제적 지원으로 가정해체 예방이 가능할 경우 읍·면·동 등으로 의뢰
- (욕구 조사) 읍·면·동(또는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에서 실시한 욕구조사(**서식 4**)를 참고하며, 욕구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접 작성(위기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서식 5**)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접 작성)
- (가정환경조사 및 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친부모 상황 점검표(**서식 8**), 아동 상황 점검표(**서식 9**) 작성 및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보호팀 내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보호 조치 유형 및 기간, 서비스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아동의 보호유형 및 서비스 계획을 담은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 11**) 작성 및 아동보호동의서 (**서식 10**) 수령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관련 사례회의 시 원가정 외 보호기관 참여요청 가능
-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경우 보호자 및 보호기관에 보호결정사실을 통보(**서식 25**)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입양 등)은 개별 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서식 13**) 수립 후 시·군·구 보고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읍·면·동, 타 사례관리기관, 원가정 외 보호기관 등과 협력하여 방문 또는 유선으로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서식 15**)을 실시(최소 3개월 주기)

보호절차	빈곤의 어려움으로 분리보호 사례에서	
발굴·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방법①)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퇴거 명령을 받은 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원양어선에 취업하게 되어 자녀(첫째 10세, 둘째 8세)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주민센터에 방문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전화문의(방법②) 모의 사망, 부의 원양어선 취업으로 자녀 양육에 공백 발생이 우려되므로 시청에 전화문의
접수상담	읍·면·동 주민센터 3년 동안 위암으로 투병 중이던 모가 병세 악화로 사망함 - 모의 투병기간 동안 부는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모를 간병해 왔으며, 고액의 의료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해결하다 대출금 연체로 2주 전 담보 주택에서 퇴거 명령을 받음 - 부는 부채 상환을 위해 원양어선에 취업할 예정이며, 원양어선 재직기간 동안 자녀들을 돌봐 줄 수 있는 주변 친인척이 없어 2년간 자녀들을 맡길 곳을 찾고 있음 - 부는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커 부채만 해결되면 자녀들과 함께 살 계획임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사정 및 가정조사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은 접수상담 결과로 대상 가구의 사례관리 필요성 확인 - 아동의 분리보호 요청 관련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의뢰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 욕구조사 및 아동과 친부모 상황점검 실시 - 조사결과를 토대로 적합한 보호조치 방안 모색 ※ 방문일정조율로 방문 최소화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 작성	아동보호전담요원 - 부의 부채상환 및 자립 시 까지 아동 보호가 필요하므로 가정위탁보호(2년) 조치 - 아동들의 환경 변화 최소화를 위해 전학 없이 보호 가능한 위탁가정에 배치 - 모의 사망 및 부와의 갑작스런 이별로 심리 정서적 불안이 높은 아동들을 위해 심리상담 지원(1년) - 신속하고 안정적인 원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과 부의 정기적 교류 지원(2년)	
시·군·구 사례회의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아동보호팀, 읍·면·동 접수상담자, 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과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 결과 동일 위탁가정 내 형제 배치 필요성 도출	
보호조치 결정 (사례결정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 사례회의 결과를 사례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 아동 2명 모두 가정위탁보호 결정(동일한 위탁가정 배치) - 원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과 친부, 위탁가정의 정기적 교류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확정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에 공유	

보호절차	빈곤의 어려움으로 분리보호 사례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하여 시·군·구 보고 - 위탁아동들이 전학 없이 배치 가능한 위탁가정 연계 및 친해지기 프로그램 실시 ○○시 아동용품구입비로 아동 필요물품 구입(이불세트, 의류, 식기도구, 아동도서) -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위탁가정 인근에 ○○심리치료센터 주 1회(1년) 인지치료 등 - 분기 1회 친부와외의 교류(유선 등) 지원(직업 특성 상 상시 연락 어려울 수 있음)
양육상황 점검	가정위탁지원센터
	(일시(위기) 위탁) 3일 이내 보호가정 방문 점검, 이후 주 1회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해 사례관리 수행 (일시(그외), 일반(친인척외) 및 전문위탁) 보호조치 후 2주 이내, 일반(친인척) 위탁의 경우 2개월 이내 위탁가정 방문 등을 통해 적응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후 연 4회 이상 가정방문 또는 전화상담으로 사례관리 실시 - 연계한 심리치료센터의 아동 변화정도 보고(월 1회)를 통해 아동들의 변화상태 확인 - 부의 휴가(연 1회) 시 아동들과의 교류 지원, 원가정 복귀 지원
보호아동 재평가	아동보호전담요원
	- 배치초기 1개월 이내 가정방문 실시(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와 동행 가능)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 - 분기별 양육상황 점검 모니터링(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와 동행 가능) - 위탁부모와 애착관계 형성 및 심리치료 진행에 따른 불안감 해소 확인 - 원가정 복귀 가능성 모니터링
종결	사례결정위원회
사후관리	아동보호 목적을 달성하여 원가정 복귀 의견을 사례결정위원회 상정 및 복귀 결정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원가정 복귀 후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최소 6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공동수행하고 이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단독으로 수행함(가정방문, 내방, 전화) - 아동이 원가정 복귀는 하였으나 한부모가정인 친부가 양육과 근로를 병행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드림스타트로 서비스연계

다 미아 또는 유기로 신고된 아동

- (경찰신고, 건강검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 하는 사람 등은 경찰(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없이 신고 등 조치 후 건강검진

* '실종아동등'의 범위에 유기되거나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포함

** 보호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아동·장애인복지·정신보건시설 등)

※ 신고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재

- 지자체의 장(시·군·구)은 아동의 신상을 기록한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서 (서식 51)를 작성하여 경찰 제출 및 신고 접수서를 5년간 보존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피해의심아동으로 신고 접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개입

※ 실종아동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 신고 접수서를 지체없이 폐기하고 폐기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

- 지자체 이외의 자가 아동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은 신고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시·군·구에 보호의뢰

- (일시보호) 시·군·구는 건강검진 후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일시 보호 의뢰서 서식 3) 등에 일시보호

- 보호시설(일시보호센터 포함)은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상카드(서식 52) 작성하여 지자체의 장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 각각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 신상카드(서식 53)를 작성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에 송부하며, 실종아동 등으로 확인될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신상카드의 사본을 보내야 함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무연고 아동)은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경찰청장·지자체의 장 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실종아동의 보호자 확인 시 신속히 실종 아동의 가정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 등 인수확인 (서식 54)

※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 등 아동의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과 협의하여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호계획 수립) 시·군·구는 원가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성본창설 및 후견인 선임을 진행하고, 보호계획 수립 후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보호조치 결정

※ 해당 아동의 성본 창설이 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의료·생계급여, 양육수당, 교육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보호자 확인) 유기 등 아동의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유기아동의 부 또는 모 등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실종아동 등 인수확인서 **서식 54**)한 경우, 시·군·구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
 -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보고 또는 경찰 조사 등에 의해 보호자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유선 또는 대면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아동의 성본창설이나 미혼모(부) 지원, 아동 양육 교육 연계 등 지원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
 - ※ 아동복지시설 보고 시 아동 주소지 시·군·구, 경찰 조사 등에 의해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 보호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연계
 - ※ 아동의 성본창설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16.5.29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적극 설명

〈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16.5.29 개정〉

내용	규정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변경	「가족관계 등록법」 제14조, 제15조	기존 증명서는 현재분 아니라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모두 표시	현재의 신분관계만 표시되는 '일반증명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까지 표시되는 '상세증명서',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표시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 가능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게 그 사실을 공유하고 필요한 급여 및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의뢰 등 조치(상담결과 등 송부)
- 의뢰받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등(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과 협조)의 방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부모 교육이나 복지 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지원함
 - ※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 의뢰 또는 협력하여 수행하되, '육구조사표(**서식 4**)' 등 활용

〈표 2〉 실종아동 보호·지원 관계기관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정책 수립 및 시행 •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 • 실태조사 및 연구 •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 기타 필요 사항 • 실종아동 등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침고시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 실종신고 접수 • 수색 및 수사 • 유전자검사 대상물 채취 • 관계 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
지방자치단체	• 경찰관서에 실종 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제출여부 지도·감독 • 관계 장소 출입·조사 •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 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국번없이 182) • 신상카드 작성 제출
다중이용시설의 장	• 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 • 시설·장소의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 조기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 • 경찰관서에 교육실적 보고

보호절차	미아 또는 유기아동 사례예시
발굴·접수	경찰 • 공원 공터에서 울고 있는 여자 영아 목소리를 듣고 인근에 사는 주민이 경찰에 신고 • 경찰은 즉시 출동했으며, 시·군·구에 유기아동 발생정보 공유 및 인계
접수상담	시·군·구(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개입) • 아동을 인계받은 시·군·구는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여 건강검진 실시 후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일시보호 의뢰서 작성 및 일시보호시설장에게 아동 일시보호 요청
일시보호	시·군·구(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개입) •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 7일간 보호 의뢰함 (보호조치 전까지 아동은 일시보호 상태 유지) 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시설은 아동을 일시 보호하며 아동 건강, 행동 등 체크함 •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시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필요시 유전자 검사 의뢰)
보호계획	시·군·구(아동학대 의심 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개입) • 시·군·구는 아동이 유기된 점을 고려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작성 • 보호계획 수립 전 아동의 건강검진 결과 몸무게 미달, 영양부족상태임을 확인함
자체사례회의	시·군·구(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 보호계획을 바탕으로 아동보호팀 자체 사례회의 실시 • 회의결과 아동이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가정위탁보호로 의견도출(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보호전담요원에게 사례이관)
보호조치결정 (사례결정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 회의결과를 토대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가정위탁보호로 결정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에게 맞는 위탁부모 추천 요청 (최근 6살 아동을 3년 정도 가정위탁한 뒤 원가정 복귀시킨 위탁부모에게 아동양육을 요청)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보호계획을 가정위탁지원센터(원가정 외 보호 기관)에 공유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하여 시·군·구 보고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에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시 초기정착지원금, 결연지원금 및 영유아 관련 지원 서비스 연계

보호절차	사례예시
양육상황점검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을 가정위탁 배치 후 가정방문 등 아동의 사례관리 실시 * 연 1회 이상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 방문 가능 • 위탁부모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 동행함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사례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실시 * 연 1회 이상 가정방문을 통한 양육상황 점검 실시,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와 동행 가능 • 분기별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함(유기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원가정 점검 제외)
보호아동 재평가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보호전담요원 • 1년이 지난 시점 아동의 부모를 찾을 수 없어 아동에 대해 장기보호 필요성이 고려되어 현재 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장기보호 가능성 확인함
종결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으며, 재학 중 미용자격증 취득하여 졸업 후 집 근처 미용실에 취업함 • 아동의 연령도래(18세)로 인해 종결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 상정하여 종결함(아동보호 조치의 종료신청)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아동보호전담요원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모니터링 후 아동의 특이사항이 발생 되지 않아 사후관리 종료함

TIP

미아·유기 등 실종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지자체 조치사항

-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입소자 중 무연고자 점검 철저
 - ※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기관 등에 대한 일제 점검 시 해당 시설의 입소·전원·퇴소 신상카드 제출현황 파악 등 지자체에서 적극 협조
- 공무원의 관계 장소 출입·조사(실종아동법 제10조)
 -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질문
 -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소속 공무원은 실종아동 등의 가족 등을 동반 가능
 -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

참고 9 성본창설

- 유기아동 등을 발견한 사람 또는 발견 통지를 받은 경찰 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즉시 소지품, 발견 장소, 발견 연월일시, 성별, 출생추정 연월일, 아동 상태 및 보호자 관련 사항 등 그 밖의 상황을 조서(또는 신상카드)에 기록하여야 함. 이 때 조서를 신고서로 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 시(구)·읍·면의 장은 시(구)·군 아동복지 담당 등을 통해 유기아동 발견 시 아동복지법 제15조상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보호계획을 수립,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야 함
※ 시(구)·군 의뢰 시 조서(또는 신상카드)는 해당 시(구)·군 및 보호조치한 시설 등의 관할 시(구)·군에 각각 송부
- 시(구)·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 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함(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
※ 성본창설의무가 있는 시(구)·읍·면의 장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등의 관할 시(구)·읍·면에 아동의 성본창설을 요청할 수 있음
- 성본창설을 위한 절차 예시
 - ① (아동보호과) 관할 경찰서에 '요보호 아동(기아)의 성본창설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붙임파일 : 요보호아동 현황 및 요보호아동 성본창설 기록내용
 - ② 경찰서에서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상황 보고서' 공문 회신
* 붙임파일 : 실종아동등·가출인 발생(상황)보고서, 기아발견조서
 - ③ (민원행정과) 관할 가정법원에 '요보호아동 성본창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④ 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 허가 심판문' 공문 회신
 - ⑤ (아동보호과) 일시보호시설 등에 성본창설 심판문 공문 발송
※ 아동의 성본 창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후견인 지정·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이전 또는 동 절차와 병행해 추진
※ 아동의 성본 창설 이후 부 또는 모를 찾은 경우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1개월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등록부 정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성본창설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 제52조(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국가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소지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 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서를 신고서로 본다.
 - ③ 시·읍·면의 장은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라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민법
 -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④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제3조(후견인)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① 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에 따른 후견인 지정 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의뢰받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7조(후견인의 지정취소 등)

제3조에 따라 후견인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법원에 그 허가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민법」 제928조, 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 (후견개시)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 행사 불가능 시 미성년후견인 선임
- (청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친권자 및 후견인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 선임청구
- (임시 후견인) 후견인이 없는 아동의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음

※ 가정위탁 부모의 임시후견인 역할(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①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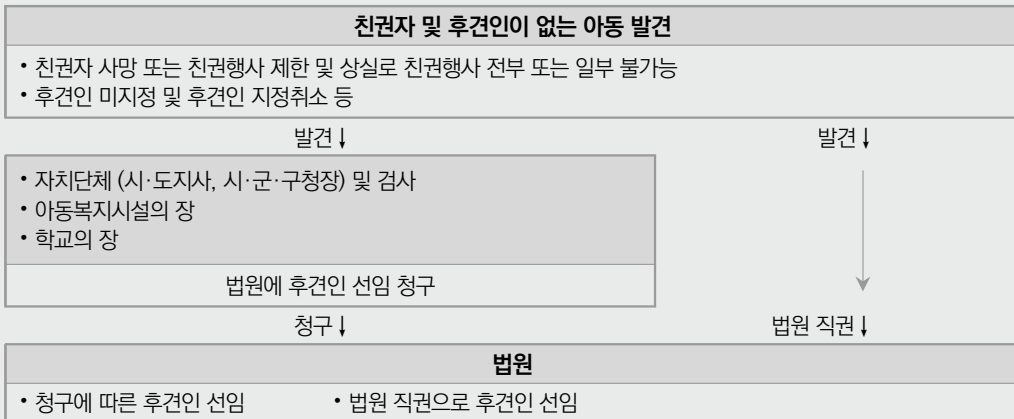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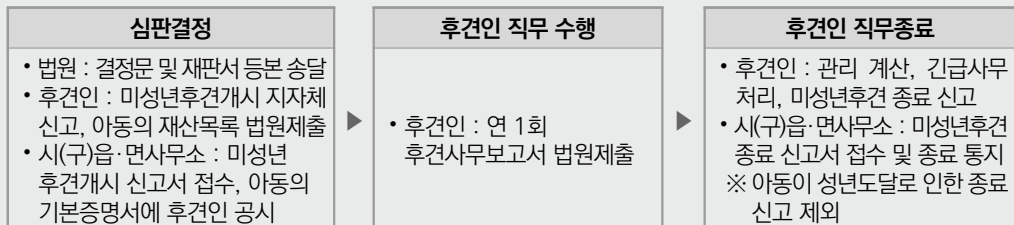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 이후 절차>



참고 9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절차 및 지정 취소

• 후견인 지정절차

미성년자	보호시설 설치·운영주체	후견인 지정절차	필요한 서류
고아인 미성년자	국가·지자체	따로 없음 법에 따라 시설장이 후견인이 됨	-
	국가·지자체 외의 자	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견인지정신청서 제출 ②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제출 ③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후견인지정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국가·지자체	①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 신청서 제출 ②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제출 ③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후견인지정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기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국가·지자체 외의 자	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후견인지정신청서 제출 ②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 신청서 제출 ③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문 제출 ④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후견인지정신청서 • 후견인지정서 • 후견인지정허가신청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기타 법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 부양의무자확인 공고문

• 후견인 지정취소

- 고아인 미성년자의 경우 : 법원의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으로 후견인이 되었으므로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 지정을 취소함
-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의 경우
 - 법원의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를 청구
 - 보호시설의 소재지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청구권자임
 - 후견인 지정을 허가한 가정법원에 후견인 지정허가의 취소를 청구
 - 허가가 취소되는 후견인을 절차에 참가시켜야함. 또한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하여는 그 후견인이 즉시항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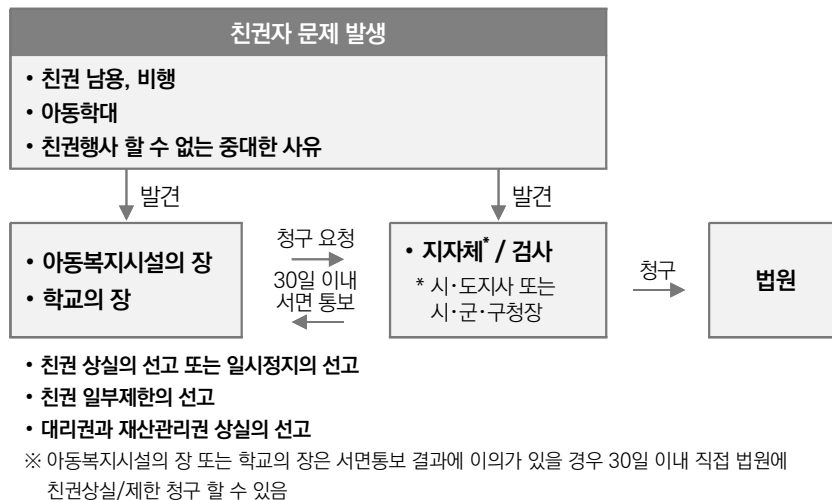
※ 출처 : 보호시설 미성년자 후견인 선임 매뉴얼, 서울시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17년

참고 9 친권제한·상실 신고의 청구 관련 법령

· 친권 제한 또는 상실 신고의 청구 및 청구 요청(「아동복지법」 제18조)

- (청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친권자에게 친권남용, 아동학대 및 연락두절 또는 소재불명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등의 신고를 청구
- (청구요청)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
- (서면통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요청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시행규칙 별지11호)으로 통보
- (이의제기) 서면통보 결과에 이의 있으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의 제한 또는 상실의 신고 청구 가능

친권행사의 제한 /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



· 지자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친권제한·상실 신고 청구 심의(「아동복지법」 제12조)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다음 사항의 심의를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운영
 - 아동의 보호조치, 보호종료(퇴소)조치, 친권행사 제한 및 친권상실 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라 보호자가 입양으로 의뢰한 아동

친생부모

↓ (지자체로 방문 또는 유선 문의하는 경우)

역할	주체	행정사항
상담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 예외적으로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	• 욕구조사표, 아동·친부모 상황 점검표 및 친생부모 상담 기록지,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아동 상담기록지, 아동 상담 확인서 작성
입양 승낙 및 동의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 입양 동의·승낙서(또는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작성 • 아동: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 의료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 의료 관련 서류 등 • 친생부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혼인 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일시보호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위탁,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의뢰하여야 하며, 관련한 인프라가 친생부모 주소지 시·군·구에 부족한 경우 시·도는 시·군·구가 아동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보호조치 결정	아동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카드,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하여 시·군·구 사례 회의를 통해 아동보호유형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논의 •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하여 보호조치 결정 시 고려 •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아동을 보호한 기관에 보호 조치 결정통지서 송부 •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발급하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
입양대상아동 보호	원가정(친족보호)	•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발급(요청 시)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 보고서 분기별 작성(결연 심의 전 현행화) * (위탁가정 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만) 아동의 보호를 의뢰한 기관에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발급(요청 시), 아동 관련 서류(아동의 의료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입양동의·승낙서 등 공유 추가
	위탁가정 또는 보호시설	
	예비양부모(임시양육)	

1. 입양의뢰 및 상담

(1) 친생부모

- **(내용)** 친생부모가 입양 외 다른 양육 대안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자발적인 입양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양육 시 지원 및 양육 관련 정보, 입양 절차·요건·효력 등에 대한 상담 제공

- **절차**

- ① 친생부모는 친생부모 주소지 시·군·구에서 원가정 양육 지원 및 입양 전반에 대한 상담([표1] 참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대면 필수)
 - 다만, 예외적으로 친생부모가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는 상담을 진행하고 친생부모 주소지에 협조 요청하여야 함(다만,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은 아동 주소지에서만 가능함)
- ② 시·군·구는 친생부모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표, 친부모 상황 점검표, 아동 상황 점검표,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친생부모 상담확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친생부모 상담 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건강,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기본증명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친생부모 상담확인서는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여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시 확인하여야 함
 -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은 시·도에 매주 제출하고, 시·도는 해당 현황을 취합한 후, 전월의 실적을 매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참조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하여야 함
 - * 친생부모를 상담한 시·군·구와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시·군·구가 다른 경우, 친생부모를 상담한 시·군·구에서 보호조치 결정 현황을 확인하여 시·도에 제출
- ③ 상담 후 친생부모가 원가정 양육을 결정하는 경우, 상담한 시·군·구는 친생부모에게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원가정 양육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야 함
 - 방문 시 모니터링 결과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취합하여 분기별로 국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하여야 함(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 방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기타운영비 항목) 사용 가능(1회 200천원 이내)
 - 원가정 양육 결정 이후 친생부모가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친생부모 상담을 진행한 지자체에서 변경된 주소지 시·군·구에 그간 상담내용, 방문 일정 등을 인계하여야 함. 이 때 변경 후 주소지 시·군·구는 인계받은 내용을 확인,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필수 상담내용

- ① 친생부모의 의뢰 사유를 고려하여 원가정 양육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 우선 안내
 - 친생부모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고, 원가정 보호 가능성 또는 추후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파악
 - * 급여·수당 등 경제적 지원, 임신·출산, 출생신고 등 양육 관련 정보·서비스,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가족상담전화 ☎1577-4206, 가족센터 ☎1577-9337 등), 한부모가족시설 연계 등
 -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또는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협력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예시 : 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지원 등) 지원
- ② 입양절차, 입양 동의의 요건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등 입양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참고] 친생부모 대상 입양절차 관련 안내

- ▷ **(입양동의)** 친생부모는 입양 동의 후에도 입양허가 전까지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의 입양 절차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통지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입양허가 이후에는 아동의 입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입양동의를 반복할 수 없음
- ▷ **(입양허가)** 가정법원에 신청 시 아동의 출생 증빙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 제출되어야 함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의 심리 및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심문 또는 조사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양허가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 ▷ **(친양자입양신고)** 입양허가 이후 양부모가 친양자입양신고(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를 하면,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아동의 기록이 삭제됨
 - 아동이 입양 전 사망하거나 입양허가 후 친양자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동의 기록이 유지되며, 입양 후 파양된 경우 다시 친생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됨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 관계등록예규) 제3조(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교부청구의 특례)에 따라 친양자가 성년자인 경우 발급 가능
- ▷ **(입양정보공개청구)** 입양아동은 자신의 입양 관련 정보에 대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단, 만 19세 미만의 경우 양부모의 동의 필요)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입양정보를 지체없이 공개하여야 함
 -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입양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표 3〉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 상담 내용

분류	내용
친생부모 양육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 청소년한부모 지원사업 : 초기위기지원, 양육지원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취업·창업정책, 생계정책, 상담·치료정책
입양절차에 관한 안내 및 상담	- 국내·국외입양 과정 및 단계별 친생부모의 준비사항 안내 - 입양 관련 질의응답 및 상담제공 - 입양/양육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 자녀를 입양 보낸 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한 설명 - 친생부모의 신청이 있을 때, 친생부모는 가정법원 입양 허가 결정전까지 입양 절차 진행 과정, 아동의 건강·복지 상태에 대해 아동의 후견인으로부터 통지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입양 동의의 중요성 강조 - 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강조 - 입양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설명 - 입양에 동의한 후에도 법원의 입양허가 전에는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
입양의 효과에 관한 사항	- 입양의 효과 - 입양아동은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짐 - 입양아동은 입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와 동일함 - 입양아동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됨(친생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소멸되고,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양됨) - 입양의 효력발생 -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효력이 발생함 - 양친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친양자입양신고하여야 함 - 입양의 취소 - 친생부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양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입양정보 공개청구 및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한 사항	- 입양정보공개의 원칙 - 입양인은 입양정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 입양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그 사실을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게 알리고, 친생부모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공개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 - 공개 청구대상 입양정보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 -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거주지역명(시·군·구 단위)·입양동의사유·입양일 -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출생일시 및 출생 장소 -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 친생부모가 자신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친생부모 이름·생년월일·주소 및 연락처는 공개할 수 없음 -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 공개 가능 ※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2) 법정대리인(후견인)

- **(내용)** 후견인 등 친생부모 외 법정대리인이 입양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 아동의 입양 승낙을 하기 이전에 입양 전반에 대한 상담([표1] 참고) 제공
 - * 「국내입양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입양 상담을 통해 입양에 대한 승낙(의사표시)을 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입양 승낙에 동의하거나, 대리하여 승낙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함
- **(절차)**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상담을 통해 욕구조사표, 아동 상황 점검표, 후견인 상담기록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후견인이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는 후견인 상담확인서는 친필로 작성·서명하도록 하여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시 확인하여야 함
 - ※ 단, 아동 주소지 시·군·구 지자체장이 후견인(예. 보호출산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로 증빙 가능하며, 상담기록지, 상담확인서는 생략
- **(필수 상담내용)** 입양절차, 입양동의*의 요건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등(아동의 상담내용과 동일)
 - * 입양 동의 후에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

(3) 양자가 될 아동

- **(내용)** 친생부모 등 입양을 의뢰받은 경우,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상담·안내하고, 입양에 대한 아동의 의사를 확인
- **(절차)**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법정대리인 포함)에게 입양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아동 상담기록지, 아동 상담확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대면 필수)
 - 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라도 아동의 인지능력을 고려하여 상담을 제공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을 상담기록지 등에 작성하여야 함
 - ※ 단, 아동이 언어발달 지연, 언어장애 등의 경우 의견 청취 가능한 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하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동 상담기록지 및 아동 상담확인서 생략 가능
- **(필수 상담내용)** 입양절차, 입양동의*의 요건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등
 - * 입양 동의 후에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언제든지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안내

[참고] 아동을 대상으로 입양과 입양 절차 설명 시 참고사항

▷ 입양에 대해 설명하기

- 입양은 000에게 엄마, 아빠, 동생 또는 누나(형)가 생겨서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해요. 지금 000와 함께 살고 있는 선생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과 다르지 않지만 지금 지내는 곳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아빠, 엄마, 형(누나), 동생 등과 살아갈 거예요.

▷ 입양절차 설명하기

- 000가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먼저 동의해야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라고 요청한 부모님들과도 많은 대화와 조사를 통해 000가 건강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는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000가 어떤 부모님과 가족이 되는 게 적절한지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한 후,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000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절차를 000가 원하지 않는다면 진행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부모님과 000이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 확정해주시기 전까지는 000의 선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000가 거절하고 싶다면 선생님에게 꼭 말해주세요. 여기까지 입양절차에 대해 설명했는데,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 입양 정보공개청구제도 설명하기

- 나중에 000가 어떻게 입양이 되었는지 궁금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정보공개청구 제도’라고 하는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000에 대해 알고 있는 입양 정보를 000를 낳아주신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000에게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만약 000를 낳아주신 부모가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빼고 000에 대한 정보만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만약 000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수 있어요.

2. 입양의 승낙 및 동의

● 입양 동의 및 승낙 주체

- 입양상담 후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아동(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포함) 및 친생부모가 입양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승낙하여야 함
 - 입양에 대한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 됨
 - 입양 동의 승낙 절차는 반드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진행되어야 함

- 입양을 동의·승낙하는 친생부모, 후견인(법정대리인), 아동 등에게 추후 입양절차 진행 과정에서 아동의 국내입양이 불가할 경우,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양이 곤란한 아동 또는 국제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
- 해당 결정이 있는 경우, 사무국(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로 통보하게 되며, 입양 곤란 아동 결정을 통보받은 시·군·구는 보호조치를 변경하여야 함

〈표 4〉 아동의 연령에 따른 입양 동의·승낙서 작성 서식

아동의 연령	구분	입양 동의서 작성 여부		
		아동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13세 미만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 (별지 제4호서식)	×
	친생부모가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친생부모가 없고, 다른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	○ (별지 제4호서식)
13세 이상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
	친생부모가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 (별지 제4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친생부모가 없고, 다른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 (별지 제4호서식)	×	○ (별지 제4호서식)

* 법정대리인 : 법률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를 말하며, 친권자(미성년자의 친생부 또는 친생모)와 후견인(법원 또는 법률에서 지정한 자 등)이 있음

(1) 친생부모

● 절차

- ① 원가정 양육 관련 상담 이후 친생부모가 입양을 원할 경우,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 동의·승낙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대면 필수)
 -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입양 동의·승낙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대신 친생부모 입양동의서(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함
 - 해당 동의서는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시, 입양정책위원회 결연 심의 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신청 시 제출됨을 안내하여야 함
- ② 입양동의서에는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동의서의 서명·인감과 동일하여야 함), 신분증 사본 등

- 친생부모 상담기록지는 최소한의 숙려기간, 진행횟수(최소 3회 이상 권고, 대면)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③ 친생부모에게 법원의 입양허가 전까지 아동 주소지 시·군·구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결연심의, 보정명령 등 대응), 입양절차의 진행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상태에 대하여 통지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보호조치 결정 후 친생부모가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제출받은 시·군·구는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함
- 단, 시설장 등이 후견인인 경우 통지신청서를 받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후견인을 통해 입양 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함

● 유의사항

①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생부, 친생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친생부(미혼부) 또는 친생모(미혼모)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라도,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부득이하게 친생부모 중 일방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한 과정과 근거를 아동 카드(상담자 의견)에 기록하고, 친생부(모) 입양동의·승낙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로 제출 (동의를 받지 못한 일방이 인지청구할 경우 입양동의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 대해 안내 필요)

- 단,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함(단, 증빙서류*나 「미첨부 사유서」 제출 필요)

* 친권 상실에 대한 판결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② 친생부모가 미성년자(입양동의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 부모 양쪽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원에서 지정한 친권자(단독 또는 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법정대리인 중 일방이 소재불명인 경우, 증빙서류*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 다른 일방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③ 유기아동·보호출산아동 등 친생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법정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입양 동의·승낙을 받아야 함(☞ 2025 입양실무매뉴얼 참조 3. 법정대리인 부분 참고)

● 입양숙려제

- 친생부모는 아동을 출산한 날로부터 최소한 1주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입양동의를 할 수 있으며, 숙려기간 동안에는 아동을 직접 양육·보호하는 것이 원칙임
 - * 긴급하게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일시보호가 가능하나, 아동 주소지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시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등을 안내하며 최소한 숙려기간 동안에는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것을 권고하여야 함
- 이는 친생부모가 출산 후 아동과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아동과 부모 자신의 미래와 입양 결정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친생부모가 숙려기간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지자체에서는 해당 의사를 존중하여야 함

숙려기간의 계산 방법

-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일로 기간을 만료함
- (예시) 2024.6.11.(화)에 출산한 경우 최소 2024.6.18.(화)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2024.6.30.(일)에 출산한 경우 최소 2024.7.7.(일)까지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 * 출산 후 입원(자연분만, 제왕절개 등)으로 인해 아동이 신생아실에서 머무르는 경우 해당 기간은 숙려 기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며, 출산 후 아동보호를 신청한 경우 7일 이상 숙려기간을 갖도록 해야 함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입양상담 여부: 미혼·이혼 한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 요원에게 입양상담을 진행한 이력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원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1주일)

〈표 5〉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①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 - 인력*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 (1주)	•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10만원)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	•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② 미혼모자 가족 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③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 산후지원인력 : 가정방문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 산후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자

(2) 법정대리인

● 내용

-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을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하거나(아동이 13세 미만인 경우) 아동의 입양 승낙에 동의하여야 함(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

● 절차

- ①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의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후견인에게 입양 동의·승낙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
 - 유기·보호출산 아동 등 친생부모가 없는 경우, 후견인(법정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입양 동의·승낙을 받아야 함
 - 후견인이 시·군·구청장인 경우 입양동의·승낙서에 동의자는 지자체장으로 명시하고 직인 필수

입양 동의 · 승낙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양자가 될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가능	필수작성
	주소	연락처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무실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지자체 주소			후견인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승낙자) 지자체장 직인 (서명 또는 인)

동의자(승낙자) (서명 또는 인)

② 입양 동의·승낙서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후견인확인서

** 친생부모가 친권상실 신고를 받은 경우,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주민등록말소자 초본, 경찰관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용증명서 등으로 확인 필요) 등

- 다만, 입양 동의·승낙 당시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 상담기록지 및 상담확인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입양동의·승낙서의 일부 항목(동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은 기재하지 않고 제출함

(3) 양자가 될 아동

● 내용

- 양자가 될 아동이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로 입양의 승낙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연령(13세 이상 또는 미만)에 따라 입양 승낙에 대해 동의 하거나, 대리하여 승낙하여 아동의 의사표시를 지원하여야 함
 - 다만,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동의 입양 승낙이 없더라도 입양허가를 할 수 있음
 - * 법정대리인이 친생부모인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 이행과 면접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는 등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 해당 하여야 함

● 절차

- ①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지원을 통해 입양 동의·승낙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도록 해야 함
 -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도록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하도록 함
 - * 아동이 자유로운 의사로 입양의 승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지연, 언어장애 등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함
- ② 입양 동의·승낙서에는 친생부모, 후견인 등을 통해 출생신고 증빙서류* 등을 첨부 하여야 함
 -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친생부모 정보 기록), 아동수첩(있는 경우), 아동의 의료기록 등

입양동의와 함께 일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 입양동의서를 작성한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어 긴급하게 보호를 요청한 경우,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아동을 일시보호 하여야 함
 - 가정위탁, 일시보호시설 또는 아동양육시설 등에 의뢰하여야 하며, 관련한 인프라가 친생부모 주소지 시·군·구에 부족한 경우 시·도는 시·군·구가 아동의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 다만,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등 즉시 분리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친생부모 상담 시·군·구에서 일시보호하고, 보호조치 결정 시 친생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협조 요청 하여야 함(다만,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은 아동 주소지에서만 가능함)

(4) 입양동의 철회

- 「국내입양특별법」 제15조제4항, 제16조제3항에 따라 친생부모, 아동(법정대리인 포함)은 입양 동의·승낙 이후에도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이 있기 전에는 입양동의 철회가 가능함
- 입양동의를 철회하기 원하는 친생부모, 아동(법정대리인 포함)은 입양 동의·승낙을 진행한 시·군·구 또는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문의하여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해야 함. 철회서를 입양 동의·승낙을 진행한 시·군·구에 제출한 경우, 해당 시·군·구는 현재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를 전달하여야 함
 - * 친생부모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 제14조 1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현재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 복귀 점검표’를 작성(원가정에서 보호 중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원가정 복귀 조치 이후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 심의 가능
 - * 아동이 원가정 외 위탁가정, 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경우에도 ‘가정 복귀 의견서’ 생략 가능
- 입양 동의 철회 후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경우, 친생부모에게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원가정 양육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친생부모를 상담한 시·군·구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방문결과를 시·도에 제출(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작성 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서명 날인
 - 원가정 결정 이후, 친생부모가 거주지(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①최초 상담한 담당자가 친생부모와 방문 일정 등 상의 후 거주지 담당자에게 인계(그간 상담 내용 및 방문일정 등), ②거주지 담당자는 내용 확인,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 ☞ 방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기타운영비 항목) 사용 가능(1회 200천원 이내)

- 가정법원 허가 신청 이후 임시양육결정 중에 친생부모 또는 아동(법정대리인)이 입양 승낙·동의에 대한 철회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임시양육결정 취소도 함께 신청하여야 함

3. 입양대상아동 결정

(1) 양자가 될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제6호에 따른 보호조치로서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

시·군·구 입양대상아동 결정 시 고려사항

1. 입양 동의 여부 확인

- 만 13세 이상 아동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친모, 기본증명서(상세) 후견인이 동의 여부
- 미성년 친생부모의 경우, 친생부모 법정대리인의 동의 추가 확인
- 친생부모 일방의 동의 사유 및 관련 증빙 확인(미첨부사유서, 소재불명 등 확인)

2. 아동 및 친생부모 입양 전 상담

- 친생부모의 원가정 양육가능성 확인 여부, 학대 여부 등 검토 필요
- 만 13세 이상 아동, 친생부모, 후견인에게 아동 직접 양육 지원사항, 입양 법적효력, 입양정보 공개청구 등에 대한 상담 진행 여부
- 의사소통 가능한 연령 아동도 의무는 아니나 본인 입양 사실 인지에 대한 상담 진행 여부

3. (유기아동) 부양의무자 공고 기간 준수 여부 확인(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연월일, 공고결과 등), (보호출산아동) 친생모 인적정보 등 미표기 여부 확인

4. 서류 내용 관련 아동입양서류 서명란 누락 및 일치 여부, 서류 일자 정확성 여부(입양숙려기간 준수, 절차(친생부모 상담, 입양동의는 사결위 전 진행 등))

5. 아동 중심의 입양을 위한 고려 사항(참고: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입양	입양 외 보호 등
- 아동의 가장 중요한 욕구가 가족에게 소속되는 것이며, 평생의 구속으로서 가족을 이루는 것일 경우	- 아동이 친생가족과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 - 아동에게 안정적인 대안 양육 욕구가 있으나 정체성 변경을 포함한 평생의 구속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입양	입양 외 보호 등
- 아동의 친생부모(후견인)가 아동의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모의 책임을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할 의지가 없는 경우	- 아동의 친생부모가 부모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아동이 친생가족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나,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될 필요가 있는 경우
- 아동이 과거를 건강히 이해하고 지지받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할 기회가 필요할 경우	- 아동의 발달과정의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 아동이 입양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경우	- 아동의 친생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어느정도 수행할 수 있거나 수행할 의지가 있는 경우 - 아동이 친생부모, 시설 또는 위탁가정의 양육자와 강한 애착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아동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는 경우

(2)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준비

- ①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친생부모 상담 내용 및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조치인지를 검토하여야 함
 - 아동카드, 개별보호·관리계획(초안) 작성하여, 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보호유형 및 개별보호·관리계획 논의함
 - 아동카드,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 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는 관내 보건소, 의료기관, 일시보호시설 등과 연계 시행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호조치 전(가정위탁, 시설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 시·군·구 사례회의를 시행하는 경우는 시, 시·도(필요시)담당자,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 종사자,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향후 입양 진행절차 등을 논의함
- ②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조치인 경우, 시·도 및 시·군·구는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의 아동을 보호할 위탁가정 또는 시설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 (4. 1) 보호인프라 관리·운영 참고)
 - 최대한 원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함
 - 원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입양 전까지의 보호조치(가정위탁, 양육시설 등)를 검토하되, 가정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시·군·구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시·도에 아동을 보호할 위탁가정 또는 시설 배치를 공문으로 요청 → 시·도는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결과를 1주일 이내 시·군·구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설에 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전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함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

- ①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의 입양 적합성, 보호방안 등 사례회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입양대상아동 결정 시 고려사항 확인)
 - *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보호조치 의뢰 후 가급적 2주 이내 개최하도록 노력함
 - * 아동과 친생부모(후견인)의 상담기록지 등을 통해 아동의 입양에 대해 충분히 청취하였는지 고려 필요
- 입양대상으로 결정될 아동이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 전까지 최대한 원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원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양육·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호조치(입양)와 입양 전 보호방안(가정위탁, 양육시설, 원가정)을 동시에 고려하여 최종 결정
- ②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입양으로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아동을 보호할 기관, 아동에게 보호조치 결정통지서를 7일 이내 송부하여야 함
 - 또한,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하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시스템을 통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하여야 함
 - *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내용은 타 보호조치 아동과는 구분하여 개인별로 작성하되, **회의록이나 회의 내용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사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추가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승낙서, 상담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입양대상아동결정확인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원본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하여야 함
 - 아동 본인(법정대리인 포함), 친생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가정법원 또는 관계기관 등이 해당 결정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함
 - * 별도 신청인 없이 입양 절차 진행을 위해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할 시,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후견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지자체장이 후견인인 경우 아래 예시와 같이 기재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일
필수작성				
신청인	성명	지자체장 직함으로 기재 가능 (ex. 종로구청장)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가능		
	주소	지자체 주소		
	연락처	아동보호전담요원 사무실 연락처		
	후견인 [] 필수작성			
		■ 아동과의 관계 ▶ 본인 [] ▶ 친생부모 []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		
입양 대상 아동	성명	보호개시일(입양대상아동 결정일)		
	주민등록번호	보호조치를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소	보호출산 아동의 경우 미기재, 주민등록번호 발급 이후 2차 제출 필요		

4. 입양대상아동 보호 및 양육상황 점검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15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1) 보호 인프라 관리·운영

- ① 시·도는 입양과 관련된 담당 업무 현황과 절차별 시·군·구의 역할을 총괄하여 관리해야 함
- ② 시·도는 관할 시·군·구 내 입양대상아동 보호가 가능한 위탁가정, 시설 등 보호 인프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 가능 현황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관할 시·군·구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시설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 발생시 원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우,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아동이 입양 완료시까지 보호·양육 가능한 위탁가정 및 시설로 아동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입양대상아동 보호

-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을 원가정 외에 가정위탁, 시설 등에서 보호해야 하는 경우, 보호되는 때부터 해당 아동의 주소지는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 소재지로 옮겨지며, 이때부터는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가 아동을 보호하게 됨
 - *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아동 보호 인프라 현황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시·군·구와 입양 완료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시·군·구가 달라질 수 있음
-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위탁가정·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시설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 * 아동이 시설 등에 보호된 시점부터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이 후견인이 되도록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3)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아동 보호 시 후견인 참고)
-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신고 후 변경된 시·군·구에 사례이관(공문송부) 하고, 사례이관 받은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시설 등에 각종 급여·수당 신청을 안내하여야 함
- 전입신고시 아동의 후견인이 아동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경우, '후견인 확인 사항 통보' 공문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발송하거나, 미성년후견인 개시(경질) 신고 완료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함

(3)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 아동 보호 시 후견인

- 후견인 선임의 원칙
 - 입양대상아동이 입양 전까지 원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워 위탁가정, 시설 등에서 보호되는 경우, 기존에 관계 법령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되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
 - * 다만, 해당 아동에 대하여 법원이 이미 후견인을 두었거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시·군·구청장의 후견 업무의 수행
 - 위 원칙에 따른 후견인(아동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대상아동의 입양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민법」에 규정된 미성년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의 후견인 역할은 소속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음
 - 단, 아동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경질 신고가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후견인이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아동의 후견인은 친생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 상황과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하여 통지하고 안내하여야 함
 - 친생부모가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 신청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제출받은 시·군·구는 입양절차 진행 등 통지서(「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함
 - * 보호조치 결정 이후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친생부모는 입양 상담을 진행한 시·군·구를 통해 현재 아동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친생부모 상담 시·군·구는 친생부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후견인이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아닌 경우, 통지신청서를 받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후견인을 통해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통지서를 작성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의 후견인 개시 및 변경(경질) 신고 절차

- 시·군·구청장은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신고를 위해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에는 입양대상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입양 대상아동 인도 확인서’의 사본과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내부 공문)의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후)을 첨부하여야 함
- 후견인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청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보호출산 아동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되는 경우, 후견인이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되므로 ‘미성년후견 경질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이 경우 후견인 개시 신고와 동일하게 입양대상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입양 대상아동 인도 확인서’와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의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후)을 첨부하여 함

참고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신고 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 작성 방법

- 미성년자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정보를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 후견인 : 성명 대신 기관명(00시장, 00군수, 00구청장)을 작성하고, 기관의 주소를 작성
 - * 주민등록번호 등 기관과 무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 후견감독인 : 미기재
- 신고인 : 성명 대신 직명(00시장, 00군수, 00구청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을 기재하고(서명 또는 날인) 실시(‘자격’란은 ☐ 미성년후견인에 ‘○’ 표시)
- 개시일자 및 원인 : 입양대상아동을 인도 받은 일자를 기재하고, ‘입양대상아동의 인도’라는 문구(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작성

- 취입일자 및 원인 : 입양대상아동 인도일자를 작성하고, 「3법정」을 선택
 - 심판일자 : 미기재
 - 기타사항 : 「국내입양특별법」(약칭)에 따른 입양대상아동의 후견인의 개시 신고라는 문구를 기재
 - 제출인 : 미성년후견인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를 미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 (예시)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경질) 신고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에 후견인 개시(경질) 신고 사실을 기록하여야 함
 - 가족관계 등록실무 자료집(기재편) 제14의2절 미성년 후견 5-1란, 주3-1에 따라 직명만 기록하고,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 아동 주소지 변경 등으로 후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 변경과 동일하게, 「미성년후견 경질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와 「입양대상아동 위탁보호 및 후견 개시 보고」의 사본, 아동의 주민등록초본(전입신고 후)을 첨부)

※ [참고] 입양대상아동 후견인 변경시 신고 절차

- (법원의 임시양육결정시)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므로, 예비양부모가 직접 「미성년 후견 개시(경질) 신고서」를 작성하여 아동 또는 예비양부모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법원 결정문 첨부)
-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철회시) 친생부모가 입양동의를 철회한 때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친생부모가 아동 주소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후견인 종료 신고(입양동의철회서 첨부)

(4) 양육상황 점검

- (원칙) 모든 입양대상아동에 대해 그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허가 전까지 해당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점검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 보호 시 양육상황점검 주체는 아동 주소지 시·군·구

- 아동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된 이후 입양정책위원회의 결연,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등으로 입양이 완료되기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시·군·구(후견인 역할 포함)는 달라질 수 있음
(예시)
 - 친생부모 상담 의뢰를 통해 아동 주소지인 A 시·군·구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하면서, 위탁가정이 있는 B 시·군·구에서 아동을 보호하기로 결정 : B 시·군·구에서 보호하는 동안 양육상황점검 실시(후견인도 B 시·군·구청장)
 -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양부모 결연 후 법원에서 임시양육결정을 한 경우, 아동은 예비양부모 가정 주소지인 C 시·군·구로 전입 : C 시·군·구에서 양육상황점검 실시, 필요시 B 시·군·구에 협조 요청(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 발달 및 특별육구, 적응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양육시설, 위탁가정*, 원가정 등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양육상황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가정(아동 양육상황 월별 기록지), 시설(시설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등으로부터 현황을 제출받아 참고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대상아동이 입양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양육상황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을 통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함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은 결연심의를 위해 해당 양육상황점검보고서 항목별 작성 내용에 대해 추가 확인과 보완, 현행화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결연 심의 진행 회의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시·군·구는 즉시 위탁가정, 시설 등에 해당 항목에 대해 확인 후 보완(현행화)한 결과를 7일 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
- 임시양육 기간 동안에는 아동(양부모) 주소지 시·군·구는 위탁기관이 작성한 아동적응 보고서를 참고하여 가정방문(대면)을 통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여야 함
※ 5. 입양절차 진행 관련 단계별 협조 요청사항 (2) 임시양육결정 및 법원허가 참고

● (절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위탁센터, 시설, 위탁기관 등의 사례관리를 모니터링하여 아동의 상황을 파악(아동 주소지 시·군·구의 직접 방문이 원칙이며, 필요시 유선 상담)하여야 함
 - 방문상담 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인 경우, 시설담당자 등 보호자를 제외하고 독립된 장소, 또는 외부 장소(카페 등)에서 아동과의 단독·대면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의 상황(만족여부, 구성원 관계 등) 및 실제 욕구를 확인
※ 외부 상담 시, 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활용
- 양자가 될 아동의 적응상태 및 발달상황, 양육환경, 양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양육상황점검보고서의 항목별 상세 정보를 작성하여야 함

●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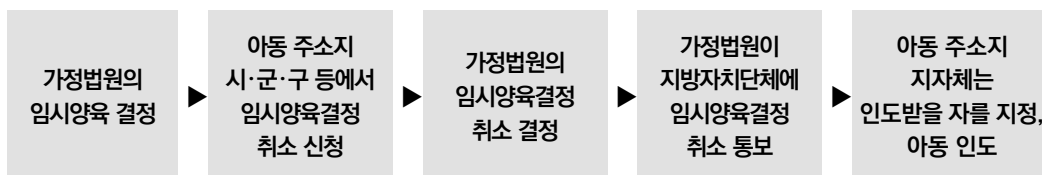
- 시·군·구는 양육상황점검 결과,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국내입양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변경해야 함
- 시·군·구는 입양대상아동의 인수 시부터 입양 완료 시까지 아동 보호 방법·장소, 아동 거주지 변경, 양육자 변경, 아동 신상의 변화(질병, 사망 등) 등 아동의 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아동 주소지 관할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함

- ① 시·군·구는 사망, 학대(의심 포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해 및 중질환 등 중대한 사항에 따른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그 즉시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에 따라 아동 주소지 관할 시·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 보건복지부에 보고
- ② 그 외 아동보호 방법·장소·아동 거주지 변경, 양육자 변경 등 아동의 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존 보고양식을 이용하여 아동 주소지 관할 시·도에 보고

(5)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법원의 임시양육결정 이후에 아동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 친생부모(법정대리인)가 입양 동의 철회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에는 법원에 임시양육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임시양육결정 취소 신청서 참고
- 법원으로 임시양육결정 취소 신청서 제출 후 기각이 된 경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음
- 가정법원에서 임시양육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현재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며,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즉시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 인도하고, 후견인 변경을 신고하여야 함

[그림 1] 임시양육 결정 이후 임시양육결정 취소 절차



5. 입양절차 진행 관련 단계별 협조 요청사항

(1) 결연 등(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1)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는 입양대상아동 결정과 관련하여 시·군·구에서 송부한 친생부모 및 아동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결연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사무국에서 결연 심의자료 마련시 친생부모 및 아동 관련 정보의 확인, 서류 보완, 추가 증빙서류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2) 분과위원회 심의·의결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전문가, 친생부모 및 아동 또는 상담·조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및 시설, 친생부모 및 아동 등은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에 아동의 입양과 관련한 자료·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음

3)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에서는 양부모가 될 자격 여부, 아동과 자격을 갖춘 양부모의 결연, 입양이 곤란한 아동, 국제입양대상아동 등을 결정함

① 입양이 곤란한 아동, 국제입양대상으로 결정한 아동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입양이 곤란한 아동 또는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경우, 사무국은 입양 심의 진행 경과, 결정 사유 등을 작성하여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입양이 곤란한 아동)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의 입양 진행 경과,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아동의 특성과 욕구 등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변경 등을 심의·결정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에게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확인하여 보호조치 변경 또는 유지(입양)를 검토하여야 함.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유지(입양)를 결정한 경우,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단, 입양 의뢰 시 제출 필요한 서류 현행화 필요)

- (국제입양대상아동)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의 입양 진행 경과, 결정 사유를 확인하고, 친생부모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시설에 국제입양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하여야 함(국제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을 지속 보호하여야 하며, 보호조치 변경 등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음).

※ 국제입양절차 진행 관련 후견인 준비사항은 사무국이 개별 사례에 따라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안내 예정

② 아동-예비양부모 결연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아동과 예비양부모가 결연된 경우, 사무국에서는 입양 심의내용, 예비양부모의 기본정보(인적사항 등) 등을 포함하여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그 결과를 통보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는 아동의 법정대리인(친생부모 또는 후견인 등)에게 결연 결과를 공유·논의하여 아동의 입장에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결연 결과 안내 및 수용 여부 확인시 결연 수용 의사 철회는 입양 허가 신청 전까지 가능함을 함께 안내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1개월 이내 아동(법정대리인 포함)의 결연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결연 수용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송부하여야 함
 - 예비양부모의 입양 허가 신청 전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수용 철회 의사가 확인될 경우,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사무국(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소통 후 결연 수용 의사 철회서를 즉시 송부하여야 함

4) 아동-예비양부모 결연 확정

- 사무국은 결연 수용 여부가 최종 확정되면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성명, 생년월일 등이 기재된 결연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결연확인서 원본은 법원 제출 시 예비양부모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아동-예비양부모 만남 지원

- 사무국에서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결연이 확정된 이후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만남을 위해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결연 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하고 만남 등 절차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입시양육을 진행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이후 예비양부모와 아동 만남 시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 협조 요청할 수 있음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이 예비양부모와 만남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일정 조정 등 적극 협조하고, 만남 후 관련 정보(일시·장소, 참석자, 담당자 의견 등)를 관리하여야 함(시스템 입력)

(2) 임시양육결정 및 법원허가

1) 입양허가 신청 및 심의

-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입양허가 전 아동 보호를 원하는 경우 임시양육결정을 같이 신청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 관련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친생부모 및 아동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하여야 함(예: 사실조회 요청시 의견서 제출 등 기한 필수 엄수)

2) 아동인도(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시)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아동을 (예비)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소유물품 리스트) 및 소유물품을 같이 인도하고, 인도확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예비)양부모에게 전입신고, 급여신청 등 아동 양육 관련 필요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 ※ 임시양육결정시 예비양부모는 후견인 변경 신고 후 아동을 본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아동의 주소지는 입양가정의 시·군·구로 변경됨
- 임시양육결정시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되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됨.
 - 아동(양부모) 주소지 시·군·구는 임시양육 기간 동안 위탁기관이 작성한 아동적응보고서를 참고하여 가정방문(대면)을 통한 모니터링을 분기별로 진행하고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 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보고 필요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예비양부모가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유기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는 즉시 보건복지부장관 및 가정법원에 알리고,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 국제입양에서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된 이후,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국외 양부모에게 아동과 아동에 관한 기록(소유물품 리스트) 및 소유물품을 같이 인도하고, 인도확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 사무국이 아동 주소지 시·군·구 및 국외 양부모와 소통하여 아동 인도 일정을 조율하고, 아동 인도 시 동행함

[참고] 입양아동 인도 시 고려할 사항

- ▷ 아동의 인도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의 심리적·정서적·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할 때 인도하여야 함
- ▷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단,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동의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특히, 아동을 원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친생부모와 (예비)양부모의 의사를 미리 확인하여 가급적 직접 만나지 않고 담당 직원을 통해 인도하도록 하여야 함. 친생부모와 (예비)양부모 간에 원하지 않는 만남,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아동이 새로운 가정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예비)양부모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하여야 함
 - 입양대상아동 결정 후부터 아동을 실제로 보호했던 위탁가정·시설을 통해 아동의 음식, 잠자리 습관, 대소변상태, 신체의 약한 부위, 병력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최대한 자세하게 제공하여야 함
 - 친생부모, 위탁부모 등 애착을 형성하였던 양육자와 분리를 경험한 아동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수 있음
 - (예비)양부모가정으로 가는 첫날은 새로운 환경임을 감안하여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바람직하며, 아동이 가정에 적응할 때까지 양육을 도와줄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친인척, 친구 등의 축하 방문은 자제하도록 함

3) 임시양육결정 취소

- 아동(입양가정) 주소지 시·도 및 시·군·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임시양육결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양자가 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 또는 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 임시양육결정 취소 신청사유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입양허가의 청구인, 시·도지사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임시양육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임시양육 취소 결정의 통지를 받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지체없이 해당 아동을 인도받을 자를 지정하여 예비양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예비양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법원의 결정 사유(예비양부모의 적격성, 친생부모·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승낙 철회 등)를 확인하고, 사무국과 협의하여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임시양육결정 취소시 아동의 후견인 및 법정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 ※ 임시양육결정시에는 예비양부모가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됨
- 예비양부모가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는 등 아동을 양육하기 적절하지 않거나, 양육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주소지 시·군·구청장이 아동의 후견인이 됨
- 친생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입양에 대한 동의·승낙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할 당시의 법정대리인이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됨

4) 입양허가 기각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기각 결정의 통지를 받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친생부모 및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시설에 안내하여야 함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법원의 결정 사유(예비양부모의 적격성, 친생부모·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승낙 철회 등)를 확인하고, 사무국과 협의하여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5) 입양허가 완료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인용 결정 통지를 받은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예비양부모에게 친양자입양 및 전입신고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양부모는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을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함 ※ 친양자입양신고서

6) 보호조치 종결, 사례이관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신고 여부 확인하여 입양성립에 따른 보호조치를 종결함(종결일자: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일자(친양자 입양신고))
- 사례결정위원회에 사후보고(법원 결정사항 단순 보고) 후, 아동 주소지 시·군·구(입양 가정 주소지로 전입 완료)로 사례이관하고,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문 송부
- 새로운 아동(입양가정) 주소지 시·군·구는 이관받은 정보를 확인하고, 양부모에게 각종 급여·수당 신청을 안내하여야 함

(3) 입양 후 적응지원

1) 위탁기관의 아동적응보고서 모니터링

- 위탁기관은 입양허가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총 6회, 대면) 아동과 양부모의 상호적응상태를 관찰하여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아동(입양가정) 주소지 시·군·구는 위탁기관이 작성한 아동적응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양가정 적응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정방문, 유선·대면 상담을 진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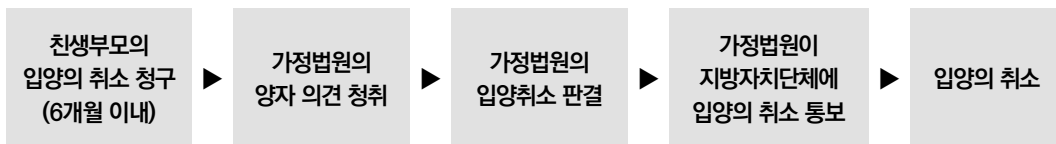
2) 서비스 연계·지원

- 아동(입양가정) 주소지 시·군·구는 위탁기관의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을 위한 서비스(양육정보 제공·상담, 심리지원, 자조모임 등)를 직접 지원하거나 연계하여야 함

6. 입양의 취소

-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국내입양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양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아동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행 등 협조 필요
-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아동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함
※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입양취소신고(친양자입양취소신고서)

[그림 2] 입양취소 절차



〈표 6〉 입양아동 관련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구분		진행순서
아동상황	담당	
입양의뢰 아동	시·군·구	① 친생부모 상담 실시(대면 필수) - 원가정 양육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우선 진행 - 입양절차, 입양 동의 요건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 요건 등 입양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제공 - 주소지 시·군·구에서 상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실거주지 또는 타 시·군·구에서 실시 가능 - 친생부모 등 입양을 의뢰받은 경우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상담·안내하고, 입양에 대한 아동의 의사 확인(입양절차, 입양동의의 요건 및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② 친생부모가 작성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입양 동의·승낙서 또는 친생부모 입양동의서를 제출받고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친부모 상황점검표 등을 작성 - 아동 상담확인서, 입양 동의·승낙서(법정대리인의 지원을 통해 작성)를 제출받고, 아동 상담기록지, 아동 상황점검표 등을 작성 ③ 입양동의서를 작성한 친생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수 없어 긴급하게 보호를 요청한 경우 가정위탁, 아동 일시보호시설 및 양육시설 등에 일시보호 의뢰 ※ 의뢰한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 ④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보호조치 결정 및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아동 주소지) - 입양 결정(입양대상아동) : 입양 허가 전까지 보호방안(가정위탁, 양육시설 등 결정
		⑤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 친생부모의 아동 보호가 가능한 경우 친생부모가 우선적으로 보호, 불가능한 경우 가정위탁 및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 - 양육시설 등에 보호 의뢰할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입양대상아동 결정확인서 발급, 아동 관련 서류(아동의 의료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입양동의·승낙서 등 공유 ⑥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실시 -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입양허가 전까지 양육시설, 위탁가정, 원가정 등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해당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양육상황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스템을 통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에 제출해야 함 ※ 임시양육결정 시, 아동(양부모) 주소지시군구는 위탁기관이 작성한 아동적응보고서를 참고로 양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양육상황점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⑦ 입양아동의 인도 및 양부모(아동) 주소지 시·군·구 보고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또는 임시양육결정에 따라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아동을 예비양부모에게 직접 인도 ⑧ 입양아동이 친양자 입양신고(가정법원 허가)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 종결함(사후·서면보고)
입양완료 아동	입양 부모	⑨ 친양자 입양 신고(가정법원의 허가서 첨부) - 예비 양부모는 입양재판의 확정일 1개월 이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고, 국가아동 권리보장원(사무국)에 공유
	시·군·구 (입양 부모 주소지)	⑩ 입양 성립 후 위탁기관이 제출한 '아동적응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양가정 적응 상태 모니터링(1년) - 입양아동에 대한 학대(의심)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지체없이 아동학대 신고

보호절차	입양의뢰 사례예시
임신 중 입양문의	아동보호전담요원(□□구청) • 임신 8개월 된 ♡♡(21세)(이하 친생모)은 아동을 키울 수 없다며 출산 후 입양을 의뢰할 수 있는지 전화 문의함 • 친생모는 현재 친구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으며,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될까봐 직장 문제라고 둘러대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함. 현재 직장은 퇴사한 상태로 수입은 없음. 친구 도움으로 병원 진료를 한 차례 받았지만, 정기진료는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현재 상황과 건강상태에 대해 묻고, 출산(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및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미혼모부 지원정책, 가족센터 등에 대해 안내 • 입양의뢰는 주소지 시·군·구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한다면 현재 거주 중인 시·군·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아동 출생 후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친생모가 직접 양육 후에 가능하다고 안내함 • 친생모는 임신기간 40주, 3.4kg 여아를 ◇◇병원에서 출산했으며, 시·군·구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신청하여 산후조리원 7일간 있었음
접수상담, 친생부모 상담 (입양동의)	아동보호전담요원(□□구청) • 출생 후 8일 시점에 친생모가 □□구청에 직접 방문함. 숙려기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으나 도저히 아동을 혼자서 책임질 형편이 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알릴 수 없다며 아동을 입양 보내길 원함 • 친생모는 주소지가 너무 멀고 고향에 알려지기 싫어 현재 거주 중인 □□구청을 통해 입양 동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양육 지원 및 입양 전반에 대한 상담을 함 •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욕구조사표, 친부모 상황 점검표, 아동 상황 점검표,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친생부모 상담확인서를 작성·관리함 • 친생모가 입양을 보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여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생모에게 입양동의·승낙서를 작성하게 하고, 친생모로부터 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 의료기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아동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음 •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친부의 정보를 파악하여 친생부의 입양동의·승낙서(또는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친부모 상황점검표 및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작성
아동의 인도 및 일시보호	아동보호전담요원(□□구청) • 친생모가 취직 준비로 더 이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여 보호조치 결정 이전까지 관내 위탁가정으로 일시보호 의뢰 및 생계·의료급여 등 지급이 되도록 조치 •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생모(아동)의 주소지인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입양 의뢰 아동 발생 사실을 통보하면서 입양동의·승낙서, 친부모 상황점검표,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및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동에 관한 서류를 인계함
개별보호· 관리계획 초안 작성	아동보호전담요원(△△시청) •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인계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입양) 초안을 작성

보호절차	입양의뢰 사례예시
시·군·구 사례회의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필요시 타 사례관리 관계자 참여) •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아동보호 업무담당 팀장, 아동보호 담당자와 사례회의 실시 및 입양으로 의견도출, 아동을 영아인 점을 고려하여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의견 수렴 • △△시청은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도에 아동을 보호할 위탁가정 배치를 공문으로 요청 → 도는 아동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 결과를 1주일 이내 △△시청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 보호를 위하여 사전 협조 요청을 하여야 함
	아동보호전담요원(△△시청) • 사례회의 결과를 사례결정위원회에 상정, 개별보호·관리계획 확정 및 입양대상아동 결정 (입양 전 보호방안 : 가정위탁) • 아동 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아동을 보호할 기관(○다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에게 보호조치 결정통지서를 7일 이내 송부 •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시스템을 통해 국가 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에 송부
양육상황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시청) •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 주소지 시·군·구)은 입양허가 전까지 해당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양육상황점검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시스템을 통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으로 제출
아동-예비 양부모 결연	보건복지부(위탁기관)/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 보건복지부(위탁기관)는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후 가정조사 및 개인 상담을 진행함. 양부모의 서류 준비 및 가정방문, 양부의 회사로 불시 방문 등 예비양부모 조사 실시 •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무국에서 결연 심의자료 마련 시 친생부모 및 아동 관련 정보의 확인, 서류 보완, 추가 증빙서류 제출, 양육상황점검보고서 보완 등 요청시 협조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아동과 예비양부모가 결연된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에서는 입양 심의내용, 예비양부모의 기본정보(인적사항 등) 등을 포함하여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그 결과를 통보 • △△시청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결연 결과를 송부 받고, 친생부모, 후견인(시장·군수·구청장 포함),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자 등에게 결연 결과를 공유·논의하여 아동의 입양에서 수용여부를 결정 - 결연 수용 여부를 결정한 후 결연 수용 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으로 송부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사무국)에서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결연이 확정된 이후 아동과 예비양부모의 만남을 위해 △△시청에 결연 결과를 송부 • △△시청은 아동이 예비양부모와 만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보호절차	입양의뢰 사례예시
입양허가 (가정법원)	가정법원/ 아동보호전담요원(△△시청) • ○○가정법원에 예비양부모의 입양 서류를 접수 후 가사조사명령이 내려짐 • 가사조사관은 예비 양부모가정 방문, 상담진행 후 재판부는 심문기일 지정 - △△시청은 가정법원 입양허가 및 임시양육결정 관련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친생부모 및 아동 관련 서류의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함(예: 사실조회 요청시 의견서 제출 등 기한 필수 엄수) • 예비 양부모 가정법원 출석(아동과 예비양부모 적응 상황 모니터링) •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 판결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따라, △△시청은 아동을 예비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함
종결	예비양부모/△△시청 사례결정위원회 사후보고 • 예비 양부모는 입양재판의 확정일 1개월 이내 친양자 입양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고 국가아동 권리보장원(사무국)에 공유 •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 신고함에 따라 △△시청은 사례결정위원회에 보호조치 종결을 사후보고 • △△시청은 ☆☆구청에 사후관리 철저히 할 것을 요청(양부모 주소지인 ☆☆구청에 사례이관) • △△시청은 ☆☆구청에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문 송부
사후관리	보건복지부(위탁기관) • 위탁기관(보건복지부)은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후 친양자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연 6회)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관하여 관찰 및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입양아동 주소지 ☆☆구청 아동보호전담요원 • 입양 성립 후 위탁기관이 제출한 '아동적응보고서'를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입양가정 적응 상태 모니터링(1년) - 입양 아동에 대한 학대(의심) 상황을 보고 받은 경우 지체없이 아동학대 신고 • ☆☆구청은 위탁기관의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양가정의 적응 지원을 위한 서비스(양육정보 제공·상담, 심리지원, 자조모임 등)를 직접 지원하거나 연계

마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 기관별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당해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 안내」 참고

〈아동 보호 절차도〉

절차(프로세스)	업무 내용(해야할 일)	업무 주체
① 보호출산 아동 발생 (신청인 출산) ↓ 숙려기간 진행(7일 이상) 도과 이후, 보호출산 최종 결정	■ 신청인의 출산 사실을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공유	지역상담기관→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② 아동의 지자체 인도 ↓	■ 신청인이 직접 아동을 지자체(아동보호팀)에 인도 ■ 아동을 인도해 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장에 요청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청장이 아동의 최초 미성년후견인으로 자동 지정	신청인→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신청인(→지역상담기관)→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③ 아동 일시(긴급)보호 ↓	■ 미리 확보해 둔 일시보호 인프라로 아동 보호 ■ 건강검진, 아동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사회보장급여 신청	일시보호 인프라 소재지 사군·구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의료급여 등 급여 담당자
① 보호출산 아동 출생통보 ↓	■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정보를 출산 후 14일 이내에 심사평가원으로 통보 ■ 심사평가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으로, 중앙상담지원기관은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역상담기관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으로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 통보	지역상담기관→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지역상담기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② 출생등록, 성본창설* ↓	■ 태어난 아동을 출생등록하고, 성과 본을 창설 * 성·본창설(가정법원 허가) 원료 시까지 약 1~3개월 소요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 (가족관계등록관서)
④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	■ 1개월 이내 개최, 최대 3개월 안에 개최하여 최종 보호 조치 결정 (가정형 보호 우선 검토) * 참석범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 담당자 외에도 지역상담 기관장, 일시보호 소재지 담당자도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함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군·구에서 개최
⑤ 최종 보호조치, (필요시) 사례이관 ↓	■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보호조치 ■ 필요시, 사례 이관* 및 후견인 변경 선임** * (예) 입양대상아동 결정 시 또는 최종 보호조치 결과 아동의 보호 시·군·구가 달라지는 경우 ** 「사실미성년후견법」, 「국내입양특별법」 등에 따라 후견인 변경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최종보호 시·군·구
③ 성본창설 완료, 통보 ↓	■ 법원의 성·본창설 허가 결정 결과를 공유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사읍면(가족관계 등록관서)→지역상담기관→지역상담 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아동의 현재 보호자
④ 아동의 주민등록*	■ 성본창설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주민등록	아동의 현재 보호자

* 성본창설 완료 후, 아동의 주민등록 당시의 보호자(사실관리인, 위탁부모 등)이 주민등록 실시

※ ①~⑤ 절차 와 ①~④ 절차 는 병행하여 진행

● 보호출산 아동 발생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에게 즉시 알려야 하며, 지역상담기관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등)에게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함.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일시, 성별, 희망 보호조치 등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보호출산 아동의 출생 사실을 전달받은 시·군·구 아동보호담당자는 숙려기간 종료 후 아동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 출생 사실을 전달받은 즉시 일시보호 시설 등 아동 보호 인프라를 확보·준비*하여야 함.

* 보호출산 아동의 특성에 의해 아동복지법 외 타 법 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해, 해당 부서와 협조하여 아동의 보호체계 준비 필요

● 숙려기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로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면서 보호출산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함

* 출산일 불산입, 신생아실 입원 등 생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은 기간은 숙려기간에서 제외

- 위기임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숙려기간 조기 종료 가능, 숙려기간 조기 종료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등)에게 아동의 인도 및 보호 요청

● 아동 인도 및 후견인 선임

- 보호출산 신청인은 숙려기간 이후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 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지역상담기관 담당자는 보호출산 신청인의 인도 의사를 알게 된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에게 인도 의사를 알려야 하며, 만약 시·군·구청장(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이 보호출산 신청인으로부터 직접 아동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함.

-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 공무원은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보호출산 신청인과 논의하여 아동 인도를 위한 일시와 장소를 정하고,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및 신청인과 함께 만나 아동을 인도받아야 함.

- 아동이 시·군·구청장에게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받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아동의 미성년 후견인이 됨.

※ 시·군·구청장 개인이 아닌 행정기관이 후견인이 되는 것이므로, 기관 내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후견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참고 ② 후견인이 수행하는 업무 예시

- 보호출산 아동의 입양대상아동 보호조치 결정을 위한 입양 동의
- 아동의 수술, 입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사항 및 의료기관 서류 발급
- 기본증명서 등 각종 서류 발급
- 여권 발급 신청
- 각종 사회보장급여(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신청 등

- 시·군·구 아동보호담당자는 일시보호시설 및 양육시설 등에 아동의 일시보호 의뢰, 이후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욕구조사 및 아동상황점검, 건강검진, 심리검사 실시,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급여 등) 신청
- 시·군·구청장의 미성년 후견인 개시신고
 -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신고를 위해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16호)를 작성하여 지역 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
- 이 경우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에는 보호출산 아동 인도 과정에서 작성된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의 사본과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와 관련하여 실시한 내부공문의 사본을 첨부

※ 관련 서식은 당해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사업 안내」 서식 참고

참고 ③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후견인 개시 신고 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 작성 방법

- 미성년자 :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정보를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작성
- 후견인 : 성명 대신 직명(OO시장, OO군수, OO구청장)을 기재하고, 기관의 주소를 작성
 - * 주민등록번호 등 기관과 무관한 내용은 작성하지 않음
- 후견감독인 : 미기재
- 신고인 : 성명 대신 직명(OO시장, OO군수, OO구청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실시(‘자격’란은 ① 미성년후견인에 ‘○’ 표시)
- 개시일자 및 원인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 받은 일자를 기재하고, ‘보호출산 아동의 인도’라는 문구(또는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문구)를 작성
- 취임일자 및 원인 :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 받은 일자를 기재하고, ‘③법정’에 ‘○’ 표시
- 심판일자 : 미기재
- 기타사항 : 「위기임신보호출산법」(약칭)에 따른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의 개시 신고’라는 문구를 기재
- 제출인 : 미성년후견인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를 미성년후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경우 그 제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 (예시)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 보호출산 아동 긴급 보호

- 보호출산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보호출산 아동이 신생아라는 점을 감안, 아동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 및 돌봄 인력 사전 확보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신생아 긴급 보호 인프라 부족 또는 과부하 발생 시 아동이 즉시 보호될 수 없는 위험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신생아 돌봄 인프라 파악하고 산하 시·군·구 간 협조체계 구축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즉시 미리 확보한 신생아 돌봄 인프라를 활용하여 아동을 긴급 보호하고, 긴급보호 중인 기관 또는 시설과 협력하여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참고 ● 보호출산 아동 긴급 보호비 지원

- (지원내용) 보호출산 신생아의 후견인이 된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가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보호출산 신생아(약 300명)를 보호하여 안전하게 돌볼 수 있도록 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지원(주별 25만원)
- (지원대상) 긴급보호 인프라*
 - * 일시보호시설, 영아양육시설, 전문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 등뿐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의해 아동복지법 외 타 법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도 포함
 - ※ 긴급 보호비는 아동이 최종 보호되기 전까지 돌봄을 위한 비용으로, 생계급여와 중복되지 않음
 - ※ 가정위탁으로 일시보호하는 경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신생아 긴급 보호비를 지원받으며, 일시보호 기간동안 전문아동보호비 중복 지급 불가
- (지원금액) 일시보호 주수×주 25만원을 계산하여 지급
- (지급주체) 지역상담기관 관할 시·군·구
- (지급기간) 일시보호 종료시까지(3개월이 상한이나, 일시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연장가능)
 - ※ 일시보호기간 연장 시에 진행되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긴급보호비 지원 연장여부도 함께 고려
- (지급방법) 매월 20일까지 일시보호시설 인프라 계좌로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성분창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생계·의료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아동 긴급 보호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소재지(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산후조리원 등) 관할 시·군·구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지급

- 이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여야 하며,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별도 발급
-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 등은 아동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발급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해당 전산관리번호 통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 보호조치 시 직접 발급한 전산관리번호와 통보받은 전산관리번호를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함께 관리

● 보호조치 결정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긴급 보호한 즉시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가급적 인도 후 2주 이내(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보호조치 결정
- 아동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아동 일시보호 중인 시·군·구(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경우)의 아동보호 담당자 및 지역상담기관장도 해당 사례결정위원회에 가급적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과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사례결정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위탁가정, 시설 등으로 아동 인도, 아동을 보호할 기관에 보호조치 결정통지서(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
- 타 시·군·구로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이관 진행, 사례를 이관받은 시·군·구는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아동 관련 정보(서류) 공유
- 이후 아동의 보호유형 및 관계 법령(국내입양특별법, 시설미성년후견법 등)에 따라 후견인 변경 가능, 후견인이 변경·선임되지 않은 경우 기존 지역상담기관 시·군·구청장의 미성년 후견인 직무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유지됨

● 성본창설 및 주민등록

※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관련 상세 절차는 당해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안내」 “Ⅵ.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 보호 > 2.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통보 > 4.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참조

- ① 성본창설 등의 완료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으로부터 출생기록 통보서를 송부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사실 통보
- ② 주민등록 : 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시설 관리자, 위탁부모 등 아동이 속한 세대(시설)의 세대주(관리자)는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신고(주민등록번호 부여) 진행

* 보호 결정 통지서(또는 입양대상아동 확인서), 성본창설 허가서 등의 구비서류 지참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신고

**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리자가 신고

- 전입신고 : 다만,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이후 아동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게 될 자(시설 관리자 등)는 아동에 대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 이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법정대리인(후견인)의 확인을 받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 후견인이 시·군·구청장인 경우, 후견인 확인 및 신분증명서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담당 부서에서 ‘보호출산 아동 전입신고 관련 후견인 확인 사항 통보’ 공문을 신겨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발송하는 것으로 같음(이때,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서’ 사본 및 ‘보호출산 아동 인도 확인 및 후견 개시 보고’ 사본 첨부)
- 만약, 성본창설 및 주민등록이 완료된 아동에 대해 아직 사례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긴급 보호 중인 경우,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해당 아동의 전산관리번호에 책정된 사회보장 급여 중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 새롭게 책정**

* 퇴소 처리(일시보호시설 등 시설보호인 경우) 또는 급여 중지 신청(가정위탁 등 시설보호가 아닌 경우)

** 입소 처리(일시보호시설 등 시설보호인 경우) 또는 신규 급여 신청(가정위탁 등 시설보호가 아닌 경우)

참고 ② (일시)보호조치 유형별 신고의무자

- (위탁가정) 위탁부모가 세대주(동거인)로서 주민등록(전입신고) 의무 수행
-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 시설 관리인 등이 주민등록(전입신고) 의무 수행

③ 주민등록번호 통보 : 아동이 주민등록 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주민등록신고에 따라 아동에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를 지체없이 아동을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 및 해당 보호아동의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에게 통보, 아동보호 담당자는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및 시·읍·면의 장에게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사실 통보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로부터 아동 주민등록번호 통보받은 해당 아동의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이 부여받은 전산관리번호 중지 처리 및 아동의 전산관리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연계 조치
- 전산관리번호로 수급 중이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번호로 수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 경우 아동을 보호하게 된 시·군·구청장은 아동 명의 통장개설 후 사회보장급여를 아동 명의 통장으로 이전
-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는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의 의료 급여 담당자 등 전산관리번호 발급 담당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발급 사실 통보

참고 ② 성본창설, 주민등록(전입신고) 주체별 역할

구분	업무 주체
①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 기록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가족관계등록관서)
② 성본창설 완료, 통보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읍·면(가족관계등록관서) → 지역상담기관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 →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
③ 주민등록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자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④ 주민등록 사실 통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현재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자 및 아동보호 관할 시·군·구 담당 →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 및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읍·면의 장 → 지역상담기관
⑤ 전입신고	아동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아동을 보호하게 될 자 → 신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⑥ 전입신고 사실 통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아동 보호하게 된 자 → 아동 관할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참고 ③ 보호조치에 따른 아동 인도 및 아동보호 사례 이관

-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아동 인도 후, 해당 기관·시설·가정이 소재한 시·군·구로 아동보호서비스 사례 이관
 - 만약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시점까지 아동에 대한 성본창설 및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례 이관 연기 및 아동 긴급 보호 연장 가능
 - 다른 시·군·구로 사례를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여전히 보호출산 아동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 다만, 최종 보호조치 결정 이후 보호유형에 따라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또는 「국내입양특별법」에 따라 후견인 적절하게 지정 및 변경 가능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 이관 시점에서 보호출산 아동의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급여 중지 처리
 - * 만약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서 발급한 사회보장 전산관리 번호(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별도의 전산관리번호)에 사회보장급여가 책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사회보장급여 중지 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 통보
 - ※ 추후 다른 시·군·구로 사례가 이관되기 전에 입양 허가 완료, 보호출산 철회 등 보호조치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를 종결하고, 아동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사례 이관

참고 ②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 관리

- 보호출산 아동의 태어난 직후의 접종 기록(B형간염 1차, BCG 등)은 일반적인 아동과 같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임시신생아번호로 접종기록 관리
 -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보호자 정보는 일반 아동과 달리 산모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구분코드 8번)와 지역상당기관의 연락처·주소 입력(관계값은 ‘관리번호’ 입력)
 - 출산 후 아동보호 신청의 경우, 지역상당기관은 즉시 관할 보건소로 예방접종 관리시스템 내 생모 신원정보로 등록된 보호자 정보에 대한 수정 요청(관할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으로 수정 요청)
-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접종하는 B형간염 2차 등을 접종하여야 하나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성분창설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접종기록 관리
 -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하여 임시신생아번호와 아동 전산관리번호**가 서로 연계되도록 처리
 - *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가정위탁센터에서 관할 보건소와 협의, 그 밖의 경우 아동을 인도받은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가 관할 보건소와 협의
 - **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발급한 전산관리번호
- 보건소 담당자는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번호를 아동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변경,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의 아동 보호자 정보를 아동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로 변경
 - * 시설장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 담당자 등
 - ** 임시신생아번호 발급 시 입력했던 기존 보호자 정보는 관할 보건소에서 삭제 처리
- 추후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 발급된 경우,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접종받은 이력이 주민등록번호로 이관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인적정보 정정
 - 성분창설 후 아동의 후견인은 아동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신고) 완료 이후 관할 보건소에 주민등록 사실 안내
 - * 아동의 전산관리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보건소에 제공
 - 해당 보건소 담당자는 아동의 전산관리번호 인적의 접종력이 주민등록번호로 이관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에 공문 송부
 - * 질병관리청은 보건소로부터 받은 공문을 근거로 예방접종관리시스템 내 인적정보 변경 조치 수행
 - ** 보건소에서 전산관리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직접 전환 가능하도록 조치 후 관련 내용 공문 안내 예정

참고 9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안내

· 임신·출산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 100만원) - 청소년 산모(19세 이하) 120만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산모건강관리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 수첩 제공 등	보건소/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에게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엽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 건강관리사 파견(바우처)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출산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자녀 1인당 70만원 (1~6급 여성장애인) 자녀 1인당 100만원	- 주민센터/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출산지원시설	이혼·사별 또는 미혼 임산부 그 출산 아동(3세 미만)에게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 '24. 1. 1. 이후 출생아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하고, 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양육·돌봄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중위소득 63% 이하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 * 고등학교 재학(고3 재학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 아동양육비(월 23만원)·추가 아동양육비·학용품비·시설입소자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아동양육비(월 37~40만원)·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 교육비·자립지원촉진수당 - 한부모가족 증명서(중위소득 72%)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런 위기사유(이혼, 실직, 질병 등)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 주민센터/시·군·구청 긴급지원담당부서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기초생활수급 가구 어린이(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환경보건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권 10만 원 지급(서비스내용-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진료 지원, 곰팡이 제거, 건강나누리 캠프 등 선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2284-1823, 1827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지급	- 주민센터/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주거급여 상담센터 ☎ 1600-0777 - 교육급여 상담센터 ☎ 02-6222-6060
온가족보듬사업	한부모·청소년부모·조손가족 등에게 상담, 사례관리,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 출산·양육지원 등 제공 및 서비스 연계	- 가족센터 고객센터 ☎ 1577-9337 - 가족상담전화 ☎1577-4206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	보건소/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 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 대상 의료비 등 지원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йма중앱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와 확진검사 검사비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양측성·일측성 난청이 있는 5세 미만 영유아 대상 보청기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 80% 이하 장애인 가구, 기준중위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바우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아동수당	•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최대 96개월 간 월 10만원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지원 -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 라형) 지원 中 택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3~5세 누리과정 지원)	•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3~5세 한부모가족* 가정 유아는 월 최대 200,000원 추가 학비 지원 (시·도교육청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한부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에게 보육료 지원(국민행복카드)	
가정양육수당 지원	• 24개월~취학 전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 현금 지급 -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 복지로 누리집 (bokjiro.go.kr)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 12세 이하(초등학교 1학년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대상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인지·정서 등 영역별 서비스 제공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아이돌봄서비스	12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아이돌보미 파견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상담센터 ☎ 1577-2514, 누리집(idolbom.go.kr)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과후 마을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보호,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역연계 등 프로그램 운영	- 지역아동센터 소재 시·군·구 - 정부24(www.gov.kr)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지원(월 14,000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가사·간병 방문지원	질병·장애 등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기준중위 소득 70% 이하 계층에게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 (바우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통합사례관리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동부모교육, 부모상담 및 양육지원정보 제공, 장난감·도서대여, 놀이실 운영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고객센터 ☎ 02-1661-5666 - 누리집(central.childcare.go.kr)
공동육아나눔터	자녀 돌봄을 위한 공간 및 육아정보 제공, 프로그램 운영, 돌봄품앗이 지원 등	- 가족센터 고객센터 ☎ 1577-9337 - 누리집(www.familynet.or.kr)
늘봄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	- 재학(입학예정) 초등학교, 교육청 - 교육부 콜센터 ☎ 02-6222-6060

• 시설·주거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 저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등	• 시·군·구청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지원	
공공주택 지원	• 주택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통합 공공임대,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등	• 시·군·구청 / 시·도 도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누리집(www.lh.or.kr)
한부모가족 주택자금 대여 우대	• 서비스별 자격요건을 갖춘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이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대출 시 우대금리 등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주택도시시기금 ☎ 1566-9009

• 교육·취업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학생 미혼모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	•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학생 미혼모 대상 위탁 교육 지원	• 해당기관, 시·도 교육청 대안 교육 담당자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단절된 구직희망 여성 등 대상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창업 등 지원	• 새로일하기센터 상담전화 ☎ 1544-1199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 (saeil.mogef.go.kr)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 대상 체험활동, 보충학습, 급식, 상담 등 운영	• 시·군·구청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 (www.youth.go.kr/yaca/index.do) •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온종일돌봄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31~4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자녀 교육비 지원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등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교육비 신청시스템 (oneclick.moe.go.kr)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9~18세) 대상 상담·치료, 보호, 교육, 자립지도 등 지원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누리집(www.nyhc.or.kr)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053-665-6914, 누리집(www.youthfly.or.kr)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 대학 재학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등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한국장학재단 ☎ 1599-2000, 홈페이지(www.kosaf.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69세 이하의 한부모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은 상한 300만 원(통상임금 100%), 4개월~ 6개월까지는 상한 200만 원(통상임금 100%), 7개월부터는 상한 160만 원(통상임금 80%) 지급	
· 금융·법률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양육비 상담, 합의, 소송 및 추심, 모니터링, 면접교섭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등	- 양육비이행관리원 (www.childsupport.or.kr) - 양육비 이행 상담 ☎ 1644-6621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무료 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등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근로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홀벌이 가구 등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국세청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앱 및 ARS ☎ 1544-9944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에 따라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지급	
미소금융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교육비대출 등 저금리로(연 4.5% 이내) 대출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www.kinfa.or.kr) - 한부모가정의료보험 ☎ 02-3471-5116 - 카카오톡 채널(서금원 한부모 가정의료보험 접수센터)
소액보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1기] 한부모가정의료보험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에게 무료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0. 7. 31. ~ 2022. 7. 30. [2기] 한부모가정의료보험 - 한부모가족의 14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에게 무료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2. 7. 31. ~ 2024. 7. 30. [3기] 한부모가정의료보험 -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 중,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에게 무료보험 가입 - 보험기간 : 2024. 7. 31. ~ 2027. 7. 30.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18세 이후 자립지원을 위해 0~17세 아동(보호대상아동, 수급가구, 한부모가족 등 차상위 계층)이 일정 금액 적립 시 정부가 1:2 매칭 지원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희망저축계좌(I)	•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매월 근로(사업) 소득을 저축하고 탈수급 시 1 : 3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희망저축계좌(II)	• 일반시장 및 자활시장에서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저축 시 1 : 1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청년내일저축계좌	• 취·창업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대상 근로소득장려금 1 : 1~1 : 3 매칭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기타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요금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용 쌀 할인 지원 (기준가격의 60~90% 할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지역난방·전기·가스요금 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산업통상자원부 ☎ 1577-0900 • (전기) 한국전력공사 ☎ 123 (가스) 해당 지역 가스 공급사 고객센터
	• 이동전화요금 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각 해당 이동통신사대리점 • 복지할인 전용 ARS ☎ 1523, 고객센터 ☎ 114
	• 과태료 50% 이내 감경	• 해당 과태료 부과 행정기관
	•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기초생활수급자 면제, 한부모가족 80%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 1577-0990
	• 수도요금 감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거주지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복지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문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수급자·차상위 등 • 단열, 창호 공사 및 보일러·에어컨 보급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 1670-7653
에너지바우처	•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등 기후민감계층 • 냉·난방비 지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고효율가전 구매지원	•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에너지효율1등급 가전제품 구매금액 15~30% 지원(가구당 30만 원 한)	• 한전 에너지마켓플레이스 (support.kepco.co.kr) 통해 온라인 신청 / 고객센터 ☎ 1551-1212
운전면허 교육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 운전면허시험 교육 총 12시간 지원	•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영 면허시험장
스포츠 강좌 이용권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5~18세 유·청소년 • 스포츠강좌(태권도, 수영, 축구 등) 수강료 지원 이용권 제공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9, 누리집(svoucher.kspo.or.kr)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1인당 연 14만원)	•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 1544-3412, 누리집(www.mnuri.kr), 모바일 앱([공식]문화누리카드)
4대궁·종묘· 조선왕릉 무료입장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제시 시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종묘·조선왕릉 무료 입장	• 국가유산청 공능서비스기획과 ☎ 02-6450-3800 • 방문기관 관리소 (4대궁 및 종묘, 조선왕릉)
한부모 (미혼부 포함) 자녀 출생신고 지원	• 출생신고 과정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가족상담전화 ☎ 1577-4206

※ 출처: 2025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여가부)

V

아동보호서비스 수행인력·기관별 역할분담방안

01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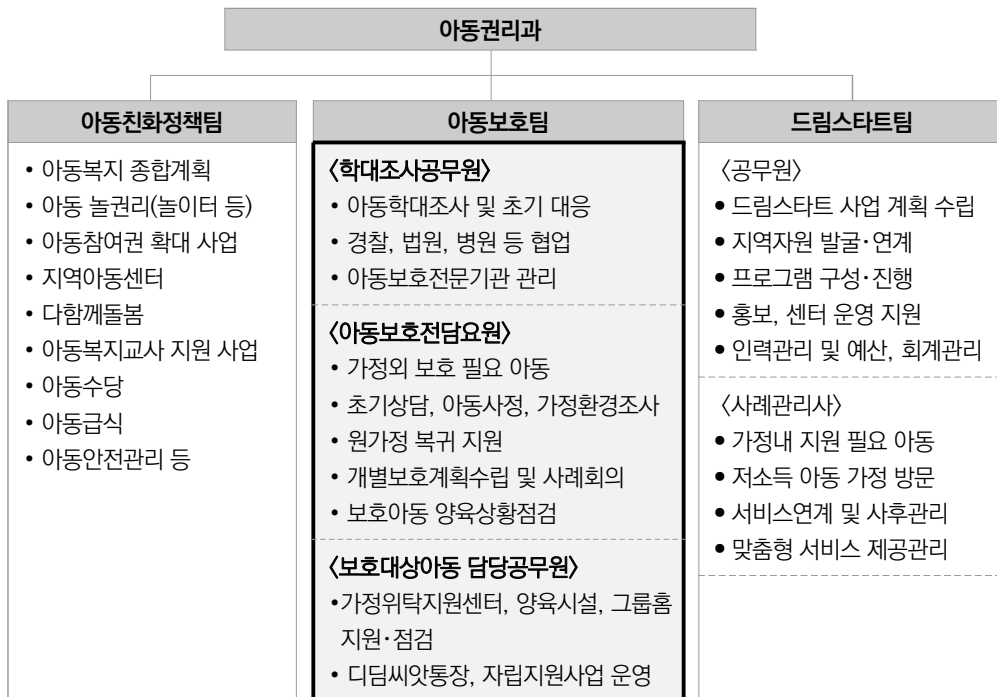
가 시·도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 (추진배경) 국가 아동보호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보급하고,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서비스 기술 지원 및 종사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을 수행할 인프라 필요
- (추진목표) 시·도가 관내 아동보호체계의 총괄 역할 수행, 시·군·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시·도에서 해결하는 상향식 아동보호체계 구축
- (기능 및 역할) 지자체별 환경에 적합한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지역 간 아동보호서비스 격차 해소 지원
 - (정책) 중앙정부 차원의 계획을 시·도 단위 정책으로 수립 및 지원, 정책 기획 및 개발
 - ※ 시·군·구 아동보호체계(아동학대대응 포함) 구축·운영 총괄,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사업 등
 - (평가) 시·군·구 아동보호체계 내실화 및 성취도 제고를 위해 시·군·구 평가지원
 - ※ 시·군·구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실적 관리 등
 - (사업지원) 시·군·구별 환경 분석 및 인력 현황을 고려하여 아동보호팀 기능·역할 수립 지원, 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 현장방문 및 애로사항 파악, 간담회 및 워크숍 개최, 친권제한·후견인 선임·채무상속 등 법률적 이슈 대응 지원, 자문 제공, 가정형 보호 확대를 위한 시·군·구간 사례 조정 등
 - (교육)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 아동보호 전문인력(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 기타 유관기관 등) 종사자 교육
 - ※ 아동보호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 맞춤형 교육, 슈퍼비전 자문단 운영 등
 - (연계)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다양한 시설·자원의 현황조사 및 발굴, 지역사회 아동보호 유관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사회 여건에 맞춘 민·관 협력사례 발굴
 - ※ 일시보호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가정 외 보호자원 관리·감독, 문제행동·ADHD·고난도 아동, 보호 출산아동 등 보호가능한 관내 인프라 풀(pool) 관리, 광역단위 법원·경찰청·교육청·전담의료기관 등 협업체계 관리 등
 - (연구·통계) 지역사회 아동보호 관련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데이터 생성,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아동보호 사업을 개발·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기타) 위의 내용 이외 지역사회 아동보호사업 수행·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시·군·구 아동보호팀 운영 가이드라인

- (목적)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관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초기상담, 일시 보호, 보호조치, 사후관리 등 유기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 궁극적으로는 보호대상 아동이 원가정 또는 보호기관에서 최대한 건강하게 성장·발달토록 하는 데 기여
- (구성) 아동보호전담요원,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 및 학대전담공무원이 서로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통합적인 조직 구성
 - 다만, 지자체별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①아동학대대응팀(학대조사) - 아동보호팀(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또는 ②아동보호팀(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 아동 지원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 * 두 개 이상의 팀으로 분리하는 경우에도,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은 과에 속하며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수적
 - ** 아동학대대응팀, 아동보호팀, 아동지원팀 등 아동보호전담조직의 이름은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사용

〈시·군·구 아동보호팀 신설안(한 팀으로 구성하는 경우)〉



02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주체별 역할

가 시·도 아동보호팀

- 아동보호팀장은 시·군·구 사례자문을 위한 전문가 풀을 모집·운영하고, 필요시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및 사례자문위원 파견을 지원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군·구 보호아동 현황(보호아동 및 보호조치 현황,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현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아동보호서비스 수행 관련 광역자치단체 간 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함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또는 시·군·구 간 해석이 다른 부분,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재·조정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함

나 시·군·구 아동보호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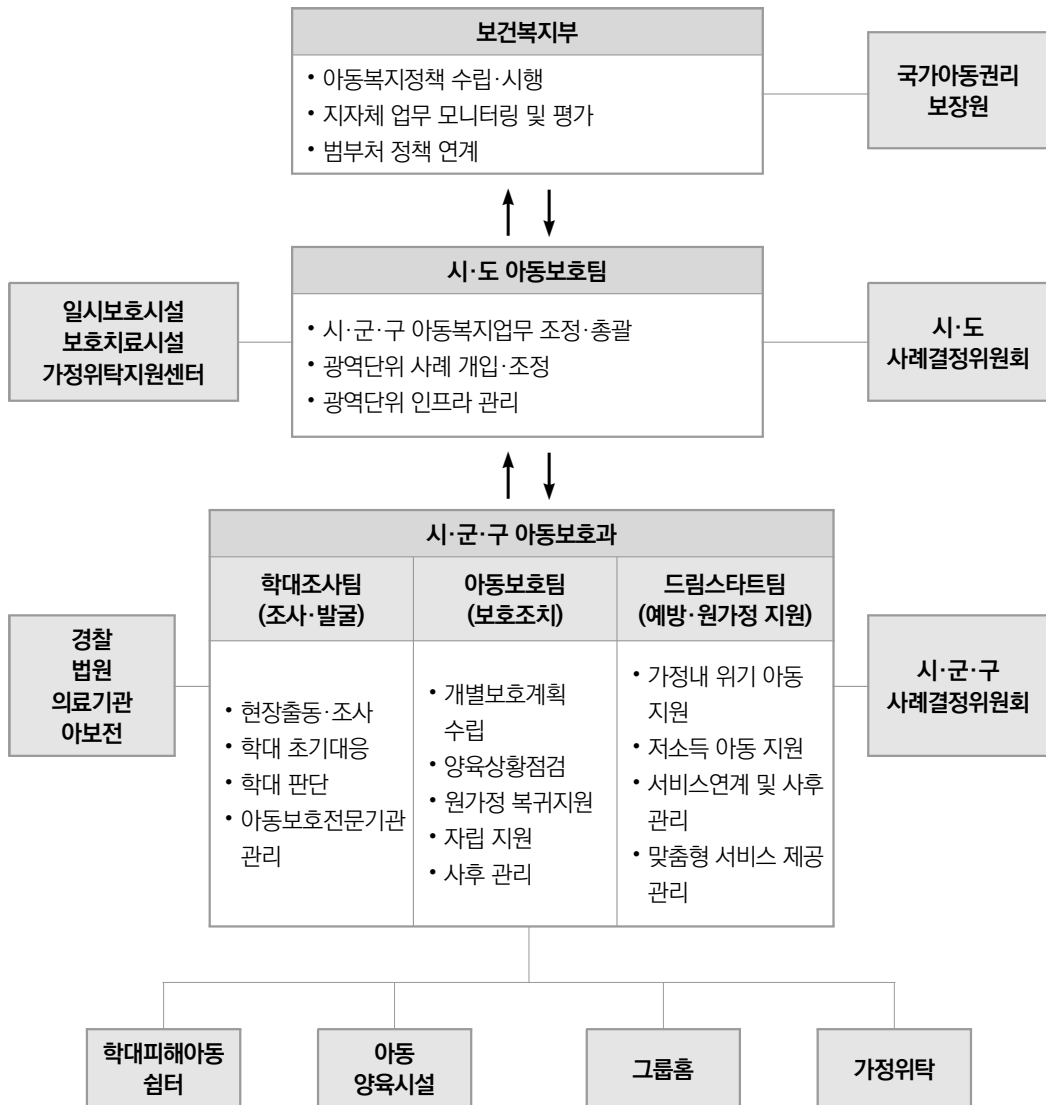
- 아동보호팀장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이 서로 협력하여 아동을 중심으로 유기적·통합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조정자 역할을 수행함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 또는 사업수행인력 간 해석이 다른 부분, 기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중재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함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은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함

다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자

- 읍·면·동에서 보호자의 의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경우, 초기 상담(서식 1 : 접수상담지)을 수행하고,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 아동복지시설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보호팀을 통해 초기상담 및 지원받도록 안내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의 분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연계
 -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의 분리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 하는 경우, 기존 상담자가 방문 동행하는 등 협조하며, 불필요한 추가상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인적사항 등 상담결과를 포함하여 의뢰함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드림스타트로 연계
- 초기상담 결과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으나 해당 가구에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고난도 사례라고 판단한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연계

03 아동보호 추진체계(예시)



VI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 및 지원

01

채용

1) 채용 원칙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 시 채용절차 지체 없이 시행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퇴직, 임신, 출산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군·구는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질병·부상, 출산·육아 등 공백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음
 - 임신·출산을 앞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출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 권고

2) 채용 기준

● 자격 및 경력 요건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기본) 타 사례관리인력과 유사하게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 및 일정기간 사회복지 업무 경력자로 설정
- (우대)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례관리 가능하도록 입양기관, 미혼부모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 다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조건 관련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우선 준수하여 채용

● 대체인력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
 - *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우대

- 단, 지자체에서 2회 이상 공고 후에도 근무자가 채용되지 않는 경우 3회차 공고부터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채용 가능

3) 채용 형태 : 공무원(무기계약직),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공무원(무기계약직) 채용이 원칙임

참고 ● 채용 관련 참고사항

- 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7.7.20)
 -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에 대해 연차별 정규직 전환 추진
-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퇴사후 무기계약직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포함)의 인건비는 조직관리 기준의 기준인건비(총액인건비)를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운영 가능(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1898(2017.5.26.))
- ③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등 적용(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399(2012.12.13.))
 - ※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 및 「상시·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 사업에 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주 35시간 미만의 근로형태 채용 불가
- 아동보호전담요원 채용을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 사례관리의 연속성(보호대상아동과의 친밀감·신뢰감 형성)을 위해 최소한 2년 이상의 기간으로 계약하며, 계약 만료 시 장기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함

4) 채용 절차

-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 및 근로자간의 계약관계로서, 지자체는 복지부 예산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02 업무수행 및 권한 부여

1) 업무수행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 상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외 타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주의
 - * 행정보조 등 기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여 보호대상아동 상담·조사,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양육상황점검,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고유한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

-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입양, 자립 등) 및 학대전담공무원과 연계해서 업무 수행하도록 조직 구성 및 전담요원 배치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보호팀을 설치하여 학대조사,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아동보호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함
- 다만, 지자체별 인력 규모를 고려하여 ①아동학대대응팀(학대조사) - 아동보호팀(아동보호 서비스 및 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또는 ②아동보호팀(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서비스) - 아동지원팀(시설·가정위탁·입양·자립 등) 등 두 개 이상의 팀으로 아동보호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지자체 아동보호팀 신설안 (한 팀으로 구성하는 경우)〉

아동복지과		
아동친화정책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 아동복지 종합계획 · 아동 놀 권리(놀이터 등) · 아동참여권 확대 사업 · 지역아동센터 · 다함께돌봄 ·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업 · 아동수당 · 아동급식 · 아동안전관리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조사 및 초기 대응 · 경찰, 법원, 병원 등 협업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상황 확인 〈아동보호전담요원〉 · 가정외 보호 필요 아동 · 초기상담, 아동사정, 가정환경조사 · 원가정 복귀 지원 · 개별보호계획수립 및 사례회의 · 보호아동 양육상황점검 〈보호대상아동 담당공무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그룹홈 지원·점검 · 디딤씨앗통장, 자립지원사업 운영	〈공무원〉 · 드림스타트 사업 계획 수립 · 지역자원 발굴·연계 · 프로그램 구성·진행 · 홍보, 센터 운영 지원 · 인력관리 및 예산, 회계관리 〈사례관리사〉 · 가정내 지원 필요 아동 · 저소득 아동 가정 방문 · 서비스연계 및 사후관리 · 맞춤형 서비스 제공관리
6-7명(공 5-6, 아동복지교사 1)	7-9명(공 5-6 + 전담요원 2-3)	6-7명(공 1-2 + 사례관리사 4-5)

(2) 업무 권한

● 신분증 발급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관련 기관 방문 시 업무 수행을 위한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시·군·구청장이 신분증 발급하고, 크기 및 형태 등은 공무원증과 동일

● 각종 권한 부여

-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포털(새울행정) 및 전자결재 사용 권한, 공공기관용 외부 메일 계정(시·도 및 시·군·구), 행복e음 ID 부여
- * 행복e음 권한 부여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 세부지침 참고

03 복무

(1) 복무 원칙

-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준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소속 지자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2) 준수사항

- 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함
- ②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이탈 금지
- ③ 근무 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됨.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④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금지
- ⑤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종사자로부터 증여 금지
- ⑥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 금지

(3) 근무 조건

- 주 5일 근무이며, 상근 1일 8시간(09:00~18:00)

* 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1일 7시간 근무

(4) 출장

-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내·관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장 명령 및 이에 따른 경비 지급

(5) 휴가

-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보장
 - 그 외에 휴가, 휴일, 초과근무 등 근로시간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을 따름
 - 다만,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휴가 부여 가능(「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근 및 휴일근로), 제57조(보상휴가제))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 지원 가능

(6) 정년

-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

04**교육**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 중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입문교육 : 신규채용 인력 및 기 채용 인력 중 미이수자 대상 아동보호체계 개편 취지, 업무 프로세스 등 기초역량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실무교육 : 입문교육 수료자 대상 현장 실무능력 강화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보수교육 : 실무교육 수료자 대상 고난도 현장 사례 등 전문성 강화 지원
 - 아동보호팀장 과정 : 시·도/시·군·구 아동보호팀장 대상 연차별 교육 운영(신규/경력), 시·군·구 아동보호팀 간 연계협력 등 현장 실무 교육 지원
-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1년에 최소 1회 이상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야 함
- 신규 채용 인력이 과거 아동보호전담요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자 실무교육부터 수강(희망하는 경우 입문교육부터 수강 가능)
-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재원(edu.kohi.or.kr)

• 교육 이수 기준 관련 유의사항

- ① 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 임용 후 6개월 이내 신규자 입문교육 필수 이수 및 신규자 입문 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 '신규자 실무교육' 필수 이수
* 단, 퇴사 후 2년 이내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신규 채용된 경우 '신규자 실무교육'부터 이수 가능
 - ② 아동보호팀장의 경우 연차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1년 미만 근무자는 '아동보호 신규팀장과정' 필수 이수, 1년 이상 근무자는 '아동보호 경력팀장과정' 필수 이수
 - ③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보호팀장은 연 1회 이상 교육 필수 이수
 - ④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아동보호체계 평가 교육 실적 부문 감점
 - ⑤ 아동보호팀장 경력과정 이수 시 아동보호체계 평가 교육 실적 부문 가점 부여
- ※ (퇴사 후 2년 이후 재입사자) 아동보호 교육단계인 입문-실무-보수교육 전 단계 재수강 필요

05

보수

- 원칙 : 사업예산 규모(단가)를 최소기준으로 하여 보수를 결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가지급 권장
 - 연봉책정은 신규임용 대상자의 경력, 임용 전 보수 수준, 채용 직위의 업무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함(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법령(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최소 2년을 갖춘 전문인력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 공무원직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채용을 권고함
 - 시·도의 경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업무지원 총괄, 교육, 지역 매뉴얼 관리 등 역할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채용을 권고함
 - 불가피하게 인건비 집행차액이 발생한 경우, 국비지원기준 한도 내에서 특수직무수당, 명절수당 등 보전수당 또는 기타 가능한 형태로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인건비 보전하여 국비지원기준(보조사업 교부조건) 반드시 준수
- 퇴직급여 :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

06 예산 운영

(1) 예산운영 기본 원칙

- 지원 방식 : 지자체 경상보조(서울 50%, 지방 80%)
- 예산 편성 및 집행은 관련 법령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그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교부, 집행·정산 및 정보공시 등은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 사업예산의 집행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의 목적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 불가
 - *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당초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부여 시 사업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가능

(2)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 인건비 : 기본급(사회보험본인부담금 포함), 시간외수당, 사회보험기관부담금 및 퇴직금으로 구성
 - 기본급 : 단일급 지급('26년 기준, 약 월 235만원)
 - 시간외 수당 : 월 10시간 이내 지급하며, 지급 범위를 초과하는 시간 외 근무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지방비로 적극 편성
 - 다만, 인건비 집행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비지원기준 한도내에서 추가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간외 수당 관련 유의사항

- 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및 근로기준법 내 근로시간 규정 및 연장근로제한에 관한 규정 준수
- ② 지자체는 시간외 근무대장을 관리하여 수당 지급 조치
- ③ 사전에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지급범위를 알 수 있도록 안내
- ④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준용 가능
(단, 지자체의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될 경우, 초과분은 지자체 부담)

- 퇴직급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참고 9 퇴직금 관련 사항

①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제8조, 제13조~제23조)

구분	개념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금 산정방법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일 기준 최근 3월간의 임금/최근 3월간의 일수 재직일수 = 입사일(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사일까지 기간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사용자로 하여금 일정한 부담금을 사외에 적립·운용하도록 한 후,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토록 하는 제도 - (확정급여형) 근로자의 급여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확정기여형)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급여수준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② 퇴직금의 지급기준 및 관리

- (지급대상자)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아동보호전담요원
- (지급시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적합하도록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 종료와 함께 퇴직금을 지급 가능
- (퇴직금 적립) 무기계약 등 계약종료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적합하도록 지자체 실정에 맞게 준용하되 지자체에 별도의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적립 가능
 - 다만, 지자체에서 자체로 제정한 규정이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인 경우 따로 적립하지 않을 수 있음
- (중간정산) 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나, 다음의 사유(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되어 지급받은 경우, 중간 정산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참고하고 운용

③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 보칙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1회에 한함)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 ※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개별 법령 준수
 - ※ 주의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퇴직적립금은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부담 분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개인에게 지급 불가

● 사업비

- 편성 기준 : 전담요원 인력규모를 고려하여 사업비 편성
 - 전담요원 미배치 지역도 아동의 의료비 및 서비스 연계비 등 서비스 운영비 명목으로 최소한의 예산 지원 가능
 - 사업비 편성시 서비스제공비가 반드시 포함되어 예산이 편성 될 수 있도록 조치 (전담요원의 출장비, 수당으로만 구성한 사업비 편성 불가)
- 집행 기준

항 목	세부 내역		예산비율
기본 운영비	①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 전담요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 수당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심의 수당	0%~ 70%
	② 여비 및 교육훈련비	• 전담요원 업무수행과 교육 이수에 필요한 여비(출장비 등), 교육비 ※ 전담요원 업무수행 위한 출장비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집행	
	③ 기타운영비	• 호신용품 등 전담요원의 안전 및 소진 예방 관련 소요 비용 ※ 워크숍 개최, 소진 예방 교육 강사료 등 집행 가능 • 전담요원 질병·상해보험 의무가입비 ※ 단, 지자체에서 단체보험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 • 아동 및 보호자의 대면상담에 필요한 식대·다과비 ※ 상담자의 식대·다과비 포함 • 아동보호업무 전용 공용폰 및 전자기기 이동통신 요금 ※ 공용폰 1대당 월 3만원 이내 지출, 단말기 구입비와 통신 요금을 연동 하는 경우 1대당 월 5만원 이내 지출(전담요원 1인당 1대 한도)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용차량 운영 경비 ※ 사적 목적의 운행 및 경비 지원 금지	
서비스 제공비	① 의료비	• 보호대상아동의 장애 진단 진료비, 정신과 심리진단 및 심리치료비 등 건강검진·심리검사 비용 및 의료비 ※ 보호조치 결정 전, 보호 중, 사후관리 대상 아동에게 집행 가능 ※ 신규발생 아동 및 기존 사례관리 아동 모두 종합심리검사 실시 가능	30%~ 100%
	② 서비스 연계·제공비	• 보호대상아동과 원가정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서비스·프로그램 연계 또는 제공 ※ 보호 중(면접교섭 등), 보호종료 후 등 현재 보호절차와 무관하게 집행 가능 ※ 부모교육, 가족방문, 가족활동프로그램 비용 지원 등 「아동보호 서비스 업무 매뉴얼」 부록 II.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참고	
	③ 기타지원비	• 의료비, 서비스 연계·제공비 외대상자 지원을 위한 기타 지원비(생활 지원, 교육훈련비, 그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해 필요한 항목) ※ 자원연계를 위한 기관방문, 양육상황점검차 가정방문 시 필요한 물품 구매비 포함	

※ 사·도의 경우 기본운영비와 서비스 제공비 항목의 예산 비율 관계없이 집행 가능

- 사업비 집행 시 참고사항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대한 타 사례관리사업 및 아동복지사업 등 타 공공·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 및 원가정 지원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아동보호전담요원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례회의 및 내부 결재 절차 거쳐 사업비 집행하되, 지원대상자가 타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지원받는 항목과 중복 여부 확인
- 원칙적으로 사업비는 관련 기관에 직접 지급하고, 생필품 등 물품은 구매하여 대상자에게 지급
-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1인당 지원 상한액은 없으나, 사업비가 모든 아동에게 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의
- 아동보호서비스(학대 포함) 관련 아동·보호자 대면상담, 사례회의, 간담회, 교육 등 추진 시 식대 및 다과비 1인 2만원 이내 집행 가능
- 상담·조사·점검·사후관리 등의 목적으로 아동·보호자 가정 방문 시,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을 위하여 1회 20만원 이내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출 불가항목

- 시설유지 관리비 및 사무용품 구매비(책상 등 사무기기)
- 지자체 공무원의 사례회의, 간담회 등 참석 수당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급여

● 그 외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적극 편성
(예시 : 아동 및 보호자의 상담에 필요한 식대·다과비의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 등)
- 단, 사업비 보조금은 경상보조금 성격으로 자산취득성격의 지출은 불가하며 부적정 지출 시 반환 조치(예시 : 노트북 등 전자기기 구매 등)

제2부

“ 아동보호 서비스의 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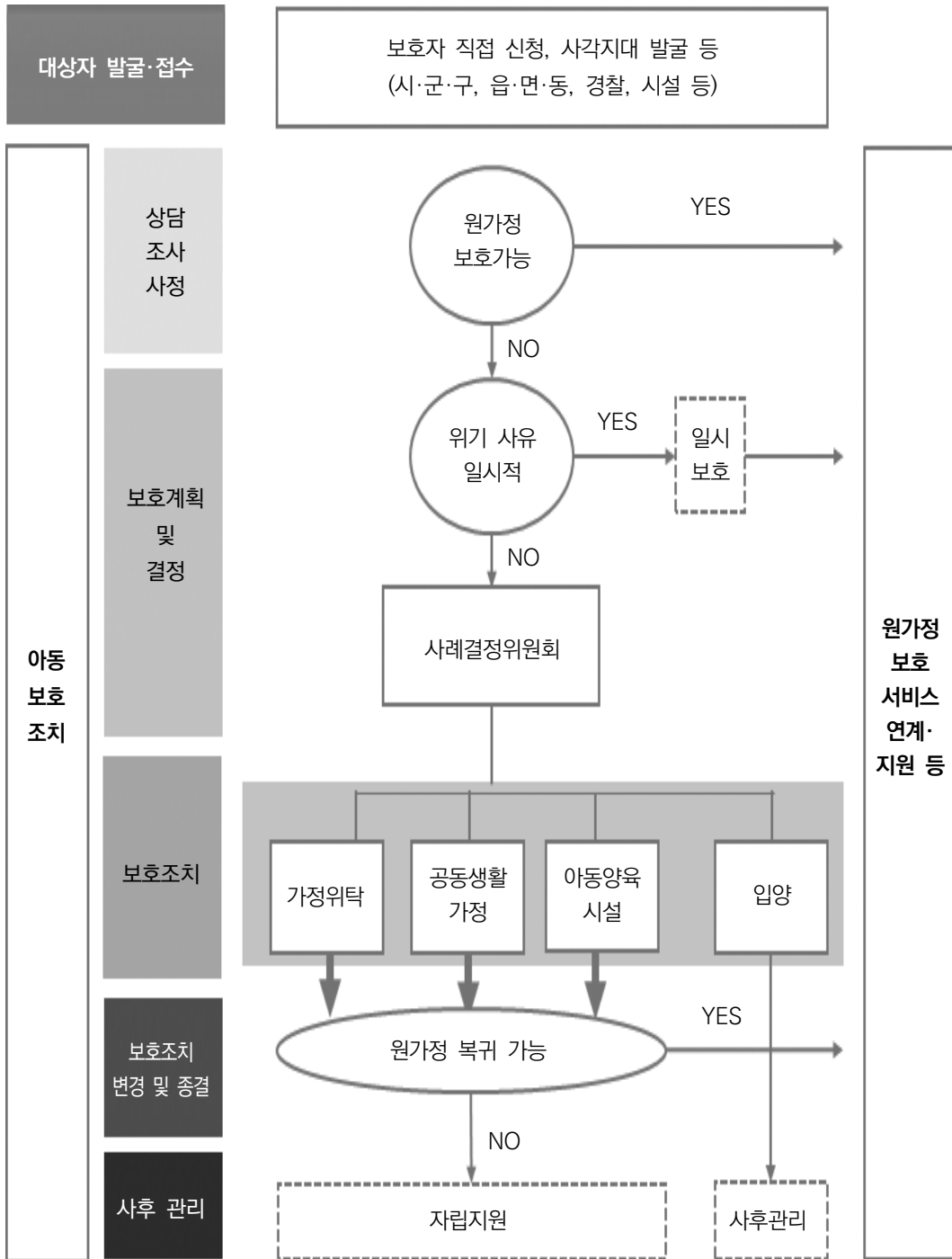
- I. 아동보호서비스 절차별 주요내용
- II. 상담·조사·사정
- III. 보호계획 및 결정
- IV. 보호조치
- V. 종결
- VI. 사후관리

제2부 | 아동보호서비스의 절차

I 아동보호서비스 절차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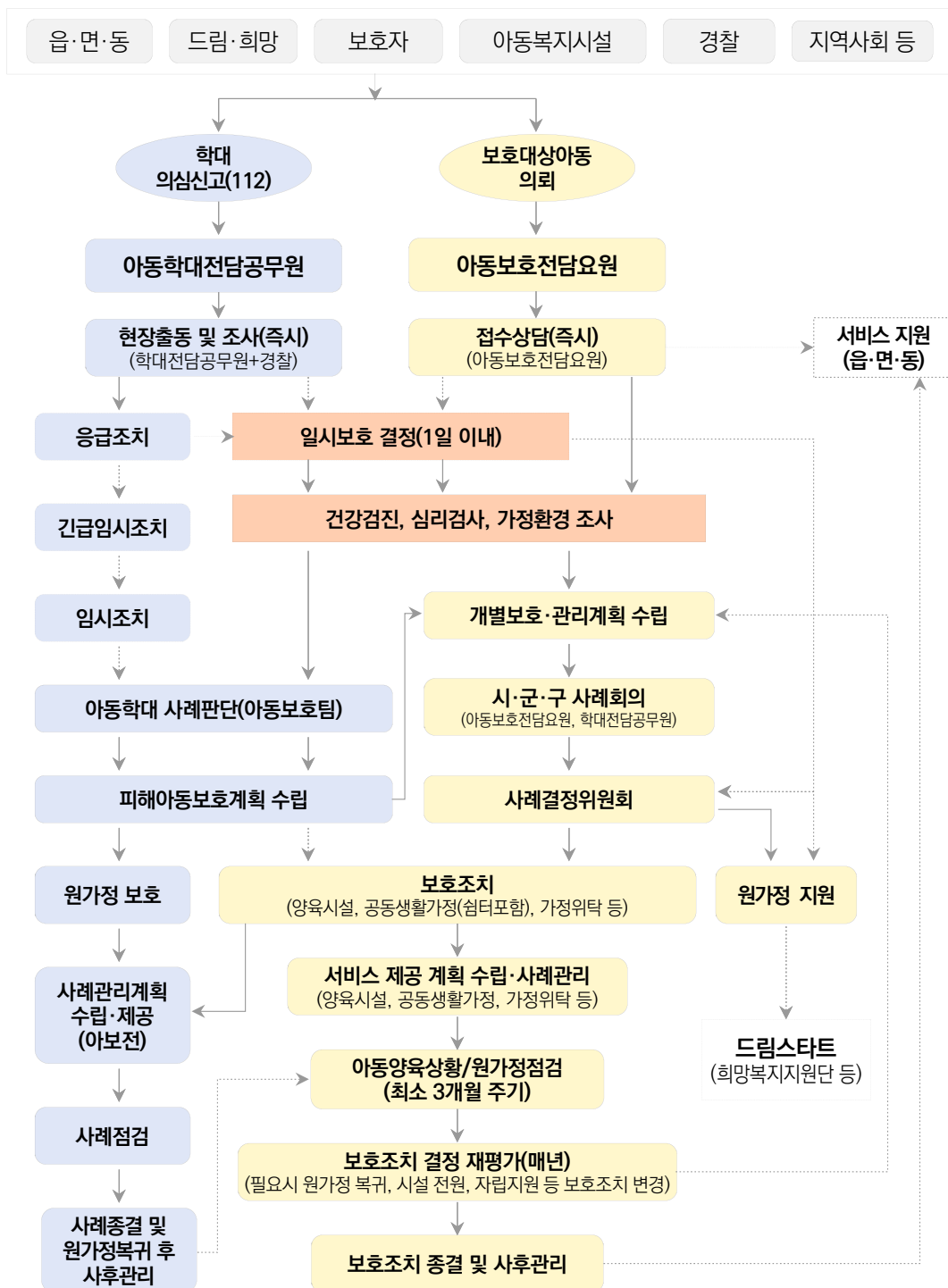
- 1단계 : 상담·조사·사정
 - (접수상담) 최초 방문자를 통해 기초정보 파악 및 상담결과에 따른 대상자 접수, 서비스 연계
 - (일시보호) 접수상담 과정에서 긴급하게 아동을 분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동을 즉시 일시보호시설 또는 일시위탁가정 등에 보호조치 결정 시까지 보호
 - (욕구조사 등) 아동과 가정의 문제 및 욕구를 파악, 보호서비스 제공 및 방향 등 사정
- 2단계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상담·조사·사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조치 유형 및 보호 기간, 사례 관리 등 계획을 수립
 - (보호결정) 사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조치를 결정
- 3단계 : 보호조치
 -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 아동의 분리보호 시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 가정, 양육시설 등)과 협업하여 아동에 대한 서비스계획을 수립 및 제공
 - (양육상황 점검) 아동의 분리보호 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 원가정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호조치 및 서비스 제공 계획 변경 필요성 검토
- 4단계 : 보호조치 종결
 - 양육상황 점검결과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종결
- 5단계 : 사후관리
 - 보호종료 후 아동의 가정 방문 및 서비스기관(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 복지기관 등) 연계 등 해당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지도·관리 제공

〈그림 2〉 아동보호 업무 흐름도



※ 보호조치시 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가정위탁·입양)를 먼저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시설형 보호를 하는 경우에도 양육 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가정형 보호로 보호조치 변경 노력

〈그림 3〉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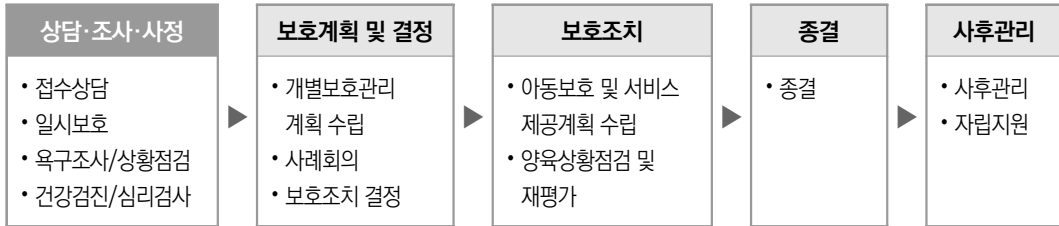


II

상담·조사·사정

01

개요



- (목적) 아동 및 부모(보호자)의 보호의뢰 사유 및 주요 문제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 조치를 위한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
- (주요내용) 상담을 통해 아동과 가정의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분리 보호 필요성 및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파악함

※ 필요한 경우 최초상담 이후에도 유선·가정방문 등을 통해 추가조사 하되, 불필요한 방문은 가급적 최소화

02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주로 실시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 그 외 보호자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읍·면·동,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대상아동을 발견한 담당자 또한 초기(접수)상담 및 육구조사 가능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타 사례관리기관 등으로부터 보호 의뢰를 받은 경우 기존 접수상담 및 육구조사 결과로 접수 상담 및 육구조사를 갈음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호조치를 위해 친부모 상황 점검표 (서식 8) 및 아동 상황 점검표 (서식 9) 등 필요한 사항은 추가 조사
 -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이 직접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적절한 보호조치 및 원가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구에서 상담받도록 안내
 - ※ 보호자의 보호요청을 받은 아동복지시설은 가급적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시·군·구에 상담 의뢰
 - ※ 다만, 시설에서 유기 등의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해당시설에서 보호 후 24시간 이내 관할 시·군·구에 보고

03 수행시기

- 보호자 및 원가정 외 보호기관으로부터 아동 보호신청을 받은 경우
 - 보호신청 받은 경우 즉시 접수상담 실시하되, 조사·사정은 접수 상담 후 1주 이내 실시

04 수행방법

가 접수·상담 (서식 1)

- (보호자 직접 의뢰) 보호자가 유선 또는 내방하여 보호의뢰 하는 경우 접수상담지를 바탕으로 보호의뢰 사유 및 가구 내 주요 문제 등에 대해 상담 실시
 -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아동의 보호조치를 의뢰하는 경우, 아동 및 보호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우선 읍·면·동(또는 드림스타트)으로 의뢰
 - 아동에 대한 방임, 폭력 등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상담내용 전달 및 신고
 - 학대로 의심되지 않으나 양육의지가 결여되고 분리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문 상담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의뢰된 아동에 대해서 초기상담지 등을 참고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분리 여부를 결정
- (읍·면·동 및 시·군·구 타 부서로부터 의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기존 사례관리 아동 중 원가정에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로 의뢰
 -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분리보호 필요성을 점검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실시하며, 기존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 방문에 동행하는 등 협조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뢰 시 불필요한 추가상담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인적사항, 욕구조사결과 등을 포함하여 의뢰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이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작성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공유받은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바탕으로 친부모 상황 점검표(서식 8), 아동 상황 점검표(서식 9)를 작성
 - ※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 친부모 상황점검 생략 가능
- (보호기관으로부터 의뢰) 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 최초상담 보호기관의 상담내역 또는 욕구조사를 활용, 불필요한 가정방문 또는 의뢰인의 내방 최소화

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수령 (서식 2)

-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통계 구축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함

다 일시 보호 (서식 3)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유기 등으로 보호조치 결정전까지 아동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적합한 위탁가정 등에 일시 보호 의뢰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각분리(일시보호)된 보호대상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자체 인력, 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내 상주 임상심리치료인력, 외부 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협조요청
 - ※ 부득이하게 일시보호(즉각분리)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필수 심의대상임(일시보호연장 심의시 가정복귀 및 장기보호 전환 여부도 검토해야 함)
 - ※ 최초 일시보호조치 결정 및 일시보호(3개월 미만) 후 추가적 분리보호가 아닌 원가정복귀인 경우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요시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가능함
 - ※ 일시보호 후 장기보호조치로 전환할 경우 아동학대공무원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피해아동보호계획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건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함
- 보호자 부재 등 아동학대 이외의 사유로 아동을 긴급하게 보호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일시보호조치, 보호조치 결정에 필요한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및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실시
 - 시설 내 아동 간 갈등, 위탁부모 수술,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고, 체포·구금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등 긴급한 경우 시·군·구 판단하에 긴급 일시보호 실시
 - * 긴급 일시보호는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며, 긴급 일시보호 이후 지체없이 보호조치 변경 실시
 - 시·도지사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내 긴급 보호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하고, 관할 시·군·구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참고 ②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정의)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 아동을 전문적으로 일시보호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사업대상) 전문적 돌봄 필요 아동(즉각분리·응급조치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 장애, 경계선지능아동 등
-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및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이후 재참여 시 50만원) 등 지원

라 욕구조사 및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사전 준비사항

-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방문상담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및 욕구조사 및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등을 위한 일정 협의
- 대상가구의 특성 및 안전문제 등을 감안하여 2인 동행 방문 준비
 - ※ 초기관계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통·반장, 시·군·구 공무원 등 동행 협조
 - ※ 보호대상아동 이외 가구원에 대해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가급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과 방문일정을 협의하여 동행 방문
- 접수상담 및 기존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바탕으로 사전정보를 숙지하고,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

마 욕구조사표 (서식 4)

- (목적) 아동과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총 10개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안전, 건강, 일상생활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권익보장) 조사
- (조사방법) 직접 의뢰받는 경우 가정방문하여 실시하되,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 기존 자료 활용 가능(단, 필요시 별도 욕구조사 가능)
- (욕구파악) 대상아동 및 필요시 가족 구성원의 욕구와 주요 원인, 원인 제공자 등에 대해 파악
- (주변 환경 파악) 가족의 경제 상황, 주거상황, 건강상태, 심리사회적 특징, 장애물과 함께 사회 관계망에 대한 파악
- (잠재적 자원) 욕구영역별로 야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 완화 또는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강점 등 잠재적 활용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한 파악

바 아동 상황 점검표 (서식 9)

- (목적)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의 욕구와 강점 및 문제행동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호유형을 결정
- (정신건강·의료적 욕구) 아동의 장애 및 질병 유무 및 정신건강 상태 등을 확인함

- (사회적 욕구)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성인과의 관계가 연령 및 아동의 정서적 성숙도에 맞게 적절한지를 확인
- (교육적 욕구) 아동의 교육적 욕구 및 보호조치로 인한 전학 가능성 확인

TIP

- 학습부진, 특수교육대상자 여부 및 특수교육배치 여부 파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을 파악
- 관할 구역 내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가능성 파악
- 아동이 희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 조치 등은 가급적 배제함

- (취약점) 아동의 섭식상태, 충동조절, 발달장애, 학습의욕 등을 파악
- (분리보호 관련)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호조치 될 가능성 여부 및 아동의 보호 희망 형태를 파악하고 보호조치 필요성 여부 평가

사 **친부모 상황 점검표(서식 8)**

- (목적) 친부모상황(가정 및 주변환경, 양육태도, 보호조치)을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호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을 파악함
 - 부부관계, 직업 및 소득 정도, 부채여부, 자립가능성, 알콜 등 약물문제
 - 부모의 현재 및 과거의 지지체계, 가족사, 자기보호와 성숙 등의 영역에서 강점을 파악
- (작성방법) 분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가정방문을 통해 점검
 - ※ 아동을 의뢰받을 당시 이미 친부모가 사망·연락두절되어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중인 경우 현 보호자를 대상으로 친부모상황점검 실시
 - ※ 학대행위자가 친부모인 경우 친부모상황점검 생략가능

TIP

부모역량 사정 시 부모의 자립가능성을 파악함. 부모의 일시적인 경제문제나 양육환경 문제가 해결될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보호가 가능하다면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예시 : 희망복지지원단 연계를 통한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특히 부모의 자립이 지체되어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장기보호 되지 않도록 하여 아동의 원가정 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를 적극 격려할 필요가 있음

TIP

• 입양 의뢰한 친생부모 상담 시 고려사항

- 미성년 친생부모, 혼외자 등의 경우에는 상담에 거부감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 결정, 장소 선정, 면담환경 조성 등에 최대한 배려
- 최대한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답변 강요 등은 지양
- 부모 등 보호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에도, 아동의 입양과 직결된 부분은 향후 아동의 건강권·알 권리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과 비밀보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친생부모에게 설명하여 최대한 기록될 수 있도록 함

● (가정환경 등) 가정의 경제 상황, 결혼 상태 등을 파악

※ 일부 사례에서는 재혼 등의 이유로 인해 아동이 부부 및 새 가족관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아동복지 시설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보호자(부모)는 주로 다른 사유로 아동을 보호해주길 요청하기 때문에 최근의 가족관계 변화 등에 주의를 기울여 사정할 필요가 있음

● (주변 환경)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 아동 및 보호자의 현재 및 과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를 파악

● (아동학대 여부) 보호자(부모)의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며, 학대 정황 발견 시 아동학대 신고

● (양육태도·의지) 양육태도, 아동과의 관계, 자녀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 및 변화가능성 등을 파악함

참고 ● 양육태도 점검 시 참고사항

- 아동에게 애정을 자주 표현하는가?
- 아이에게 잘못을 꾸중할 때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는 노력을 하는가?
- 아동이 실수할 경우 엄하게 훈육하는가?
- 자녀의 사생활을 잘 인정하는가?
- 체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예 : 아동은 매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정서적 성숙도에 맞지 않는 지나친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가?
- 아동이 행동에 꾸지람의 기준이 일관된 태도를 갖고 있는가?
- 아동의 연령이나 발달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아동 혼자 의사결정 하도록 하는가?

●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을 파악함

※ 부모(보호자)에게 아동의 보호배치 예상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에 대해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의서(예: 가정 위탁보호동의서)를 작성하게 함. 이때 구상권 청구(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보장비용 징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키도록 함

● (지속적 연락 여부)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지속적으로 연락해야 함을 안내하고, 연락을 끊어 버리는 경우,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추후 아동의 원가정 복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

〈표 7〉 사정 시 고려사항

구분	아동	부모(보호자)	환경
1) 우선적 고려사항	• 아동안전 • 장애여부 • 특수육구 • 가정보호우선조치 대상자 (2세 미만) • 한국 국적 취득여부	• 아동학대 여부 • 양육의지 • 보호역량 • 가정환경 (경제상황, 주거환경 포함) • 자녀의 보호배치 예상 기간 및 가정복귀 시점 • 국적 또는 영주권 취득여부	•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가능성 여부 • 사회적 자원
2) 기타 고려사항	• 보호배치에 대한 인지 및 참여 • 교육적 욕구 • 사회적 욕구 • 문화적 욕구 • 강점 및 취약점	• 부모의 성장배경 • 지속적인 연락여부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여부

아 건강검진, 심리검사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는 관내 보건소, 의료기관, 일시보호 시설 등과 연계 시행 가능

※ 아동복지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등 입소 전 건강검진, 심리검사 의무화

참고 ②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 방법(시행령 제18조의2제1항)

- 가. 심리검사는 상담 결과와 아동의 가정환경 및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아동의 지능·인지·정서·행동 및 발달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류의 검사를 선별하여 실시한다.
- 나. 심리검사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2)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후 심리검사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다. 심리검사 결과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추가 검사를 할 수 있다. 심리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호기관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심리검사 진행 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 ② 수용자 자녀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및 보호조치 절차

- 보호자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자녀 발생 시 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은 수용자의 자녀 보호 의사, 주변 보호 체계 확인 후 관할(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보호 의뢰
 - ※ 수용자가 자녀에게 수용 사실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아동에게 보호자의 수용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
 - ※ 보호의뢰 시 필요 구비서류 :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의뢰 공문,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수용자의 자녀 보호 거부, 친인척 보호 등 분리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 복지서비스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실시
- 주말·야간에 아동 방임 및 안전 우려 등 위급한 경우 학대 신고를 통한 일시보호 실시 후 아동보호 전담요원에 인계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자의 수용 기간 등 보호 의뢰 사유와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결과를 종합,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보호조치 결정
 - ※ 친부모 상황점검, 아동보호동의서 수령 등 필요시 수용시설 협조를 통한 보호자 대면 실시
- 아동·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접견, 전화, 편지 등 대면/비대면 면접교섭 지원
 - * 근거법령 :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제66조(법무부 예규)

Q&A

상담·사정·조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담당하는 아동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아동이거나, 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 받지 못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라 분리보호를 하고자 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2세 이하의 취약계층아동으로 가정 내 양육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우선적으로 드림스타트에 연계
 - * 13세 이상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는 특화분야 아동복지교사에게 의뢰하되 미배치 시·군·구는 드림스타트에 연계
-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분리보호하는 경우 및 명령 종료로 가정복귀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불필요. 단, 피해아동보호계획(개별보호·관리 계획)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및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일시보호가 가능한 시설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제53조의2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일시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가정위탁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인근의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위탁 가능



아동의 주소지와 일시보호하는 시설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관할 시·군·구는 누구인가요?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가 주 사례관할로서 상담·가정환경 조사, 보호계획 수립,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까지 수행하고 장기보호조치 주소지에 이관하는 것이 원칙임
 - * 아동의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은 필요시 일시보호시설 주소지 시·군·구도 보조 사례관할로서 협조 가능
- 필요시 시·군·구간 협의하여 일시보호시설 소재 시·군·구가 주 사례 관할이 될 수 있음



건강검진은 어떤 항목을 검사받으면 되나요?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되, 「건강검진기본법」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실시
 - * 기본검진, 전염성 질환(결핵, B형간염, 피부질환),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피해아동 관련 현장출동·동행해도 되나요?**

- 아동학대 조사(현장출동 등)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이므로(아동복지법 제66조 및 제2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이므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조사(현장출동 등) 동행 불가
- 아동학대 현장조사 후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경우 상담·건강검진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필요시 상담·건강검진 등 수행 지원 가능

**입양의뢰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 또는 친생모만 등재되어있을 경우, 친생부모 양측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입양 동의를 하지 않은 친생부 또는 친생모가 추후 인지 청구를 통해 입양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양측의 동의를 받도록 안내
 - 다만, 연락두절 또는 소재 미확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생부 또는 친생모의 동의만으로 입양 진행(단, 증빙서류나 '미참부 사유서' 제출 필요)
- * 친권 상실에 대한 판결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등

**외국인 부모의 아동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①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출생신고 안내 → 직접 양육 시 지원 안내 → 보호조치 안내(입양, 가정위탁, 시설)
- ② 외국아동 출생확인(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국/영문 출생확인서 발급),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출생 신고서를 해당 국가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해당 국가 법률상 보호조치 요청
 - ※ (참고) UN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제2조(비차별)에 따라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등에 차별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 ※ 미등록 외국인도 임시로 행복e음 전산관리번호 부여하고 시설보호 등의 보호조치 가능(단, 지방비 또는 민간자원 필요)
- ③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 아동을 학대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아동학대 신고
 - ※ (참고) 출입국 관리법 제25조의4, 아동의 비자확인 관련 정보는 하이코리아, 대한민국 비자포털 등 활용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소재지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시·군·구가 다른 경우,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 발급을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로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책정 및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진료 시 활용됨
-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 담당자는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해 전산관리번호 발급,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관리를 위한 행복e음 등록
- 일시보호 등 아동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는 아동의 의료급여 책정을 위해 별도의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발급하여야 함
- 보호출산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아동보호담당자는 아동 소재지 관할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자 등에게 주민등록번호 발급 사실을 통보하고, 아동이 전산관리번호로 수급중이던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주민등록번호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아동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출생자

- 아동이 혼인 중에 태어난 경우에는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 의무자(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모 포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 아동이 혼인 외 출생자(사실혼관계 포함)라면 모의 국적과 동일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 해당하며, 따라서 일반적인 외국인 출생신고 방법에 따라 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해야 함
 - * 혼외자는 출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부여 불이행으로 범칙금 부과되므로 반드시 해당 국가 대사관에 방문하여 자녀의 출생신고, 여권발급 신청
-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의 출생신고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없으며, 따로 외국인에 대한 인지절차에 따라 부가 인지신고한 다음 자녀가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하거나(미성년자인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은 후(성년이 된 경우) 법무부 장관의 국적 취득의 통보 또는 귀화허가의 통보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음
다만, 아동이 출생하기 전에 한국인 부가 태내에 있는 자녀를 인지했다면 태아인지 신고된 피인지는 그 부의 출생신고로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 없이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됨

②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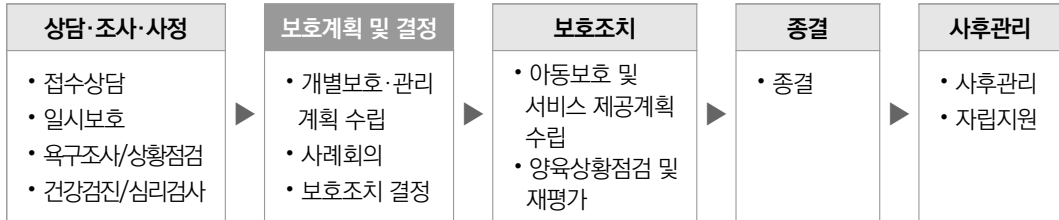
- 아동이 혼인 중에 태어난 경우에는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가 신고 할 수 있음
-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경우(사실혼 포함), 한국인 모에 의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모 또는 그 밖의 출생신고 의무자의 신고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 할 수 있음
이때 아동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의 인지가 있기 전에는 친부가 누구인지 알고 있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의 성명을 기록할 수 없음. 그러나 부의 인지가 있으면 그 인지신고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의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상실 신고에 따라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해야함

* 출생등록 실무안내서 〈보편적출생신고 네트워크, 2022〉 발췌

Ⅲ

보호계획 및 결정

01 개요



- (보호계획수립)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한 상담·조사 및 건강검진, 심리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사례회의를 거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에 대한 개별보호·관리 계획을 수립
- (보호계획 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조치 결정

02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가 주체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작성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에 적절한 보호 장소가 부재할 경우 우선 보호대상아동 주소지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타 시·군·구에 의뢰
 -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실거주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협조요청
- 육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총괄하여 수립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를 의뢰할 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과 협업하여 작성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위탁보호 결정(보호조치 변경 포함) 후 위탁가정 (신청인)과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서 포함한 관계 서류를 7일 이내에 센터로 발송
 - ※ 아동을 보호하게 될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작성

나 수행시기

- 접수상담 및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 수행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전 준비사항
 - 지자체 내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자원 및 민간기관 자원을 파악
 - 원가정 복귀를 위해 아동의 보호자(친부모)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확인
 - 입양의 경우, 해당 시·도는 입양대상아동 보호가 가능한 인프라 현황을 사전 파악, 보호 가능 현황 등 총괄 관리
- 목표 설정
 - 단기(1개월)와 장기(1년 이내)로 구분하여 수립하며, 목표달성 가능성 및 구체성, 측정가능성, 대상아동의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수립
 - (단기목표) 아동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목표 수립,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를 설정하고, 개입시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
 - ※ 다만,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단기목표는 입양아동의 보호방법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장기목표) 아동보호 조치 후 1년 이내의 개입을 통해 아동의 상황 변경 또는 아동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목표 수립
 - ※ 양육상황 점검 주기에 맞추어 단기·장기 목표 달성 시기 결정

TIP

·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및 예시

- 접수상담,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점검 등을 종합하여 욕구 영역별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
- 접수상담, 욕구사정 내용을 근거로 대상자의 변화목표가 논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고려
- 보호조치의 장단기목표, 서비스 개입 목표, 제공서비스가 논리적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하기
- 대상자 변화를 장단기목표로 수립하되 대상자 관점으로 목표 기록하기

욕구영역	우선순위	단기목표	장기목표
안전	1	원가정 분리조치	대리양육으로 아동안전 확보
건강	8	건강검진 실시	해당 나이 신체 평균 도달
가족관계	6	주1회 부모상담 실시	정기적 부모 상담으로 가족 간의 관계개선
사회적 관계	5	학교 집단따돌림교육 실시	또래관계향상프로그램 참여로 교우관계 개선
경제	4	디딤씨앗통장 가입	매월 5만원 입금 연 180만원 저축하기
교육	2	학습지 신청	매월 학습지 지원 및 향상정도 점검
생활환경	3	난방기구 설치	벽지 및 창호 교체로 주거환경 개선, 책장·책상 지원으로 아동의 공부방 확보

● 개별보호·관리계획 작성(서식 11)

- 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의 종합평가를 기록
- 보호조치 유형, 적정 보호 기간을 결정하고 보호조치로 인해 전학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 ※ 아동이 지역사회를 벗어나지 않고 기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학조치 등은 가급적 배제
 -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보호계획서(서식 57)를 작성하고 이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아동학대 처벌법 제47조에 따른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피해 아동보호계획서를 공유받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을 갈음함
- 욕구 영역별 개입목표(단기, 장기)를 수립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우선순위 및 개입시기 결정, 욕구 영역별 서비스 내용, 서비스 주기 등을 명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및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또는 보호조치 변경을 위한 재평가) 주기를 설정하고, 원가정 외 보호기관 담당자와 논의하여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지원(아동복지법 제15조의5) 및 원가정 지원(복귀)계획 수립
 - ※ 원활한 면접교섭 이행을 위해 형제·자매는 가급적 동일 시설 및 지역 내 배치 고려, 아동보호팀-보호기관 간 피해아동 관련 특이사항 등 정보 공유 협력
 - ※ 원가정(가족) 연락 두절 등 면접교섭 지원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에서는 정보 주체(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연락처 수집 및 활용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
 - ※ 연장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에 따라 면접교섭 지원 계획 및 원가정 점검 계획 선택적으로 수립
- 보호조치 변경 등 필요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 보호조치 변경 등 아동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외한 단순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사례회의를 통해 변경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부터 확인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입함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함

TIP

• 보호조치 유형

- 원가정 보호 : 아동을 원가정내에서 보호하며, 아동과 그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을 연계·지원, 필요시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 의뢰 및 이관
- 원가정외 보호
 - 입양 : 유기 아동 등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 대해 영구적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조치
 - 가정위탁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며, 지속적인 원가정 지원을 통해 가정내 복귀를 목표로 하는 보호조치
 - ※ 2세 이하(36개월 미만)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우선배치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의 시설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
- 아동양육시설 : 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 등의 보호가 어려울 시 고려하는 보호조치
- 아동치료시설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시설 및 요양원 등의 입원·입소를 결정
- 기타 아동 관련 복지시설 : 장애, 친족 성폭력 피해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관련 보호시설로 보호계획 수립(종결 후 사후관리)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관련 동의

- (친부모 등 보호자) 아동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보호조치에 따른 급여 변경 등 개별보호·관리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아동보호에 대한 동의를 구함(서식 10)
 ※ 부득이한 경우 구두 확인 후 사후·서면 보완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동의 절차 생략 가능
- (아동) 최초 분리조치 및 전원조치 시 반드시 서면을 통해 아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분리 보호 및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시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서식 10-1)
 ※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에게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충분히 설명하여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TIP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자 상담 및 동의서·신청서 수령시 아동보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례결정 위원회에 있음을 알리고, 보호자의 희망과 달리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다른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참고 9 면접교섭 지원

- 「아동복지법」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본조신설 2020. 12. 29.], [시행일 : 2021. 12. 30.]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아동과 아동의 가족 간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시행일 : 2021. 12. 30.]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보호대상아동 면접교섭 방법) [시행일 : 2021. 12. 30.]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0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 시설이 제11조의2제4호에 따른 면접교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면접교섭 실시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9 수용자 자녀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및 보호조치 절차

- 보호자 수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자녀 발생 시 지방교정청 수용자 자녀지원팀 혹은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자녀 보호 의사, 주변 보호 체계 확인 후 관할(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 요원)으로 보호 의뢰
 - ※ 수용자가 자녀에게 수용 사실을 알리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아동에게 보호자의 수용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아동보호절차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수용자 자녀의 신원보호에 유의
 - ※ 보호의뢰 시 필요 구비서류 : 수용자 미성년 자녀 보호 의뢰 공문, 아동 보호조치 신청서(수용자 사회복지지원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 단, 휴일 또는 야간에는 유선으로 의뢰 가능
- 수용자의 자녀 보호 거부, 친인척 보호 등 분리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 복지서비스(희망 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등)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례관리 실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자의 수용 기간 등 보호 의뢰 사유와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결과를 종합,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보호조치 결정
 - ※ 친부모 상황점검, 아동보호동의서 수령 등 필요시 수용시설 협조를 통한 보호자 대면 실시
- 아동·수용자의 상황에 따라 접견, 전화, 편지 등 대면/비대면 면접교섭 지원
 - * 근거법령 : 수용자 사회복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65조, 제66조(법무부 예규)

참고 9 아동관련 복지시설(생활시설)의 종류

관련 법령	시설종류	비고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의13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장애인담당 부서)로 사례이관(공문)

관련 법령	시설종류	비고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31조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청소년담당 부서)로 사레이관(공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성폭력방지법 제12조	성폭력피해자 특별지원보호시설	성폭력·성매매피해지원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성폭력·성매매 피해지원담당부서)로 사레이관(공문)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9조	성매매피해자청소년 지원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시설에 보호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해당 부서(한부모담당 부서)로 사레이관(공문)

※ 보호대상아동을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보호할 경우, 아동에게 해당 시설의 특성(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함

※ 해당 부서(장애인·청소년시설, 성폭력·성매매 피해지원 시설, 한부모지원시설 담당)에 아동의 기본정보(학대피해 아동 여부, 부모의 접근금지명령 여부를 비롯한 원가정과의 관계 등) 및 입소상황,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필요성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여 사레이관하며, 사레이관 이후에도 해당 부서,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 체계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등 사례관리 협조함

※ 타 법시설 입소 이후 5년 간 연 1회(최초 1주일 이내 방문 포함) 아동의 보호상황(아동의 건강, 주거 및 안전 등) 사후관리 실시(단, 아동이 18세에 도래한 경우 사후관리 종료)

※ 이 외에도 담당 공무원·시설·아동과의 연락체계 유지하여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참고 ▶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위한 복지시설(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 친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보호 및 숙식 제공, 의료·법률지원 연계, 취학·진학 및 취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보호시설
- 해당 보호시설은 외부 비공개로 운영 중이기에, 관련 연락처 및 위치 등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담당 부서 또는 아동보호업무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개별보호·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보호의뢰 사유 (※ 중복 체크 가능) ☐ 유기 ☐ 미혼부모 ☐ 미아 ☐ 가출 ☐ 비행·부랑 ☐ 아동학대 ☐ 보호출산 ☐ 보호자 빈곤·실직 ☐ 보호자 사망 ☐ 보호자 질병 ☐ 보호자 수감 ☐ 부모이혼 ☐ 기타						사진
신원 ※ 신원불명시 「실종아동법」 신상카드 작성 ☐ 신원 확인 ☐ 신원 불명				182신고 ☐ 유 ☐ 무		
아동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보호자 (원가정)	관계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가구유형	☐ 소년소녀가구 ☐ 한부모가구 ☐ 부부중심가구 ☐ 조손가구 ☐ 미혼모부가구 ☐ 공동체가구 ☐ 기타()					
	☐ 장애탈인가구 ☐ 북한이탈주민가구 ☐ 다문화가구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육구 조사 결과	아동의 육구(우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 관계	
	☐ 경제	☐ 교육	☐ 고용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					
	보호자의 육구(우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 관계	
	☐ 경제	☐ 교육	☐ 고용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관찰된 보호자의 특성 :					

보호계획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 상당·지도(1호)		☐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2호)	
	☐ 아동복지시설(4호)		☐ 전문치료기관·요양소(5호)	
	☐ 가정위탁(3호)		☐ 입양(6호)	
	재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6조의4)			
	☐ 가정위탁(제15조제1항3호)		☐ 아동복지시설(4호)	
	☐ 전문치료기관·요양소(5호)			
	타 법에 의한 조치			
☐ 아동학대처벌법 47조()		☐ 소년법 32조()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기타()				
보호조치 일자	년 월 일	보호의뢰 기관	기관(시설)명 : 기관(시설)종류 :	
아동 서비스 계획	육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내용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비대면 가능 (대면 불가)		
		※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 유기 ☐ 미아 ☐ 법적 처분 및 학대 고위험군 ☐ 기타 ()		
		※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사유 ☐ 보호자 수감 ☐ 보호자 질병 ☐ 보호대상아동이 영아 ☐ 기타()		
	면접교섭 주기	☐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기타()		
	지원내용			
원가정 점검 계획	(원)가정복귀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원가정복귀 불가능 사유 ☐ 보호자 사망 ☐ 보호자 연락두절 ☐ 입양대상아동 ☐ 유기 ☐ 미아 ☐ 기타()		
	원가정 지원방법	※ 중복체크 가능 ☐ 상담 ☐ 사례관리 연계 ☐ 금품지급 ☐ 기타()		
	지원내용			
담당자 의견				
수립일	년 월 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②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완료 후(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 보호유형 변경, 위탁가정 변경, 타 시·군·구 사례이관 시 보호계획 변경
작성목적	- 접수상담 및 아동·친부모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아동을 보호하게 될 보호기관(가정)에서 제공할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사례관리 계획
작성방법	- 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 상담 내용, 욕구조사 결과,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 원가정지원(복귀)계획의 경우 보호자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중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피해아동보호 계획으로 같음 -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욕구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변경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입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함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 예) 출생 시 몸무게 2.5 이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 정신적 장애, 만성적 질병으로 빈번한 입원, 치료, 알레르기, 지속적 약복용, 아토피,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 표현 불가,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어려움 등 - 아동복지법 개정('21.12.30.)으로 이전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 보호대상아동은 차기 양육 상황점검을 통해 면접교섭지원계획을 수립 후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변경
활용방법	- 원가정의 보호기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아동 양육상황점검,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등 아동의 보호 종료(원가정 복귀)시점까지
기타	- 단순한 개별보호·보호관리계획 변경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제외(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 보호의뢰 사유 중 “혼외자” 삭제(아동 출생 배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혼외자’ 삭제 ⇒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인 경우 “기타” 항목에 체크)

항목		작성내용
아동, 보호자, 가구유형, 가족사항, 욕구조사 결과		-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 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록
	상담·지도,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 체크 후 드림스타트로 사례이관 ※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 제외
보호계획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요양원, 입양	-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대상 ※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

항목		작성내용
	기타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쉼터, 장애인거주시설로 보호조치 시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해당 부서로 사례이관(아동보호팀에 이관하지 않으며, 시스템에서는 심의결과까지 입력 후 종결)
	보호조치일자, 보호의뢰기관	- 시설입소 날짜 등, 해당 원가정의 보호기관명 및 시설종류 기재 예) 기관(시설)명 : 하늘 천사원 기관(시설)종류 : 양육시설
아동 서비스 제공계획	육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 육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 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 ※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에 2021년 건강검진사업 안내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계획 등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 가능여부	- 면접교섭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 시 반드시 사유 확인) ※ 면접교섭이 가능한 가족범위(민법 779조) : 친부모, 양부모, 계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 면접교섭은 '대면'이 원칙이며, 보호의뢰 사유에서 보호자 수감, 보호자질병 및 아동이 영아인 경우 등에 한하여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 - 면접교섭지원계획은 가족관계에서 면접교섭가능여부 확인 후 해당 가족구성원의 연락처 확보 ※ 「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52조에 의해 보호조치된 아동의 분리 보호가 지속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
	면접주기	면접교섭 대상자의 면접주기 체크
	지원내용	- 지원내용 등 작성 예) 격월 1회 외조모택에 가정방문(외출) 필요 월 1회(첫째주 금요일) 친모집에 외박(1박) 필요
원가정 지원 (복귀) 계획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	-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 시 반드시 사유 확인)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 육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기재 예) 분기별 상담 및 취업정보(국비지원 미용자격증 취득과정) 제공 - 입양아동의 경우 작성 제외
담당자 의견		- 아동과 보호자와 종합적인 보호계획 의견 정리
수립일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03 사례회의

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팀 팀장이 참석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
 - 시·군·구 아동보호팀 팀장과 팀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시설담당공무원 등)은 전원 참석 원칙
 - 보호대상아동이 원가정보호가 가능하거나, 분리보호가 필요하다더라도 가구 내 다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참석 가능
 - 보호대상아동을 분리 보호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호조치 관련 기관(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계자) 참석 협조
 - 그 외 사례를 의뢰한 읍·면·동 담당자 또는 타 시·군·구로 아동을 보호 의뢰할 경우 해당 시·군·구 담당자 참석 요청 가능

나 수행시기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변경·종결 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관련 사례결정 위원회 안건 상정을 위해 실시
 - ※ 보호조치 변경 등 아동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제외한 단순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사례회의를 통해 변경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결과 관련 논의 등 필요시 수시 개최

다 수행방법

- 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등 사정을 통해 파악된 정보를 근거로 보호 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하고 협의함
 - ※ 자료 공유 시 보호대상아동 및 가족구성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징구 여부 확인,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반드시 삭제, 사례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참석자에게 제공한 회의자료 수거하여 파기
-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유형과 보호기관, 장·단기 목표를 설정 하는 등 구체적인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 11)에 대해 현장 실무자와 협의 및 조정
 - 특히, 원가정 외 보호기관(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에게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내용, 방법(제공 횟수 및 시간) 등을 확인 및 협의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충분히 설명

-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가정내에서 보호하되 조사·사정과정에서 나타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자원 연계 등 협의
- 보호조치 후에도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과 아동 및 가정에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적절성 및 진행상황 점검
 - 사례회의를 통한 사례점검 시 서비스 개입 여부, 서비스 내용, 아동 및 가정의 변화, 장·단기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내용 포함

〈표 8〉 사례회의 종류

보호조치 검토	모니터링(사례점검)	보호 변경/종결
•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정 결과 공유 및 분석 • 보호조치 필요 여부 판단 • (보호결정 시) 보호유형 및 보호기관 등 논의 • (가정내 보호 결정 시) 서비스·자원 연계, 사례관리 이관 여부 논의 등 • 장·단기 목표 등 보호계획 논의	• 서비스 내용 및 제공 주기, 적절성 등 논의 • 아동의 욕구 및 태도 변화 등 점검 • 원가정 양육환경 변화 점검 및 서비스 제공 현황 점검 • 장·단기 목표 점검 및 신규목표 수립	• 재평가 결과 분석 및 보호조치 변경/종결 여부 판단 • 사례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 및 가족의 변화 논의 • 사후관리 계획 논의

04 보호조치 결정

가 수행주체

■ 사례결정위원회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 변경, 보호종료 등에 관련된 심의 업무 수행
-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담당공무원 등), 아동보호 전문기관,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의견 개진을 위해 참석할 수 있음
 - ※ 사례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운영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사례결정위원회 전반적 운영 지원
- 단,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변경·보호종료 외의 일시보호 연장 등 안전상정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함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일시보호)로 조치된 학대피해아동의 즉각분리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이 직접 안전 작성 및 상정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제6호(친족, 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양 등)의 분리보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담당

나 수행시기

- 신속한 보호조치 결정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학대피해 또는 긴급하게 보호해야 할 사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우선 일시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보호조치의 적시성을 고려하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보호조치 의뢰 후 2주 이내 개최하도록 노력함
- 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의 일시보호(즉각분리)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최대 6개월까지, 6개월 초과 시 중장기 보호 결정 필요) 연장할 수 있으며, 사례결정위원회 필수 심의대상임(일시보호연장 심의 시 가정복귀 및 장기보호 전환 여부도 검토해야 함)
 - ※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비공개 시설임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실거주지(쉼터 소재지)에서 기초 생활보장급여 신청·선정하며 아동 주소지와 실거주지 간 공동 사례관리(양육상황점검 등) 진행
 - ※ 최초 일시보호조치 및 일시보호 후 추가적 분리보호가 아닌 원가정복귀인 경우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요시 사례결정위원회 안전 상정 가능함
- 피해아동이 일시보호 후 장기보호조치로 전환할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피해아동보호계획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 상정할 수 있도록 협조함
-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경우 안전으로 상정하여 진행
 - ※ 아동학대조사결과에 따른 현장판단(판단척도 사용), 자체사례회의, 통합사례회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 결정이 어렵거나 모호한 경우, 또는 판단결과를 변경해야 할 타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사법기관의 결정, 추가증거 확보 등)에는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논의 가능함
 - * 재판단의 의미가 반드시 기존의 판단을 변경하라는 의미는 아님
 - ※ 관련한 세부내용은 아동학대대응 업무매뉴얼 참고

다 심의 내용 및 방법

- ※ 추가적인 내용은 제3부 부록 I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내용 참조
- (심의 내용) 아동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구에서 수립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의 적절성을 심의, 최종 확정
 - 아동에 대한 분리보호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기간 등 적합성 논의 및 결정
 - 가정위탁 연계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가정위탁 미연계 시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서식 39-1)’ 등 가정위탁 연계 검토 사유 및 기록을 첨부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안전 상정
 - ※ 시설보호(4호) 결정 및 변경 시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필수 첨부. 단, 일반가정위탁(친인척) 또는 아동의 거부 의사 등 가정위탁지원센터 연계 의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내부(통합) 사례회의록으로 갈음 가능

- 보호대상아동 및 해당 가정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및 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논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내에 사용 가능한 자원 확인
-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시 <표 6>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안전 상정
- (심의 방법)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호조치 결정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적시에 아동의 보호조치 심의 및 보호조치 결정이 이뤄지도록 추진
 - ※ 보호대상아동을 타 시·군·구에 있는 시설로 보호하고자 할 경우 해당 시·군·구와 협의 필요
 - 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그 외 아동보호를 의뢰받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여 의견 개진 가능
 - ※ 위탁가정 연계 및 배치 등 아동의 가정형 보호 추진을 위한 보호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가정위탁 지원센터 담당자 등 사례결정위원회 참석 권고
- (결정 통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아동보호를 신청한 보호자 및 아동을 보호할 기관, 아동에 보호조치 결정통지서(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
 -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실제 보호조치 날짜 이전에 아동에게 생활하게 될 보호기관 등 관련 사항을 설명하여 사전에 아동의 적응을 돕도록 노력함
 - 결정통지대상이 학대행위자인 경우, 보호결정통지서 상 '시설(기관명)' 제외하여 송부
 - ※ 심의결정이후 원가정 외 보호기관 사정으로 입소시일이 늦춰질 경우 일시보호시설과 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함
 - 보호조치가 입양으로 결정된 경우,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서식 42)를 발급하여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과 함께 시스템을 통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하여야 함
 - *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내용은 타 보호조치 아동과는 구분하여 개인별로 작성하되, 회의록이나 회의 내용에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사유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추가로, 아동 및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승낙서, 상담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입양 대상아동결정확인서 등은 등기우편으로 원본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송부하여야 함

〈 표 9 〉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주요 항목	실행 여부		비고
1. 아동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는가?(만12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함)	예	아니오	
2. 아동상황점검표에 따라 아동의 기본적 욕구가 충분히 파악되었는가?	예	아니오	
3. 아동상황점검표 항목 이외에 추가적인 특이사항은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4. 친부모상황점검표에 따라 보호자의 상황이나 욕구를 충분히 파악했는가?	예	아니오	
5. 친부모상황점검표 이외에 보호자 상황, 가구 여건 등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6.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및 보호조치 기간 수립 시 아동의 이익이 최대한 고려되었는가?	예	아니오	
7.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수립 시 가정형 보호(가정위탁, 입양)를 먼저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예	아니오	
8.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졌는가? 아닌 경우 언제부터 가능한가?	예	아니오	
9. 아동이 질병, 장애, 학대 등으로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 내용이 보호계획에 반영되었는가?	예	아니오	
10.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후 점검 및 사후관리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1. 원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은 수립되었는가?	예	아니오	
12. 아동 및 원가정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예	아니오	

TIP

· 사례결정위원회 보고 사항 체크리스트(예시) 7번 항목 부가설명

※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❶ 먼저 원가정 보호가 가능한지를 최우선 고려하고, ❷차선으로 가정형 보호(입양, 가정위탁)를 고려하며, ❸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시설형 보호를 진행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15조)

· 시설형 보호를 하기까지의 고려사항(가상 시나리오)

- ❶ 원가정보호 가능 여부(1호) : ex) 가정방문결과 가정환경이 두 아이를 기르기에 적합하지 않고, A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가정 보호 불가한 상황으로 판단됨
- ⇒ ❷-1 친인척보호 및 가정위탁 가능 여부(2호·3호) : ex) □□시 시설담당공무원 및 □□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2.2.4. 기준 아이를 맡을 수 있는 위탁가정이 □□시 및 인근 지자체에 없고, A가 오랜 기간 가족과 왕래가 없어 자녀를 맡아 가정위탁을 신청할 친족을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임
- ⇒ ❷-2 입양조치 가능 여부(6호) : ex) A는 일시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때 까지만 자녀의 보호조치를 원하므로 입양은 고려할 상황이 아님
- ⇒ ❸ 시설입소 가능 여부(4호·5호) : ex) 원가정 보호 및 가정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시 △△양육시설에 입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양육상황 점검 등을 통해 가정형 보호로 보호조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함. 사례회의('22.2.10)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함

TIP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 및 시설부족, 타 지역 아동 등을 이유로 아동보호양육 의뢰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의뢰(전출·입 등)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 운영
 - 특히, 시·군·구는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라도록 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제2조) 취지를 감안, 타 지역 아동이라는 이유로 관내 시설입소를 제한 및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 방지 조치

〈출처 : 아동분야 사업안내 1〉

참고 ②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국가아동권리보장원 운영)

목적	•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내용	• 아동에게 필요한 상담·치료·아동-원가족간 교류 프로그램 등 - 아동 상담·치료비,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아동-원가족간 교류,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지원 : 부모교육, 가족상담, 외식, 체험활동, 캠프 등
행정사항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아동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전문가의 제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 시·도 및 시·군·구는 관내의 시설아동 중 '아동양육상황점검' 등을 통해 심리·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아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신청방법	•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신청서류 제출(문서24) - 사업신청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사전검사 결과지, 치료사 자격증

참고 ③ 청소년 치료재활센터(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대상	•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9세~18세) • 우울증, 불안장애, 학교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대 및 학교 폭력 피해 청소년 등
내용	• 정서·행동영역에서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디딤과정(4개월), 오름과정(1개월), 힐링캠프(4박5일), 대상특성화캠프(11박12일) 등 제공 • 상담·치료(정신의학적 상담), 보호(거주형 보호시설), 교육(검정고시 지원), 자립지도(직업 교육, 체험 활동 등) 지원
방법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교육청, 학교, 위(Wee)센터, 가족센터, 아동복지시설 등을 통해 신청 ※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참고 9 아동보호 조치 결정 시 디딤씨앗 통장 신청

대상	•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보장가구 아동, 기 가입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기초생활보장가구 아동 가입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령기준) 12~17세 → 0~17세					
지원기간	• 0~18세 미만까지(매칭은 18세, 본인적립은 24세까지 저축가능)					
지원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본인명의 디딤씨앗통장에 적립 시 국가가 월 5만원 내에서 1:2매칭 지원 ※ 추가적립액 :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추가 적립액은 국가 매칭 없음)					
만기지급 및 조기인출						
	구분		요건	지급구분		비고
				아동 적립금	정부매칭금	
	만기 지급	만기해지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	○	24세 이후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 후 적립 예금인출	18세 이상, 대학 생활비 지원	○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시	아동적립금 한도 내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인출		15세 이상, 3년 이상 적립	○	18세 이후,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시	아동적립금 한도 내 2회까지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 의료, 결혼 등						

참고 9 휴대폰 가입 곤란 아동 지원

대상	4세 이상의 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부재나 경제적 곤란으로 휴대폰 가입이 어려운 아동
지원내용	• 아동 명의의 휴대폰 가입 지원 • 스마트폰 무상 및 저가 지원 ※ 휴대폰은 통신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생계수급자) 월 28,600원 감면, (교육,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19,400원 감면 • 청소년요금제 사용 및 각종 휴대폰 인증 가능 • 청소년유해사이트 차단, 소액결제 원천 차단
구비서류 및 배송 기간	• 기본서류 : 가입신청서, 대리인신분증 원본 외 보호 종류별로 서류 추가 • 배송기간 : 배송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3일~5일 정도 소요
문의처	• (주)희망고리 • ☎ 02-943-1365, FAX : 0504-268-4488,  www.hopeu.kr

Q&A

보호계획 및 결정



피해아동도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해야 하나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립한 피해아동보호계획으로 갈음 가능
-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대상으로 상담, 욕구조사, 아동상황점검 등 추가 실시



시·군·구 사례회의의 운영 주체는 누구인가요?



- 아동의 주소지 기준 아동보호팀장 주관하에 진행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건강검진 결과, 가정환경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별보호·관리계획 초안 작성 및 논의



시·군·구 사례회의의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시·군·구 내 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팀원(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설·가정위탁 담당 등) 전체 참석 필요
- 그 외 보호계획에 따라 ① 아동을 보호 의뢰할 시설 담당자, ② 아동 또는 가정에 사례관리를 의뢰(ex. 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가정위탁지원센터 등)할 담당자, ③ (타 시·군·구 시설 입소 시) 시설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 ④ (보호출산아동의 입양을 고려할 경우) 지역상담기관 담당자



사례회의의 후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아동 및 가족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아동통합서비스 및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센터,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위기청소년교육센터, 각종 민간기관) 또는 한부모·조손가족 복지서비스 연계. 단, 보호자 동의 필요



타 시·군·구로 아동을 보호의뢰 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주체는 누구인가요?



-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의 주소지에서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입소할 시설 주소지 시·군·구에 이관



피해아동이 학대의 사유로 보호조치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인 피해아동의 학대 외 사유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보호전담요원이 협의하여 피해아동보호계획을 변경함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상황을 공유하고, ②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친부모·아동 상황점검 등 추가적인 사정을 통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전달함. ③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피해아동보호계획 변경 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며, ④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상정 및 보호조치 결정 후 양육상황점검 실시



입양대상아동(6호)의 보호조치 변경(3호, 4호) 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 입양정책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양이 곤란한 아동으로 결정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확인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조치 변경 또는 유지(입양)를 검토하여야 함
- * 아동을 인도한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므로 친권자의 동의는 필수가 아니며, 입양동의를 철회한 때 다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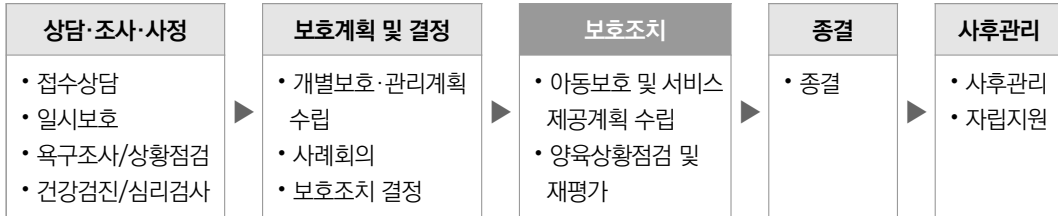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인 시설입소 시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6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2에 따라 동의받아 보호조치 실시
-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절차의 대행자)민법에 따른 장애인의 후견인,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 장애인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IV 보호조치

01 개요



- 사례결정위원회의 아동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수행
-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서는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제공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서비스 이행상황, 양육상황 및 아동의 욕구 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02 아동의 보호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례관리

가 수행주체

-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양육시설 등)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 사례관리
- 보호대상아동의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 담당공무원(시설, 가정위탁 등 담당공무원)
 - 필요시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지원

나 수행시기

- 사례결정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후
 - 다만, 아동학대 등 긴급한 보호사유가 발생하여 심의 전 보호조치하는 경우, 우선 보호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례관리 가능

다 수행방법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아동보호 요청
 - (공동) 심의 결과에 따라 위탁부모 및 아동복지시설장에게 아동 인도하고,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접수상담지(서식 1),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아동·친부모상황점검 결과(서식 8, 서식 9), 아동보호동의서(서식 10), 아동카드(서식 12), 개별보호·관리 계획(서식 11) 송부
 -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신청서(서식 29),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서식 30) 송부
 - ※ 읍·면·동 및 시·군·구청장은 가정위탁보호조치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서식 39) 발급 요청 시 즉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내역을 반드시 기록·관리
 - (양육시설, 치료시설 등) 시설입소(이용)신청서(서식 40) 또는 아동입원 의뢰서(서식 41) 송부
 - ※ 전문치료기관 및 요양소(5호) 보호조치 시 해당 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한 경우, 5호 조치를 결정한 시·군·구에서 주사례관할 담당
 - (입양) 아동보호를 의뢰한 위탁가정 또는 양육시설 등에 아동 인도시 입양대상아동 인도 확인서 및 입양대상아동 입소 확인서 발급, 관계기관 등의 요청 시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급
 - (급여 등) 보호조치에 따른 급여(아동수당, 기초생활급여) 수급 변동사항은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 ※ 아동의 주소지 시·군·구가 아닌 타 시·군·구 양육시설(가정위탁 포함)에 보호조치할 경우, 심의 확정 후 시설 주소지 시·군·구에 사례이관하고, 이관받은 시·군·구는 보호시설에 아동정보 공유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서식 13)을 수립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고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제공내용, 방법(제공횟수 및 시간)등 상세히 작성
 - 조속하고 안정적인 원가정복귀를 위한 원가정 지원 계획 및 아동과 원가정의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 제공 계획 포함

〈표 10〉 아동의 보호조치 관련 업무분장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 양육시설, 입양 등)
● 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 양육상황 점검(개별보호·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점검) ● 사례회의 개최(주관) ● 주기적인 사례점검 및 원가정 외 보호기관 모니터링 ●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 ● 원가정 지원(상담, 지원 등)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 ● 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 ● 사례회의 참여 ● 원가정 지원(상담, 관계개선, 부모교육 등) ● 면접교섭지원 ● 지역사회 내 자원개발 및 연계

작성예시 아동카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아 동 카 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보호의뢰 사유 (※ 중복 체크 가능) ☐ 유기 ☐ 미혼부모 ☐ 미아 ☒ 가출 ☐ 비행·부랑 ☐ 아동학대 ☐ 보호자 빈곤·실직 ☐ 보호자 사망 ☐ 보호자 질병 ☐ 보호자 수감 ☐ 부모 이혼 ☐ 기타		
신원 ※ 불명 시 「실종아동법」 신상카드 작성 ☒ 신원 확인 ☐ 신원 불명	182신고 ☐ 유 ☒ 무	

아동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충북 청주시 ○○구 00로 00-0		나이	11 세 ([]추정 [√]확실)
	주소 충북 청주시 ○○구 ◇◇길 000			
	학교명	◇◇초등학교 4 학년	기타	
	발생 일시	○○○○. 9.21	발생 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00동 유흥가 근처	

보호자	관계 모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서울시 송파구 ○○로 00길 00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010-xxxx-xxxx	
	월수입 220만원	생활수준 []상 []중 [√]하 []수급자	주거 []자가 []전세 [√]월세	

가족관계	관계 외조모	성명 △○○	생년월일 19××년 9월 2일(55세)	직업 청소노동자
	관계 동생	성명 ○○△	생년월일 20××년 8월 16일(5세)	직업 ◇◇어린이집
	관계 동생	성명 ○○□	생년월일 20××년 8월 16일(5세)	직업 ◇◇어린이집

보호조치 사항	날짜	20××년 10월 5일	보호조치 유형 [√]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 입양의회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보호시설명	○○가정위탁지원센터	주소

가정환경 (성장 과정)	1. 동거 중 아동 출산 및 홀로 양육함. - 모(△□□)는 고등학교 때 부터 후 남자친구 동거 중 첫째 ○□□ 출산 - 태어난 지 백일이 될 무렵, 남자친구가 가출했고 이후 연락두절 2. 결혼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 - 혼자 아동을 양육 중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둘째 쌍둥이 ○○△, ○○□을 출산 - 남편의 사업부도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아동양육 문제, 가정폭력으로 결혼 2년 만에 이혼함 3. 첫째 아동과 모의 갈등으로 양육어려움 호소 - 첫째 아동(○□□)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늦은 귀가를 일삼았고, 이 때문에 모와 잦은 갈등 발생, 모에게 꾸중을 듣고 나면 화풀이로 동생을 때려 동생들이 오빠를 무서워 함 4. 양육의 어려움으로 아동을 외조모에게 보냄 - 모는 일방적으로 아동을 외조모가 살고 있는 청주로 보냄으로 갈등 고조됨 5. 외조모의 양육기술 부재 - 외조모는 아동을 어떻게 양육해야할지 몰라 아동을 거의 방임상태로 둠. 아동은 외조모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는데 그러던 중 서울 친구들이 연락하여 가출함
상담자 의견	아동과 모의 갈등이 깊어 관계개선이 필요(상담, 가족상담)하며, 외조모가 아동에 대한 양육의지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가정위탁하면서 아동상담, 가족상담 및 외조모에게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원가정 복구가 필요함
지도·판정	1. 모와의 갈등 지속_해결되지 부족 - 아동은 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여 모에 대한 반항과 갈등이 커졌고 모가 동생만 감싸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음. 모와 함께 살기 싫다고 거부했으며, 계속 같이 있으면 가출을 계속 할 것 같다고 함 2. 가정환경 및 경제적 열악 - 모는 현재 상황(근무여건, 수입/집안환경, 부채 등)을 고려할 때 아동 셋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하다고 함 3. 양육어려움 - 모는 아동과 문제해결 없이 이대로 같이 살 경우 아동을 학대할 것 같고, 아동은 가출일 일삼을 것 같아 문제가 커질 것 같다고 함. 시간을 두고 관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함 - 외조모는 첫 손자에 대한 애착이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훈육에 대해 인지함 - 상담·교육을 받으며 주변에서 도와주면 아동을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금품 지급사항	- 한부모 가족 물품지원

소속	직위	작성일 성명 △△△	20××년 10월 5일 (서명 또는 인)
----	----	---------------	---------------------------

※ 보호의뢰 사유 중 “혼외자” 삭제 (아동 출생 배경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혼외자’ 삭제 ⇒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인 경우 “기타” 항목에 체크)

03 양육상황 점검 및 재평가

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제6호에 따라 보호중인 아동을 주기적으로 양육상황 점검(아동 양육상황 및 원가정 모니터링) 실시
 - ※ 원가정 주소지가 다른 경우, 원가정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원가정 모니터링 협조요청 가능
- 읍·면·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보호 담당자
 - 방문 동행, 자료 제출 등 양육상황 점검에 협조
 - ※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은 입양허가 전까지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양육시설, 위탁가정, 원가정 등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실시하고, 양육상황점검 보고서(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 참고)를 작성하여야 함(보호자가 입양으로 의뢰한 아동 참고)

나 수행시기(점검시기)

- 보호조치 후 1개월 이내 방문하여 점검하고, 이후 분기별 점검 실시
 - ※ 예) '21년 10월 보호조치 → '21년 11월 1차 양육상황점검 → '22년 2월 2차 양육상황점검
- 필요시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라 양육상황 및 원가정 점검은 수시 실시 가능

다 주요 점검 사항

- 서비스 제공 계획의 달성수준 파악(양육상황 점검표 활용, **서식 15**)
 - ※ 입양대상아동의 경우, 양육상황점검 보고서 서식 15-1로 작성
- 보호대상아동의 적응상태, 변화정도(수립된 목표 일치성)
 - ※ 특히 아동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아동 상태 등에 대한 점검 및 아동 의견 반영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양의 충분성, 서비스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의 품질과 이에 대한 아동의 만족도, 서비스 제공 방법의 적절성 등
 - ※ 아동 상황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 상담 시 아동의 실제 욕구 등을 파악하도록 함
- 아동의 욕구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욕구 재조사(건강검진, 심리검사 등) 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정 필요 여부 등

- 서비스 제공여건, 서비스 제공자의 변화 여부, 서비스 제공기관 사이의 연계 및 협력의 원활성 등
- 면접교섭이행여부 파악
 -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서 작성한 면접교섭일지를 바탕으로 면접교섭이행 여부, 면접 내용, 아동소감 등
- 아동별 자립지원계획 수립 여부 및 자립지원 현황 파악(15세 이상)
 -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서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수립해야 하는 자립지원계획(아동복지법 제39조)의 수립 여부, 계획의 적절성 및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 등
- 가족돌봄 현황 점검
 - 보호중인 아동의 가족돌봄 여부, 주기 등 현황 점검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 연계, 보호조치 변경 필요성 검토 등

TIP

• 아동 양육상황 점검사항

- 아동이 수립된 목표에 맞게 보호되고 있나?
- 아동의 삶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
- 아동이 서비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나?
- 아동의 변화에 따라서 보호조치 또는 개별보호·관리계획 수정이 필요한가?
- 서비스 제공 상의 문제는 없나?
- 아동의 원가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나?
- 아동과 보호자(친부모 등)와의 면접교섭이 진행되고 있는가?
- 15세 이상 아동의 경우 아동별 자립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

라 수행방법

- (양육상황점검) 서비스 제공기관(원가정 외 보호기관)의 사례관리를 모니터링하여, 아동 및 원가정의 상황을 파악(직접 방문 원칙, 아동의 상황·및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유선 상담 가능)
- (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보호아동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기타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 등 점검대상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동행 방문·합동 점검 권고(통합 사례회의 활용)
 -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육상황 점검을 위해 해당 기관이나 가정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3)

- 방문상담 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아동인 경우, 위탁부모·시설담당자 등 보호자를 제외하고 독립된 장소, 또는 외부 장소(카페 등)에서 아동과의 단독·대면상담을 진행하여 아동의 상황(만족여부, 구성원 관계 등) 및 실제 욕구를 확인
※ 외부 상담 시, 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비 활용
- 가출 등 아동의 보호체계 이탈 시 경찰을 통한 아동 소재지 파악, 원가정·보호기관(시설, 위탁 등) 간 연락체계 유지 및 지속 모니터링 실시

참고 9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경찰청예규)

제11조(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호자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실종아동등을 인계한다.

- 아동학대 의심신고 등 아동의 안전 및 복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시 양육상황점검을 통한 아동 상황 파악 및 원가정의 보호기관과의 협력 필수
- (원가정) 유선 상담 또는 사례관리 연계 시 연계기관을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
※ 입양대상아동 등 원가정 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원가정 점검 제외
- (기타) 「아동복지시설 거주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조사」시 시설담당 공무원은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작성한 최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 점검자에게 아동의 상황 등 정보 공유(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양육상황점검결과 공유)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실태점검 시 필요한 경우 양육상황점검 동시 수행 가능
- (위탁가정 수급비 점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점검 시 아동의 영양·위생상태, 발달부진 등 이상징후를 발견하는 경우, 시·군·구 급여담당 부서(급여관리과 등)에 생계급여 관리 점검을 의뢰하고, 의뢰를 받은 생계급여 담당 공무원은 급여관리 점검 실시(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2715(‘26.3.24.)호, 가정위탁 부모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 실태점검 이행 개선사항 안내)
▶ (이상징후 예시) 영양·위생상태, 발달부진, 위생상태 불량, 낡은 옷차림, 영양부족 및 건강문제 방치 등 ⇨ 위탁부모가 아동 양육에 지원금(양육보조금 등)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
※ 점검 의뢰를 받은 생계급여 담당 공무원은 일제 조사대상에 해당 위탁가정을 포함하여 근시일 내 점검 실시(위탁부모에게 사전 통보 필요) 필수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점검표』 점검결과 및 총평란에 관련 내용 기재 필요)

- 기존 시설보호아동이 관내 또는 관외 시설로 전원하는 경우, 전원 후 3개월 동안(전원 후 일주일 이내 시설방문을 포함하여) 월 1회 양육상황점검 실시
 - ※ 관외시설로 전원하여 타 지자체로 소관이 이관되는 경우, 기존 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가급적 동행하여 합동으로 양육상황점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보호조치 변경·종결 등)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아동의 욕구를 재조사하고, 보호목적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 및 보호조치 변경 또는 보호 종결을 실시
 -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결정(변경·종결)통지서(서식 25)를 보호자에게 송부
 - ※ 타 시·군·구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로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 주소지 시·군·구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및 사례이관하고, 이관받은 시·군·구는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아동정보 공유
 - ※ 보호목적 달성으로 종결할 경우 종결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 ※ 친인척 가정으로 조치한 경우, 해당 가정의 양육 환경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가정환경조사서(일시보호)를 활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축약형 가정복귀 절차 적용
 - 새로운 욕구 발견 등 단순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은 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 점검결과 서비스의 종류, 횟수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재수립
- (18세 이후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개요)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가능
 - *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규정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표현되어 있음
 - (절차)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은 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서식 16)를 제출,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보호연장 기간에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또는 소멸 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을 안내
 - ※ 24세까지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의 경우 아동의 연장 의사만 확인되면 추가 조건없이 승인하여야 함 (사후·서면보고)
 - (연장시 양육상황점검) 보호기간 연장 시 시설(가정위탁) 외 거주지(대학교 기숙사, LH 임대주택 등)에서 거주하더라도 양육시설(가정위탁) 주소지에서 양육상황점검 실시하되, 필요시 공동사례관리로 아동 소재지에 양육상황점검 요청 가능
 - ※ 연장 아동(재보호조치 아동)의 경우 면접교섭 지원 계획 및 원가정 점검 계획은 아동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립
 - (추가 연장)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가 25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의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 가능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각호에 따른 추가 연장 사유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사후·서면 심의 통해 결정

- (별도 거주) 보호기간을 연장한 대상자가 아동양육시설 외 거주지에서 별도 거주할 경우 (대학교 기숙사 등)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 신청 가능,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별도 거주 중인 연장 아동에 대한 지속적 관계 및 정기적 연락 유지 필요

● (18세 이후 재보호조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재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보호 결정

- (개요)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사람이 18세 이상이 되면 다시 보호조치될 수 없었으나, 「아동복지법」 제16조의4가 신설됨('24.8.7. 시행)에 따라 재보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재보호 가능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 및 시행령 제22조의2 규정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표현되어 있음

- (절차)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사람 중 재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기준 시·군·구에 재보호조치 신청서(서식 16-2)를 제출,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재보호조치 결정하며 이외의 사항은 신규보호아동 보호결정과 동일하게 처리

※ 대리인(친족,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장·종사자 및 위탁부모) 신청도 가능(서식 16-3)

- (접수·상담)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재보호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재보호 신청 대상자와 유선 또는 내방으로 접수상담을 실시(서식 1)하며, 1주 이내 재보호조치 신청자에 대한 욕구조사(서식 4)를 위한 방문상담 실시

※ 접수상담 전 행복이음, 보호종료확인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과거 보호조치·종결 이력을 확인하고, 보호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식 2)를 재확보해야 함

※ 접수상담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된 재보호 사유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증빙서류 요청, 희망 보호 유형(지역, 시설유형 등)을 파악

- (재보호계획수립) 접수상담, 전담기관 사후관리 상담 내역 등을 근거로 사례회의를 거쳐 보호유형 등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서식 11)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신청인의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파악 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재보호조치 의견서(서식 24-1)와 자립수준평가서(자립지원업무매뉴얼 서식 15)를 공문으로 요청하며 필요시 재보호조치 신청인의 동의 하에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요청 가능

- (재보호결정)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후 자립전담기관의 재보호 관련 의견서(서식 24-1)를 제출받아(필수, 단,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대상자가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재보호조치를 결정하고, 대상자 및 보호기관에 보호조치결정통지서(서식 25)를 7일 이내 송부

※ 재보호조치 대상자가 최초 보호종료 후 5년 이내로 자립수당·의료비 지원,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는 주소지의 자립수당 담당 부서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재보호조치 결정 사항 안내

- (재보호조치)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장, 위탁부모에게 대상자 인도하고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접수상담지(서식 1), 아동카드(서식 12),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 11), 가정위탁보호신청서(서식 29) 또는 시설입소 신청서(서식 40) 또는 입원의뢰서(서식 41) 송부
 - ※ 보장시설 생계급여 수급 등 재보호조치에 따른 기초생활급여 수급 변동사항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보호기관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고 서비스를 제공
 - ※ 서비스제공계획(서식 13) 중 원가정 지원계획 및 면접교섭서비스 제공 계획은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라 선택적으로 기재
- (재보호의 연장) 재보호한 대상자가 25세 이상이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하나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제16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서식 16)와 함께 제출한 경우 재보호 기간 연장 가능
- (양육상황 점검, 생계급여 개별 지급 등) 재보호조치 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보호기간 연장아동에 준하여 운영
 - ※ 재보호조치 전 대상자 상담 시 재보호조치 이후의 지자체 양육상황점검 의무 및 협조에 대해 사전 안내 필요
- (재보호의 종결) 보호연장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종료하되, 보호종료 신청 및 보호종료 내역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수당 담당 부서에 통보할 때에 재보호 종료자임을 안내(자립수당 지급 기간 산정 등 참고)
 -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중 재보호조치 된 아동의 경우 재보호조치 이전에 사후관리를 담당했던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재보호 종료 대상자 명단 송부

참고 ● 재보호조치 대상자의 보호유형 결정 시 고려사항

- 재보호조치 대상자의 보호유형 결정 시 자립역량을 높이도록 자립지원시설 입소를 우선 검토하고, 입소가 곤란한 경우 1인실 등 독립된 생활공간을 갖춘 위탁가정·시설·기관 입소 검토
- 가능한 보호유형은 가정위탁(3호), 아동복지시설(4호), 전문치료기관·요양소(5호)이며, 대상자가 기존에 보호종료된 위탁가정·시설·기관이 아니더라도 보호 가능
- 대상자의 상황(희망하는 지역 및 보호유형, 재보호 사유 등)과 가능한 보호유형 현황(입소 현원, 독립생활공간 구비 여부, 보호 중인 아동 연령대·양육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표 11 〉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방안

점검결과	조치방안
- 서비스가 진행되면서 심각한 신규 욕구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보호대상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 예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등 문제 발생 - 현행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할 수 없거나 아동이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 * 예시)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희망 할 경우,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보호를 희망할 경우	욕구 재조사 보호계획 변경 보호조치 변경 아동학대신고 등
- 서비스의 종류, 양 및 횟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제공자의 여건 변화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 제공 계획 재수립
- 부모 등 보호자의 상황이 호전되어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보호자의 문제가 완화되었고, 아동과 결함을 희망하는 경우 -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희망할 경우	종결을 위한 평가

〈 표 12 〉 아동보호조치 재평가 시 점검

재평가 시 평가항목	점검내용
원가정 복귀 검토 (서식 17 가정 복귀 점검표)	- 친부모의 양육 희망정도 - 아동의 가정 복귀 희망정도 - 원가정의 경제적 상황, 주거환경, 생활환경의 안정화 정도 - 친부모의 양육준비태도 - 주변의 평가정도
다른 양육시설 혹은 가정위탁으로 변경을 검토	- 아동이 원가정 외 보호(대리보호)에 대한 만족도 - 아동의 보호 목적 달성 정도 - 원가정 외 보호기관 담당자와 관계정도 - 원가정 외 보호기관(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또래관계 정도

TIP

• 소년법상 보호처분(제32조)을 받은 아동 관련 조치사항

- ①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지자체에서는 보호 일시중지, 보호처분 종료 후 보호조치 또는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 ②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지자체에서는 보호 일시중지 후 감호위탁 된 시설과 연락체계 유지하며 아동 모니터링 실시(건강 및 생활환경, 처분 종료 및 위탁 기간 연장 여부 등(퇴소에정일), 기타 특이사항)
* 사례결정위원회 생략, 아동상황 모니터링 시 유선·메일 등 비대면 방법 활용 가능
- ③ 보호처분 전 아동을 보호했던 지자체에서는 보호처분 종료 전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점검, 보호처분 종료 후 아동보호서비스 재개 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변경) 또는 종결 후 사후관리 실시
* 기존 동일한 시설 및 위탁가정으로 복귀 시 사례결정위원회는 생략하되, 보호조치 변경 및 위탁가정 자격 재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진행
- ④ 보호처분 중 18세 도래 아동의 경우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여 종결 및 연장 여부 결정
※ 형사처분(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보호중인 아동이 만 18세 미만인 경우 동일 절차 적용. 단, 아동이 만 18세 이상(보호연장)인 경우 종결 후 사후관리(5년) 실시

TIP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시 절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보호계획 변경, 아동 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전원할 시설에 인계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피해 아동 보호계획 변경 요청서 송부	② 피해아동보호계획 변경요청서 확인	④ 보호체계 변경 등 필요 조치 검토 (필요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청취)
⑨ 아동의 전원 조치 결정 내용 확인 후 아동 직접 인도	③ 아동보호전담요원 조치변경에 필요한 내용 공유	⑤ 아동 및 친부모 상황점검 ※ 피해아동의 경우 친부모상황 점검 생략가능
⑩ 변경된 피해아동보호계획서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계획 재수립	⑥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하여 전담요원에게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요청	⑦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해당 시설 통보
⑧ 변경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아동 보호전담기관에 연계		

※ 표의 원문자 번호 순서에 따라 업무 진행

참고 보호조치 중인 18세 이상 아동 중 보호기간 연장사유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보호기간 연장	【법 제16조의3 제1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일(22.6.22.) 이후, 아동의 연장 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사유 없이 25세 미만까지 지원 ※ 보호기간 연장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 따름 ※ 보호 일시중지: 군 복무 기간, 90일 이상 해외체류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 추가연장	【법 제16조의3 제3항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보호 일시중지: 군 복무(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보호기간에 포함), 2년 단순 휴학 - 단, 단순휴학은 연속 사용만 가능하며, 이외 단순 휴학은 종결사유 - 단,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신청 관련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단순휴학으로 처리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보호기간 연장 - 단, 질병, 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동안 보호기간 연장 - 단,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보호기간 연장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법 제16조의3 제3항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연장종료
	【시행령 제22조 제2항제1호】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의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 장애·질병 등은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시행령 제22조 제2항제2호】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립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자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 제2항제3호】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기간의 추가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참고 ② 연장기간 중 보호 일시중지

- 24세까지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군 복무* 및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보호 일시중지
 - * 병역법 제18조2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말하며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취업으로 간주 (단, 병역법 제19조 1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기간을 따름)
- 25세 이후, 대학입학으로 보호기간이 추가 연장된 경우 군 복무*, 2년 단순휴학**(단, 연속 사용만 가능)시 보호 일시중지
 - * 단, 입대 전·제대 후 복학을 위한 대기기간은 연장 보호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등으로 위탁가정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을 하는 경우 연장 보호, 군입대 휴학의 경우 입대 신청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미제출 시 단순휴학 처리)
 - ** 2년 이내(연속사용) 휴학 이외 단순휴학은 종결사유, 질병·사고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 동안 연장 보호
- 보호 일시중지 사유 발생 시 익월부터 양육상황점검을 중단하고,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연장 보호가 재개된 달부터 양육상황점검 재개
- 시설급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등 재정 지원은 각 사업 지침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름
-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보호 일시중지 처리 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통보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사례 관리를 통해 일시중지 기간 동안의 아동의 변동사항(주소지 변경 등)을 확인하여 일시중지 사유 소멸 이후 연장 보호 지원
- 단순휴학 종료로 보호 일시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대학에 복학할 경우 연장 보호
 - * 일시중지 사유 소멸 후 대학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일시중지 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보호 종결 처리
- 편입 및 재입학 등으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된 학교의 졸업 시까지 연장 보호

참고 9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 생계급여 지급 제도 개선 개요

- 18세 이후 보호기간을 연장한 경우 아동양육시설 입소 상태에서 기숙사 등 별도 거주가 가능하나, 실거주지와 무관하게 생계급여가 시설생계급여로 시설장에게 지급
- 보호연장 기간 별도 거주 시 자립생활 경험이 가능하도록, 생계급여를 보호연장아동 개인에게 직접 일반생계급여로 지급 가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시설 입소 자격은 유지하되 일반 생계급여 책정이 가능하도록 예외 처리되며, 관리행정동은 시설 소재 시·군·구로 유지
- ※ 단, 보호연장아동이 실거주지로 전입신고한 경우 전입지에서도 대상자 정보 확인 가능

[담당자별 처리 업무]

- **(양육시설의 장)** 보호연장아동의 실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거주지 변경 예정일 7일 전까지 '실거주지 변경신고서' 및 대상자 통장사본을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제출
 -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이 보장시설 생계급여 보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생계급여 사업팀)** 공문 접수 후 통합조사표에서 해당 대상자 조회, 통합조사표 입력(시설급여 중지, 일반생계급여 책정), 보장결정 및 대상자 통지
- **(시·군·구 아동보호팀)** 보호연장아동의 보호연장 정보, 실거주지 변경 정보, 생계급여 지급 관리 정보 입력, 통합조사관리팀·생계급여 사업팀 공문 발송

① 보호연장 신청·결정 단계 : 모든 보호연장아동 대상**①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거쳐 보호연장 결정**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는 신규 연장아동에 한함(사후·서면심의)

② 아동보호서비스관리 "보호결정/변경 탭-연장"에 대상자의 보호연장 정보 입력*

(연장심의일자, 연장유형, 연장사유, 실거주지 유형 등)

* 연장 정보 입력은 신규 연장아동 및 기존 연장아동 중 개별급여 전환 대상자에 한함

② 보호연장 중 실거주지 변경 및 개별급여 지급 정보 관리 단계**① 양육시설 보호연장아동의 <서식 16-1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접수 ⇒ "보호결정/변경 탭-연장"에 "생계급여 지급 관리" 정보* 입력**

* 시설 밖 실거주지 주소, 실거주지 변경 일자, 본인 계좌정보 등

** 단, 계좌정보 검증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경우 계좌정보 등록 생략,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내부공문 발송 시 통장사본 첨부로 대체

② "생계급여 지급 관리" 정보 입력 및 관련 서류 첨부 후 저장

※ 저장 시 아동보호서비스관리 - 통합조사시스템 간 정보 연계되나, 통합조사팀 담당자의 시설 급여 중지 및 일반생계급여 책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

<생계급여 지급 관리 정보 저장 시 첨부서류(3가지)>

①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및 본인 통장사본(시설 밖 거주지 변경 시)

② 생계급여 자격 변경 요청 승인에 대한 부서장 내부결재 문서

* (예) 00시설에서 보호연장 중인 000이 실거주지를 시설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일반 생계급여 자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통합조사팀에 요청함을 승인한다.

- ③ 시스템 저장 직후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 통합조사팀·생계급여팀*으로 생계급여 유형 변경조치 요청 공문 발송** 및 유선 확인(필수)

* 일반 생계급여 변경 시에도 시설입소 상태는 유지(현원 포함)

**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통장사본, 생계급여 전환 요청 내부결재 문서 첨부

※ 시설 밖에서 시설로 실거주지 이전하는 경우, 동일한 절차로 시설 생계급여 전환 가능

※ 아동보호팀은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 생계급여 지급 관리 정보 입력, 통합조사팀·생계급여팀 공문 발송 절차 등 완료 조치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및 아동보호자립과-61(2024.4.2.)호 문서 참고

참고 ② **재보호조치 및 재보호조치의 연장사유**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재보호 조치	법 제16조의4 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에 달하기 전에 재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 (공통)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및 종결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 연령이 만 24세 이하 ※ 신청 시점에 아래 각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만 24세까지 재보호 가능(중도에 사유가 소멸되어도 24세까지는 계속 보호) ※ 재보호기간 중 대상자가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할 경우 종결절차 따름
	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 대학 재학증명서(재학 중), 대학 진학 관련 교육 기관 재원 증명서(진학 준비 중) ※ 군 복무, 휴학에 따른 보호 일시중지는 보호 기간 연장에 준하여 처리
	법 제16조의4 제1항 제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 관련 교육·훈련 증빙서류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애·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항을 심의 ※ 장애·질병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판정 준용 ※ 정신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우울, 불안 등 진단서 또는 소견서(심리), 주거지 여부·상태(주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내역(경제) - 단,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은 증빙서류 없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나 자립지원전담 기관과의 상담 내역을 통해 판단 가능 -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대상의 경우 신청자에 대한 의견서 서면 제출 필수

구분	법조문	법조문	적용 안내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2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 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인 경우
재보호 기간 연장	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 군 복무, 휴학에 따른 보호 일시중지는 보호 기간 연장에 준하여 처리
	법 제16조의4 제1항 제2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동안 지원 ※ 중도 탈락할 경우 종료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장애·질병 등에 관한 사항 나.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에 관한 사항	• 26세 미만까지 지원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 제2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등 자립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 26세 미만까지 지원

Q&A

보호조치



타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로 아동을 전원조치 시 업무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① 전원조치 사유 발생 시 현 아동 보호 주소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시설 변경 등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
 - ※ 아동을 전원 조치할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필요
- ② 현 보호 주소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통해 보호조치 변경 결정 및 전원조치 할 시·군·구로 사례 이관
- ③ 사례를 이관받은 시·군·구는 전원 후 3개월 동안 월 1회 양육상황점검 실시(전원 후 일주일 이내 시설방문 포함)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 ① 아동을 응급조치 하였으나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아동의 중장기 보호 결정이 없었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후관리 수행 및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에게 보고
- ② 중장기 보호 결정 됐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중인 경우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행위자 및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를 수행하되,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동행
- ③ 중장기 보호 결정 됐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종결한 경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례관리 종결회의 결과를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하며, 이후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양육상황점검을 단독수행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이외 전원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호대상아동을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보호할 경우, 아동에게 해당 시설의 특성(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아동복지시설 보호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아동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함
-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의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전원 조치(종결) 결정
 - ※ 전원 조치시 해당 부서(장애인·청소년시설, 성폭력·성매매 피해지원 시설, 한부모지원시설 담당)에 아동의 기본정보(학대피해아동 여부, 부모의 접근금지명령 여부를 비롯한 원가정과의 관계 등) 및 입소상황,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필요성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하여 사례이관하며, 사례이관 이후에도 해당 부서,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체계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등 사례관리 협조함
 - ※ 타 법시설 입소 이후 5년 간 연 1회(최초 1주일 이내 방문 포함) 아동의 보호상황(아동의 건강, 주거 및 안전 등) 사후관리 실시(단, 아동이 18세에 도래한 경우 사후관리 종료)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시 친권자(친부모)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의 보호자 의견 청취는 필수적 절차 규정임. 보호조치 과정에서 아동의 부모 쌍방이 누구인지 확인되며, 소재파악도 가능하다면 친권자인 부모 쌍방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소재파악 불가 시(행복e음을 통한 연락처 조회 시 연락처 조회 불가 등) 소재불명조사복명서로 같음



양육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에 대해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 보호변경 심의는 어느 시·군·구에서 하나요?



-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 주소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진행
- 다만, 입양절차 진행에 따른 주소지 변경(ex 임시양육결정) 시, 변경된 보호 주소지로 사례이관하여 양육상황점검 등 실시



아동이 거주하던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휴업 등) 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시설을 폐업·휴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
- (시설 폐쇄·사업정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을 폐쇄·사업정지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아동복지법 제56조제2항)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상정



입양 관련 가정법원의 허가 후에도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에 따른 양육상황 점검 대상인가요?



- 아동복지법 제15조의3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으로 입양대상아동(법원 허가 전까지)을 의미
- 아동 주소지에서는 입양 허가 후 위탁기관의 사후관리 현황을 모니터링(1년간 6회)하고, 필요시 가정방문 또는 유선·대면 상담을 통해 입양가정의 안정적 적응 지원



대학졸업을 앞둔 보호대상아동이 졸업유예를 할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25세 미만까지는 대학 재학 및 졸업유예와 무관,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보호연장 가능
- 25세 이상인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에 재학 중임이 확인되는 경우 대학진학기간 전체에 대해 연장 보호



18세 연령도래 또는 연장종료 외에 원가정복귀나 타 법상의 시설 입소 사유로 보호종료된 사람도 재보호가 가능한가요?



- 아동복지법(16조의4)은 재보호 가능한 보호종료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가능. 다만, 이 경우에도 재보호조치 대상자의 상황과 보호 중인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정 외 보호기관 선정 검토 필요



재보호조치시 서식은 기존 서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나요?



- 접수상담지(서식1), 욕구조사표(서식4), 아동상황점검표(서식9), 개별보호·관리계획서(서식11), 아동카드(서식12), 서비스제공계획서(서식13) 등 재보호조치에 필요한 서식은 기존 서식을 활용하되, 작성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



24세에 재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 및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어 25세 이후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재보호를 해야 하나요?



- 25세 이후 재보호의 연장 사유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재보호 가능



재보호종료 후 다시 재보호조치가 가능한가요?



- 재보호는 법 제16조(18세 연령도래, 보호목적의 달성) 또는 제16조의3(보호연장)에 따라 보호종료된 자에 한하므로, 제16조의4에 따라 재보호종료된 자는 다시 재보호 불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재보호조치되는 경우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을 중지해야 하나요?



- ① 원칙적으로 재보호조치가 된 이후부터 자립수당·의료비 지원은 지원 중지하고, 재보호조치 종료 후 잔여 기간 지원 재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접수 상담 시부터 대상자에게 자립수당·의료비지원 중지 예정임을 안내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재보호결정 직후 자립수당 담당 부서에 보호결정 통지서(서식25) 및 자립수당·의료비지원 중지 요청을 내부문서로 공유
 - 해당 내용 공유받은 자립수당 담당 공무원은 자립수당, 의료비 지원 중지 처리*
 - *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개정 사항 참고
- ② 단, 의료비 지원에 한하여 건강 문제로 재보호된 경우 중지 없이 잔여기간 계속 지원 가능하되,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자립수당만 중지 요청
- ③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도 재보호 기간동안 중지(단, 보호연장이동에 준하여 보호연장이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 필요시 보호연장이동에게 제공되는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은 가능)



조기보호종료 등의 사유로 보호종료 후 5년이 경과하여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4세가 되기 전이라면, 24세가 되기 전까지 재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재보호조치 신청 가능함. 단, 25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보호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보호조치 가능



보호종료 후 5년이 경과되어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기간이 종료된 사람이 재보호조치되는 경우 재보호 종료 시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을 추가로 받게 되나요?



-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음



재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 심리·경제·주거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경우, 신청 전 위탁가정·아동보호시설에서 우선 보호 후 재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재보호조치대상자 요청 시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이 희망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추후 추가 안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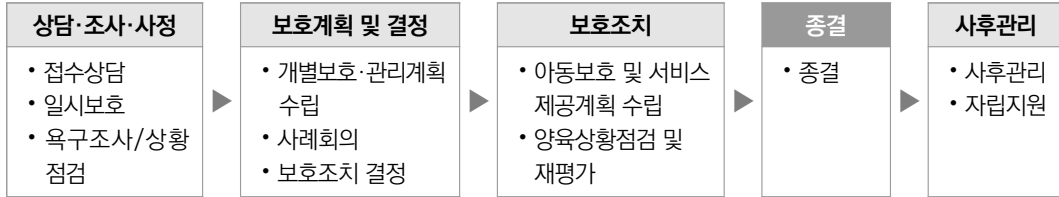


재보호조치된 대상자 정보를 행복e음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 접수 상담부터 신규로 등록 필요
※ 현재 재보호조치 대상 아동 중 사후관리 대상자의 경우, 사후관리 종료 후 행복e음 신규 대상자 등록·관리

V 종결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목적(예시 : 원가정 복귀, 입양 등)이 달성되었거나 보호 연령이(18세) 달하였을 경우 보호종료(해당 시설 퇴소) 여부 결정

가 수행주체

-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관련 기관과의 사례회의 → 사례결정위원회 안전 상정
- 사례결정위원회
 - 아동의 보호조치 종결에 대한 심의

나 수행시기

-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 등으로부터 해당 아동의 가정복귀 신청을 받거나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 된 경우
 - 다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연장함(아동복지법 제 16조의3, 동 매뉴얼 III. 보호조치 참고)
- 입양은 법원의 입양허가 후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양자 입양신고 시 종결

참고 ② 종결 시 고려사항

-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평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함
- 원래 수립했던 목표대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종결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부모의 양육환경 등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측정하여 종결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종결 시 사례에 따라 대상자에게 안내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으므로 별도 안내문 양식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임
- 욕구나 문제가 해결되어 종결된 대상자도 문제가 재발하거나 새로운 욕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서 대상자의 긍정적 변화 유지 여부 확인
- 종결 이후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이 가능하도록 연계 여부 확인

다 종결 유형별 수행방법**1)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피해아동 이외 아동, 18세 미만)**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조치된 아동과 원가정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능성을 모색함
 - 원가정 복귀 시 원가정에 대한 충분한 점검 및 준비시간 확보하고, 귀가에 대한 상담을 거쳐 귀가 적합성 파악
 - 필요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를 활용할 수 있으며, 부모교육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음(부록 II.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참조)
- 아동의 보호자 등 가정복귀 신청자는 양육계획서(서식 22) 및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서식 27)를 아동의 보호 주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제출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외 보호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아동이 복귀하고자 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양육 환경, 부모의 문제(경제적·건강 문제 등) 해결 여부 등 점검
 -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원가정 외 보호기관(예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의 사례관리를 수행 중인 기관(예 : 가정위탁지원센터)은 원가정 복귀 의견서(서식 19) 및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서식 26)를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제출
 - 원가정 외 보호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육시설 등) 의견 청취 후 7일 이내 가정 방문 실시, 양육 환경 점검 후 가정 복귀 점검표(서식 17) 작성
 - ※ 가정복귀점검표 작성 시 가정방문을 통해 수집한 주거·양육 환경 사진 첨부 필수
 - ※ 아동의 원가정 주소지와 보호시설 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아동의 원가정 주소지에 방문 협조
 - ※ 필요시 가정 복귀 체크리스트(서식 18)를 활용함

- 양육 환경 점검 결과 가정복귀가 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군·구에서는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교육·심리 치료 등 필요한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동의서(서식 21-1) 확보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사유 및 개선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보호자와 함께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계획을 수립(구체적인 계획 및 소요 기간 고지 필수)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보호종결 안건 상정 및 결정

- 그간의 양육상황점검결과 및 면접교섭결과, 원가정의 보호기관 의견서, 가정복귀 점검표, 가정복귀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시·군·구 사례회의를 실시 후 종결심사서 작성
 - ※ 부모의 성폭·행실 불량 등으로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동의 보호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계속 보호 필요
 -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변경, 종결(가정복귀 등) 결정 권한은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에 있음 (아동복지법 제12조)

● 제출된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서식 27)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후 2일 이내 처리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담당할 시·군·구가 다른 경우에는 종료 후 거주할 시·군·구로 사례이관

●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후관리 실시(아동 주소지에서 시행)

- 원가정의 보호기관은 보호자에게 아동 인계시 아동 보호기간 중의 서비스 제공내용, 아동의 발달상황, 생활기록, 의료기록, 교육기록 등 아동의 원가정복귀 후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공유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그간의 양육상황점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호자에게 공유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종료아동으로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서식 21-1) 확보
 - ※ 필요시 원가정 외 보호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

참고 ●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아동복지법 제16조)

-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전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아동권리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개정 2020. 12. 29.>

참고 ⑤ 퇴소조치 등(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영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 6. 30.>
-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복지시설의 장,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 7. 16., 2021. 6. 30.>
-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에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2) 원가정 복귀로 인한 종결(피해아동)

※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2권 참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종결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확인함)하고, 가정복귀 기본요건을 확인함

※ 아동 및 보호자 방문상담을 통해 가정복귀 의사 확인(단,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분리보호된 시설의 의견청취 필수)

※ 보호자로부터 **서식 58**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서면 확인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평가 및 면담, 가정방문 및 양육계획 확인, 행위자의 법적 처분 유형 및 기간 등 양육환경을 종합적으로 점검함

※ 공공연계사례회의 통해 가정복귀가 피해아동의 복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정복귀를 재신청하더라도 가정복귀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선 사항을 안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신청 유예기간을 설정한 경우 해당 기간 고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자 의사, 가정복귀 요건, 양육환경 점검 등을 통해 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복귀계획 수립하고, 가정복귀 프로그램 진행

- 가정복귀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공공연계 사례회의 실시

※ 필수 참석자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해당 시설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장

※ 공공연계사례회의 통해 가정복귀가 피해아동의 복귀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가정복귀를 재신청하더라도 가정복귀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결정일로부터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설정하여야 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개선 사항을 안내 및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신청 유예기간을 설정한 경우 해당 기간 고지)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육환경 점검내용, 가정복귀프로그램 결과, 공공연계 사례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가정환경조사서 작성 후 관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제출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가정환경조사서를 확인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안전 상정을 요청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양육상황점검표 및 가정환경조사 등 바탕으로 종결심사서 작성 및 사례결정위원회에 보호종결 안전 상정 및 결정(대면심의 필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결정 내용을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자에게 인계함
 - ※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피해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해당 가정에 미복귀 결정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 유예기간 필수 고지함.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개선사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
- 아동의 원가정 복귀 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후관리 실시

참고 ② 즉각분리(일시보호) 후 가정복귀 시

- 즉각분리(일시보호) 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었으나 중장기보호가 필요하지 않아 가정복귀하는 경우, 축약된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함
-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치결정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공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복귀 의사 확인, 축약형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 진행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가정환경조사서 제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가정환경조사서 검토 및 사례회의 등을 통해 복귀여부 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호자에게 통보함

3) 보호 연령 초과로 인한 종료(자립지원)

- 보호대상아동이 18세 이상이 되면 시·군·구청장(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심의를 통해 해당 아동의 보호를 종료
-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 또는 보호대상아동 본인은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 달하여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연장된 보호기간 중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보호종료예정일 3개월 전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 종료(퇴소)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서식 26**)를 제출
 - ※ 보호종료 또는 보호연장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여 보호종료 전 3개월동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자립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함
 - ※ (연령도래) 18세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는 학령기 등 아동의 상황을 고려, 가급적 보호 연장 후 졸업 시점에 종결(졸업 예정일 3개월 전까지 보호종료 신청서 제출)
 - ※ 보호종료 신청 정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제공된다는 점 반드시 아동에게 구두 안내 필수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조치 종료(퇴소)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보호종료 신청 내역 통보
 - ※ 아동 성명, 연령, 가정위탁 또는 입소 연월일, 보호종료예정일, 시설 정보(시설명, 전화번호, 주소)
- 원가정 외 보호기관은 보호조치 종료(퇴소) 신청서 제출 직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함께 보호종료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보호종료 점검회의를 개최 완료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후관리 계획서 작성 및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서식 21) 확보하여 보호종료 예정일 3주 전까지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에 제출
- (보호종료 점검회의) 원가정 외 보호기관(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주거·진학·취업 등 자립준비 상태를 점검, 자립지원전담기관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주요 사후관리 내용, 방법·주기 등)
- 취업 등 아동의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소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시설·가정위탁지원 센터는 해당 사실을 즉시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공유하고 퇴소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 보호종료 점검회의를 개최,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는 사후관리계획서 및 사후관리동의서를 확보하여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제출
 - ※ 사후관리 동의서 등 확보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를 담당함을 안내
 - ※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이 위 업무 수행
 - ※ 원가정 외 보호기관(자립지원전담요원 등)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계획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공유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사후관리 계획서 및 사후관리동의서가 확보되었는지 확인하고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 ※ 아동별 사후관리 계획서, 사후관리 동의서는 행복이음(종결)에 파일 첨부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 공문 수신시 자립수당 담당자에게 공람 지정
 - ※ 연장보호아동의 종결심의도 사후·서면심의 가능하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제2항에 따라 ① 장애·질병 등을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경계선 지적기능(지능지수가 71 이상 84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대면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런 경우 보호종료로 심의결정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보호종료된 직후 관할 자립지원 전담기관에 보호종료통지서 송부(서식 25)
 - ※ 보호종료예정아동이 중도에 보호종료 신청 의사를 철회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종결 심의가 되지 않은 경우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통보
- 자립지원·지역사회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자립수당·자립정착금 등 지급 여부 등 확인
- 보호종료 후 아동의 주소지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시·군·구로 사례이관

- 주소지가 타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 사례이관과 함께 기존 주소지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도 전출 내역 통보 (전입받은 시·군·구도 전입지 관할 전담기관에 전입 내역 통보)
※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를 위해 사례이관 시 지자체간 시스템 이관 및 해당 지자체에 공문으로 송부함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처리(부록Ⅳ 참고)

TIP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의료비 지원,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30일 전 사전신청 가능하므로 자립지원 담당 공무원 협조를 통해 보호종료 전 사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부모가 아동의 자립정착금을 받아 아동 자립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전 요건 부합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
- 보호 연령 초과로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대학 장학금,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안내
- 장애·질병 등 상시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울증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인 경우 등은 보호종료 직후부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맞춤형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전담기관 연계

4) 가정법원 허가로 인한 종료(입양)

-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양자 입양신고 시 아동 주소지 시·군·구에서 종결(사례결정위원회 단순보고)하며, 이후 입양가정(양부모) 시·군·구로 사례이관
※ 종결일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일자(친양자 입양신고)
- 새로운 아동(입양가정) 주소지 시·군·구는 이관받은 정보를 확인하고, 양부모에게 각종 급여·수당 신청을 안내하여야 함
- 다만, 지자체 상담 및 입양 동의 철회 등으로 친생부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시,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원가정 양육 결정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친생부모를 상담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방문 결과(서식 46)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분기별 취합 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제출(방문 결과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경우,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친생부모 상담확인서(참고서식8) 작성 시, 추가 방문 계획을 설명하고 서명 날인
- 원가정 양육 결정 이후, 친생부모가 거주지(주소지) 변경한 경우에는 ① 최초 상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친생부모와 방문 일정 등 상의 후 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인계(그간 상담내용 및 방문 일정 등), ② 거주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내용 확인, 모니터링 및 결과 제출

☞ 방문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기타운영비 항목) 사용 가능(1회 200천원 이내)

5) 아동복지법(제52조) 외 타 법상 시설 입소로 인한 종결

- 시·군·구 아동보호팀으로 보호가 의뢰된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의 특성에 의해 아동 복지법 외 타 법 시설(장애인복지법·청소년복지지원법·성폭력방지법·한부모가족법에 따른 거주시설·쉼터 등)에서 보호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내부 사례회의에서 판단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개최하여 “타 법상 시설 입소” 결정, 아동의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동의서(**서식 21-1**) 확보 ①최초로 보호되거나 ②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중 타 법상 시설로 전원 모두 해당)
- 이 경우, 장애인·청소년·성폭력피해지원·한부모지원 담당 부서에 아동의 기본 정보(학대피해아동 여부, 부모의 접근금지명령 여부를 비롯한 원가정과의 관계 등) 및 향후 아동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 필요성을 명시한 공문 발송하여 사례이관 및 보호 종결
- 사례이관 이후에도 해당 부서, 보호한 시설 및 아동과 연락체계 유지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 참석 등 사례관리 협조함
- 타 법상 시설이 관외에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함께 공문 발송하여 사례이관 확인
- 아동 거주지(타 법상 시설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이후 최초 1주일 내 시설 방문을 포함하여 5년간(단, 아동이 18세 도래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종료) 연 1회 사후관리 실시하여 아동의 보호상태 정기적으로 확인
 - ※ 타법상 시설이 성매매피해지원시설 등 비공개시설인 경우 소재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 주소지를 유지함. 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시설 소재지)가 불일치하므로, 아동 주소지 지자체에서 사후관리 시 시설 소재지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업무 수행 가능
- 특히 ②의 사례에 해당하는 15세 이상의 아동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신규로 포함되기 때문에, 전원 전에 아동에게 18세 도달 시점에 자립수당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사후관리 도중 아동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자립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
 - ※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 유사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 18세 이전에도 조기 입학·취업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자립수당 등 지원 가능

작성예시 가정 복귀 의견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수 신 : ○○ 시장

가정 복귀 의견서						
아동	아동명	추한나		성별	여	
	생년월일(연령)	2012. 8. 4(11)세		보호조치일	2019. 4. 9	
	주소	경기도 수원시 ○○구 ○○길 000 3층				
	보호시설명	○○가정위탁지원센터				
보호 예정자	성명	추성진		성별	남	
	거주상태	자가/전세/월세		아동과의 관계	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x		기타(아동과의 지속적인 만남 정도 등)	분기별 1회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경기도 수원시 ○○구 ○○길 000 3층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추성진	남	40	부	경찰	
	공은숙	여	39	계모	교사	
	추자연	여	5	동생	◎◎어린이집	
의견	아동의 의사 아동은 부에 대한 원망(부모이혼)이 있었으나 계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 복귀를 희망함. 부는 분기별 1회 이상 아동과 만남을 지켰고, 월 1회 이상 전화 통화함					
	거주예정 가정환경 방 3개, 아동방 별도, 빌라 입구에 CCTV 설치되어 있음. 아동복귀 계획 일정 보름 전에 아동과 함께 쇼핑하며 필요물품(의류, 학용품, 침구류 등) 등 구입함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부와 계모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와 계모 모두 부모교육 참여, 양육환경점검 결과 문제상황 없음.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는 동안 위탁부모에게 아동의 특성 및 자녀양육태도 등을 상담받음					
	원가정 외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부는 모와 이혼 뒤 재혼했는데 모가 교통사고로 사망 뒤 부는 아동 양육에 대하여 걱정하였는데, 계모가 먼저 적극적으로 아동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고, 분리보호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분기별 원가정과의 만남, 부모교육 참여,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 등에 참여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가정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아동은 위탁가정에서 2년 성장했으며, 위탁초기 6개월간 심리치료를 통해 심리·정서적 안정한 상태. 2년 동안 위탁부모는 아동이 미술에 관심이 높아 미술학원을 보내 미술대회 등 수상경력이 많음. 위탁부모는 부모교육에 참여, 아동과 함께 캠핑, 나들이에 매년 참여함. 원가정 만남 시 아동과 함께 친부모 만남 동행하며 친부모에게 양육기술, 아동의 정보를 제공함					
작성일 2022.07.17						

가정 복귀 점검표

작성일 0000.00.00

아동 성명(성별)	조정석	생년월일(연령)	2065.8.8.(7세)	보호자성명(성별)	조우주	생년월일(연령)	1986.6.24.(37세)
보호유형	가정위탁	보호기관(연락처)	○○가정위탁지원센터 (○○○○-○○○○)	아동과의 관계	부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길 00, 5층
보호조치일	2019.4.8	담당자	김미도				

번호	평가항목	평가		특이사항
		예	아니오	
1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예 V	아니오	과거에 비해 부부싸움은 줄었으나 가끔씩 싸운다고 함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지장장애(), 우울(), 기타() ☐ 신체장애 : 장애종류() ☐ 질환명 :	예 V	아니오 V	
3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부 ☐ 직업 : 트레이너 ☐ 근로시간 13:00~21:00 ☒ 모 ☐ 직업 : 마트종사자 ☐ 근로시간 10:00~17:00	예 V	아니오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 소득 : 평균 300 만원 ☒ 부채 : 6천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여부	예 V	아니오	아동이 원가정과 보호하는 기간(3년) 동안 약 3천만원 갓았고 현재 6천만원 남아 있음(모의 수입 전부와 부의 소득 일부를 부채 갚는데 사용)

번호	평가항목	평가	특이사항
5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예 V	모는 술을 끊고 운동하며 건강회복, 그 이후 마트에서 일하게 됨. 술은 남편이랑 함께 있을 때 마신다고 함
6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 자가 ☐ 전세(보증금 :) ☒ 월세 : 40만원(보증금 : 4,000만원)	예 V	주거지는 일정하며, 부채 갚으며 1년 뒤 전세로 옮길 계획임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예 V	방 2개 중 1개를 아동방 사용계획, 부부가 아동과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때 좋아하는 것 등을 확인하여 사전에 아동물품을 구입하여 방을 꾸며주고 함
8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 : 월 1회 정도	예 V	분리보호 초기에는 모의 알콜치료로 6개월 간 연락을 취하지 못했다가 모의 상태가 호전된 뒤로 평균 월 1회 만남, 아동도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즐거워함
9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예 V	가족과 분리, 모의 알콜중독으로 인한 충격으로 1년 정도 심리치료를 받았고, 모의 알콜치료 완료 후 정기적으로 만남을 통해 부모에 대한 인식 전환되어 함께 살기 원함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V	모는 병원 입원 6개월, 통원 6개월 후 일상생활 가능했으며, 이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및 모임에 3차례정도 참여함. 경제활동 및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아동을 양육할 준비를 함
소견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합성 여부)		부모는 양육상황점검 결과 원가정 복귀가 가능함. 특히 모가 아동을 양육하기 위해 알콜치료에 집중하며 원치 후 부모교육 및 경제활동까지 적극적으로 실행함. 다만 부부싸움이 가끔씩 있고, 거칠때가 있어 관련 상담지원 및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필요할 것임.	

Q&A

종 결



보호대상아동을 연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4세 이하 보호기간 연장)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징구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사후 보고
- (25세 이상 추가 연장) 내부 회의를 통해 추가 연장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대학입학증명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증명서 등) 사전 확인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사후·서면심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연령도래로 인한 종결 시 원가정복귀와 상관없이 모두 지급대상(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기준 충족한 경우)
 - 15세 이후 조기종료된 자의 경우 18세가 도래하는 시점부터 5년간(22세까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조기취업, 대학 조기진학)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급 가능
- * 예시) ① 시설 입소 경력은 있고,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부모의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하여 시설에 입소하여 보호종료 되었으나 시설 경력이 단기(6개월 이내)인 경우, ②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가정학대 등으로 타시설에 재입소한 경우, ③ 보호 조기종료된 자로서 법 시행('24.2.9) 이전에 만 18세가 되었으나, 조기 입학·취업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④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 되었으나 만 18세 이전(보호종료 직후 포함) 지급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사례이관 받은 시·군·구는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어떤 서류를 발송해야 하나요?



구분	원가정 외 보호기관 발송 서류	
보호조치 후 발송	• 접수(초기)상담지 • 아동·친부모상황점검 결과 • 개별보호·관리계획	• 아동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결과 • 아동카드 • 아동보호동의서
보호변경 후 발송	• 아동카드	• 변경된 개별보호·관리계획
보호종료 후 발송	• 전달 서류 없음 * 소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사례이관을 받았는지 확인	

- 보호결정, 변경, 종결 과정에서 사례이관이 진행되는 경우 이관받은 시·군·구는 아동정보를 원가정 외 보호기관과 공유



연장아동으로 보호종결 후 군입대 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 보호종결하는 당해연도 자립정착금은 신청하며, 자립수당은 군입대중에도 수령가능

**연장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위탁가정 변경, 시설변경 등)이 가능하나요?**

- 연장아동의 보호조치 변경은 가능(사후심의 가능)

**종결심사 시 사후관리 계획서, 사후관리 동의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관할 보호종료 예정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종료예정일 3주전까지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동의서 확보 절차를 거치고, 관련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함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는 사례결정위원회 종결심사 시까지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전담기관에 재요청하되, 종결심사 진행 후 사후 제출 가능

**아동보호팀으로 보호의뢰된 아동의 미혼모자시설 입소 시 원가정 복귀와 타 법시설 입소 중 어떻게 종결해야 하나요?**

- 1) 미혼모의 아동이 보호의뢰된 경우
 - 미혼모가 원가정 양육 결정 후 아동과 함께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경우, 원가정 복귀로 종결 후 사후관리(1년) 실시
 - * 단, 중장기 보호중인 아동에 한하여 사후관리 실시(일시보호 제외)
- 2) 만 18세 미만 등 미혼모가 보호의뢰된 경우
 - 임신 또는 출산한 미혼모가 보호 의뢰되어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타 법상 시설입소' 결정 및 종결 된 경우 사후관리(5년) 실시

**재보호조치 후 종결시에도 보호종료점검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재보호조치 후 종결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보호종결하되, 사후관리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수립까지 진행하며, 잔여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종료점검회의만 개최
- 재보호조치 후 종결 시에도 해당 사실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안내해야 함

**타 법시설 입소로 조기 종료 후 원가정 복귀한 경우 자립지원이 불가하나요?**

- 보호종료 사유가 타 법상 시설 입소인 경우, 추후에 원가정 복귀해도 원칙적인 조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대상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불필요)

**조기 보호종료아동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면 어떤 지원을, 얼마동안 지원하는 건지?**

- ① (자립수당·의료비 지원) 원칙 조기종료아동 요건(예외적 대상자도 심의 거친 경우 가능) + 보호종료 시점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 요건*까지 충족 시
 - * 단, 자립수당·의료비 지원 지침(당해연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에 따라 2년 이상 연속 보호 요건 미 충족시에도 예외적으로 사결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지원기간) 18세부터 22세까지 5년간 지급(60개월)
- ② (전담기관 사후관리*) 원칙 조기종료아동 대상자 요건 충족 시(예외적 대상자도 심의 거친 경우 가능)
 - * 일반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하게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18세부터 22세까지 5년간 지원
- ③ (자립정착금) 지방이양사업이므로 지자체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자립수당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권고



조기 보호종료아동 지원 관련 시·군·구 아동보호팀과 자립수당 담당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 (아동보호팀)
 - (조기종료사유-타 법상 시설입소) 타 법상 시설입소로 종료된 경우 15~17세까지 연 1회 사후관리 → 18세 도래 시점에 ①자립지원전담기관 명단 통보, 사후관리 연계 및 ②자립수당·의료비지원 신청 안내
 - (조기종료사유) 원가정복귀 원가정복귀로 종료된 경우 1년간 4회 사후관리 → 18세 도래 시점에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결위 안건 상정·심의하여 ①자립지원전담기관 명단 통보, 사후관리 연계 및 ②자립수당·의료비지원 신청 안내
 - * 17세 원가정 복귀한 경우 사후관리 기간(1년) 중 아동보호팀이 판단 가능하겠으나, 이보다 이른 나이에 원가정 복귀한 경우에는 본인이 자립수당 신청한 경우 판단 가능
- (자립수당 담당자) 조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의료비지원 신청 시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지원 결정
-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보호팀에서 18세가 도래한 조기 보호종료 아동 명단을 통보하면 사후관리 실시



조기종료아동 대상자에 해당하나, 18세 이후에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 신청하는 경우 지원 기간은?



- 신청 시점부터 22세까지만 지원 가능
- 장래에 18세 도래하는 조기종료아동(원칙적 대상자)의 경우 18세부터 전체 5년 기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 신청 안내 등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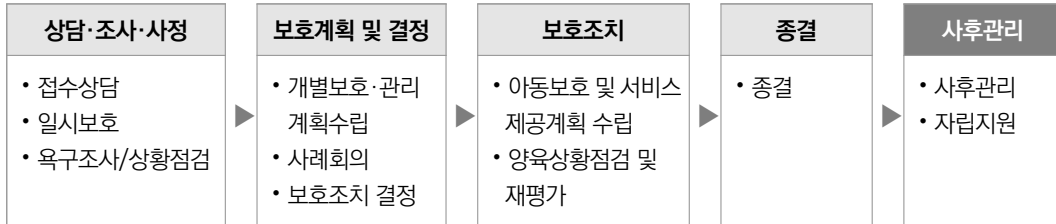


일시쉼터·단기쉼터 입소 시에도 타 법상 시설 입소로 종결할 수 있나요?



- 최초 보호조치 시 3개월 미만 보호 필요 등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단기쉼터 입소 가능(이 경우에도 사후관리 5년 실시)
- 단,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임에도 입소할 시설 부족, 업무회피 목적 등의 이유로 단기 타 법 시설 입소 및 종결 금지

01 개요



- 보호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연령 초과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하여 일정기간 적응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참고 ②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아동복지법 제16조의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 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 입양이 성립된 후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진행

참고 ③ 사후서비스 제공(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양부모와 양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입양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등을 위한 모임이나 단체의 사업 지원
 2. 입양가정에서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입양가정이 수시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개설 및 상담요원의 배치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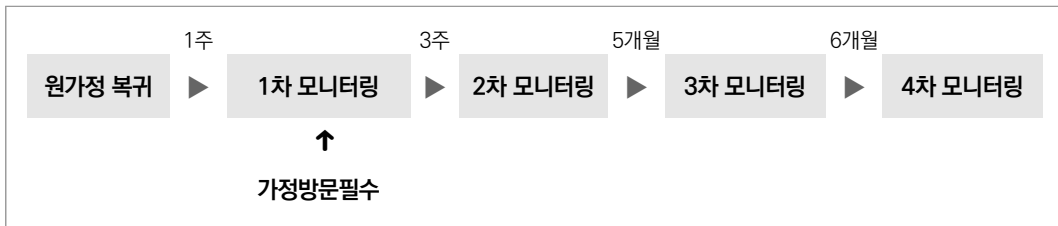
연령 초과 전 종료된 아동(원가정 복귀/입양성립)

가 수행주체

- 아동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되 보호아동이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보호전문기관 등 기타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경우 아동 등 점검대상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동행하여 방문 권고
 - 해당 아동의 원가정에 대하여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 또는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에서 사례관리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사례관리 실시기관과 협력하여 실시
 - 아동(사례)별 특성에 따라 통합 사례회의 등 기관 간 충분한 논의·협조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연계(중복 서비스 제공 방지)
- 읍·면·동,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보호 담당자
 - 방문 동행, 자료 제출 등 사후관리에 협조(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전 기간)

나 수행시기

-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가정방문을 포함하여 1년간 4회 사후관리 실시
 - ※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내 가정방문 실시 및 1개월 이내 추가 1회 이상 모니터링(가정방문, 유선 등), 원가정 복귀 후 6개월 이후부터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다 수행방안

- 아동 원가정 복귀전에 작성했던 양육계획서(서식 22) 및 가정복귀 점검표(서식 17),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서식 18) 등을 참고하여, 사후관리(보호종결 사유별 사후관리 점검표 서식 28) 실시
 - 필요시 사례회의를 거쳐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등으로 서비스 연계

03 연령 초과로 종료된 아동(자립지원)

가 수행주체·시기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 전담인력
 -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에게 연 1회 이상 사후관리(자립 수준평가)와 생활, 주거, 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지원을 실시하되, 가정위탁지원센터·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원가정 외 보호기관과 지속적 협력체계 유지
 - 분기별 익월 20일 이내 사후관리 대상자 명단에 대상자별 사후관리 실시 현황(사후관리 유무, 날짜 또는 연락두절여부 대상자 특이사항)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 아동과 함께 수립한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실시
 - ※ 대상자 주소지가 타 시·도로 변경되는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사례이관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관내 거주중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정보 누락 등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상자 연계 실시
 - 시·군·구 보호종료예정아동 및 사후관리 대상자(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대한 보호종료 신청 내역 통보(보호조치 종료(퇴소)신청서 접수 직후)
 - ※ 보호종료예정일 3개월 전 보호종료 신청서 접수 및 사례결정위원회 종결 심의 직후 전담기관 통보
 - 사후관리 대상자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전담기관의 사후관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를 확인 및 사후관리 점검표 작성
 - ※ 시·군·구·자립지원전담기관 간 협의를 통해 유선 또는 공문 협조 방식으로 사후관리점검표 항목에 관한 아동 현황 요청하여 작성
 - 대상자가 전담기관과 연락두절인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아동과의 연락 시도, 아동 연락처 변경 시 변경된 연락처 공유하는 등 전담기관 협조 필요

- ※ 전담기관과는 연락두절이나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사후관리 연락에는 응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대상자에게 향후 전담기관 사후관리에 응하도록 안내
- ※ 전담기관에서 사후관리 대상자의 보호 중 이력 확인, 시·군·구 복지서비스 연계 등 협조 요청 시에도 상시 협조체계 유지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대상자의 거부로 인한 사후관리 종료 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지자체 아동보호팀에 사후관리 종료(해지) 보고서 송부
 - ※ 지자체 자립 업무 담당자는 5년간 자립수당 및 정착금 지급 현황 지속 관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연 1회 연락 시도 및 아동 상황 모니터링 실시(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 모니터링 제외)

참고 15세 이후 타 법시설 입소 조기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 **수행시기**
 - 보호종료 후 최초 1주일 이내 시설 방문을 포함하여 5년간 연 1회 이상 정기 사후관리 실시(단, 아동이 18세 도래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종료)
- **수행방법**
 - 연 1회 이상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기술평가 실시
 - ※ 자립지원업무매뉴얼 <서식1>/<서식2>, <부록1>
 - ※ 자립지원계획 : 자립기술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이나 희망 진로, 희망 주거 등에 관한 계획 수립
 - ※ 자립기술평가 : 일상생활, 자기보호, 지역사회 자원활용, 돈 관리, 진로탐색, 사회적 기술 등 영역의 자립 준비 정도 평가
 - ※ 자립지원전담기관 연계 전까지 상담, 자립수당 및 정착금 사용 현황, 자립에 필요한 자원 연계 등 지원
 -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관할 지자체 내 거주하는 보호 조기종료 아동이 18세가 된 때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
 - ※ 지원 제외 :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②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참고 1 자립지원 대상자별 담당자 및 역할

구분	보호아동 (15세~연장아동)			자립준비청년 (5년 이내)		
	담당자	소속	역할	담당자	소속	역할
아동양육 시설	종사자, 시설장, 위탁부모, 상담원 등 + 자립지원 전담요원	아동양육 시설	• 보호아동 자립지원	자립지원 전담인력	자립지원 전담기관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
공동생활 가정		그룹홈 (지원센터)	• 종료 이전 전담 기관·아동 관계 형성 지원			
가정위탁		가정위탁 지원센터	• 자원연계 • 전담기관과 협력 등			

나 주요 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38조, 시행령 38조)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 자립지원전담요원은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계획 수립
 - 18세 이상 보호종료 후(최대 5년)안정적인 자립생활 정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담,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자립에 필요한 자원발굴 연계 등 지원
 - 취업, 직업훈련, 주거, 진학, 경제, 생활, 의료 등 관련하여 자립준비 수준 점검
 - 취업형과 진학형으로 구분하여 사회초기 적응 및 자립기반 구축 지원
 -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연 1회 자립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협조요청 시 아동의 상담 내역 등 정보제공

참고 ●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대상	사후관리 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중 초기상담을 거쳐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자(수시 선정)
내용	(절차) 초기상담 → 욕구사정 →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지원) 생계·주거·진학·취업·의료 등에서 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민관 자립지원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비(긴급생계비, 임대료, 자격증 취득비 등) 지원
방법	각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초기상담 진행 후 대상자로 선정 ※ 시·도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대상자 인원(예산) 배정

〈 표 13 〉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제공주체
통합사례관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통합서비스(생활·주거·취업·교육·의료 등 맞춤형 사례관리)	중앙정부
소득지원 (자산형성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 - 디딤씨앗통장(CDA, 아동발달지원계좌)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긴급지원(위기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주거지원	- 청년 전세·매입 임대주택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 자립준비청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취업지원	- 창업성공패키지(전국 창업사관학교에서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지원) - 내일배움카드 - 대학재학생 직무체험, 대학일자리센터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학업지원	- 국가장학금(I, II유형) - 국가근로장학금(교내, 현장) - 학자금 대출 - 대학진학 시설아동 기숙사 우선배정 - 폴리텍대학(우수 기능인력 양성)	
자립지원금	- 자립정착금(보호종료 당해 연도 지급, 1,000만원 이상) - 대학입학금 등 지원(지자체별 지원액 상이)	각 지자체
심리정서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중앙정부
기타지원	-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보북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 표 14 〉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주요비교

구분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대상	「아동복지법 제38조제2항」 근거하여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 모두에게 지급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아동)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지원내용	'26년 기준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 권고(자자체별 상이)	'26년 기준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지급시기	보호종료 시에 지급원칙(당해년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최대 60개월) * 60개월 지급대상은 2018년 8월 이후 적용
제출서류	- 자립정착금사용계획서 - 아동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사이버 강의 이수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

참고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성평등가족부)

• 개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대상

9세 이상 ~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연중 접수·처리

• 추진 체계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2% 이하(생활·건강지원은 65% 이하)

• 지원기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간호 ⑥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자립지원	지식, 기술, 기능 등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①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 학대 피해 청소년 대상 법률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상담지원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원) 별도
청소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특기활동비 ④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가 수행주체·시기

- 아동 거주지(타 법상 시설 주소지) 기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함
 - 아동이 타 법상 시설로 입소 후, 최초 1주일 내 시설 방문을 포함하여 5년간 연 1회 사후관리 진행
 - ※ 단, 사후관리 도중 아동이 18세가 도래한 경우, 사후관리 종료
 - 기존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중에 15세 이후에 타 법상 시설로 전원하여 보호가 종결된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로 신규 포함되므로, 사후관리 기간 중 18세가 도래할 시, 반드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연계하여 적절한 자립지원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함
- 시·군·구 타 법 시설 담당자(장애인, 청소년시설 등)
 -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원활한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연계를 위해 아동의 현황 파악,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시설 방문 등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협조

나 수행방안

- 타 법 시설 입소에 따른 사후관리(보호종결 사유별 사후관리 점검표 **서식 28**) 실시
 - 필요시 사례회의를 거쳐 아동보호체계로 재진입(전문가정위탁 등) 검토
- 기존 아동보호체계에서 보호 중이던 아동이 15세 이후에 타 법상 시설로 전원되는 경우, 사후관리 기간 중 18세 도래 시점에 아동에게 자립지원 제공(이후, 3.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후관리로 연계)
 - 조기종료된 아동의 18세 도래 1개월 전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후관리동의서 확보 및 사후관리 계획 수립을 위해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자립지원대상자 연계 의뢰 공문과 함께 과거 실시한 사후관리점검표(타 법 시설입소)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송부
 - ※ 이후 지자체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조기종료아동의 사후관리계획 및 사후관리 동의서 지자체 공유
- 타 법 시설 입소 후에도 시설 종사자, 담당부서 공무원, 아동과의 연락체계 유지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른 보호를 위해 필요시 상시 소통할 수 있도록 함

Q&A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 중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종결 이후 사후관리 중 원가정 전출, 타법 시설 간 전원, 취업 등으로 아동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아동 주소지로 사례이관 및 사후관리 실시
- 단, 아동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아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보호처분 전 아동의 사후관리를 수행했던 지자체에서는 사후관리 일시중지 및 보호처분 기간 중 아동상황 모니터링 실시
→ 소년법 보호처분 종료 이후 아동의 보호체계를 확인하여 사후관리 재개 또는 신규(재) 보호조치 실시
※ 본 매뉴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 관련 조치사항〉과 동일 절차 적용

제3부

“

부 록

”

- I.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 II.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 III. 채무 위기아동 등에 대한 법률지원 안내
- IV.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 V.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황
- VI.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내서

제3부 | 부 록

I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

0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가 개요

- 지역 아동복지정책의 전문성·충실성을 제고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복지 및 아동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기구(아동복지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나 주요 기능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 (1호) 지역의 아동정책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한 사항
 - (2호)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15조)
 - (3호)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법 제16조)
 - (4호)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4의2호)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5호)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6호) 법 제19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7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 (8호)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봄(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 해체 위기에 있는 고위험 아동 가구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기간 연장, 지역 내 아동 정책 수립 및 시행·변경,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아동학대 예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안건으로 발굴·심의(또는 보고)할 수 있음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구성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위원
 -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함)
 -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 (1호)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자격을 가지거나, 시·도 교육청 (시·군·구의 경우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 (2호)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아동에 대한 친권제한·일시정지 청구 등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관련 분야 경험 있는 변호사
 - (3호)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아동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아동의 장애 여부·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정신건강과 등(권장) 아동 분야 경험 있는 의사

(4호)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팀장급 이상으로, 현장 실무에 능한 사람

(5호)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관련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호)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호) 그 밖에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위원 임기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함

※ 위촉 위원 중 교육청(교육지원청), 지방노동관서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 전출, 퇴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다른 위원을 재위촉 함

- 위원 연임 여부, 기간은 지자체 조례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

● 위원의 해촉

- 주체 :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사유 :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 손상·비밀 유지 준수 의무 위반,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 해촉 사유 등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르되, 조례에 구체적 내용이 없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거나 동 지침을 참고하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해촉 절차 진행

● 기타 사항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직·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아동복지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조례 등에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다음 지침을 참고

● 위원회 회의 개최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심의·보고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적시성·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활용
※ 사례결정위원회를 제외한 소위원회(아동급식 관련사항 심의 등)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계속 운영할 수 있음
-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다만 법령에 정한 사항 이외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례 또는 위원회 의결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위원장 직무 대행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은 반드시 민간 위원일 필요는 없으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음

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보고 (법 '17.9.19 개정, '17.12.20 시행)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년도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3)
- 보고 사항
 -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의 소속, 직책, 성별 및 임기
 - 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결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결정을 중심으로 서술함

가 개요

- (의의)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성·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시·도 및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된 기구
- (시행 배경)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장 및 유관 기관의 장 중심으로 구성, 아동 보호 관련 전문적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12.29 공포, '21.6.30. 시행)

나 주요 기능

- (아동 보호)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하여 보호대상아동에 관련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 심의의 효력을 갈음함(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지역 아동정책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심의기구로 활용 권고
- ① 보호조치 : 아동을 원가정과 분리하여 가정위탁, 시설, 입양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
- ② 퇴소조치 : 보호자의 신청 또는 아동의 연령도달(18세) 등의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종결 결정
- ③ 친권제한 및 후견인 선임 청구 : 부모의 연락두절 및 소재불명 등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성 검토
- ④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다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 (위원회 구성)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시·도는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이 위원장인 관계로 개최가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어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으로 정함

- (위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험이 많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중에서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함께 위촉

라 사례결정위원회 운영(대면원칙)

- (운영) 아동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아동보호팀 등)에서 운영함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장기 보호조치 결정·변경·보호종료 외의 일시보호 연장 등 안전 상정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드림스타트 등 관련 담당자가 사례결정 위원회에 직접 상정함
 -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일시보호)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연장, 아동학대전담공무원(또는 드림스타트 등 관련기관)이 직접 안전작성 후 상정
 - ※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조치 중 연장, 원가정 복귀 등 심의자료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접 작성
 -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제6호(가정위탁, 시설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양 등)에 해당하는 아동의 사례안전 상정 담당(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연장, 원가정복귀 등 안전 상정 제외)
 -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중 한명을 선임하여 회의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음
 -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위원과 동일한 기관에 소속된 대리인이 참석하여 심의할 수 있음
 - 사례결정위원들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심의 보류·재심의 의견 등)
- (개최주기) 사전심의 의무안전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함

참고 ●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안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보호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제5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의 보호목적달성·연령도달로 인한 보호조치 종료·퇴소조치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2호~제4호의 보호조치된 아동이 보호자의 가정 복귀 신청에 따라 원가정 복귀하는 경우*
- *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
- 아동복지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를 다시 하는 경우
- 아동복지법(제52조) 외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 입소로 인한 종결

- 사례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
-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실무자는 안전설명을 위해 참석할 수 있음
- (심의방식)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전·대면 심의 의무안전”외 안전은 지자체가 심의 방식(사전·사후/대면·서면) 결정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사전·대면 심의 안전에 대한 긴급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동 보호조치 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온라인 화상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수시 개최
 - * 위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 시 아동에 관한 정보 등 안전 내용이 제 3자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 철저 필요
 - 보호조치의 시의성을 고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전원 참석이 어려운 경우 안전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 중심으로 참석 범위 조절하여 개최 가능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최소 4명 이상),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최소 3명 이상 찬성)
- (심의단위)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아동 주소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함
 -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시·군·구와 아동 주소지 시·군·구가 상이하거나 아동의 보호장소를 타 시·군·구로 변경하는 등 시·군·구간 역할 조정 및 총괄 기능이 필요한 경우 시·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
 - 시·도 사례결정위원회에 안전을 상정하려는 시·군·구는 먼저 시·군·구 간 협의 등 자체적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시·도와 사전 협의하여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함
 - 시·도는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시·도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 (심사서류) 개별보호·관리계획(서식 11)은 공통 필수로 작성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확정하되, 기타 추가로 첨부하는 서류는 아동의 특성 및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운영함
 - (보호조치 결정) 욕구조사표(서식 4), 아동 상황 점검표(서식 9), 친부모 상황 점검표(서식 8), 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서, 사례회의 회의록 등
 - (보호조치 변경) 양육상황 점검표(서식 15)
 - (보호조치 종결) 종결심사서(서식 20)
 - ※ 원가정 복귀인 경우, 아동 및 보호자의 가정복귀 의사확인, 양육환경 점검,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등 가정복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필수 심의(가정 복귀 점검표(서식 17), 가정 복귀 의견서(서식 19), 양육계획서(서식 22),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서식 59) 등 활용)
- (후속조치)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이 있는 후, 보호자 및 보호기관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보호조치 결정(변경) 통지서(서식 25)), 회의록 등 관련자료 시스템 등록 필요

마 세부 운영기준

● 일시보호조치의 경우

- 피해(의심)아동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서 일시보호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의 보호 조치 결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하며, 부득이하게 일시보호(즉각분리)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시보호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필수 심의대상임 (일시보호연장 심의시 가정복귀 및 장기보호 전환 여부도 검토해야 함)

※ 최초 일시보호조치 결정 및 일시보호(3개월 미만) 후 추가적 분리보호가 아닌 원가정복귀인 경우 심의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필요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결정위원회 직접 안건 상정

● 중장기 보호조치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 의무 사항임
- 즉각분리(일시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상담·조사, 건강검진, 보호계획 수립 등은 아동 학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중장기 보호 조치 결정이 된 피해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함

● 중장기 보호조치 변경의 경우

- 아동의 가정형 보호조치 위배(예 : 가정위탁→시설) 또는 아동 생활환경 변경 등 아동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는 보호조치 변경은 사전·대면심의 의무안건
- 가정형 보호 전환(예 : 시설→가정위탁), 연령도달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시설 전원조치 등 보호조치 변경은 사후·서면심의 가능

※ 동일 위탁가정에 대한 위탁유형 변경(일반가정위탁↔전문가정위탁)은 사후·서면심의 가능하며, 위탁가정 내 주 양육자 변경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위탁부모 자격요건 확인 후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 심의 통해 결정)

- 보호중인 아동이 면접교섭 지원 계획 외 시·군·구와 상의 없이 타 시설·가정 등에서 실거주하여 보호시설(가정)에서 실질적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 결정위원회 안건 상정하여 보호유형 변경 및 종결 검토 실시
- 단순한 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제외(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원가정 외 보호기관에 해당 사유 확인 후 보호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변경

● 보호조치 종결의 경우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호조치를 종결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사전·대면심의가 의무사항임
- 연장보호아동 및 재보호아동의 종결심의는 사후·서면심의 가능
- 다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연장아동 및 추가연장 아동 또는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아동 중 지적장애 및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아동(지능지수가 84이하)의 종결 심의 시 사전·대면 심의를 거쳐야 함
- 이런 경우 보호종료로 심의결정 시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
- 입양동의 철회에 따른 원가정 복귀의 경우 현재 아동 주소지 시·군·구는 ‘가정복귀점검표’를 작성(원가정에서 보호 중인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고, 원가정 복귀 조치 이후 사례결정위원회 사후·서면 심의 가능
- 입양 성립에 따른 보호조치 종결은 사례결정위원회 안건 상정 제외(법원 결정사항 단순 보고)
 -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4호와 제6호 병행 조치되었던 경우, 종결심사 시에도 함께 보고
 - ※ 원가정에서 양육중인 입양대상아동의 입양 동의 철회로 인한 종결 시 사후·서면 보고 가능

바

기타사항 및 참고자료(서식)

- 아동복지법 제19조에 따른 개별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은 사후·서면심의 가능하며 아동복지법령 및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함
 -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시 필요에 따라 서식 1~8호 활용

서식 1 심의·의결시 체크리스트(사례결정위원회 위원)



번호	주요 항목	확인	비고
1	심의에 따른 첨부서류가 충실히 제공되었는가 (추가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비고란에 기재)		
2	아동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아동의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비고란에 기재)		
3	아동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 계획 등이 적절한가		
4	아동 최상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었는가		
5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결정되었는가		
6	원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였는가		
7	아동에 대한 안전확보(점검)가 제대로 수행되었는가		
8	아동의 질병 등 특성에 따른 보호가 반영되었는가		
9	아동 및 원가정 보호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가		
10	(비고)		

서식 2 가치충돌 상황 및 확인사항(예시)



내 용		확인사항
1	아동의 안전을 위해 원가정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하나 아동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안전평가 실시 양육태도 검사 실시
2	아동이 분리조치로 인해 학업이 중단되거나,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아동 의사 확인 권고 (전학 갈 학교 사전방문)
3	아동이 분리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 의사 확인 권고 종합심리검사 실시 재사정 실시
4	보호조치의 결과로 해외입양을 가게 될 경우	친생부모 재면담
5	전문가의 판단 시, 아동의 의견이 보호자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이는 경우	아동 의사 확인 권고
6	분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나 보호자가 지속적으로 가정복귀를 요구하며, 아동도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안전평가 실시 양육태도 검사 실시
7	가정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보호자의 양육의지가 없는 경우	양육태도 검사 실시 종합심리검사 실시
8	아동이 보호조치의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정서적 건강이 악화될 경우	종합심리검사 실시 재사정
9	아동이 시설(가정위탁)에 부적응할 경우	종합심리검사 실시 아동 의사 확인 권고
10	아동이 시설에서 가출, 비행 등으로 시설(가정위탁)에서 퇴소를 요구하는 경우	종합심리검사 실시 아동 의사 확인 권고 재사정 실시
11	적정한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경우	타 시도·시군구 의뢰 여부 확인 타 보호체계(청소년 등) 검토

서식 3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요청서

심의 번호	2000-00호		☐ 사전 ☐ 사후		☐ 대면 ☐ 서면	
관리번호			☐ 상담/지원(1호) ☐ 친족보호(2호) ☐ 보호조치(3~6호) ☐ 보호조치 변경 ☐ 연장(추가연장) ☐ 재보호조치 ☐ 종결(원가정복귀) ☐ 종결(연령도래) ☐ 종결(기타) ☐ 후견인 선임·변경 등 ☐ 친권제한 등 ☐ 그 밖의 사항			
심의 안건	○ 세부 심의 내용 적시 (예 ; 학대피해아동으로 전문가정위탁 보호조치)					
아동 사항	아동명	(□남/■여)	생년월일			
	주소	00시 00구 00동				
	학교		학년			
	보호현황		보호일자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개별보호 관리계획	육구	목표		서비스내용		
현 상황	아동					
	보호자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칸 추가하여 시설, 가정위탁에서의 현 적응 상황 등 적시				
의견	아동					
	보호자					
	시설장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이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게 될 시설의 의견				
	관계기관	관계기관 의견 (드림스타트, 학교,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자	상담사, 의사, 심리치료사, 친인척, 위탁가정 등 의견				
	담당자	심의요구안에 대한 담당자 의견				
첨부서류	○ ○ ○					
위와 같이 00시 사례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000. .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 번호	2000-00호	☐ 사전 ☐ 사후	☐ 대면 ☐ 서면
관리 번호		☐ 상담/지원(1호) ☐ 보호조치 변경 ☐ 종결(원가정복귀) ☐ 후견인 선임·변경 등	☐ 친족보호(2호) ☐ 연장(추가연장) ☐ 종결(연령도래) ☐ 친권제한 등
심의 안전	☐ 보호조치(3~6호) ☐ 재보호조치 ☐ 종결(기타) ☐ 그 밖의 사항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조건부승인 ☐ 수정가결 ☐ 심의보류 ☐ 재심의 ☐ 심의의뢰 ☐ 부결 ☐ 심의결과 세부내용 적시 (조건부 승인시 조건사항, 수정가결시 수정된 사항 등)		

심의 번호	2000-00호	☐ 사전 ☐ 사후 ☐ 대면 ☐ 서면 ☐ 상담/지원 ☐ 친족보호 ☐ 보호조치 ☐ 보호조치 변경 ☐ 연장 ☐ 추가연장 ☐ 원가정복귀 ☐ 퇴소조치 ☐ 보호종료 ☐ 친권제한 등 ☐ 그 밖의 사항
관리 번호		
심의 안전	☐ 세부 심의 내용 적시 (예 ; 학대피해아동으로 전문가정위탁 보호조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조건부승인 ☐ 수정가결 ☐ 심의보류 ☐ 재심의 ☐ 심의의뢰 ☐ 부결 ☐ 심의결과 세부내용 적시 (조건부 승인시 조건사항, 수정가결시 수정된 사항 등)	

※ 안전 수에 따라 서식 추가하여 사용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일괄 의결합니다.

위원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위 원 ○ ○ ○ (서명)

2000. . .

○○시 ○○구 사례결정위원회위원장



사례결정위원회 심의결과(회의록)

심의일	(정기/수시)	☐ 사전 ☐ 사후		☐ 대면 ☐ 서면	
심의번호	2000-00호	☐ 상담/지원(1호) ☐ 친족보호(2호) ☐ 보호조치(3~6호) ☐ 보호조치 변경 ☐ 연장(추가연장) ☐ 재보호조치 ☐ 종결(원가정복귀) ☐ 종결(연령도래) ☐ 종결(기타) ☐ 후견인 선임·변경 등 ☐ 친권제한 등 ☐ 그 밖의 사항			
심의안건					
아동 사항	아동명	(☐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학 교		학 년		
	보호유형		보호일자		
주요논의 사항	○ ○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조건부승인 ☐ 수정가결 ☐ 심의보류 ☐ 재심의 ☐ 심의의뢰 ☐ 부결				
심의결과 세부내용					
특이사항 등					
작성자 (작성일)	소속 직 성명 (서명) 2000. . .				

서식 6 회의개최 시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참고용)



구분		첨부자료	비고
공통자료		회의개요, 이전 심의·의결 사건에 대한 결과보고 자료, 회의 안건 설명자료, 심의·의결서 양식	
보호 조치	상담지도	육구조사표, 아동상황 점검표, 친부모상황 점검표	
	친족보호	아동상황점검표, 친부모상황점검표, 보호할 친족의 가정환경조사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양식으로 같음)	
	시설보호	개별보호·관리계획,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지, 사례회의록.	
	가정위탁	개별보호·관리계획,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지, 사례회의록,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입양	개별보호·관리계획, 육구조사표, 아동 상황 점검표, 친부모상황 점검표,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친생부모 상담확인서(후견인 상담기록지, 후견인 상담확인서), 아동 상담기록지, 아동 상담확인서,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입양 동의·승낙서 등	
보호조치변경		개별보호·관리계획,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양육상황 점검표,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보호 연장	일시보호연장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지, 사례회의록	
	연령도래	양육상황 점검표, 자립지원 계획서	
	추가 연장	양육상황 점검표, 자립지원 계획서, 추가연장 사유 관련 증빙서류	
보호 종료	아동학대	가정환경조사서, 사례회의록(내부/통합), 종결심사서 아동·보호자 심리검사 결과지, 양육상황 점검표	
	입양동의 철회	입양동의·승낙 철회서, 양육계획서, 아동상황점검표, 친부모상황점검표	
	그 외	가정복귀의견서, 양육계획서, 가정복귀점검표, 종결심사서, 양육상황 점검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퇴소조치		양육상황점검표, 자립지원 계획서	
친권제한, 상실		청구서, 양육상황 점검표, 친부모상황 점검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서, 양육상황 점검표, 친부모상황 점검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		아동상황 점검표, 친부모상황 점검표, 육구 조사표	
보호·지원서비스를 위해 필요한사항		(일반)아동상황점검표, 친부모상황점검표, 육구조사표 (학대)아동학대판단 체크리스트, 사례회의록(내부/통합)	



위촉 승낙서

성명 :

소속(직) :

생년월일 :

위촉기간 :

상기 본인은 아동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기간 동안 ○○○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사례 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활동할 것을 승낙합니다.

2000. 00. 00

위 본인

(서명)

○○○시장 귀하

서식 8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례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취득하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인)

〇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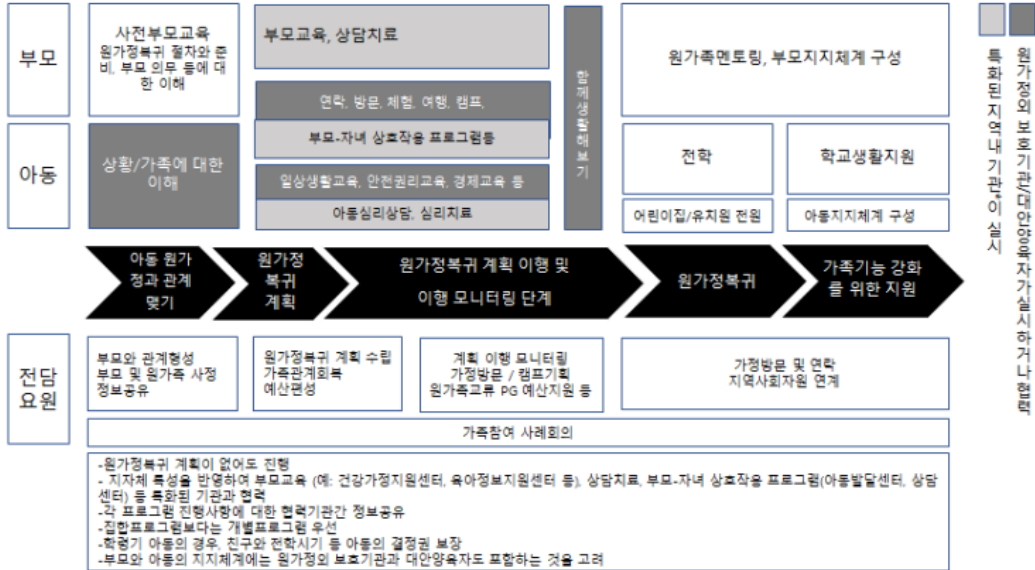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01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개요

- (목적) 아동보호서비스 전 과정에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수행함으로써 보호자의 역량강화 및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안정적으로 아동을 원가정 복귀시키기 위함
-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 (시기) 초기상담부터 원가정복귀되어 사후관리하는 전 과정
- (수행주체) 시·군·구 및 원가정 외 보호기관
- (대상) 원가정복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자
 -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제5호에 의해 보호조치 된 아동이 동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가정 복귀하는 경우
 - ※ 일시보호 등 보호아동의 분리보호 기간에 따라 축약 적용 가능
 - (선택적용)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성폭력 쉼터, 장애인 쉼터 등 타 법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선택 적용 가능
 - ※ 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아동학대대응업무매뉴얼 2권 참고)
- (주요내용) 아동 및 보호자 상담, 부모교육, 가족프로그램, 가정방문, 지역사회(학교) 탐방 등
- (사업비) 시·군·구별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지원」 사업비-서비스 연계 제공비 활용

02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세부 절차



〈원가정복귀 지원 프로그램의 개요〉

가 상담·조사·사정 단계 (보호조치 전)

- (개요)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경우, 상담·조사·사정과정(육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 점검)에서 원가정보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을 연계하거나 추후 원가정 복귀 계획에 대한 상담 실시
- (주요내용) 육구조사, 아동·친부모 상황점검 과정에서 원가정보호·유지 가능성 확인 및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원가정복귀 계획(원가정복귀 시점 및 노력) 점검
 - (육구조사) 가족관계, 경제, 생활환경 등 보호자(아동)의 원가정 복귀 관련 내용 점검
 - (아동상황점검) 원가정 복귀 관련 육구(부모와의 정기적인 만남 희망정도) 점검 (아동상황점검표 분리보호 관련 문항에서 확인)
 - (친부모상황점검) 가정환경, 양육태도 등 원가정 복귀를 위한 계획·노력 점검
 - (원가정 복귀계획 수립) 상담·조사·사정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원가정 지원 (복귀)계획 작성
 - (공개강좌) 취약계층 보호자, 양육기관 등 종사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내 공개 부모교육

나 양육상황 점검 단계 (보호조치 중)

- (개요) 보호조치 중인 아동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 상담·조사·사정단계에서 수립된 원가정 복귀계획 이행지원 및 모니터링
- (주요내용) 양육상황점검(보호조치 목적 달성여부 및 원가정 점검) 실시 및 부모(양육기술) 교육, 가족상담, 가정방문, 가족프로그램 등 원가정 복귀를 위한 면접교섭 프로그램 지원
 - ① 양육상황 점검 : 아동의 시설 적응정도 및 서비스 만족도 확인, 원가정(보호자) 가정복귀 (양육 의지, 태도 등) 상담 실시(분기별)
 - ※ 분리보호 된 후에도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 유선, 문자, 편지쓰기, 만남 등으로 정기적으로 아동근황 확인
 - ※ 원가정 외 보호기관 : 사진, 동영상 등으로 아동의 일상기록 및 부모와 공유
 - ② 부모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 : 가족 재결합(부모의 의무, 아동정서 다루기 등) 및 양육 의지 등 소규모 집합교육(역할극 포함, 반기별)
 - ③ 가족상담(가족참여회의) : 보호종결 전 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상담·가족참여회의
 - 부모·아동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 상실에 대한 심리상담 등
 - ※ 가정방문 또는 가족 외식지원 시 병행 가능
 - ④ 가정방문 : 보호종결 전 보호자로부터 양육계획 및 가정복귀 점검(가정 복귀 의견서, 가정 복귀 점검표 활용)을 통해 아동의 가정 복귀 의사 및 보호자의 양육태도 확인
 - ⑤ 가족프로그램 : 보호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숙박 및 가족외식 지원
 - 부모(양육기술)교육 이수 및 원가정 복귀를 희망하는 보호자 대상

다 종결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 (개요) 원가정 복귀로 보호조치 종결된 경우, 아동의 가정생활 적응정도, 보호자 양육태도 등 모니터링
- (주요내용) 사후관리 실시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 ① 가정방문(점검) 및 연락 : 원가정 복귀 후 아동·보호자의 가정생활 점검(생활환경 및 아동의 만족도 등)
 - ※ 아동보호전담요원 : 양육계획서,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사후관리 점검표(보호자 양육태도, 보호자의 자립정도 등) 등 활용
 - ※ 원가정 외 보호기관 : 가정방문 협조, 아동·부모상담(상시) 등
 - ② 학교생활지원 : 원가정 복귀로 바뀐 교육환경(전학 등)에 대한 아동의 지지체계 확보 및 지역사회 서비스 및 자원 연계

03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표준내용(예시)

가 상담·조사·사정(보호조치전)

● 공개강좌

구분	내용
목적	• 분리보호 예방, 빈곤이나 이혼이 분리사유가 되지 않도록 원가정보호 유지 및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 원가정보호 및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
대상	• 보호자(취약계층 포함) 및 양육기관 등 종사자 * 아동의 분리보호를 희망하거나,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양육자(한부모가정, 취약계층, 일시보호 및 분리보호 경험 등)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등 서비스 제공받는 대상 포함
주요내용	• 아동복지 관련 주요정책 안내(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읍·면·동 맞춤형, 보호대상아동 관련 등) * 해당 사업별 대상 및 지원서비스 안내(해당 부서 협조를 받아 진행) - 어린이주간 등 지자체 대규모 행사기획 시 해당 부스 운영 * 아동복지 관련 정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 등 • 양육기술, 아동특성을 다룬 공개강좌 - 부모의 의무, 아동의 정서 다루기, 아동안전/권리 교육 등

나 양육상황점검(보호조치 중)

● 부모와의 관계형성

구분	내용
단계	• 아동 원가정과 관계맺기,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원가정복귀 계획 이행 및 이행 모니터링, 원가정복귀,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종결 단계
대상	• 원가정 부모
목적	• 조사, 사정(아동, 가정, 원가정복귀 가능성 등),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원가정복귀 추진 등의 과정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 형성
목표	1. 원가정 부모가 실무자를 신뢰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2. 원가정 부모가 조사, 사정, 원가정복귀 계획 및 추진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변화'에 대한 부모의 내적 동기를 강화한다. 3. 원가정 부모가 변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한다.

구분	내용
내용/ 방법	1. 원가정 부모에 대한 조사 및 사정을 실시하기 전에 ‘예, 아니오’ 형식의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2~3회 정도(1회 30~50분) 상담하여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자는 상황에 대한 부모의 시각을 이해한다. 상담자가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부모 스스로가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이끌어준다. 2. 동기강화상담(Motivational Interviewing)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 개방형 질문하기, 2) 반영적 경청하기(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마음을 읽어주는 반응을 하기), 3) 칭찬하기(물 겁에 물이 반이나 있네요 관점), 4) 요약하기(내담자의 말을 정리하기)가 아래의 4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다. 2-1. 관계형성하기 단계(engagement) : 부모가 앞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과 계속 만나고 협력하고 싶다고 느끼도록 상호 신뢰하며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부모가 자신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임을 인정하며 최대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부모가 말하게 하고 이를 반영적으로 경청하며 부모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감정적 하소연에 그치지 않고 부모가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추구하는 가치나 삶의 방향 등을 이야기하게 한다. 부모를 선불리 비난하거나 문제해결방법을 지시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이후 부모와 협력적 관계 형성이 어려워진다. 부모가 상담자를 편안하고 지지적으로 느끼며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되, 스스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반응해준다. 2-2. 초점 맞추기 단계(focusing) : 현재 상황의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지, 혹은 무엇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부모가 결정하도록 한다. 부모가 현재의 상황을 분석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며 요청받은 경우 정중하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되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도록 한다.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부모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허락 없이 부모에게 지시하거나 끼어들지 않는다. 2-3. 유발하기 단계(evoking) : 부모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이슈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부모가 스스로 변화에 대한 바램(~하고 싶어요), 능력(~할 수 있어요), 이유(이런 점이 좋을 거예요), 필요(~해야 해요)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헌신(~할 거예요. ~하기로 약속해요), 행동(~하도록 준비가 되었어요), 실행(~했어요)의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할수록 부모의 행동도 많이 변화할 것이다. 부모가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표현(~할 수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를 못해요 등)을 많이 한다면, 부모의 행동은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2-4. 계획하기 단계(planning) : 부모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계형성(engaging), 초점 맞추기(focusing), 유발하기(evoking)가 이루어지며, 계획의 실행을 위해 격려하고 지지하는 과정이 지속된다.
인력	총괄 •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협력 • 원가정외 보호기관
유의 사항	• 상담자는(아동보호전담요원) 자신이 전문가라는 생각과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교정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내담자(부모)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임을 인식하고, 모든 행동 변화는 스스로가 이루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 부모의 내면에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동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이끌어내고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동기부여면담기법이다. 그러한 동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 4가지 단계에서 개방형 질문, 칭찬, 반영적 경청, 요약을 적절히 활용한다.

● 부모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구분		내용
단계		•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원가정복귀 계획 이행 및 이행 모니터링, 원가정복귀,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단계까지
대상		• 자녀를 원가정외 보호에 맡긴 부모 • 자녀와 원가정복귀하여 생활하는 부모
목적		• 부모의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한다.
목표		1. 부모가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2. 원가정복귀 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학습한다.
내용/방법		1. 자녀에 대한 이해, 자녀양육코칭, 아동발달, 감정코칭, 의사소통방법, 아동양육방법 등의 주제로 부모교육을 진행한다. 2.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이나 재활분야 등의 치료프로그램에 의뢰할 수 있다.
인력	총괄	•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대안양육자, 원가정외 보호기관
	협력	• 해당 주제의 부모교육 전문가(아동발달상담사, 임상심리사, 아동분야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가족상담사, 중독치료전문가 등),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기관
유의사항		• 부모교육은 전문가가 수행할 수도 있고,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대안양육자나 시설이 수행할 수도 있다. • 강요보다는 역할극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상황대처 역량을 키운다. • 가능한 집합교육보다는 개별가족별로 진행한다. • 가정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 아동양육과 관련되어 일반적인 내용은 지역사회기관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 부모의 정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건강, 재활 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프로그램에 의뢰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치료프로그램은 검증되고 공신력 있는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가 진행한다.

● 가족참여회의

구분		내용
단계		• 아동 원가정과 관계맺기,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원가정복귀 계획 이행 및 이행 모니터링, 원가정복귀, 가족기능유지를 위한 지원, 종결 단계
대상		• 부모, 아동, 기타 가족구성원
목적		• 가족이 원가정복귀 준비 및 결정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함께 수립한 목표의 이행 정도를 성찰한다.
목표		1. 상담, 조사, 사정 단계 및 보호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정복귀 계획에 대해 부모, 아동, 가족구성원이 의사를 표현한다. 1-1. 원가정의 보호기관 종류, 원가정의 보호 이후 상호 연락빈도, 방법 등에 대해 선호하는 의견을 표현한다. 1-2. 부모는 자녀가 생활하게 될 원가정의 보호기관과 생활방식,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고 의견을 표현한다. 2. 보호계획 수립 및 결정단계에서 아동은 원가정복귀 계획을 통해 부모가 제공받을 서비스와 변화목표 등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표현한다. 3. 보호조치 이행단계에서 부모와 아동, 가족구성원이 서로의 원가정복귀 준비 이행 정도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표현한다. 4. 원가정복귀 시점 및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부모와 아동, 가족구성원이 의견을 표현한다.
내용/방법		1.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부모와 초기 상담 및 사정을 마친 후, 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와 아동, 기타 가족구성원이 모두 아동이 어디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지 않더라도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사례결정위원회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가족중심실천을 수행하도록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부모, 아동, 가족구성원의 가족참여회의) 2. 원가정의 보호기관이 정해지고 원가정복귀 계획이 수립된 이후, 부모, 아동 및 가족구성원은 함께 앞으로 원가정복귀를 위해 각자 혹은 공동으로 노력해갈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서로에게 지지를 제공하며 또한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주도하에 부모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도 함께 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3. 보호조치 단계 동안 최소 분기별 1회에 걸쳐 부모, 아동, 가족구성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복귀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가족참여사례회의를 진행한다. 이 때, 아동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주도하에 부모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도 함께 사례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 4. 원가정복귀 시점에 대한 결정과 이후 사후관리 방법에 대한 결정도 가족참여회의에서 함께 논의한다. 5. 원가정복귀 이후 단계에서도 가족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중심으로 가족, 지역사회 유관기관(드림스타트 등)과의 가족참여회의를(첫 3개월 1회, 이후 6개월 1회) 통해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을 이해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아동보호전담요원과 부모, 아동, 가족구성원의 가족참여 사례회의+부모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례관리자 참여 추천)
인력	총괄	•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협력	• 보호자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원가정의 보호기관, 원가정의 보호 지원기관,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드림스타트 등) 등

구분	내용
유의사항	- 부모와 자녀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존중받는 느낌을 가지고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담당자들과 가족의 관계형성 및 가족참여사례회의를 주도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 결정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부모, 아동 및 가족구성원이 시간을 가지고 결정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때, 실무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가족사례회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가족들이 의견을 형성하고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동안 실무자들은 관련 논의를 진행하거나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 가족방문(가족과 생활해보기)

구분	내용
단계	• 원가정복귀 계획 이행 및 이행 모니터링 단계부터 원가정복귀 전까지
대상	• 원가정의 보호조치 되는 모든 아동과 가족
목적	1. 아동과 가족의 관계를 회복한다. 2. 보호조치 동안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와 대안양육자의 협의를 통한 아동양육 파트너십 형성한다.
목표	1. 아동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2. 아동이 안전한 장소에서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3. 방문을 준비하며 부모와 아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대안양육자와 논의한다.
내용/방법	1. 방문 전 아동에게 사전준비와 교육을 실시한다. 2. 아동과 원가족 방문을 위한 약속을 잡는다. 3. 아동에게는 방문시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미션(편지쓰기, 요리하기, 사진찍기) 등을 제시하고 수행된 미션을 원가족과 공유한다 : 선택사항 4. 방문전 부모와 대안양육자는 일관된 양육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생활규칙 등을 공유하고 합의한다. 5. 부모가 아동 방문하기 :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부모가 방문한다. 6. 아동이 부모 방문하기 : 부모가 생활하고 있는 곳이나 친인척의 집 등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7. 방문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음 방문 일정을 계획한다.
인력	총괄
	협력
유의사항	• 대안양육자, 원가정의 보호기관 : 필요한 경우 아동과 함께 동행한다. • 원가정의 보호 지원기관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 방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아동의 생일 등 특별한 날이나, 주말, 명절, 방학 등의 기간을 활용한다. • 사전에 아동과 부모와 일정과 방문기간 동안 함께 할 일 등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 방문하기는 특별한 경우(예 : 부모의 입원)를 제외하고 부모가 아동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 아동의 부모방문은 반나절, 하루, 1박 2일 등의 순서로 점차 시간을 늘려가도록 한다. • 방문일정이 길어질 경우, 숙제, 위생관리 등 규칙적인 일과 등에 대해 아동과 부모가 지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대안양육자가 계획과정을 지원한다. • 부모가 데리러 올 수 없거나, 아동의 연령이 어린 경우에는 대안양육자는 아동과 동행하여 안전하게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 종결 및 사후관리(보호종료)

● 가정방문 및 연락

구분		내용
단계		• 원가정복귀 이후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단계
대상		• 부모 및 아동
목적		• 원가정복귀 이후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목표		1.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2. 아동 및 가족이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한다.
내용/방법		1. 원가정복귀 준비과정에서 가족참여사례회의를 통해 원가정복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아동의 적응과 건강한 발달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부의 지원체계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에 대해 합의한다. 2.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 및 부모는 비대면/대면 연락의 빈도와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하되, 원가정복귀 7일 이내 1회 가정방문, 8일에서 30일 이내 2회 연락(1회 가정방문 포함), 31일에서 60일 이내 1회 연락, 61일에서 365일 이내 2회 연락(1회 가정방문 포함)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한다. 3. 연락 및 만남에서는 아동의 근황,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 등을 살핀다.
인력	총괄	•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협력	• 아동 소재 지역사회 내의 주 사례관리자, 원가정의 보호기관, 원가정의 보호지원기관
유의사항		• 부모와 형성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원가정복귀 이후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비대면, 대면 연락을 지속하며, 부모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또 하나의 가족(원가정의 보호기관)으로 남기 위해서임을 공유한다. • 연락이나 방문을 부모나 아동이 거부하는 경우 그 자체로 원가정복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며, 부모 및 아동과 관련자들의 지금까지의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 원가정복귀 이후 학교생활지원

구분		내용
단계		• 원가정복귀단계
대상		• 학령기 아동, 부모, 원가정 소재지 학교 담당자
목적		• 학령기 아동이 원가정복귀 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하며, 아동의 학교생활을 가정 및 사례관리자가 공유하고 지원한다.
목표		1. 원가정복귀 아동을 위한 학교 내 지지체계(담당 교사)를 구축한다. 2. 학교내 지지체계-부모-사례관리자가 연계하여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지망을 구성하고 지원한다. 3. 아동이 원가정복귀 과정에서 학업수행,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다.

구분		내용
내용/방법		1. 원가정복귀 약 1-3개월 전부터 원가정 소재지 지역사회 사례관리자는 원가정 소재지 학교에서 아동의 적응을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며 사례관리자와 협력할 수 있는 지지체계를 찾는다.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등이 가능하며 원가정외보호 및 원가정복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아동에 대한 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람직하다. 2. 학교 내 담당자를 발굴한 이후 사례관리자는 부모와 함께 담당자를 만나 아동의 원가정복귀와 전학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며,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 아동이 준비할 것과 학교에서 아동의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3. 부모가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준비하고 지원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논의 및 공유한다. 4. 아동의 원가정복귀 직전에 아동이 학교 담당자, 부모, 사례관리자를 함께 만나 전학과 이후 학교생활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로 모임을 진행하여 아동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아동이 학교를 돌아보고, 이후 생활할 환경과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지체계가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5. 아동의 원가정복귀 이후, 숙제, 수업참여, 교우생활에 대해서 부모와 사례관리자, 학교 담당자가 공유하도록 하며(온라인 연락체계와 오프라인 만남 병행) 세 주체 간 오프라인 만남 빈도는 원가정복귀 시점과 직후에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점차 느슨하게 진행한다. (온라인 및 비대면 연락은 보다 빈번하게 가능). 가족참여사례회의를 활용하여, 학교 담당자가 가족참여사례회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다.
인력	총괄	• 아동 소재지 아동보호전담요원
	협력	• 원가정 소재지 지역사회 사례관리자,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
유의사항		• 학교 내 담당자 선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아동 및 가정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학교 내 지정된 담당자를 비롯한 최소의 학교관계자에게만 공유되는 것이 바람직함

III

채무 위기아동 등에 대한 법률지원(상담·소송) 안내

01

지원 체계

- 채무 위기아동 등 위기가구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운영 (국가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 관련 전문성을 공유하고, 아동복지현장과의 유기적 연계·소통을 통한 채무 위기아동 적극 발굴
 - (대한법률구조공단) 위기아동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적극적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단 일선기관과 아동복지현장 연계 추진

02

주요 내용

1) 지원대상

- (대상자)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법률지원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 아동*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5호의 지원대상아동
- (대상사건) 상속채무 방지, 법정대리인 선임, 친권남용구제 및 신분관계 소송 등 법률상담 및 공익소송 필요 사건

2) 지원절차

- ① (현장) 사업대상자 법률상담 안내, 위기아동 발굴, 신청서 취합(대상자→현장 종사자) 및 제출(현장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사례관리 및 양육상황 점검 시, 상속채무, 법정대리인 공백, 친권남용 피해 등을 점검 (서식 5 체크리스트 참조) 하여 위기아동 조기 발굴
 - 위기아동의 신청서, 지원대상(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련 증명서 등 법률구조 관련서류 작성·제출(서식 6 참조)

- ②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채무 위기아동 법률지원 체계 안내, 신청서 일괄 취합·검토
(현장→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공단 송부
- 각 사업 담당자(현장)에게 서비스 개요, 체크리스트, 필요서류 등 안내
 - 현장에서 송부한 대상자 정보를 취합하고 공단으로 인계
- ③ (공단) 사건 접수 및 사실조사, 구조결정, 소송수행, 소송종료 안내
- 인계사건을 ‘민원사무’로 접수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종결대상’, ‘법률구조회부 사건’으로 구분 처리
 - *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접수를 위한 추가서류 징구 등 실시
 - ‘법률구조회부사건’은 사실조사(대상자, 대상사건,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구조 타당성 등) 및 구조결정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현장담당자에게 구조결정 여부, 소송결과 등 인계 사건 처리결과 통보

〈국가아동권리보장원-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 위기아동 법률지원 절차(안)〉

위기아동 발굴	법률상담 신청	인계사건 접수	구조결정	상담·소송수행, 종료안내
아동복지현장	아동복지현장	법률구조공단	공단 소속기관	공단 소속기관, 법률구조공단
(조사·발굴) 사례관리, 양육상황 점검 시 상속채무 등 채무위기아동 발굴	(안내) 발굴아동 대상 법률 상담 신청 및 구비 서류 안내 (서류 구비) 신청서, 증명서 등 취합 (서류 제출) 현장→국가아동권 리보장원(공문) (서류 검토) 제출서류 취합, 지원 대상 관련 증명서 검토 등 사업대상 확인 (대상 인계)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단(공문)	(접수) ‘민원사무’로 접수 (소속기관 연계) 접수대상의 거주지와 인접한 공단 소속기관 연계	(법률 상담) 제출서류 토대로 대상자, 사건 등 법률상담 실시 ※ 현장·대상자와의 법률상담 진행 (구조여부 결정) 상담·조사결과 토대로 ① 종결대상, ② 법률구조회부 사건으로 구분 ※ 소송대리 불가시, 종결 (결정통지) 인계사건 처리결과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현장담당자에게 통지(공문)	① 종결 대상 (결과 공유) 소송대리가 불가한 대상 종결상황 공유 (공문)
				② 법률 구조 회부 사건 공단 소속기관 (법률상담·소송) 소송 소행 등 법률 서비스 제공 법률구조공단 (진행상황 공유) 진행상황 또는 사건 종결 시, 종료 공유 (공문)

1) 친권남용

- (사례1) 아동(가정위탁, 시설)의 친부, 계모 등 원가족구성원이 아동명의로 휴대폰 또는 인터넷 다수 개통, 요금 연체 및 미납부 등의 사유로 인한 채무 주로 발생
* 일부 사례의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친모)에게 한정승인 절차 안내하였으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성 부족
- (사례2) 시설보호아동 친모(신청)·큰아버지(보증)의 ‘교통사고 피해가족 유자녀 장학금’ 부정수급*으로 변제 상황 발생
* 시설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불필요한 사항
- (사례3) 가정위탁아동의 친부가 아동명의 통장의 수급비 강탈

2) 상속채무

- (사례1) 시설보호아동의 친부 사망에 따른 채무 상속이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채무청산 필요
* 일부 사례의 경우, 상속 채무 우려가 있으나 정확한 금액 파악 불가

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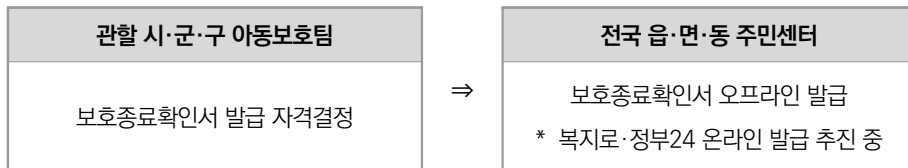
- (사례1) 시설보호아동의 가족 친척 재산분할에 대한 재산세 납부독촉

IV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01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업무 개요

- (배경)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21.7월)」 세부 과제에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절차 개선이 포함되어 ’22년 3월부터 행복e음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을 통한 지자체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업무 개시
 - (기존) 각종 자립지원 제도 이용 시 보호종료확인서를 통한 증명이 필요하나, 보호조치 및 종료 결정 주체인 지자체가 아닌 민간(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 발급기관이 멀거나 시설과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 확인서 발급 포기 사례 발생
 - (개선)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주체를 민간에서 지자체(시·군·구 자격결정 → 읍·면·동 발급)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발급(정부24)도 추진 예정



- (수행주체) 시·군·구 및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향후 신규 보호종결되는 아동의 경우 보호종결을 결정한 시·군·구에서 자격결정 수행 하되, 기존에 보호종결되어 사례이관된 경우 사례이관 받은 시·군·구에서 자격결정
- (시기) 보호종결 결정 이후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수행
 - 종결심사 후 종결관리 저장과 동시에 발급 자격결정 업무를 수행하여, 종결일자로부터 5일 이내에 자격결정 절차를 완료하도록 함
 - * 보호종결 직후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
- (대상) ’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대상자 중 18세 이상 연령도래 사유로 아동 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대상자
 -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시점 이후 행복e음상 보호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 (주요내용) 보호종결 후 시·군·구 아동보호팀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이 결정된 대상자에 대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복지로, 정부24)에서 확인서 발급

가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대상자

- (발급대상 원칙)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로 ① 가정위탁 및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다가 ② 18세 이후 연령도래(또는 원가정복귀)로 보호종료된 자
- (자격결정 대상) 위 조건 해당하는 대상자에 한해 보호종료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행복e음 아동보호서비스” 시스템상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이 가능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전산화해서 관리 중

참고 ② 행복e음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가능 조건

- ① 2020년 10월 1일 이후 보호종료된 대상자 중
 -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시점 이후 행복e음상 보호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대상자
- ②-1 보호결정/관리(탭)의 보호유형이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에 해당하고
- ②-2 보호종결(탭)의 종결사유가 연령 도래에 따른 퇴소 또는 원가정복귀(종결 당시 18세 이상) 또는 기타(종결 당시 18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시·군·구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는 보호종결 대상자에 대한 자격결정 시 위의 발급대상 원칙을 고려하여야 함
- (발급대상 원칙에 해당함에도 자격결정 대상자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보호유형이 ‘입양 전 보호’로 되어 있거나 시설 정보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종결사유가 ‘타 시·군·구 보호시설 전출’로 되어 있는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해 정보 보정 필요
- (발급대상 원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격결정 대상자에 조회되는 경우) 아동보호치료시설 입·퇴소 아동의 경우 자격결정 대상으로 조회되더라도 자격결정을 하지 않도록 요청
- 단,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던 아동이 보호치료시설로 전원 후 연령 도래로 퇴소한 경우 또는 보호치료시설로 최초 보호조치 된 후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되었다가 연령도래로 보호종결된 경우에는 보호종료확인서 발급대상으로 자격결정 필요

나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시 확인사항

- (확인사항) 대상자별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시 아동정보, 보호종료 정보, 담당자 정보 등이 제대로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전자결재 요청 및 자격결정 완료
- (보호종료 정보) 보호결정/변경 및 종결에 입력된 해당 아동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
 - (입소일) 보호결정/변경(탭)의 최초(1차수) 보호조치 일자가 자동 연동됨
 - * 최종 보호종료된 시설에 입소한 일자가 아니라 해당 아동이 최초로 보호조치된 일자를 의미함
 - ** 1차수 조치일자가 최초 보호조치된 일자가 아닌 경우(행복e음상 등록일자, 전원조치 일자, 사례이관 일자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아동카드 확인 등을 통해 정확한 최초 보호조치 일자로 변경한 후 자격결정
 - (퇴소일) 종결(탭)의 종결일자가 자동 연동됨

행복e음 아동보호서비스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화면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아동정보

성명	박	주민등록번호	98 -1	전화번호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휴대전화	010 - 3 - 0

보호종료 정보

보호종료기관명	상록원	보호종료기관유형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허
기관주소	전라남도 장성군			기관 연락처	061 - 3 - 5
입소일 (위탁보호일)	2015-07-24	퇴소일 (위탁종료일)	2022-02-28		

담당자 정보 담당자변경

담당자	이	소속	광주광역시 동구	직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감
-----	---	----	----------	----	---------------

※담당자 정보는 보호종료확인서 출력 시 표기됩니다.

결정 요청 정보

결정요청구분	☒ 책정 ☐ 중지	요청일자	2022-06-15	전자결재진행상태	결재
자격상태	취득				

- (문의사항)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절차상 문의사항, 시스템상 오류 발생 시 행복e음 복지광장으로 문의

Q&A

보호종료확인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데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대상자 현황에 조회가 안 되거나 자격결정 대상자가 아니라고 팝업이 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사례1) 아동보호서비스관리 보호결정/변경(탭)의 보호유형이 “입양-입양 전 보호”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대상자의 어느 한 차수의 보호조치결정 정보가 입양으로 되어 있다면 보호유형을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로 변경한 후 자격결정 가능
- (사례2) 아동보호서비스관리 종결(탭)의 종결사유가 “타 시·군·구 보호시설로 전출”로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18세 이후 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되었어도 시스템상 자격결정 대상자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사유를 원가정복귀, 연령도래에 따른 퇴소 중 해당되는 사유로 변경한 후 자격결정 가능
- (사례3) 아동보호서비스관리 보호결정/변경(탭)에 시설 정보가 입력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시설명, 시설유형(아동복지시설)을 입력한 후 자격결정 가능
- (사례4) 아동보호서비스관리 보호결정/변경(탭)과 종결(탭)에 관련 정보가 모두 저장 처리되어 있어야 함. 임시저장만 된 경우 자격결정이 불가하며, 반드시 저장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발급 자격결정 가능
- (사례5) 타 시·군·구에서 사례이관된 대상자 정보가 행복e음 아동보호서비스통합대상자관리 시스템 상으로 이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이관받은 시·군·구에서 자격책정이 불가. 이 경우 ① 기존 시·군·구에서 자격결정을 완료하거나 ② 시스템상 정보 이관 후 자격결정 가능



입소일, 퇴소일이 잘못 기입된 상태로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을 완료했거나, 대상자가 아님에도 자격결정을 한 경우 수정 또는 취소가 가능한가요?



- (전자결재 신청~완료 전) 전자결재 완료 전이라면 개별 대상자 자격결정 화면의 ‘전자결재 취소’ 버튼을 통해 결재 상신 취소 가능
- (전자결재 완료 후) 이미 자격이 책정된 경우 자격결정 대상자 현황 화면에서 ‘중지’ 버튼 선택 후 전자결재 절차를 완료하면 기존 자격결정 정보 삭제됨
⇒ 보호종료확인서 자격결정 화면에서 입소일, 퇴소일 등 정보 수정 후 다시 자격결정 절차 진행 가능



자격결정 화면에서 시설 정보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발급 자격결정 화면에서 시설검색 시 공란, 대문자, 소문자까지 구분되기 때문에 정확한 시설명 입력 필요
예) 정확한 시설명 : ‘세종보건복지부의집’ O → ‘세종 보건복지부의 집’ 입력 시 검색 X



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주소가 잘못 연동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담당자 기관주소 검색, 수정 기입이 가능하므로, 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주소가 잘못 연동된 경우 주소 검색 팝업을 통해 정확한 주소로 입력



보호종료확인서의 입소일(보호시작일), 퇴소일(보호종료일)이 반드시 정확해야 하나요?



- 대상자의 전체 보호기간이 특정 지원 사업의 자격조건과 연관되는 경우, 보호종료확인서로 대상자가 해당 자격에 부합하는지 일차로 확인됨
- 다만, 현 시점에서 보호기간이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원 사업은 자립수당과 병무청 병역 면제(시설 보호 5년 이상)가 있으며, 보호종료확인서와 무관히 ① 자립수당은 시·군·구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지급하며, ② 병무청 병역 면제의 경우 병역법 시행규칙상의 별도 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대상자 현황에 자격상태는 '책정'이나 전자결재 여부는 '미처리'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이 경우 사례이관된 이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다른 시·군·구에서 해당 대상자에 대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 업무를 완료한 상태임
- 대상자의 자격상태가 "책정"인 경우 별도로 자격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됨



보호종료확인서의 정보를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보호종료확인서 발급 자격결정과 자립수당은 관리 시스템이 상이하므로 자립수당은 확인서 발급 자격결정과 무관히 시·군·구에서 지급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하여 별도 지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정·지급



조기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보호종료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 조기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 자격 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스템 상 보호종료 확인서 발급이 어려움
- 따라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정보(보호기간 등) 조회 후 보호종료확인서 수기 발급* 필요
 - * 보호종료 확인서 내에는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필수
 - ** '20년 이전 보호종료로 인한 시스템 미등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관장 명의의 직인 필수

(2025년 2월)

시·도 (수행기관)	주소	연락처	이메일
서울특별시 (서울아동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102동 2층 O+SEOUL	02-2226-1524	sjarip@sjarip.or.kr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아동복지협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제로27번길 34, 3층	051-441-7006	busanjarip@hanmail.net
대구광역시 (대구YWCA)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1길 22, 3층	053-243-0090	dgyjarip@hanmail.net
인천광역시 (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601호	032-204-4279	injarip@inchild.org
광주광역시 (광주아동복지협회)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로 62-2, 1층	062-672-1930	gj1930@naver.com
대전광역시 ((사)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8, (선화동, 에이스퀘어) 305호	042-242-5726	djjarip5726@naver.com
울산광역시 (사회복지법인 봉석재단)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241, 대공원코오롱파크폴리스 상가 208호	052-265-5636	jarip5636@naver.com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법인 누리온복지재단)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성로 239	044-867-2056	sjjarip@daum.net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남부)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21, 태보빌딩 4층	1566-2714 031-346-6994	ggjarip@ggjarip.or.kr
	(북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호수로 358-39 동문타워 1차 601호	031-296-524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솔길 25, 2층	033-261-2340	gwjarip@gangwon. pass.or.kr
충청북도 (한국아동복지협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407호	043-238-5393	cbjarip@daum.net
충청남도 (충남아동복지협회)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32, 2층 217호	041-541-6553	cnjarip21@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65, 301호	063-714-3329	jeonbukjarip@gnk.or.kr
전라남도 (전남아동복지협회)	(순천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금곡길 21, 5층	061-742-4908	jnjarip@daum.net
	(목포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9, 5층	061-282-4908	
경상북도 (경북아동복지협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77, 상가동 306호	054-441-9942	kbjarip@naver.com
경상남도 (굿네이버스 경남충부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 45, 현대센앤빌 C동 209호	055-265-7942	changwon1@gnk.or.kr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법인 삼인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5	064-759-0846	jjadongjarip@hanmail. net

VI

가정위탁아동 미성년후견인 선임 안내서

01

위탁아동의 친권 및 후견

가 친권

1) 친권의 의의(「민법」 제911조, 제913~916조, 제920조)

-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갖게 되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이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재산의 보전을 위해 아동의 복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래의 친권을 행사해야 함
 -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거소지정권
 - 신분상 행위에 대한 대리권 및 동의권
 - 자녀 재산의 관리권 및 법률행위의 대리권

2) 친권의 상실 및 제한

- 친권의 상실 및 제한 사유(「민법」 제927조의2제1항, 「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친권자의 친권 남용, 아동학대,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을 상실 또는 제한시킬 수 있음
 - 친권자의 이익을 위한 자녀의 재산 처분 행위
 - 자녀에게 적절한 음식이나 의복 등 방임
 -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등을 포함하는 아동학대
 - 친권자의 행방불명, 장기 의식불명, 중병 등 친권 행사가 불가능한 중대 사유
 -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거부
 - 자녀 취학거부
 - 자녀를 범죄나 성매매 등으로 유도
 - 자녀와 친밀한 유대관계에 있는 제3자와의 만남 금지

● 친권의 상실 및 제한 종류

① 친권의 상실(「민법」 제924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

② 친권의 일시정지(「민법」 제924조제1항)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친권자의 친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

③ 친권의 일부제한(「민법」 제924조의2)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친권자의 친권 중 거소지정권,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일부 권한에 대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것

④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민법」 제925조)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키는 것

⑤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사퇴(「민법」 제927조제1항)

친권자가 장기간의 국외 체류, 중병 등으로 인해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사퇴하는 것

▶ 나 후견

1) 미성년후견제도의 의의(「민법」 제928조, 제932조, 「아동복지법」 제19조)

- 미성년 자녀의 보호·교양 책임은 일차적으로 부모인 친권자에게 부여되지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제한으로 보호 공백이 생겨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를 위해 미성년후견제도를 둠

2) 미성년후견인 선임 방법

- 미성년후견인 인원은 한 명으로 제한(「민법」 제930조제1항)
 - 「민법」상 유언에 따른 지정후견인
 - 「민법」상 선임되는 후견인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상 후견인

3) 미성년후견개시 사유(「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제927조 제1항, 제928조)

- 친권자 사망
-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제한 선고
- 친권자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

4) 후견인의 대리권(「민법」 제938호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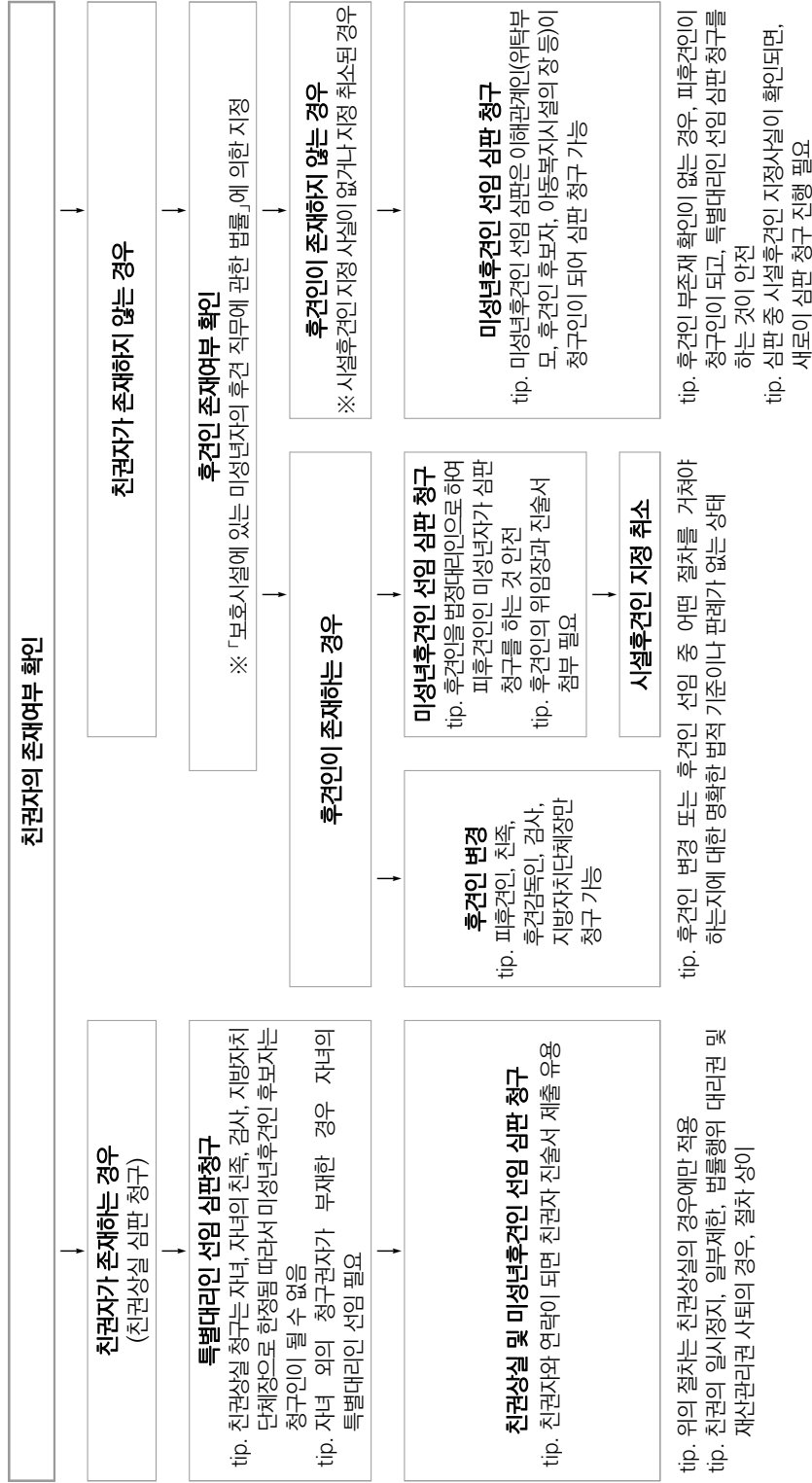
- 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가정법원은 그 범위를 정할 수 있음

5) 후견인의 결격 사유(「민법」 제937호)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및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가 진행 절차 개요

1) 세부진행 절차 ※ 본 미성년후견인 절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2) 친권자 존재여부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친권자의 친권행사 의사 확인, 청구절차 및 유형과 관할 법원 결정 등을 위해 친권자 소재 파악 우선 진행

●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친권자의 친권행사 의사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친권상실 청구는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청구인이 한정됨

① 친권자 소재 파악이 가능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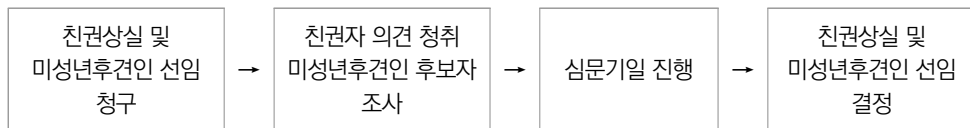
- 친권자의 현주소지 관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과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친권자의 진술서 제출은 절차상 유용

② 친권자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장기간 미성년 자녀를 유기한 사실을 면밀히 확인
- 위탁아동의 현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친권자의 현주소지 확인(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 이송으로 인한 소송기간 장기화)

③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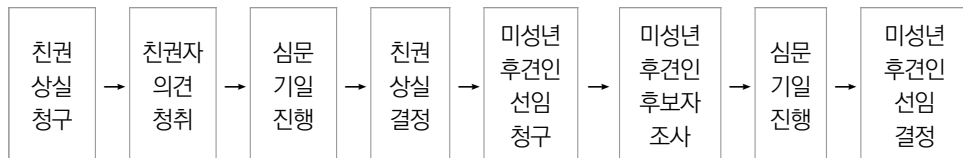
- 병합형



※ 미성년자가 청구인인 경우, 후견인 후보자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함께 진행

※ 소송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병합형으로 주로 진행

- 분리형



※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일방이 사망하고 친권이 상실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생존한 부 또는 모가 친권자 지정 청구가 가능한 기간 이후 미성년후견인 선임 가능(「민법」 제927조의2)

●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보호시설 입소 후 후견인이 미지정된 사례, 시설 간 이동이 잦은 사례 등 상황에 따라 예외사례가 존재하므로, 과거 입소했던 보호시설을 통해 후견인 지정여부 필히 확인

3) 보호시설에서 의뢰된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상 보호시설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 지정 여부를 확인하고 미성년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후견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보호시설의 종류		미성년후견인	지정여부 확인 방법	지정취소 방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	고아인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장 (법 제3조제1항)	위탁아동의 기본증명서에 지정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입소한 적 있는 모든 보호시설마다 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취소 (법 제7조)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조제3항, 시행령 제3조제2항)	위탁아동의 기본증명서 후견인 기재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허가의 취소를 청구 (법 제7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	고아인 미성년자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 (법 제3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	위탁아동의 기본증명서에 지정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여부 확인 ※ 보호시설의 소재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불일치하는 경우 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취소 (법 제7조)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가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 지정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3조제3항, 시행령 제3조제1항, 제2항)	위탁아동의 기본증명서 후견인 기재사항 확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원에 허가의 취소를 청구 (법 제7조)

● 시설후견인 지정 취소 및 허가 취소와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후견인이 있는 경우 ①미성년후견인 지정 취소 또는 허가 취소 후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②미성년후견인 변경 청구, ③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지정 취소 또는 허가 취소 3가지의 절차에 대해 각 법원의 견해 차이가 있음
- 입법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판례가 누적되어야 그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임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3가지 절차를 진행한 사례들이 있으며, 해당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은 모두 인용되었음

4) 미성년후견인 선임사건 구비서류

- 최대한 명확하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법원의 보정명령 최소화 및 소송기간 단축
- 지자체, 아동보호시설,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 필요

번호	구분	작성자 및 발급대상자	발급기관	비고
1	법률구조신청서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직접 작성	• 법률구조기관에 서식 문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3	소송구조계약서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4	본인 진술서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 위탁아동 양육 에피소드 중심으로 행복했던 점, 힘들었던 점, 후견인이 꼭 되어야 하는 사유 등 감동적이고 생생하게 작성(최소 10줄 이상) • 후견인 후보자와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각 1부 작성 • 하단에 이름 명시 및 막도장 날인
5	후견인 보수 포기서 1부	위탁부모(후견인 후보자)		• ‘(후견인 선임, 입양, 성변경)과 관련한 모든 보수를 포기합니다.’를 자필로 작성 • 하단에 이름 명시 및 막도장 날인
6	증인 진술서 1부	후견인 후보자의 배우자, 사례관리자 등		• 후견인후보자를 후견인으로서 적절한 이유 등을 에피소드 중심으로 생생하게 작성(최소 10줄 이상) •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7	사건본인 의견서 1부	13세 이상인 위탁아동		•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작성 • 자필 작성 • 학생증 사본 첨부
8	친부모 동의서 각 1부	친부모(상대방)		•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작성 • 친부모의 친권상실, 친권사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필히 안내 • 친부모 양쪽 각각 구비 •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 수감 중일 경우, 수감시설 통해 수감 증명원 및 무인증명서, 신분증 앞뒷면 사본 제출

번호	구분	작성자 및 발급대상자	발급기관	비고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위탁아동(사건본인), 친부모(상대방)	시(구)·읍· 면 사무소	• 후견인 후보자와 신청인이 상이한 경우, 각 1부 구비 • 친부모 연락두절로 친부모 및 위탁 아동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추후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보완 가능 • 입양사건의 경우, 위탁부모 양쪽 각 1부 구비
1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친부모(상대방)		
11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위탁아동(사건본인), 친부모(상대방)		
12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주소변동내용 포함)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위탁아동(사건본인), 친부모(상대방)		
13	주민등록초본 각 1부 (주소변동내용 포함)	위탁부모(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위탁아동(사건본인), 친부모(상대방)		
14	가정위탁확인서 1부	위탁아동(사건본인)		
15	수급자증명서 1부	위탁아동(사건본인)		• 후견인 후보자명을 포함하여 발급
16	신용정보조회서 각 1부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배우자	한국 신용정보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
17	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생략가능)	위탁부모 (후견인 후보자 및 신청인), 배우자	경찰서	
18	기아발견조서 1부	위탁아동(사건본인)	경찰서 및 시(구)·읍·면 사무소	• 무연고 아동인 경우만 제출 •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발급받아 제출 • 기아발견조서가 없는 경우, 무연고를 증빙할 수 있는 아동카드 등으로 대체 제출
19	이전에 지정된 후견인의 소송위임장	이전에 지정된 후견인	직접 작성	• 소송진행 이전 후견인 지정취소하지 않는 경우 구비 •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후견인에게 발급 요청하여 제출
20	후견인 지정확인서	위탁아동(사건본인)	시(구)·읍·면 사무소	• 소송위임장은 현 후견인이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고자 작성 • 후견인변경동의서는 아동의 후견인이 후견인후보자로 변경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 작성
21	후견인 변경동의서	이전에 지정된 후견인	직접 작성	• 후견인의 인감도장 및 시설 직인 날인

번호	구분	작성자 및 발급대상자	발급기관	비고
22	후견인 지정취소서	위탁아동(사건본인)	시(구)·읍·면 사무소	• 소송진행 이전 후견인 지정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 • 가정위탁지원센터가 후견인에게 발급 요청하여 제출
23	후견인 진술서	이전에 지정된 후견인	직접 작성	• 후견인 진술서는 후견인을 취소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인사 이동, 아동 퇴소 등) • 후견인의 인감도장 및 사설 직인 날인
24	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후견인 후보자	가정법원 또는 전자후견등 기시스템 (http://egdrs.scourt.go.kr)	
25	막도장	위탁부모(후견인 후보자)		• 재판 관련

나 위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법률구조 사례

※ 미성년후견인 선임 법률구조 사례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진행했던 사건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1) 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 양육을 회피한 친부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8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부를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

진행과정

위탁부모는 2009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위탁아동(남, 18세)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위탁아동의 친부모는 2000년 이혼하였고, 이혼 후 각자 재혼하였으며, 친권자로 지정된 친부는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위탁아동의 양육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위탁아동은 조부모에게 맡겨졌으나 조부모의 아동학대로 결국 위탁가정에 위탁되었다. 위탁부모는 위탁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며 많은 사랑을 쏟았고, 위탁아동 또한 위탁부모를 친부모처럼 따르고 의지하고 있다. 위탁아동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장을 개설하거나 핸드폰을 개통할 때에 친권자인 친부의 협조가 필요한데, 친부와는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부에 대한 친권의 상실과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 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 연락 두절된 친모의 친권을 일부제한하고 위탁모인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진행과정

위탁모(여, 45세)는 위탁아동(남, 7세)의 외조모이다. 위탁아동의 친모는 위탁아동을 임신했을 때 위탁아동을 입양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출산 후 생각이 바뀌어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친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탁아동을 홀로 집에 유기한 채 집을 나갔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꿨다. 외조모는 그날로 위탁아동을 집으로 데려와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위탁아동의 위탁모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양육하고 있다. 하지만 위탁모가 위탁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아동의 용돈통장 개설조차 할 수 없었다. 친권자 마저 연락 두절되어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향후 위탁아동의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다.

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친모의 친권 중 보호·교양권, 거소지정권, 기타 양육에 관련된 권한의 제한과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상실시키고, 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 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1년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2)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소재불명으로 친권이 상실된 친부모 대신 5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한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후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 지정취소

진행과정

위탁부모(남 50세, 여 47세)는 직장에서 후원하는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에 위탁아동(9세)과 만나게 되었다. 위탁아동의 친부모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이미 친권이 상실되었고, 위탁아동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위탁부모는 2014년부터 위탁아동과 인연을 맺은 후 5년째 양육하고 있으나, 법정대리권이 없어 아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병원치료를 받는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위탁부의 해외발령이 예정되어, 여권 발급을 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중, 친부모의 친권은 이미 상실되었으나 입소했던 보호시설의 장이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우선 위탁모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은 후 다시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이후 해당 시설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기존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의 지정취소를 요청하여 절차를 완료하였다. 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6개월간이 소요되었다.

- 무연고 아동의 시설퇴소로 시설후견인이 종료된 후, 보호 중인 위탁부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진행과정

위탁아동(여 8세)은 무연고 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였다. 위탁모(여, 46세)는 영아원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동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 2014년 11월, 아동이 시설을 퇴소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위탁모가 가정위탁을 하게 되었다. 시설 퇴소로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은 종결되었고, 위탁부모는 아동을 위한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줄 것과 위탁모를 특별 대리인으로 선임해 줄 것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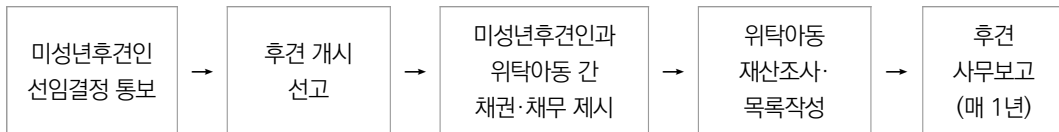
-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었던 시설보호 아동을 위탁책정 후, 시설후견인에서 위탁부모로 후견인을 변경

진행과정

위탁아동(남 4세)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되어 아동일시보호소에 보호되었다. 일시보호소 봉사자였던 위탁모(여, 48세)는 아동을 40일정도 가정양육하였다. 일시보호소를 떠난 아동을 잊지 못한 가족들은 아동을 가정위탁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중에도 후견인은 여전히 보호시설장으로 되어있어, 응급수술, 해외여행 등에 불편이 많았다.

결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을 시설미성년후견법상 후견인으로 지정된 시설장에서 위탁부모로 변경하여 선임해줄 것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본 사건은 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

가 미성년후견인 선임결정에 따른 임무 및 절차



1)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문 수령

- 법원이 미성년후견인 결정문을 후견인(위탁부모) 주소지로 송달
- 이후 절차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개별 안내

2)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

- 미성년후견인이 선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후견개시 신고서, 판결문(심판문) 등본 및 확정증명원(법원 민원실에서 발급)과 함께 후견개시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제80조, 제82조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642호, 2025.7.19. 시행, 2025.7.7. 일부개정) 양식 16]
- 이후, 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에 등재
※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미성년후견 개시 신고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3) 미성년후견인과 위탁아동 간의 채권·채무 제시(「민법」 제942조제1항, 제2항, 제944조)

- 미성년후견인과 위탁아동(피후견인) 간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재산목록의 작성 완료 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
-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위탁아동(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 또한 채권·채무 제시

4)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민법」 제942조 제1항, 제943조, 제944조)

- 미성년후견인 선임 후 2개월 이내 피후견인(위탁아동)의 재산 목록 작성
- 법원의 허가를 통해 기간 연장 가능
-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필요

- 미성년후견인은 아동 명의의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갖추어 재산목록을 작성
 - * 미성년후견인 선임 심판 시 법원에 제출된 재산목록, 법원에서 아동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 사실조회하여 확인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등을 기초로 하여, 아동 명의의 계좌, 보험, 부동산 및 기타 재산 내역을 파악
-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까지 긴급상황 이외 재산에 관한 권한 행사 불가 및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5) 후견사무보고

- 후견개시 심판확정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피후견인(위탁아동)에 대한 신상보호와 재산관리 상황을 법원에 보고
- 후견사무보고서 미제출 시, 법원이 엄격한 감독 이행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https://pro-se.scourt.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건 번호와 피후견인 이름으로 기본 사건정보를 조회하여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후, 직접 법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https://ecfs.scourt.go.kr>)에서 첨부파일로 제출
 -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홈페이지에서 후견사무보고서 항목별 용어, 작성법, 작성사례 등에 대한 동영상 및 가이드 확인 및 서식 다운로드 가능

나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 미성년후견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후견사무 처리 의무 부여(「민법」 제681조, 제956조)
-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 보호를 위해 후견사무 감독

1) 미성년자(위탁아동)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친권 상실 등)

- 미성년자(위탁아동)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거소지정권 등 법정 대리인으로서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음

2) 친권자는 있으나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민법」 제946조)

- 친권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한정하여 미성년에 대한 후견 권한을 행사

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민법」 제945조, 제95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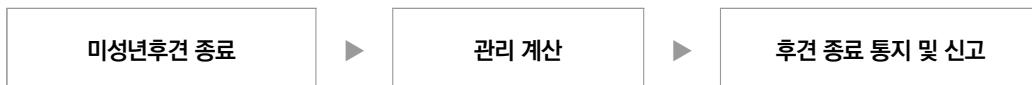
- 친권자가 정한 교육·양육방법 또는 거소 변경,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 취소·제한, 미성년자를 감화기관이나 교정기관 위탁하는 행위
-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 부담하는 행위, 소송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 목적의 행위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및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다 미성년후견 종료

1) 미성년후견 종료 사유(「민법」 제690조, 제826조의2, 제928조, 제939조, 제9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 피후견인의 사망 또는 성년 도달
-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 친권상실선고의 취소 등으로 피후견인의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가능해진 경우
- 피후견인이 인지 또는 입양되어 새로 친권자가 생긴 경우
- 미성년후견인 사망, 사임, 변경

2) 미성년후견 종료 후 절차



● 관리 계산(「민법」 제957조제1항, 제958조제1항, 제2항)

-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임무가 종료 1개월 이내 피후견인(위탁아동)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간 연장 가능
- 미성년후견인(위탁부모)과 피후견인(위탁아동) 상호 간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 부가
- 미성년후견인(위탁부모)이 자신을 위해 피후견인(위탁아동)의 금전을 소비한 경우,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위탁아동)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

- 후견 종료 시 긴급사무의 처리(「민법」 제691조 및 제959조)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사무 처리 지속할 의무가 있음

- 후견 종료 통지 및 신고
 - 후견 종료 1개월 이내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미성년후견 종료신고서와 함께 미성년후견 종료신고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제642호, 2025.7.19. 시행, 2025.7.7. 일부개정)양식18]
 - ※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미성년후견이 종료된 경우 제외
 - ※ 아동이 입양된 경우 기존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되므로 별도의 후견 종료 신고 불필요

〈법률구조신청서〉

법 른 구 조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 위탁부모 성명	연령		직업	
	주 소					
	전 화	본인 (핸드폰)				
		(집)		(이메일)		
		비상연락망1.				
		비상연락망2.				
		비상연락망3.				
자 산				월수입		
상 대 방	성 명	※ 친권상실되는 친권자 성명	연령		직 업	
	자산 및 월수입		주소 혹은 연락처			
비 고	신청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 선임’ 혹은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 기재				
	특이사항	※ 추가 참고사항 기재				
법률구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귀중						

제4부

“

서 식

”

I. 아동보호서비스 서식

제4부 | 서 식

I 아동보호서비스 서식

01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수 서식(작성방법 포함)

구분	서식NO	서식명	관련법-호
공통	서식 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서식 2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3	일시 보호 의뢰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 4	육구조사표	
	서식 5	위기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서식 6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친권 관련)	
	서식 6-1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상속 관련)	
	서식 7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8	친부모 상황 점검표	
	서식 9	아동 상황 점검표	
	서식 10	아동보호동의서	
	서식 10-1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설명확인 및 아동동의서	
	서식 11	개별보호·관리계획서	
	서식 12	아동카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4호
	서식 13	서비스 제공 계획서	
	서식 14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공통	서식 15	양육상황 점검표	
	서식 15-1	입양대상아동 양육상황점검 보고서	
	서식 16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구분	서식NO	서식명	관련법-호
공통	서식 16-1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서식 16-2	재보호조치 신청서	
	서식 16-3	재보호조치 신청 위임장	
	서식 17	가정 복귀 점검표	
	서식 18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용>	
	서식 19	가정 복귀 의견서	
	서식 20	종결심사서(사례결정위원회 상정)	
	서식 2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연령도래)	
	서식 21-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비학대/조기종료)	
	서식 22	양육계획서(보호자용)	
	서식 23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서식 24	사례회의록	
	서식 24-1	재보호조치 의견서	
	서식 25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서식 2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3
	서식 27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4
	서식 28	보호종결 사유별 사후관리 점검표	
가정 위탁	서식 29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호
	서식 30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2호
	서식 31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
	서식 3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
	서식 33	범죄경력 조회 화신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
	서식 34	위탁부모 추천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1호
	서식 35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2호
	서식 36	소재불명조사복명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2-1호
	서식 37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3호
	서식 38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조회 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3의1호
	서식 39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제10호의2
	서식 39-1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구분	서식NO	서식명	관련법-호
양육 시설	서식 40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1호
	서식 41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아동분야 사업안내1 서식2호
입양 아동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서식 43-1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서식 43-2	입양 동의·승낙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0]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1]
	서식 46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16]
	서식 47	친생부모 상담 및 보호조치 현황	
	서식 48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33]
	서식 49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국내입양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유기 실종 아동	서식 51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 52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53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2호의2
	서식 54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4호
	서식 5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별지 1호
	서식 56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시설미성년후견법 시행령 별지 3호
학대 피해 아동	서식 57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서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1호
	서식 58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피해아동)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5호
	서식 59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동보호전담요원용)	
	서식 60	가정환경 조사서(아보전용)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9호
	서식 60-1	가정환경 조사서(일시보호)	아동학대 대응 업무매뉴얼2 서식14호
	서식 6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아동분야사업안내2 서식23호

02

아동보호전담요원 필수 서식

서식 1

접수상담지(접수상담)

□ 대상아동 정보	
대상자명	성별
주민등록주소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전화번호 (아동) (보호자)
□ 의뢰자 정보	
의뢰자 성명	소속/기관
주소	전화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후대번호	
□ 접수 정보	
접수구분	접수유형
신원	접수일자
기구유형	발생일자
주거구분	발생장소
보호의뢰 사유	□ 장애인가구 □ 다문화가구 □ 북한이탈주민가구
주요문제	□ 정서·정신건강 문제 □ 일상생활 문제 □ 가족관계, 보육, 간병 등
접수내용	□ 주거·주거 문제 □ 교육, 장애, 질병, 심리·정서·경제·주거 어려움 등, 지능지수가 71이상
접수결과	□ 아동보호서비스 접수 (□ 일시보호필요)
접수자 의견	□ 타 서비스 및 사례관리 연계 (□ 읍·면·동 서비스 □ 통합사례관리(희망) □ 아동통합사례관리(드림) □ 아동학대(의심))
개인정보활용동의	□ 동의 (□ 동의서 첨부 □ 유선/구두) □ 미동의
접수상담번호	소 속
연 락 처	접수 담당자

②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작성시기	- 보호자 의뢰 등 보호대상아동 발굴 시(1일 이내)
작성목적	- 아동과 가정의 문제를 통해 보호 필요 및 필요 서비스 여부 파악
작성방법	- 전화상담, 내방, 가정방문 등 통하여 접수상담 작성(복귀 후 시스템 입력) ※ 읍·면·동 및 드림스타트,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초기상담을 실시 후 시·군·구에 의뢰 가능
활용방법	- 아동의 보호조치 여부, 보호유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항 목		작성내용
대상 아동 정보	대상자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아동, 보호자), 전화번호, 주소	- 대상아동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을 기록 * 주민등록주소지와 다를 경우 실거주지도 함께 기록 *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관리 전산번호 기입
의뢰자 정보	의뢰자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아동보호를 의뢰한 사람의 정보 기록(사례이관 전 담당자의 정보 등)
접수 정보	접수구분, 접수일자, 접수 유형	(단순안내) 단순서비스, 읍·면·동으로 이관 (요청접수) 아동보호서비스 접수결과와 연관 - 지역사회기관 방문, 가정방문, 내방, 전화 선택
	신원, 182신고, 발생일자, 발생장소	유기아동일 경우 해당 정보 기록(아동카드 정보)
	가구유형	-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선택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소년소녀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자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공동체가구) 혈연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구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 -(장애인가구)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 가구분류와 중복 체크 가능 -(다문화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체크 -(북한이탈주민가구) 탈북자 가구
	주거구분	자가, 전세, 월세, 임대주택, 무상임대, 기타 선택
	보호의뢰 사유	-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빈곤/실직, 부모 사망, 부모질병, 부모미혼 등 선택(중복체크 가능) ※ 보호출산으로 의뢰된 아동은 보호의뢰 사유 자동 선택

항 목	작성내용
주요문제	• 주요문제에서 아동의 보호자 관련되어 있는지 면밀히 검토 • 안전(학대, 방임, 기타 안전)의 문제(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 상의 문제) -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족 내 폭력 및 학대, 방임이 있는 경우 - 기타 가족 내외로부터의 안전의 위협이 있는 경우 •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 - 심각한 건강문제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 정신건강, 자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술 혹은 약물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인터넷·게임 중독, 도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일상생활유지 문제(기능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유지상의 문제) - 일상(식사, 용변처리, 옷 입기, 세탁, 몸 씻기, 시장보기 등)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신변관리나 일상생활유지 기능(전화걸기, 교통수단이용, 복약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도보 등 외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취미 및 여가 활동의 부족 및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의 문제) - 부부·부모-자녀 간 갈등이 있거나 관계가 단절된 경우 - 자녀양육 및 보육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가족 구성원의 돌봄 및 간병 관련 보호부담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사회적 관계(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문제(친지, 이웃 및 소속집단 내에서의 관계형성 및 유지상의 문제) - 친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형성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 - 비공식적 지지망이나 지역사회 지지체계 활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경제적 문제(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 및 자산관리상의 문제) - 기초적 욕구(의식주)의 충족에 필요한 자원부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자산취득 및 관리(저축, 부채 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 교육 및 학습의 문제 -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교육 습득상의 문제 • 취(창)업 및 직무수행상의 문제(취업·창업상의 문제 및 직업기능 수행상의 문제) - 기술, 경력, 능력부족 등으로 취(창)업에 부담이 있는 경우 - 자녀양육, 돌봄, 건강문제 등으로 취(창)업이 어려운 경우 - 구직 및 직업 활동의 불안정, 비정규성 등의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 생활환경 문제(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권익보장상의 문제) - 주거 및 주거환경의 문제가 있는 경우 - 누수, 가스누출 등 거주지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가족구성원의 권익보장상의 문제) - 법, 옹호, 인권 등과 관련하여 권리보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항 목		작성내용
	접수내용	• 의뢰자 및 대상아동이 요청하는 주요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기록 * 피면담자가 하는 말을 중심으로 기록 (예 : 친생모는 아동을 입양보내고 싶다고 함)
	접수결과	• 아동보호서비스(분리보호필요아동), 서비스 및 사례관리 연계(읍·면·동 서비스,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아동통합사례관리대상(드림스타트), 피해아동) 선택 • 타 서비스연계·사례관리 연계일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례의뢰 • 단순 정보제공으로 문제 및 욕구해결이 가능한 경우 또는 서비스 거절, 상담 거부 등으로 초기 상담이 어려운 경우 단순 안내로 종료
	접수자의견	• 일차적으로 대상자 유형 분류의 사유를 기술하고, 향후 사례관리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상담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술
	개인정보활용동의	• 서식2에 대한 여부 기록(접수 유형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여부 체크)

서식 2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동보호서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전화번호, 주소, 개인이력,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상황내용(주거사항, 경제상황), 가족구성, 가족관계, 보호연장정보(실거주 주소, 계좌정보), 아동점검정보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의 보호 서비스 종결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서비스 관련 수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복지대상자 선정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기관명 :)	아동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가족구성원 정보 (성명, 연령, 동거여부, 연락처) - 사례관리 정보 (가족력, 개인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로 보호서비스 종결 후 5년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장기관의 장으로부터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공공기관

*2. 동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관·법인·단체·시설

*3. 7대 공공부문 사례관리 사업(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자활 사례관리, 중독 및 정신건강사례관리) 수행기관 및 시설

*4.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동보호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 및 처리 안내]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가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서명 필수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 아동,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칸 추가 등 서식 변경 가능

○○○ 시·군·구청장 귀하

※ [법정대리인의 동의 관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5호)

서식 3 일시 보호 의뢰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일시 보호 의뢰서

보호 의뢰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그 밖의 사항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일시 보호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탁보호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

④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긴급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보호자로부터 긴급 분리보호하기 위함 (아동학대, 보호자 부재 등)
작성방법	- 접수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일시보호는 대면 상담 후 결정)
활용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참고자료

항 목	작성내용
보호의뢰 아동	- 아동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아동의 주소 기재 ※ 아동이 일시보호시설로 주소를 옮겼어도 아동의 원 주소지 작성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모두 기재 [확인 가능한 경우 작성]
보호자	- 아동과 보호자의 관계 기재 예) 친부, 친모, 외조모, 이모, 삼촌 -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과 현재 직업 기재 - 보호자(부, 모 모두 기재)의 주소(실거주지) 기재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기재
그 밖의 사항	-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시설(또는 위탁부모) 기재 - 일시보호가 필요한 구체적 사유 작성 예) 보호자 없이 아동이 가정내에서 방치되어 있어 긴급분리 보호 필요 - 아동의 특이사항(질환, 복용해야할 약, 장애 등)이나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예) 아동이 00질환으로 취침 전 00약 복용해야함

서식 4

육구조사표

육 구조 사 표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화번호		모차수()차								
주 소			휴대전화											
주거사항	주거 형태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연립 ☐ 아파트 ☐ 무허가, 오피스, 빌라하우스 ☐ 여관, 고시원, 쪽방 ☐ 기타()	주거 구분	모자(소유주 :) 모전세(전세금 만원) 모월세(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모임대주택(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모무상임대 모기타()	기대 (개)	모방 (개) 모거실 (개) 모주방 (개) 모화장실 (개) 모욕실 (개) 모화장실·욕실 겸용	난방 방법	모가스·기름보일러 모연탄·화목보일러 모전기·메트·전기온돌 모없음 모기타()	모공용 모단독 모수채식 모재래식 모본채 모별채					
	주거상태	☐ 양호 ☐ 노후 ☐ 긴급보수필요	☐ 폭염취약 ☐ 한파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 화재취약					
가구유형	주거환경	☐ 소음 ☐ 습도 ☐ 환기	☐ 대포변 ☐ 대변기 ☐ 대변기	☐ 이사계획 ☐ 이사계획 ☐ 이사계획	☐ 무 ☐ 무 ☐ 무	☐ 거주기간 ☐ 거주기간 ☐ 거주기간	☐ 년 ☐ 년 ☐ 년	☐ 개월 ☐ 개월 ☐ 개월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 모차에인가구
	관계	☐ 성명 ☐ 성명 ☐ 성명	☐ 주민번호 ☐ 주민번호 ☐ 주민번호	☐ 연령 ☐ 연령 ☐ 연령	☐ 성별 ☐ 성별 ☐ 성별	☐ 동거여부 ☐ 동거여부 ☐ 동거여부	☐ 결혼상태 ☐ 결혼상태 ☐ 결혼상태	☐ 학력 ☐ 학력 ☐ 학력	☐ 직업 ☐ 직업 ☐ 직업	☐ 장애 ☐ 장애 ☐ 장애	☐ 질병 ☐ 질병 ☐ 질병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가족사항	▶ 구정원 세부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이동과의 관계												

	주소		실거주주소				
	성별		학력		학교명/학년		
	직업		월평균 소득		생활수준		
	결혼여부		기혼/미혼 사유		근로능력유무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유형		질환종류				
대상아동	비고						
	등록기준지						
	가정환경 (성장과정)						
서비스이력	수혜자	개시일~종료일	급여 서비스명	서비스유형	제공주기	제공기관	서비스상태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0 안전	①가족내 안전유지	폭력						
		성추행/성폭력 유기 방임 학대 실종						1. 정신질환 2. 음주문제 3. 약물 오남용 4. 폭력적 성향 5. 왜곡된 성의식 6. 치매 7. 무기력감 8. 성격차이 9. 무관심/의지 없음 10. 보호역할 가무월 부재 11. 가족내차별 12. 가족구성원 간 갈등 13. 가정해체 14. 경제적 빈곤 15. 종교문제 16. 이유 없음
	②가족외부 부타의 안전 유지	폭력 성폭력 협박·위협 학대 착취						1. 자기보호능력미약(정신지체 등) 2. 피임/약용 3. 친인척 간 불화 4. 타인과 불화 5. 원한관계 6. 부채/금전거래
		신체장애 일시적 질병 및 상해 민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비만 영양결핍						1. 유전적(선천적)원인 9. 운동 부족 2. 사고 10. 질병에 노출된 환경 3. 자해 11. 경제적 빈곤 4. 방임 12. 적절한 치료 부재 5. 학대 13. 정보 부족 6. 신체 질병 및 질환 14. 치료 기피 7. 스트레스 15. 원인 미상 8. 잘못된 식습관
1 건강	②정신적 건강유지	환청/환각/망상 자해(자살)행위 약물오남용·중독 식사거부 수면문제 음주문제 (주정·과도한 음주· 알콜중독)						1. 음주문제(주정, 알콜중독 등) 2. 약물 오남용·중독 3. 스트레스 4. 정신분열증 5. 우울증 6. 신경증(공황장애, PTSD) 7. 기타 정신질환 의심 8. 치매 9. 성격장애 10. ADHD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2 이상 생활 유지	①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공격적 행동 (싸움결기 반복적 민원제기 폭력행동)						11. 불안감 12. 이성문제 13. 과도한 인터넷/게임 몰입 및 중독
		대인기피						
		은둔/침거						
		의사소통장애						
		위생관리문제						
2 이상 생활 유지	①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이상한 행동						
		불안감						
		식사 및 준비 곤란						
		의복착용 곤란						1. 신체질병/장애 2. 정신질환 3. 지적장애 4. 신체하악/노환 5. 무기력감/의지 없음 6. 교육 학습 부족 7. 상해 8. 보호자의 부재(가출 및 사망 등)
		외출 곤란						
3 가족 관계	②여가생활 활용	약물복용 곤란						
		위생관리 곤란 (용변처리 등)						
		인근생활 대처 곤란						
		여가활동 부족						1. 시간 부족 2. 정보 부족 3. 경제적 빈곤 4. 가족의 통제 및 교육 미흡 5. 적절한 치료 부재 6. 가족의 무관심 7. 주변의 괴임 8. 무기력감/의지 없음 9. 여가시설 부족
		부적절한 여가활동 (게임 도박 등)						
3 가족 관계	①관계형성	부부갈등						1. 실업 2. 폭력 3. 탈선 및 가출 4. 성격차이 5. 배우자 외도 6. 자녀양육 갈등 7. 종교 갈등 8. 가족부양부담 9. 다문화가
		부모자녀 갈등						12. 가족 내 차별 13. 학업성적 부진 14. 자녀 이성문제 15. 교우관계 16. 재산상속 갈등 17. 금전거래 18. 경제적 빈곤 19. 정보부족 20. 무관심
		고부갈등						
		형제(자매)갈등						
		가족간 관계소원						
3 가족 관계	①관계형성	가족간 관계단절						
		가족간 갈등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4 사회 적 관계	②가족돌봄	장애인돌봄 곤란 노인돌봄 곤란 아동돌봄 곤란 환자돌봄 곤란					10. 시간부족 11. 보호역할 기구원 부재 21. 장애 22. 질병	
	①친인척 및 이웃 간 관계형성	친인척과 갈등 친인척 관계소원 친인척 관계단절 이웃간 갈등 이웃간 관계소원 이웃간 관계단절					1. 친인척 부양부담 2. 대인기피 3. 소란 위협 4. 금전거래 5. 위험물 방치 6. 쓰레기 방치 7. 정신질환 8. 음주문제 9. 지역개발 10. 종교갈등	
	②소속된 집단 및 사회생활	직장생활 어려움 학교생활 어려움 종교생활 어려움 기타 사회생활의 어려움					1. 정신질환 2. 지적장애 3. 대인기피 4. 적응력 부족 5. 지원 거부 6. 따돌림 7. 폭력 8. 성폭력 9. 상습범죄 10. 학업수행 부진 11. 탈선 및 가출 12. 경제적 빈곤 13. 사회적 지지체계 부족 14. 시간 없음	
	①기초생활 해결	식비 부족 주거비 부족 의복비 부족 난방비 부족 공과금 체납 통신비 부족 의료비 부족					1. 실직/휴폐업 2. 파산 3. 신용불량 4. 사고 및 화재 5. 일시적 질병 및 상해 6. 중한 질병 7. 건강보험 미가입 8. 정보 부족 9. 저임금/수입 10.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11. 근로능력자 부재 (시명/가출/실종)	
5 경제	자산관리 능력부재 부채	자산관리 능력부재 부채					1. 지적장애 2. 치매 3. 정신질환 4. 음주문제 5. 습관성 도박 6. 보호자 부재 (소년소녀가장) 7. 근로능력자 부재	8. 실직/휴폐업 9. 파산 10. 신용불량 11. 사고 12. 의료비과다 13. 교육·학술 부족 14. 타인에 의한 세금채납 (명의도용 등)
	②자산관리	과태료·벌금 과소비·낭비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사1	원인1	제공사2	원인2	제공사3	원인3
6 교육	①기초지식 습득 및 향상	읽기·쓰기·말하기 문제 수리계산 능력 부족 그 외 기초 학습능력 부족 수업료·급식비 등 부족						1. 언어능력 부족 2. 신체적·정신적 장애 3. 학습능력 부족 4. 학습의지 부족 5. 학습지도자의 부재 6. 보호자의 무관심/인지부족
	②교육환경 개선	특수교육 문제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무단결석 학업성적 부진						1. 경제적 빈곤 2. 교육환경 지원자의 부재 3. 가족부양부담 4. 보호자의 인식/무관심/의지부족 5. 이성문제 및 교우관계 6. 탈선 및 가출 7. 본인의 무관심/의지부족 8. 정보부족
7 고용	①취(창)업	실업·실직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비정규직 구직의 어려움 창업의 어려움 기술교육의 필요 취업동기 부족						1. 신체·정신적 건강문제 2. 부채 3. 가족 간병부담 4. 자녀 양육부담 5. 조작생활 부작응 6. 파동림 7. 경험 및 경력 부족 8. 직업기술/훈련 부족 9. 저학력 10. 교통문제 11. 자금부족 12. 정보부족 13. 복지서비스 의존 14. 잦은 실패경험 15. 낮은 자존감 16. 사회관계기술 부족 17. 신체적 장애
	②고용유지	잦은 직장 이동 반복적인 재취업/창업 실패 실업급여 이탈·탈퇴 취업동기 부족 사업체 유지의 어려움						1. 신체·정신적 건강문제 2. 부채 3. 가족 간병부담 4. 자녀 양육부담 5. 조작생활 부작응 6. 파동림 7. 경험 및 경력 부족 8. 직업기술/훈련 부족 9. 저학력 10. 교통문제 11. 자금부족 12. 정보부족 13. 복지서비스 의존 14. 잦은 실패경험 15. 낮은 자존감 16. 사회관계기술 부족 17. 신체적 장애



육구영역	주요현상	대상자	주요원인 및 원인제공자				주요원인	우선 순위
			제공자1	원인1	제공자2	원인2	제공자3	원인3
8 생활 환경	① 주거내부 환경개선	화장실 열악 주방시설 열악 위생환경 열악 도배·장판 열악 냉난방 열악 전기/가스 시설 열악 상하수도 시설 열악 지붕노후(누수 등) 벽/담 등 노후 주변 내 이동 곤란 사생활 공간 부족					1. 시설부족 2. 시설낙후 3. 시설위험 4. 시설부재(장애인 편의시설 등) 5. 쓰레기 방지	
	② 주거외부 환경개선	학습환경 열악 교통접근성 열악 상습침수 철거 등 공공수용 거주지 이전 화재·폭발 위험물에 노출 생활환경 열악					1. 도서산간지역 2. 유흥업소 밀집지역 3. 공장 밀집지역 4. 자연재해 다발 지역 5. 우범지역 6. 편의/기반시설 낙후·부재 7. 위험물 방지 8. 쓰레기 방지 9. 정보 부족 10. 도시계획 (강제철거·퇴거)	
9 법률 및 권익 보장	① 법률적 지원	법률처리(재산/ 위자료 등) 문제 신분상실 사고보상 처리 파산/신용불량 국적문제					1. 법률지식 및 정보 부족 2. 법적후견인 부재 (장애·미성년 등) 3. 폭력/범죄 4. 이혼 5. 사고(의료·산재· 교통사고 등) 6. 결혼이민/이주/ 난민/탈북 7. 주민등록, 밀소 8. 경제적 능력 부족	
	② 권익보장	차별대우 권리침해					1. 고용기회 차별 2. 관련 법률조항의 문제 3. 부당한 철거나 이주 요구	
10 기타	기타							

주요요구	우선순위	요구명	요구내용	
종합의견			요청 서비스 내역	
			첨부파일	
사회적 지지자원			소 속	
관리번호			소 속	
연 락 처			담당자	

② 작성방법

작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희망복지지원단, 드림스타트)
시 기	- 상담·조사·사정과정 중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욕구(아동과 보호자)를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작성방법	- 접수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과 보호자를 상담하여 작성 ※ 욕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 아동상황점검 중 반드시 1회는 가정방문하여 실시
활용방법	- 아동의 보호조치 유형 및 관련 서비스 제공,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등

항 목	작성내용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욕구조사대상자의 대상자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차수를 기재
주거사항	• 대상자의 주거 형태, 가옥구조, 주거구분, 난방방법, 화장실, 주거상태, 주거환경, 이사계획, 거주기간 등을 기록함
가구유형	• 현 거주 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해 가구유형을 선택 - (부부중심가구) 부부 중심으로 부모 또는 자녀 등으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미혼모부가구)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모(부)-자녀로 구성된 가구 - (조손가구) 부모세대 없이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 (한부모가구) 편부·편모와 자녀 등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소년소녀가구) 부모나 친인척이 없이 형제자매만 살고 있거나, 소년소녀 1인만 살고 있거나, 부양능력 없는 친인척과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 - (공동체가구) 혈연이 아닌 여러 사람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구 - (기타) 위 분류 이외의 가구유형인 경우 구체적인 가구 형태를 기록 - (장애인가구) 가구 구성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타 가구분류와 중복 체크 가능 - (다문화가구) 국제결혼 등을 통하여 외국인 가구구성원이 있는 가구유형으로써 기본가구 유형과 별도로 체크 - (북한이탈주민가구) 탈북자 가구
가족사항	• 욕구조사 대상자를 포함한 가구원의 정보(가구주와의 관계, 성명, 연령, 동거, 학력, 직업, 장애유형, 질병 등)를 기록함 ※ '동거여부'에서 함께 거주 하지 않을 경우 주소 기록함
대상아동	• 아동의 등록기준지, 가정환경 등 기록 ※ 아동을 입양대상아동으로 할 경우 등록기준지 필수입력
서비스 이력	※ 시스템 내에서 해당 정보 자동 연계 출력 가능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	• 사례관리 후보자에게 10대 욕구영역 세부 20개 욕구 항목을 순차적으로 질문하여 사례관리 후보자 및 가족구성원이 보유한 문제영역이 누락이 없도록 조사하여 기입함 - 세부욕구 영역별의 각 주요현상에 해당하는 대상가구원을 파악하여 욕구조사표의 '대상자 칸'에 기입(※ 시스템에서는 기 입력한 가구구성원이 대상자 리스트로 조회) - 대상자가 노출되어 있는 각 주요현상별 원인을 파악하여 중요도에 따라 최대 3개까지 '주요원인'의 해당항목 번호를 '원인 1, 원인 2, 원인 3'에 기입함

항 목	작성내용				
	- 각각의 원인을 야기 시키는 원인제공자를 파악하여 최대 3개까지 '원인제공자1 ○○○/원인제공자2 ○○○/원인제공자3 ○○○'를 기입함(※ 시스템 입력 시에는 원인제공자 리스트 중에서 해당항목을 체크) ※ 현상에 따라 원인제공자 및 원인이 없거나 불분명 할 시,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무방 - 욕구조사 후, 욕구 별 우선순위를 가장 시급한 문제 순으로 파악하여 기입함 • 욕구 영역(10대 욕구영역) - (안전 욕구) 가족구성원 또는 외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기초적 신변보호의 욕구 - (건강 욕구) 가족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인 건강문제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문제 - (일상생활유지 욕구) 의식주와 관련된 기본적인 행위 또는 신변관리와 여가활동 및 개선욕구 - (가족관계 욕구) 가족구성원의 갈등완화 및 긍정적 관계형성 욕구와 보육·간병 등의 가족 보호 욕구 - (사회적 관계 욕구) 가족구성원을 제외한 주변인물 및 사회적 집단 내에서의 긍정적인 관계형성과 유지를 위한 욕구 - (경제 욕구)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문제해결 및 기본적 자산관리 욕구 - (교육 욕구)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습득에 관한 문제와 대상자 및 가족구성원의 학습과 관련된 문제 - (고용 욕구) 취업/창업에서의 어려움 또는 직업(무)기능 수행상의 문제 - (생활환경 욕구) 거주지의 내외부적 환경 및 안정상의 문제 - (법률 및 권익보장 욕구) 법률적 지원 및 권익보장과 관련한 욕구 ※ 상속채무 및 법정대리인 공백, 친권남용 피해 등 아동의 위기상황점검(서식 5 활용) • (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 각 욕구영역별 현상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와 현상에 대한 원인제공자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입 <table border="1"> <caption>〈주요현상 대상자 및 원인제공자〉</caption> <tr> <td>대상자</td><td>가구구성원(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사실상 관계의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동거인(삼촌, 고모, 시동생, 시누이 등 친인척 및 기타 동거인), 가구구성원 전체(가구구성원 모두가 대상자일 경우)</td></tr> <tr> <td>원인 제공자</td><td>가구구성원, 부모, 친인척, 이웃, 학교친구, 학교선호배, 친구, 직장동료·상사, 내연남(녀), 전남편, 전부인, 교사(교직원), 보육시설(유치원)종사자, 학원·학습지 교사, 종교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대주·임차인, 폭력배, 복지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불특정인, 해당 없음(기타)</td></tr> </table> • (강점) 문제해결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예, 취업의지 강함, 신체건강 등) • (장애물) 문제해결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예, 무기력, 신체건강 불량, 자녀와의 갈등 등)	대상자	가구구성원(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사실상 관계의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동거인(삼촌, 고모, 시동생, 시누이 등 친인척 및 기타 동거인), 가구구성원 전체(가구구성원 모두가 대상자일 경우)	원인 제공자	가구구성원, 부모, 친인척, 이웃, 학교친구, 학교선호배, 친구, 직장동료·상사, 내연남(녀), 전남편, 전부인, 교사(교직원), 보육시설(유치원)종사자, 학원·학습지 교사, 종교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대주·임차인, 폭력배, 복지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불특정인, 해당 없음(기타)
대상자	가구구성원(본인, 처, 남편, 아들, 딸, 부, 모, 조모, 조부, 장인, 장모), 사실상 관계의 배우자와 그 자녀 및 기타 동거인(삼촌, 고모, 시동생, 시누이 등 친인척 및 기타 동거인), 가구구성원 전체(가구구성원 모두가 대상자일 경우)				
원인 제공자	가구구성원, 부모, 친인척, 이웃, 학교친구, 학교선호배, 친구, 직장동료·상사, 내연남(녀), 전남편, 전부인, 교사(교직원), 보육시설(유치원)종사자, 학원·학습지 교사, 종교관계인, 채권자, 채무자, 임대주·임차인, 폭력배, 복지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불특정인, 해당 없음(기타)				
종합의견	• '주요욕구'는 '욕구영역별 현상 및 원인'에서 우선순위로 정해진 10개의 욕구 항목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6하 원칙하에 구체적으로 기술함 - 종합의견은 대상자가 진술한 표현된 욕구를 기반하되,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욕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자에게 이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에 대하여 작성함				
사회적 지지지원	• 야기되고 있는 주요문제를 완화하거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잠재적 활용 가치가 있는 개인의 내적자원, 가족이나 지역사회 유형 혹은 무형의 자원을 파악하여 기록함				
요청 서비스 내역	• 사례관리 대상자가 상담을 통해 직접적으로 요청한 서비스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서식 5 위기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

구분	문항	결과
1 법정대리인 선임 여부		
1	친권자가 있다.	☐ 예 ☐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 1-1~3번 해당)	
	1-1 친권자 유형 선택	☐ 부모 ☐ 부 ☐ 모
	1-2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의 부재로 통장개설 등 양육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 예 ☐ 아니오
	1-3 아동의 친권자(부모)가 6개월 이상 연락두절 상태이다. (예 : 아이를 친척이나 시설에 맡긴 후 단절 상태에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 1-4번 해당)	
1-4 아동의 후견인이 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다.	☐ 예 ☐ 아니오	
• 6개월 이상 친권자 연락두절로 법정대리인 부재하여 양육과정에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을 위한 법률상담 연계·지원		
2 친권남용 여부		
1	자녀 보호·양육과 재산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수개월 간 지속되고 있다.	☐ 예 ☐ 아니오
2	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양육자)가 아동의 복리실현에 현저하게 반하는 방식으로 친권을 남용한 사실이 있다. (예 : 아동의 재산 부당처분, 아동명의 핸드폰 사용요금 체납 등 부당 채무부담)	☐ 예 ☐ 아니오
3	친권자의 행위가 아동의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윤리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예 ☐ 아니오
• (2~3번 문항) 1개 이상 해당 시, 친권 남용에 따른 구제소송 청구를 위한 법률상담 연계·지원 • 사안에 따라 친권 제한·상실 청구 가능		
3 상속채무 여부		
1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정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거나,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다.	☐ 예 ☐ 아니오
2	아동의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하여 생존 배우자와 아동이 상속인이 되었다.	☐ 예 ☐ 아니오
3	아동을 대상으로 한 채무독촉장 또는 민사상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소장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예 ☐ 아니오
4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포기신고서 및 한정승인신고서 제출절차 및 기한을 알고 있다.	☐ 예 ☐ 아니오
• (1~3번 문항) 1개 이상 해당, (4번 문항) '아니오'로 답변한 경우, 법률상담 신청		
소견		

②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친권자 사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부모의 채무 등 확인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의 친권자(부모)의 사망·연락두절로 아동에게 빚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지원
작성방법	- 욕구조사 및 위리아동 조기발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작성
활용방법	- 법률상담 및 지원,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 참고자료

• 법률지원체계

- (위리아동 발굴)사례관리자,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등의 정기적인 사례관리 및 양육상황 점검 시 해당 사례 적극 발굴
- 상속채무, 법정대리인 공백, 친권남용 피해 및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 부재 등에 따른 아동의 위기상황 점검(체크리스트 참조)

사업분야	점검시점	점검횟수
아동보호서비스 (아동보호전담요원)	① 초기상담	최초 1회 (보호대상아동 의뢰·발굴 시)
	② 양육상황점검	분기별 1회 (보호조치 후)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① 초기상담	최초 1회 (대상아동 의뢰·발굴 시)
	② 재사정	사례등급별 3~12개월 이내 1회 * (위기) 3개월 이내, (집중) 6개월 이내, (일반) 12개월 이내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① 초기상담	최초 1회 (대상 의뢰 시)
	② 욕구 및 위기도 조사	1회 이상 (욕구조사 단계에서 실시하고 대상자의 위기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시 수시 시행)
	③ 종결 심사	1회 (대상자 사망, 거절 및 포기, 3개월 이상 연락두절 등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시)
아동학대사례(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① 초기면접	최초 1회 (사례연계 후 1주일 이내)
	② 사례점검	분기별 1회 (사례관리 점검표 작성 시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요원)	① 자립지원계획수립	연 1회 (15세 이상~보호종료 시점)
	② 사후관리	연 1회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

서식 6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친권 관련)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친권 관련)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조사)기간 : 20일 (연장 가능)
------	-----	---------------------------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구조)를 신청하니 귀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5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 검 인	사건본인 성명	아동성명 기재	생년월일	아동의 생년월일
	주 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전화 E-mail	아동과 연락가능한 전화, 메일 기재
	송달장소	가정위탁, 보호시설 등의 주소 기재		
	직업 (대상자)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아동 등 기재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보 호 자 (보호시설)	보 호 자 성명	보호자(현장담당자, 주양육자 등) 성명 기재 * 서류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로 작성 * 현장담당자를 보호자로 지정하는 경우, 소속기관 함께 기재	생년월일	기재 불요
	주 소	보호자(현장담당자, 주양육자 등) 주소 기재 * 현장담당자는 소속기관 주소지 기재	전화 E-mail	보호자 전화·메일 기재
	접수 및 진행상황 통지방법(중복선택 가능) ☐ 문자 ☐ E-Mail ☐ 서신			
법률상담 희망 방식		☐ 전화 ☐ 면접 ☐ E-Mail ☐ 서신		

신청사실의 요 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은 친부 ○○○과 친모 ◇◇◇ 사이에서 00년 00월 00일 출생한 자로 친모 ◇◇◇은 00년 00월 00일 사망하여 친부의 양육을 받고 있던 중 친부 김○○이 아동명으로 휴대폰 또는 인터넷 다수 개통, 요금 연체 및 미납부, 등(사례1), 시설보호아동 친모(신청) 큰아버지(보증)의 '교통사고 피해가족 유자녀 장학금' 부정수급*으로 변제 상황 발생(사례2), 가정위탁아동의 친부가 아동명의 통장의 수급비 강탈(사례3)의 사유로 사건본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사건본인의 친부 김○○은 연락두절 상태이고, 친권자 김○○가 아동명으로 휴대폰 또는 인터넷 다수 개통 후 요금 연체는 차관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친부 김○○에 대한 친권사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 및 사건본인을 위하여 □□□(사건본인과 관계, 주소, 생년월일)을 후견인(특별대리인 선임포함)으로 선임하고자 함 (사건본인의 출생, 가족관계, 현재 거주현황 등 사정을 자세히 적어 주시고, 본 신청서의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 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

제출서류	1. 보호아동증명서(보호대상아동 사실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2. 아동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3. 고지서(통신료 등), 소장부분 등 4. 상대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고지서 외에 다른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음) 5.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 선임될 자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 보호아동증명서(1번) 외 서류는 발급가능한 경우에 첨부 (1번 경우, 하나는 필히 제출하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복지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필요)
------	---

년 월 일 위 사건본인 (서명 또는 인)
위 사건본인의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신청확인	신청담당직원	고객지원부(팀)장	지 부 장	조사담당 직원
		전 결		조사담당변호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 6-1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상속 관련)

위기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서(상속 관련)

신청번호	접수일	처리(조사)기간 : 20일 (연장 가능)
------	-----	---------------------------

아래와 같이 법률상담(구조)를 신청하니 귀 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5조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본인 검 인 신 청 인	사건본인 성명	아동성명 기재	생년월일	아동의 생년월일
	주 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전 화 E-mail	아동과 연락가능한 전화, 메일 기재
	송달장소	가정위탁, 보호시설 등의 주소 기재		
	직업 (대상자)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아동 등 기재	☐ 문자메시지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보 호 자 (보호시설)	보 호 자 성명	보호자(현장담당자, 주양육자 등) 성명 기재 * 서류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자로 작성 * 현장담당자를 보호자로 지정하는 경우, 소속기관 함께 기재	생년월일	기재 불요
	주 소	보호자(현장담당자, 주양육자 등) 주소 기재 * 현장담당자는 소속기관 주소지 기재	전 화 E-mail	보호자 전화-메일 기재
	접수 및 진행상황 통지방법(중복선택 가능)		☐ 문자 ☐ E-Mail ☐ 서신	
	법률상담 희망 방식		☐ 전화 ☐ 면접 ☐ E-Mail ☐ 서신	

신청사실의 요 지	(6하 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자 홍길동의 부 홍○○이 사망하였으나 홍길동은 사실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부 사망사실을 알지 못해 상속포기기간안에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였음. 홍길동의 부 홍○○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을 더 많이 남기고 사망하여 홍길동에게 채무가 상속됨. 이에 특별한정승인 및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구하는 법률상담(구조) 신청함
-----------------	---

제출서류	1. 보호아동증명서(보호대상아동 사실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2. 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 친양자관계증명, 주민등록말소자초본 3. 아동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4. 상속재산목록 등(부채관련 서류 : 소장, 고지서, 금융기관발행 부채증명서 등) 5.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 선임될 자의 기본증명,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표 초본 ※ 보호아동증명서 외 서류는 발급가능한 경우에 첨부 (위 서류 중 하나는 필히 제출하되,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복지사업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필요)
------	---

년 월 일 사건본인 (서명 또는 인)
 위 사건본인의 보호자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귀중

신청확인	신청담당직원	고객지원부(팀)장	지 부 장	조사담당 직원
		전 결		조사담당변호사

210mm×297mm[일반용지 60g/㎡]

서식 7 위리아동 법률상담(구조) 신청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법률구조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업(대상자 정보)	법률구조신청	영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상소심구조신청 등을 위하여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동의 거부 가능, 해당항목에 √)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 무료대상자 소명 정보 ☐ 송달장소 ☐ 연락처(이메일) ☐ 계좌번호	법률구조신청사건처리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전체동의 일부동의(항목선택) 미 동 의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법률구조신청 사건의 처리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신청사실에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법률구조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출연기관 *	소송비용상환	성명, 사건번호, 대상자, 소송비용	5년	
* 각 대상자에 따른 공단 「무료법률구조사업시행지침」 제2조에 의한 출연기관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본인은 위 동의서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귀중

※ [법정대리인의 동의 관련]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5호)

친부모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친부모 상황 점검표 활용
- * 원가정 복귀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작성일	0000.00.00	소속(직급)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1	부모는 동거중이다.	예	불분명함
2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예	불분명함
3	부모(최소 1인)는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예	(부) 직업 : 근로시간 : (모) 직업 : 근로시간 :
4	가정의 소득이 안정적이다.	예	소득 : 평균 만원
5	가정의 부채가 없거나 크지 않다.	예	부채 : 만원
6	부모의 주거가 자가 주택이거나 전·월세 이어도 지불능력이 있다.	예	전세 (보증금 만원) 월세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7	부모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예	(부) 질병 또는 장애유향: (모) 질병 또는 장애유향:
8	부모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다.	예	(부) 종류 : 치료여부: (모) 종류 : 치료여부:
9	과거 사회복지서비스(희망복지지원단 등)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	예	종류 : 이용기간:
10	조부모·친척 등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예	불분명함
11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를 도와주었던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예	불분명함

번호	평가항목	평가 V	특이사항
12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적)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예	학대 등 내용 :
13	부모는 음식 제공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부모는 아동에게 지지적이며, 이해심이 많다.	예	불충분 시 필요한 돌봄 내용 :
14	(예) 아동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아동의 언어적인 신호나 비언어적인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예	
15	부모가 학교 등에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예) 아동심리, 아동건강, 진로, 진학 등	예	
16	부모는 아동의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예	친한친구: 좋아하는 음식: 반 / 번호:
17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예	• 희망자: (예) 부모 모두 희망, 부모 중 1인 희망 (부 또는 모) • 희망보호형태: 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 시설보호(그룹홈, 양육시설), 입양 등
18	과거에도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를 한 경험이 있다.	예	기간: , 보호형태:
19	부모는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예	만남 주기:
20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 의뢰하기 전 주양육자가 부모 본인이었다.	예	부모가 아니었을 경우, 주양육자: 사유:
21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한다.	예	
22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예	
23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은 개월 이다.		개월
소견			

- 부모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경우, 원가정 유지를 위하여 음·면·동(찾아가는 보건복지상담팀)에서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하도록 조치
- 부모의 아동에 대한 양육 능력 및 의지가 없는 경우, 아동을 시설 등에 보호조치하고, 부모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조치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분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친부모 상황(가정 및 주변환경, 양육태도, 보호조치)을 파악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함 - 보호역량 및 보호자(부모)의 강점을 파악
작성방법	- 상담·조사·사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 점검 중 1회 이상 반드시 가정방문하여 실시) -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측성으로 작성금지
활용시점 및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원가정 복귀 가능성, 아동과의 정서적 만남, 원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항목에 대하여 [예] 또는 [아니오] 우선 체크되어야 하며, [불분명함] 답변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확인필요 - 평가항목에서 [아니오]가 대다수이거나, 8번[예] & 12번[예] & 13번[아니오] & 17번[예]를 체크한 경우 분리보호 적극 검토 - 친부모상황점검 과정에서 아동학대의심 상황 발견(관찰, 보고)시 즉시 신고
기타	친부모·보호자 부재, 연락두절되거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생략 가능

항목		작성내용
기정환경	1	부모는 동거중이다. - 이혼, 별거, 사별, 한부모가정, 미혼모부가정 등의 경우 '아니오' 체크
	2	부부관계는 원만하다. - 잦은 싸움, 가정폭력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이혼, 별거, 미혼부모, 한부모가정 등 '아니오' 체크
	3	부모(최소 1인)는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나 일정하다. - 부모 중 해당되는 경우 모두 기재, 무직일 경우 특이사항 기재
	4	가정의 소득이 안정적이다. - 소득이 없거나 불규칙한 경우 '아니오' 체크 및 사유 기재 ※ '소득이 안정적'이라 함은 정기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5	가정의 부채가 없거나 크지 않다. - 부채가 없거나 소득에서 일정부분 탕감이 될 경우 '예', 부채가 많거나 소득으로 해결이 어려움이 있을 경우 '아니오', 보호자가 부채가 있으나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사실 확인하여 기재

항목		작성내용
주변환경	6	부모의 주거가 자가 주택이거나 전·월세 이어도 지불 능력이 있다.
	7	부모의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8	부모에게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다.
양육태도	9	과거 사회복지서비스(희망복지지원단 등)를 이용한 적이 있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다.
	10	조부모·친척 등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11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부모를 도와주었던 지인들이 주변에 있다.
양육태도	12	아동학대(신체, 정서, 성적)나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
		자가, 전·월세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 보호자가 지불능력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지 못할 경우 추가 조사하여 사실 확인하여 기재 ※ 전·월세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용(월세) 비율 검토 -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아니오', 보호자 명확하게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꺼려할 경우 집안환경 체크(예 : 악몽지, 병원 관련 영수증 등) ※ 부모의 질병 또는 장애유형 강도에 따라 주변지지 자원 수준 반드시 파악, 필요시 분리보호 적극 검토 - 알코올이나 약물문제가 있는 경우 문제를 소지하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호 능력, 의지 등을 고려 분리보호 필요성 검토 본 항목 답변을 꺼려할 경우 추가조사 필요하며, 가정방문 시 환경 체크 (예 : 술병, 안주류 종류의 봉지, 술 냄새, 본드 등) ※ 알코올이나 약물문제를 현재 상태 중심으로 기재, 문제가 있음에도 치료를 거부할 경우 면밀히 검토 필요. 다만 과거시점 문제일 경우 특이사항에 기재(예) 알코올 문제로 치료받아 완치됨. - 서비스를 이용여부에 따른 문제해결여부 등을 특이사항으로 기재 ※ 과거 이용이력에 대해 해당 담당자 확인가능 할 경우 서비스 종류 및 이용기간 확인 - 조부모, 친인척과 지속적으로 긍정적 관계 유지할 경우 '예', 조부모·친척 계시더라도 관계가 안 좋은 경우, 조부모·친척 안 계시실 경우 '아니오' ※ 되도록 조부모·친척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 기본정보 확보(분리보호 시 대리·친인척 가정위탁 가능성 확인을 위함) ※ 도움사례, 이름이나 연락처 등 기본정보 확보(분리보호 시 일반가정위탁 가능성 확보하기 위함) - 과거 학대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경우 신고 - 재발생위험이 감지되거나 우려가 높은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 ※ 본 항목은 보호자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간접질문방법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하는 방법도 고려 필요

항목		작성내용
보호조치	13	부모는 음식 제공 등 아동이 필요로 하는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14	부모는 아동에게 지지적이며, 이해심이 많다. 예) 아동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아동의 언어적인 신호나 비언어적인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아동을 돌보는 데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15	부모가 학교 등에서 아동양육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경험에 있다. 예) 아동심리, 아동건강, 진로, 진학 등
	16	부모는 아동의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대해 관심이 있다.
	17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18	과거에도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를 한 경험에 있다.
	19	부모는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아동과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20	아동을 원가정 외 보호 의뢰하기 전 주양육자는 부모 본인이었다.
	21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 한다.
		- 음식제공 및 돌봄 등 하나라도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 '아니오', 둘 다 충분히 제공할 경우에만 '예'라고 체크 - 보호자가 체벌, 강압적인 훈육방식을 하거나 주장할 경우 '아니오' 아동상황점검 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교차 확인 필요 -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아동양육에 대한 경험내용, 회수 등 기재 - 관련 질문 외 항목을 아는 경우 기재 ※ 아동상황점검 시 교차 확인 필요 -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고 아동을 위해 안전한 선택한 경우인지, 부모가 아동양육을 기피하는 경우인지를 기재. 특히 부모가 학대경험, 질병, 근로수입 등 모든 상황을 판단할 때 키울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양육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특이사항에 기재 - 원가정의 보호 경험에 있을 경우 기간 및 보호형태, 사유 등 기재 ※ 원가정 외 보호 경험에 있을 경우 추후 장기보호에 대해 가능성 고려 - 아동과 만남을 희망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장기보호 가능성 고려)하며, 정기적 만남을 희망하더라도 만남 주기가 너무 길 경우 사유, 상황 등 기재 - 부모가 주 양육자 아닌 경우 사유 기재 - 보호자의 아동학대 경험, 체벌방식의 훈육,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양육하고 싶어 할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가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 기재 ※ 보호자의 현재 상황(예 : 직업특성상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수감) 확인 ※ 분리보호에 대한 보호자의 태도 확인(추후 원가정 복귀에 대한 의지, 방향 등)

항목		작성내용
소견	22	부모는 아동의 원가정 복구를 위해 자신들의 상황을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3	부모가 예상하는 원가정 외 보호기간은 ____ 개월이다.
		- 본 항목에 대해서는 직접 질문하기 보다는 보호자가 아동을 분리 보호해야하는 사유에 대한 해결의지(경제활동 재개, 부모교육 참여 의지, 아동에 대한 애정정도 등) 고려하며, 보호자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고 근거바탕으로 이야기 할 경우 '예', 분리보호 이후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분리보호에 대한 불만 또는 인지부족, 아동 양육 의지가 부족할 경우 '아니오' 체크 ※ 변화시키려는 구체적인 사유 확인하여 기재 - 아동 연령을 고려하여 분리보호 기간이 너무 길 경우, 보호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보호기간이 짧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분리보호 조치 해결기간 등을 고려 - 친부모 상황 점검표는 평가항목에서 '아니오'(8, 9, 12, 17, 18번의 경우 '예'의 개수 체크가 많을수록 아동의 분리보호조치 검토 필요 예) 친부모 상황 점검한 결과 23항목 중 18개가 '아니오'로 평가항목에 체크했으며, 특히 가정폭력 경험이 수시로 발생, 부모 수입 불안정과 알코올 중독, 모의 정신적문제 등 고려하여 분리보호조치를 고려

아동 상황 점검표

• 보호대상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아동 상황 점검표 활용

작성일	0000.00.00	소속(직급)	담당자
아동 성명(성별)		아동 생년월일(연령)	보호자성명(성별)

구분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정신 건강 · 의료적 요구	1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성장발달 지연, 제한된 신체기능, 인지영역 문제, 시각 또는 청각의 문제).	예	아니오	장애유형 : (예)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2	만성질환이나 1주일 한번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이 있다(응급실을 분기별 1회 이상, 질병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잘 움직이지 않고 활동량 부족하다).	예	아니오	질환명 :
	3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인다(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지며 지루해 한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예	아니오	
	4	항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IT매체(인터넷,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	예	아니오	
사회적· 교육적 요구	5	성인이나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성인이나 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잘한다,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	예	아니오	
	6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한다(또래와 비교적 잘 어울리고, 또래가 갖고 노는 장난감에 관심을 표현한다).	예	아니오	

구분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예	아니오	불분명함	
문제 행동	7 연령에 적합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모외의 분리 상황에서 심하게 떼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8 자아존중감이 높다(아동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9 정학·유급·퇴학 경험이 있다(학교폭력의 문제,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학업성취도가 높다(학습에 대한 의욕 및 동기가 높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학업 외 기타 교육적 욕구:
	10 어려운 단어를 잘 읽는다. 학업과제를 이해하는 것을 기뻐하며, 학업수행에 대한 보람과 유능감을 느낀다.				
	11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2 섭식 문제가 있다. (예)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끼 먹이기도 힘들다. 구토할 때까지 먹는다.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분노표현이나 공격적, 반항적 행동,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13 (예) 집, 학교 등에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른에게 대든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잘 속인다. 기초나 무단결석을 한다. 포레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갈들거나 떠돌림을 당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위축되거나 불안한 행동을 한다.				
	14 (예)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 슬퍼하거나 우울해 한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구분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분리 보호 관련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가 의심된다.				
	15	(예) 5세 이상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8세 이상이나 의사소통, 혼자 옷입기·밥먹기, 집 전화번호 암기하기 등 독립적 활동이 현저히게 서툴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6	학습의욕이 저조하다.(학습 장애 포함,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게 어렵거나, 숫자를 다루거나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7	아동이 연령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지능이 낮거나(경계선급 지능수준) 적응 행동에 문제가 있다).	예	아니오	불분명함
	18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를 희망한다.	예	아니오	희망보호유형 : (예) 친인척, 가정 위탁, 시설, 입양 등
소 건	19	아동은 원가정 외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예	아니오	만남 주기: 불분명함

⑤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중 분리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성목적	- 아동을 보호자(친부모)로 부터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보호자(시설관계자, 위탁부모 등)가 알아야 할 아동의 상황, 치료해야 할 부분 등을 알기위한 점검표로 현재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 - 아동의 욕구와 강점 및 문제행동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호유형을 결정
작성방법	- 상담·조사·사정과정 시 작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욕구조사, 친부모·아동상황 점검 중 1회 이상 반드시 가정방문하여 실시) - 해당 아동(취학아동) 또는 미취학아동의 경우 보호자(친부모)를 대상으로 본 상황 점검 실시 -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추측성으로 작성금지
활용시기 및 방법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아동의 원가정 복귀 가능성, 아동과의 정서적 만남, 원가정 프로그램 운영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평가항목에 대하여 1~4번 [예], 5~8, 10번 [아니오], 9, 11번 [예], 12~17 [예]의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검토 [불분명함] 답변할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확인필요

항목		작성내용
정신 건강 · 의료적 욕구	1	아동에게 중증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성장발달 지연, 제한된 신체 기능, 인지영역 문제, 시각 또는 청각의 문제).
	2	만성질환이나 1주일 한번 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 있다 (응급실을 분기별 1회 이상, 질병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잘 움직이지 않고 활동량 부족하다).
	3	주의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과잉행동을 보인다(영유아·초등)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산만해지며 지루해 한다. 기만히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활동적이다).
		-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경우 체크 및 해당 장애 또는 질환 기재 예)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 발달장애 등 - 병명에 따른 치료 주기 기재 예) 품행장애로 주1회 병원상담 - 주의집중, 과잉 행동 여부에 따라 체크 및 새로운 양육자(양육시설)가 알아야 할 특이사항 등 기재 ※ 아동 면담 시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불분명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아동양육에 관심이 없는 보호자의 경우도 '불분명함'이라고 응답하는 경우 아동의 비언어적 행동 관찰함.

항목		작성내용
사회적·교육적 요구	4	항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경험이 있다(IT매체 인터넷,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여 일상생활이 어렵다).
	5	성인이나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성인이나 교사의 말을 잘 따르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잘한다.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이 잘되고 있다).
	6	긍정적 교우관계를 형성한다(또래와 비교적 잘 어울리고, 또래가 갖고 노는 장난감에 관심을 표현한다).
	7	연령에 적합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모와의 분리 상황에서 심하게 떼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는다).
	8	자이존중감이 높다(아동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한다).
	9	정학·유급·퇴학 경험에 있다(학교폭력의 문제, 사회적 규칙을 위반한다).
	10	학업성취도가 높다(학습에 대한 의욕 및 동기가 높다).
	11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12	섭식 문제가 있다. 예) 지나치게 먹지 않아 하루에 한끼 먹이기도 힘들다. 구토할 때까지 먹는다. 제대로 된 식사보다는 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13	총동조력에 어려움을 보이고, 공격성, 사회적인 부적응을 보인다(분노 표현이나 공격적, 반항적 행동, 행동통제의 어려움이 있다).
		- 경함이 있는 경우 체크 및 음주, 흡연량 정도 기재 - 영유아의 경우 IT매체 이용시간 정도 기재 ※ 본 항목에 대하여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 가정환경 관찰(재떨이, 담배 냄새, 술병, 양육자가 상담 시 아동 행동 등)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사유, 특징 기재,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해당 사람의 주요 특징, 이유 등 확인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사유 기재(집단따돌림의 피해자, 피해자, 어린이집에서 놀이시간에 다른 아동과 어울리지 못함 등),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해당 사람의 주요 특징, 이유 등 확인 -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자기통제력이 안되는 경우(상황) 기재 예) 원하는 것을 얻고자할 때 때를 쓰고 목소리가 쉴 때까지 운다. - 자이존중감이 높다(낮다)고 평가하는 이유 또는 자이존중감 검사한 경우 해당 결과 주요 특징 기재 - 경함이 있는 경우 횟수, 기간 등 기재 - 높다(낮다)의 학업성취도의 근거, 학업점수, 등수 등 기재, 별도의 재능이 뛰어난 경우 해당 내용 기재 예) 교과목 시험에서 전과목 80점 이상 받음. 영어수업을 좋아하며, 영어시험에서는 항상 90점 이상이다. - 필요한 특수교육 및 사유 기재 - 섭식문제 있는 해당항목 체크 및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항목		작성내용
분리보호 관련	예) 집, 학교 등에서 말을 안 듣고 규칙을 따르지 않거나, 어른에게 대든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잘 속인다. 가출이나 무단결석을 한다.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길돌거나 따돌림을 당한다. 인터넷 등 게임에 몰입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 항정신성 약물(가스, 본드 등) 혹은 음주 및 흡연행위가 있다.	
	14 위축되거나 불안한 행동을 한다. 예) 눈 맞춤이 잘 안 된다. 어떤 동물이나 상황, 장소에 대해 지나치게 겁을 내고 무서워한다. 슬퍼하거나 우울해 한다.	-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15 아동의 연령을 고려할 때 발달장애가 의심된다. 예) 5세 이상이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8세 이상이나 의사소통, 혼자 옷입기·벗먹기, 집 전화번호 암기하기 등 독립적 활동이 현저하게 서툴다.	- 해당 항목 있을 경우 '예', 없는 경우 '아니오', 이 외 기타 특이사항 있을 경우 기재
	16 학습의욕이 저조하다.(학습 장애 포함, 새로운 개념을 습득하는 게 어렵거나, 숫자를 다루거나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학습의욕이 저조하다는 사유 기재
	17 아동이 연령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가 의심된다(지능이 낮거나(경계선급 지능수준) 적응행동에 문제가 있다).	- 해당 항목에 해당될 경우 '예', 해당 없는 경우 '아니오',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사유 기재
	18 아동은 원가정의 보호를 희망한다.	-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경우 이유 등 기재(부모와의 애착정도) ※ 아동이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따라 개별보호·관리계획수립 시 반영 예) 조부모, 친인척, 가정위탁, 시설, 입양 등
	19 아동은 원가정의 보호할 경우 부모와의 정기적 만남을 희망한다.	- 아동과 부모의 애착정도에 따라 희망여부가 달라지므로 그 사유 기재(필요 정기적 만남 희망과 주기가 너무 길 경우 이유, 상항파악 기재)
	- 아동상황점검표는 평가항목에서 1~4번 [예], 5~8, 10번 [아니오], 9, 11번 [예], 12~17 [예]의 경우 분리보호 또는 복지서비스 연계를 적극 검토 예) 아동상황 점검한 결과 정신건강·의료적 욕구에서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교육적 욕구에서 자기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문제행동으로 총괄조절에 어려움, 학습의욕의 문제가 체코되었음. 이에 분리보호가 결정될 경우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되거나 분리보호가 안될 경우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함.	
	소견	

아동보호동의서				
아동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만 세)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성별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핸드폰 : - - 집 : () -		
본인은 아동의 보호자로서 아동의 분리보호조치에 대해 동의합니다. 아동복지를 위한 귀 기관의 조치 및 아래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피해아동은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서식 19>활용				
1. 보호아동 보호에 대한 최종 결정은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사례결정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 보호자의 희망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함 2. 보호자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동안 면접교섭을 적극 이행함 3. 보호자는 아동의 원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 및 원가정 점검 등에 적극 참여함 4. 보호자는 아동의 이익을 위한 친권 행사(친권자의 동의 등)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함 5. 아동의 원가정 복귀 시에는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에 따라 상담, 가정 방문,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등 원가정 복귀 절차를 진행함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시·군·구청장				

서식 10-1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설명 확인 및 아동 동의서(신설)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설명 확인 및 아동 동의서				
아동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만 세)		
분리보호 일시 (조치일자)		년 월 일 시 분		
조치자				
근거 법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 인도(예정) 장소 (보호시설 등 명칭)				
위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호조치(전원) 합니다. 분리보호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 관한 사실은 아동의 연령, 장애유무, 언어발달 수준 등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조치자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아동 확인 (해당되는 내용에 모두 체크 및 서명 또는 날인) (분리보호에 동의하는 경우 위아래 모두 체크)		☐ 분리보호(전원)에 관한 계획 및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 분리보호(전원) 되는 시설의 종류, 생활 형태, 규칙, 분리 이후 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이해하였습니다. ☐ 분리보호(전원)에 동의합니다.		
		아동 : (서명 또는 인)		
조치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체크)		☐ 아동의 연령 및 발달 수준 등에 따른 특성상 아동의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나,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됨에 따라 분리보호(전원)를 실시합니다. ☐ 아동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됨에 따라 분리보호(전원)를 실시합니다.		
		조치자 : (서명 또는 인)		

분리보호에 대한 설명 시 유의사항

1. 아동의 연령, 특성 등에 따라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및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여 안내합니다.
2. 분리 보호가 필요한 상황 및 이유, 보호 절차를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 아동의 보호조치 계획과 예상되는 보호기간, 보호시설의 종류, 특징,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합니다.
4. 예상되는 아동의 환경 변화(학교, 가족관계 등) 및 지원계획을 설명합니다.
5. 보호될 시설의 위치 및 생활환경(함께 지내는 아동 수, 방 구조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 휴대폰 사용 제한, 취침·식사 시간 등 시설 내 생활 규칙 준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7. 보호기간 동안 시·군·구 아동보호팀 및 보호기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양육상황점검과 사례관리 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8. 면접교섭 희망 여부 및 주기, 방식 등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9. 아동이 원하는 서비스 지원 내용(교육, 건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10. (피해아동)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조치 사항과 지원계획을 설명합니다.
11. 아동의 안전 우려 등 보호를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12. 보호종료 및 가정복귀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1 개별보호·관리계획서

개별보호·관리계획서(피해아동보호계획서)

보호의뢰 사유 (※ 중복 체크 가능) ☐ 유기 ☐ 미혼부모 ☐ 미아 ☐ 가출 ☐ 비행·부랑 ☐ 아동학대 ☐ 보호자 빈곤·실직 ☐ 보호자 사망 ☐ 보호자 질병 ☐ 보호자 수감 ☐ 부모이혼 ☐ 보호출산 ☐ 기타						사진
신원 ※ 신원불명시 「실종아동법」 신상카드 작성 ☐ 신원 확인 ☐ 신원 불명				182신고 ☐ 유 ☐ 무		
아동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보호자 (원가정)	관계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실거주지					
가구유형	☐ 소년소녀가구 ☐ 한부모가구 ☐ 부부중심가구 ☐ 조손가구 ☐ 미혼모부가구 ☐ 공동체가구 ☐ 기타() ☐ 장애인가구 ☐ 북한이탈주민가구 ☐ 다문화가구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가능여부
육구 조사 결과	아동의 육구(우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 관계	
	☐ 경제	☐ 교육	☐ 고용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					
	보호자의 육구(우선순위)					
	☐ 안전	☐ 건강	☐ 일상생활 유지	☐ 가족관계	☐ 사회적 관계	
	☐ 경제	☐ 교육	☐ 고용	☐ 생활환경	☐ 법률 및 권익보장	
	☐ 기타()					
	관찰된 보호자의 특성 :					

보호계획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			
	☐ 상당·지도(1호)		☐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2호)	
	☐ 가정위탁(3호)		☐ 아동복지시설(4호)	
	☐ 전문치료기관·요양소(5호)		☐ 입양(6호)	
	재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6조의4)			
	☐ 가정위탁(제15조제1항3호)		☐ 아동복지시설(4호)	
	☐ 전문치료기관·요양소(5호)			
	타 법에 의한 조치			
	☐ 아동학대처벌법 47조()		☐ 소년법 32조()	
보호조치 일자	년 월 일		보호의뢰 기관	기관(시설)명 : 기관(시설)종류 :
아동 서비스 계획	육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서비스내용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비대면 가능 (대면 불가)		
		※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 유기 ☐ 미아 ☐ 법적 처분 및 학대 고위험군 ☐ 기타 ()		
		※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사유 ☐ 보호자 수감 ☐ 보호자 질병 ☐ 보호대상아동이 영아 ☐ 기타()		
	면접교섭 주기	☐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기타()		
	지원내용			
원가정 점검 계획	(원)가정복귀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원가정복귀 불가능 사유 ☐ 보호자 사망 ☐ 보호자 연락두절 ☐ 입양대상아동 ☐ 유기 ☐ 미아 ☐ 기타()		
	원가정 지원방법	※ 중복체크 가능 ☐ 상당 ☐ 사례관리 연계 ☐ 금품지급 ☐ 기타()		
	지원내용			
담당자 의견				
수립일		년 월 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완료 후(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 보호유형 변경, 위탁가정 변경, 타 시·군·구 사례이관 시 보호계획 변경
작성목적	- 접수상담 및 아동·친부모상황점검 등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아동을 보호하게 될 보호기관(가정)에서 제공할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시 기초자료로서 사례관리 계획
작성방법	- 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 상담 내용, 욕구조사 결과,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 - 원가정지원(복귀)계획의 경우 보호자의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 중 분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작성한 피해아동보호 계획으로 같음 -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욕구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변경 -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조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부터 확인하여 개별보호·관리계획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입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아동보호전담요원에게 공유함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 예) 출생 시 몸무게 2.5 이하,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 신체기능의 장애, 정신적 장애, 만성적 질병으로 빈번한 입원, 치료, 알레르기, 지속적 약복용, 아토피, 비언어적, 언어적 의사 표현 불가,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어려움 등 - 아동복지법 개정('21.12.30.)으로 이전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 보호대상아동은 차기 양육 상황점검을 통해 면접교섭지원계획을 수립 후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변경
활용방법	- 원가정과 보호기관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아동 양육상황점검,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등 아동의 보호 종료(원가정 복귀)시점까지
기타	- 단순한 개별보호·보호관리계획 변경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제외(시·군·구 사례회의를 통해 결정)

항목		작성내용
아동, 보호자, 가구유형, 가족사항, 욕구조사 결과		-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 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관찰된 보호자 특성」란에 기록
보호계획	상담·지도	- 체크 후 드림스타트로 사례이관 ※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 제외
	친족에 의한 보호·양육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요양원, 입양	- 양육상황점검 및 사후관리대상 ※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리대상

항목		작성내용
	기타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쉼터, 장애인거주시설로 보호조치 시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해당 부서로 사례이관(아동보호팀에 이관하지 않으며, 시스템에서는 심의결과까지 입력 후 종결)
	보호조치일자, 보호의뢰기관	- 시설입소 날짜 등, 해당 원가정의 보호기관명 및 시설종류 기재 예) 기관(시설)명 : 하늘 천사원 기관(시설)종류 : 양육시설
아동 서비스 제공계획	육구영역, 단기목표, 장기목표	- 육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아동의 월령에 따른 운동기능, 미숙아 출생, 신체 성장발달 지연, 신체적 질병, 장애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관찰된 (피해) 아동의 특성」 등 칸에 작성 ※ 생후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에 2021년 건강 검진사업 안내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계획 등
면접교섭 지원계획	면접교섭 가능여부	- 면접교섭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 시 반드시 사유 확인) ※ 면접교섭이 가능한 가족범위(민법 779조) : 친부모, 양부모, 계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 면접교섭은 '대면'이 원칙이며, 보호의뢰 사유에서 보호자 수감, 보호자질병 및 아동이 영아인 경우 등에 한하여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 - 면접교섭지원계획은 가족관계에서 면접교섭가능여부 확인 후 해당 가족구성원의 연락처 확보 ※ 「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52조에 의해 보호조치된 아동의 분리 보호가 지속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종결하고 「아동복지법」 15조에 의해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면접교섭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시 사법기관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 면접교섭 이행 여부 결정
	면접주기	면접교섭 대상자의 면접주기 체크
	지원내용	- 지원내용 등 작성 예) 격월 1회 외조모댁에 가정방문(외출) 필요 월 1회(첫째주 금요일) 친모집에 외박(1박) 필요
원가정 지원 (복귀)계획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	- 원가정 복귀 가능여부 체크(불가능 체크 시 반드시 사유 확인)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 육구조사, 친부모상황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기재 예) 분기별 상담 및 취업정보(국비지원 미용자격증 취득과정) 제공 - 입양아동의 경우 작성 제외
담당자 의견		- 아동과 보호자와 종합적인 보호계획 의견 정리
수립일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서식 12 아동카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아 동 카 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보호의뢰 사유 (※ 중복 체크 가능)	☐ 유기 ☐ 미혼부모 ☐ 미아 ☐ 가출 ☐ 비행·부랑 ☐ 아동학대 ☐ 보호자 빈곤·실직 ☐ 보호자 사망 ☐ 보호자 질병 ☐ 보호자 수감 ☐ 부모 이혼 ☐ 기타			발생 당시 사진
	신원 확인 여부 ☐ 신원 확인 ☐ 신원 불명 * 신원 불명 시, 「실종아동법」 제6조에 따른 신상카드 작성			
182 신고 ☐ 유 ☐ 무				
아 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나이	
			세 ([] 추정 [] 확실)	
	주소			
	학교명	학교	학년	기타
발생 일시		발생 장소		
보호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월수입 원	생활 수준 [] 상 [] 중 [] 하 [] 수급자		주거 [] 자가 [] 전세 [] 월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보호조치 사항	날짜	년 월 일		
	보호조치 유형	☐ 가정위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 입양의뢰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 입원		
	보호시설	명칭	주소	

(뒤쪽)

가정환경 (성장 과정)			
상담자 의견			
지도·판정			
금품 지급사항			
		작성일	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② 작성방법

작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 기	- 상담·조사·사정 과정 완료 후(접수상담, 욕구조사, 아동·친부모상황점검 완료) -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분리보호 확정된 직후
작성목적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기 위함
작성방법	- 아동 및 친부모(보호자), 주변인 상담 내용, 욕구조사 결과, 아동 및 친부모상황점검 결과, 개별보호·관리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 ※ 보호조치 변경 시 현행화 됨
활용방법	- 보호대상아동의 필수서식으로 아동 보호조치 시, 사례이관 시 기초자료

항목		작성내용
보호의뢰 사유	유기, 미혼부모, 미아, 가출, 비행·부랑, 아동학대, 보호자 빈곤·실직, 보호자 사망, 보호자 질병, 보호자 수감, 부모 이혼, 기타	보호의뢰 사유 해당 항목 확인
신원	신원확인, 신원불명 182신고 유, 무	- 아동의 신원확인 유·무 - 실종아동 신고 유·무
아동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나이, 주소, 학교명, 기타 발생일시, 발생장소	- 신원확인 유에 해당 시 관련 내용 기록 - 유기된 아동일 경우 해당
보호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월수입, 생활수준, 주거	- 보호자 상담을 통해 해당 내용 확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보호조치 사항	날짜, 보호조치 유형, 보호시설명, 주소	- 보호조치일 - 보호유형 예)가정위탁, 양육시설, 입양 등 - 보호시설명 및 주소 기재
가정환경(성장과정)		- 가족관계, 형제·자매관계, 경제적 상황 등 기록
상담자 의견		- 보호자 상담을 통해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종합적 의견
지도 판정		- 가정환경 및 상담자 의견을 통해 주요 욕구 등을 반영한 최종 내용
금품지급사항		- 이전에 받은 지원 내역 확인
작성일, 소속, 직위, 성명		- 시·군·구 담당자 정보 기재

서비스 제공 계획서

사례(관리)번호						
아동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나이) 년 월 일 ()	직업	동거여부	면접교섭동의여부
아동 상황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사항					
	아동의 욕구에 관한 사항					
아동 서비스 계획	욕구영역	서비스 제공내용		방법	제공기관(담당자)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재보호조치 미작성)	면접교섭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 비대면 가능(대면 불가) ※ 비대면만 가능(대면불가)사유 ☐ 보호자 수감 ☐ 보호자 질병 ☐ 보호대상아동이 영아 ☐ 기타() ☐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기타()				
		※ 면접교섭 불가능 사유 ☐ 면접교섭대상 모두 사망 ☐ 면접교섭대상 모두 연락두절 ☐ 유기 ☐ 미아 ☐ 법적 처분 및 학대 고위험군 ☐ 기타 ()				
	지원내용					
		※ 보호시설 주소지 노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피해아동의 경우 작성)				
임가정 자원계획 (재보호조치 미작성)	※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등					
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작성방법

작성 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시 기	- 아동 배치 후 1주일 이내 ※ 일반위탁(친인척 외) 및 전문위탁의 경우 2주 이내, 일반위탁(친인척)의 경우 2개월 이내 수립
작성목적	- 개별보호관리 계획에 맞게 아동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작성방법	- 아동의 가족관계, 아동 상황, 아동 서비스 제공 계획, 면접교섭 서비스제공 계획, 원가정 지원계획(재보호조치 미작성), 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 상세히 작성
활용방법	- 아동 양육상황점검 시 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적절성, 목적달성, 아동의 변화 등의 점검 근거로 활용
기타	- 개별 보호·관리 계획 변경 시 현행화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

관리번호 :	작성일 : 년 월 일												
아동 정보	아동명, 생년월일												
면접 대상자	☐ 친부	☐ 친모	☐ 양부	☐ 양모	☐ 계부	☐ 계모	☐ 형제	☐ 자매	☐ 친조부	☐ 친조모	☐ 외조부	☐ 외조모	☐ 기타()
	(성명)												
면접 대상자 외 참석자	아동복지시설담당자, 위탁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사 등 면접 대상자 외 타인의 참석 여부												
면접 개요	면접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면접 방법								
	yy.mm.dd ~yy.mm.dd	00:00	00:00		☐ (대면) ☐ 시설(센터) 내방 ☐ 외출(원가정 방문/무박) ☐ 위탁(원가정 방문/1박 이상) ☐ 위탁가정 방문 ☐ 제 3의 장소 만남 ☐ 가족활동프로그램 참여 ☐ 기타()				☐ (비대면) ☐ 영상통화 ☐ 음성통화 ☐ 문자(SNS 포함) ☐ 서신 ☐ 기타()				
면접 내용													
면접 사유	정기 면접, 기념일, 학교행사 등												
취소 또는 중단 사유	해당 시 작성												
아동 소감	면접을 하며 좋았던 점, 의미가 있던 점, 다음 면접 시 희망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작성												
작성자 의견	면접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면접 시 분위기, 아동과 면접 대상자 간 상호작용 등)												
다음 면접 계획	면접 예상 날짜·장소·방법, 참석 예정자 등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② 작성방법

작 성 자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
시 기	- 면접교섭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면접교섭 결과보고서 작성 ※ '서비스제공 계획서'에 계획된 정기적 면접 이행 직후
작성목적	- 면접교섭 내용 평가 및 다음 면접 계획 수립
작성방법	- 면접 대상자, 면접 개요, 면접 내용, 면접 사유, 면접 취소 또는 중단 사유, 아동 소감, 작성자 의견, 다음 면접 계획 등 상세히 작성
활용방법	- 양육상황 점검 시 면접 이행 여부 모니터링의 기초 자료로 활용
기타	- 면접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

항목		작성내용
아동정보		- 아동명, 생년월일 작성
면접 대상자		- '서비스 제공 계획서'의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참석자 체크 및 성명 작성
면접 대상자 외 참석자		-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위탁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사 등 면접 대상자 외 타인의 참석 여부 작성
면접 개요	면접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방법	- 면접날짜,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작성 및 면접 방법 체크 ※ 비대면 면접의 경우 시작시간, 종료시간, 장소 생략 가능
면접 내용		- 아동과 원가정이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함께 한 일 등에 대해 작성 예) 아동 유치원 행사에 친모, 외조모가 참관 후 함께 저녁 식사/아동의 사진 등을 담은 서신을 친모가 수감 중인 교도소에 전달 / 입원중인 친모에게 영상통화로 아동이 생활하는 모습 등을 보여줌
면접 사유		- 정기적 만남(면접), 기념일(생일), 입학식/졸업식 등 사유 작성
면접 취소 또는 중단 사유		- 계획된 면접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그 사유를 파악하여 작성(연락없이 만남을 취소, 술에 취해있어 중단, 교통문제, 불규칙한 근무로 인한 취소, 면접 대상자 병세 악화로 통화 불가 등)
아동 소감		- 면접을 하며 좋았던 점, 의미가 있던 점, 다음 면접 시 희망하는 것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영아의 경우 아동 소감 생략 가능
작성자 의견		- 면접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정서안정, 즐거운 감정 표현, 자신감 회복, 정체성 확립, 양가강점, 퇴행, 화내기, 우울감표출 등) 작성
다음 면접 계획		- 면접교섭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면접의 예상되는 날짜, 장소, 방법, 내용, 사유, 참석자 등을 작성

양육상황 점검표

점 검 일	년 월 일 (차)	점검 방법	☐ 대면 ☐ 유선	관리번호	년 월 일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일			
아동정보	성명		성별 ☐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보호조치 (아동복지법15조)			보호기관		
	보호조치일	년 월 일		보호기관 담당자		
개별보호· 관리계획 점검	육구영역	목표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에 따른 육구점검 및 평가 (서비스 적절성, 목적달성, 아동의 변화)
		단기	장기			
아동의 상황 (적응상태, 변화정도, 만족도 등)		<아동 보호조치의 만족여부, 구성원과의 관계, 서비스 만족, 등>				
가족돌봄 현황	가족 돌봄 여부	☐ 해당 ☐ 미해당				
	돌봄 대상	☐ 조부모 ☐ 외조부모 ☐ 친모 ☐ 친부 ☐ 형제·자매 ☐ 기타 친척				
	돌봄 주기	☐ 주 1회 이상 ☐ 월 1회 이상 ☐ 분기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연 1회 이상 ☐ 기타() * 누적 돌봄기간 : _____ 개월				
	돌봄 유형	☐ 가사 도움(집안일) ☐ 병원 동행 등 의료 지원 ☐ 함께 시간보내기 ☐ 자기관리 돕기(목욕, 식사 등) ☐ 이동 지원 ☐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면접교섭 이행 점검	면접교섭 이행 여부	(대면) ☐ 이행 총 ()회 ☐ 미이행	※ ☐ 면접교섭 이행불가
		(비대면) ☐ 이행 ☐ 미이행	
	이행 내용	※ 면접교섭 미이행 사유 ☐ 연락두절 ☐ 병리적 문제 ☐ 직장문제(근로) ☐ 금전적 문제 ☐ 교섭주기 미도래 ☐ 기타 ()	
원가정점검	원가정 점검 여부	☐ 점검 ☐ 미점검	※ ☐ 원가정점검 불가
		※ 원가정 미점검 사유 ☐ 연락두절 ☐ 병리적 문제 ☐ 직장문제(근로) ☐ 기타 ()	
	점검 방법	※ 중복체크 가능 ☐ 방문()회 ☐ 내방()회 ☐ 유선()회 ☐ 외부()회 ☐ 기타() 총()회	
	지원 내용	※ 중복체크 가능 ☐ 상담 ☐ 사례관리 연계 ☐ 금품지급 ☐ 기타() <원가정 지원계획 대비 작성>	

점검 후 조치계획	[] 현 보호 유지() [] 보호계획 변경() [] 보호조치 변경() [] 보호종결 ([]연령도래 []원가정 복귀 []기타())
--------------	---

점검결과 및 총평	<면접이 아동에게 미친 영향, 아동소감, 원가정 점검 결과 등 담당자의 종합적 의견> ※ 이상 징후 발견하여 급여담당 부서에 생계급여 관리점검 의뢰 시 관련 사항 기재
--------------	--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④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고유 업무)
시기	- 아동 분리 보호조치 1차(1개월 이내) 이후 3개월 주기로 실시 - 보호 중 아동의 다른 욕구 발생 시(서비스 변경) - 보호조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개별보호·관리계획 변경) -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거나 보호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성목적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의 제공서비스 및 아동 변화 정도 점검 - 원가정 점검을 통한 가정복귀 시점, 가족 변화 정도 파악
작성방법	- 아동, 친부모(보호자), 원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 상담(유선, 대면 등)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항목 기록 - 개별보호·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서비스계획 수립 및 제공여부 등 ※ 필요시 아동, 친부모 상황점검표 활용 - 면접교섭 이행점검은 면접교섭결과보고서(원가정보호기관 수행)를 바탕으로 점검 - 원가정 점검은 보호자(친권자후견인)가 아동이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작성된 「관찰된(피해)아동의 특성」의 변화상황을 반드시 작성 예) 알레르기 완치,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향상, 차수별 영유아건강검진 수검결과 등
활용방법	- 보호계획 변경, 원가정복귀 계획 수립, 보호종결 등

항목		작성내용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일		- 심의날짜가 기준이나, 사후심의 시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 확정된 날짜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아동 담당자(상담원, 생활복지사) 성명 기재
아동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접수상담, 욕구조사 내용과 동일(시스템 자동 연동)
	보호조치	-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아동의 보호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3호~6호 해당)조치사항
	보호기관	- 아동이 보호되는 기관명 예) 00가정위탁지원센터, 00보육원
	보호조치일	- 시설입소 날짜
	점검일	- 아동을 보호조치이후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날짜
개별보호·관리 계획 점검	욕구영역 및 목표	- 욕구조사 결과(시스템 자동 연동)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에 따른 욕구점검 및 평가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수립한 아동서비스 제공 계획에 맞게 받는 서비스 내용 및 제공 기관 기재 - 아동 및 양육자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적절성, 목적 달성, 아동의 변화(신체변화, 심리·정서 상황, 교육 상태 등) 등을 기재
아동의 상황 (적응상태, 변화정도, 만족도 등)		-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적응상태, 변화정도, 구성원과의 관계 및 서비스에 대한 만족 등을 기재(아동의 실제 욕구 등 파악) - 입양아동(영아)의 경우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작성된 「관찰된(피해)아동의 특성」의 변화상황을 반드시 작성 예) 알레르기 완치, 주 양육자와 의사소통 향상 등

항목		작성내용
면접교섭 이행 점검	면접교섭 이행 여부	- 시설관계자가 작성한 면접교섭 일지(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면접이행여부, 횟수 체크 ※ 면접교섭계획이 있으나 미이행한 경우 미이행 사유 체크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면접교섭 가능여부에서 불가능으로 체크한 경우 면접교섭 이행불가에 체크
	이행 내용	- 면접이행 내용(대상, 방법) 작성 - 예시) 친모가 아동 생일을 맞이하여 외박(1박, 3월 5일) - 아동면접 결과(아동소감)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및 아동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재
가족 돌봄 현황 점검	가족돌봄 여부	아동이 중증질환, 장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확인되는 경우 체크(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
	돌봄 대상	아동의 가족 돌봄 대상 확인
	돌봄 주기	- 아동의 정기적 가족 돌봄 주기 및 누적 돌봄 기간 확인 ※ 누적 돌봄 기간이 24개월 이상 길어지는 경우 가족 돌봄에 대한 아동의 의견 청취 및 서비스 지원, 보호조치 변경 등 검토 필요
	돌봄 유형	구체적인 돌봄 활동 및 유형 확인
원가정점검	원가정 점검 여부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원가정점검 이행여부 체크 - 미점검 시 미점검 사유 체크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불가능한 경우 원가정점검 불가에 체크
	점검 방법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방문, 내방 유선, 외부 기타 등 각각의 횟수를 기록하고 최종 횟수 기록
	지원내용	- 개별보호·관리계획에서 수립했던 원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의 달성 정도 및 부모의 양육환경 변화 정도 기재
점검 후 조치계획		-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후 종합적인 양육상황 결과 기재 ① 현 보호 유지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제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아동의 변화가 긍정적인 경우 ② 보호계획 변경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원가정외 보호기관 해당 사유 확인 후 보호계획 변경 또는 서비스 제공 계획 변경 실시(시·군·구 사례회의(내부회의)를 통해 결정(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제외가능)) ③ 보호조치 변경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 되지 않았거나,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아동이 부정적이거나, 아동이 현 보호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경우 보호조치변경 실시(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해야함) ④ 보호조치 종결 : 아동이 원가정 복귀하거나 연령도래로 종결할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종결함)
담당자 의견		- 양육상황점검 결과에 따른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 종합적 소견(객관적 사실, 구체적으로 작성, 추측성 작성 금지)
소속, 직급, 성명		- 시·군·구아동보호전담요원의 소속, 직급, 서명 기재

※ 2025 입양실무 매뉴얼 [서식32]

양육상황점검 보고서 (차)

아동 이름	(성별: 남/여)		아동 생년월일	년 월 일 (현재 개월)	
모니터링 날짜 및 방법	년 월 일 ☐ 방문(장소:) ☐ 내방 ☐ 유선		모니터링 참여자	☐ 위탁부 ☐ 위탁모 ☐ 시설 담당자 ☐ 기타 ()	
모니터링 시간	시 분 ~ 시 분 (총 분)		모니터링 조사자	(소속 시/군/구청 과)	
모니터링 조사자 연락처			입양 절차 진행 단계	☐ 결연 전 ☐ 결연 후(☐ 임시양육)	
1. 양육상황점검 모니터링				예	아니오
(필수) 아동 발달 모니 터링	애착·적응 ·심리	- 아동이 주양육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 의견:			
		- 아동이 동거인(주양육자 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 의견:			
		- 아동의 애착 및 유대 형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 의견:			
	신체	- 아동의 신체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입니까? (대근육, 소근육 발달상황 등)			
		※ 의견:			
		- 아동이 또래(연령)에 비해 키, 몸무게가 정상 범주입니까?			
	인지	- 아동의 인지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입니까?			
		※ 의견:			
	언어	- 아동의 언어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입니까?			
※ 의견:					
사회성	- 아동의 사회성 발달 수준이 정상 범주입니까?				
	※ 의견: (예: 아동이 좋고 싫음을 표현할 줄 알며, 또래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함)				
(필수) 양육 모니 터링	현재상황	- 아동의 하루 일과(식습관, 수면 등)는 규칙적입니까?			
		※ 의견:			
		- 아동을 위한 안전한 물리적 공간(방, 침대 등)이 존재합니까?			
		※ 의견:			

(선택) 특별 육구 모니 터링		- 아동이 생활하기에 환경이 위생적입니까? (신체, 의복, 방 청결, 가정 물품 정리 상태, 놀잇감 위생 상태 등)	☐	☐	☐
		※ 의견:			
	문제행동	- 아동에게 식습관(식사 거부 등) 관련 문제가 있습니까?	☐	☐	☐
		※ 의견:			
		- 아동이 공격적, 반항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충동 조절 어려움, 공격적 표현, 행동 통제 어려움 등)	☐	☐	☐
		※ 의견:			
		-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스스로 위생관리가 잘 되는 편입니까?	☐	☐	☐
		※ 의견:			
	의료적·신체적	- 아동이 의료적(신체적)으로 지원 받은(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현재 상태, 치료·서비스 내용 기술 등	☐	☐	☐
		※ 향후 계획:			
정신적		- 아동이 정신적(심리적)으로 지원 받은(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현재 상태, 치료·서비스 내용 기술 등	☐	☐	☐
		※ 향후 계획:			
행동·사회·인지		- 아동의 행동·사회·인지적으로 지원받은(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현재 상태, 치료·서비스 내용 기술 등	☐	☐	☐
	※ 향후 계획:				
교육적	- 아동의 교육과 관련한 지원 받은(지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 현재 상태, 교육 서비스 지원 내용 등	☐	☐	☐	
	※ 향후 계획:				
기타	- 그 외 아동에게 특별한 육구가 있을 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	☐	☐	

2. 기타 모니터링		
전문가 모니터링 사항	※ 특별육구 아동의 경우 필수 작성 해당 모니터링 차시에 전문가 모니터링(소아과 전문의, 심리평가전문가 등)이 실시되었다면, 진행사항에 대해서 기록함. 전문가에 의한 모니터링이 실시된 바가 있다면, 별도로 심리평가보고서나 영유아건강검진통보서 등의 사본을 첨부함.	
아동 면접 교섭 이행 점검	면접교섭 이행 여부	(대면) ☐ 이행 총 ()회 ☐ 미이행 (비대면) ☐ 이행 총 ()회 ☐ 미이행 ※ ☐ 면접교섭 이행불가
	이행 내용	※ 면접교섭 미이행 사유 ☐ 연락두절 ☐ 병리적 문제 ☐ 직장문제(근로) ☐ 금전적 문제 ☐ 교섭주기 미도래 ☐ 기타()
면접교섭 내용, 특이사항, 아동소감, 작성자 의견등		

기타 중요 관계인과의 내용	아동의 친구, 선생님 등 아동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상담 또는 내용에 대해 기록	
기타 특이사항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 이외의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	
모니터링 사진	5 x 5 cm (양육환경, 상담 및 교육자료, 아동 사진 등)	5 x 5 cm (양육환경, 상담 및 교육자료, 아동 사진 등)
	5 x 5 cm (양육환경, 상담 및 교육자료, 아동 사진 등)	5 x 5 cm (양육환경, 상담 및 교육자료, 아동 사진 등)
년 월 일 조사자: _____ (서명)		

서식 16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보호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대상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현재 주소	
	변경 주소	
	연락처	
대상시설 (위탁부모)	시설명(이름)	
	주소	
	연락처	
연장신청 정보	보호 연장기간	[] 만 24세까지 연장(별도 사유 불필요) [] 만 25세 이상 보호기간 추가 연장
	보호 연장사유	(만 25세 이상 보호기간 추가 연장 시 첨부하는 증명자료 참조)
	연장기간 거주 예정지	[] 시설(위탁가정) 내 거주 [] 시설(위탁가정) 외 거주

「아동복지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보호연장아동 실거주지 변경 신고서

변경 유형: 시설 내 → 밖 거주 [] 시설 밖 → 내 거주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실거주지 변경(예정)일	연락처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 주소 대학 기숙사[] 직장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기타[]	
대상자 계좌정보	은행명/예금주명	계좌번호
시설 (기관) 정보	시설(기관)명	시설(기관)장 성명
	시설(기관) 주소	
	시설(기관) 연락처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위 대상자의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아동복지시설의 장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한 보호연장아동 개인명의 통장사본
----------	------------------------------

서식 16-2 재보호조치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5서식]

재보호조치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심의 후 2일
------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아래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대리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보호이력	시설명 또는 위탁부모 성명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 연월일
	주소(시설 또는 위탁가정 소재지)	

보호구분	[] 아동양육시설 [] 공동생활가정 [] 아동일시보호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가정위탁 [] 그 밖의 아동복지시설
------	--

재보호 사유	[] 대학 이하의 학교 재학·진학 준비 [] 직업 관련 교육·훈련 [] 장애·질병 등 [] 심리, 주거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 [] 지적 능력 등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재보호조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리인 제출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중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대리인(친족일 경우만 해당)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친족)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대리인의 범위)

1.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
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3. 그 밖에 재보호조치 신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종사자 및 위탁가정의 부모

▶ 대리인 증명 서류

공통	- 위임장(서식62)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종사자	- 재직증명서
위탁가정의 부모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용이용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식 16-3

재보호조치 신청 위임장

재보호조치 신청 위임장

재보호조치 대상자 본인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내용	「아동복지법」 제16조의4에 따라 다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게 되는 재보호조치에 대한 신청 ※ 대리인이 신청하더라도 신청서 접수 후 주소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본인과 상담 진행 예정(전화 또는 방문)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자(본인)는 위와 같이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재보호조치 신청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가정 복지 점검표

이동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작성일		0000.00.00
보호유형		보호기관(연락처)	보호자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보호조치일		이동복지시설 담당자	아동과의 관계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번호	평가 항목	평가 V	특이사항
1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예 아니오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우울(), 기타() ☐ 신체장애 : 장애종류() ☐ 질 환 명:	예 아니오	
3	부모 중 최소 1인이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직업 : ☐ 근로시간 :	예 아니오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 소득 : 평균 만원 ☐ 부채 : 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여부	예 아니오	

번호	평 가 항 목	평가 V	특이사항
5	부모에게 심각한 일탈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일탈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예 아니오	
6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 자가 ☐ 전세(보증금 :) ☐ 월세 : (보증금 :)	예 아니오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사진 필수 첨부)		
	<사진>	예 아니오	
8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 :	예 아니오	
9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예 아니오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다.	예 아니오	
소견 (아동의 원가정 복귀 적합성 여부)			

▶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분리 보호된 아동이 원가정복귀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피해아동 이외 아동) - 친생부모가 입양철회 시
작성목적	- 부모의 양육환경을 조사하여 원가정 복귀의 적합성 여부 판단 - 친생부모가 입양철회 시 미혼모 한부모 서비스 및 드림스타트 등으로 연계하기 위함(필수)
작성방법	- 친부모 면담(가정방문) 등 통해 기재 -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운영,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한 자료(원가정 만남, 지원내용,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점검 - 친부모 연락 및 점검사항에 대해 필요시 원가정의 보호기관 협조
활용방법	- 본 점검표는 피해아동 이외의 아동이 원가정 복귀시 활용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며, 본 점검표는 해당사항 없음 - 친생부모 대상 가정복귀 점검표 작성 시 항목에서 '예'라고 한 경우 관련 서비스 연계

항목		작성내용
1	가족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이나 폭력이 있다.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 부부싸움 ☐ 심각한 갈등	- 해당 항목 체크 및 특이사항에 정도 및 강도 등 기재 ※ 해당항목의 횟수, 강도가 높을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해야 함. 특히 피해아동으로 분리보호 조치된 경우 면밀히 검토 - 아동이 분리보호 조치된 사유 중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 면밀히 검토
2	부모에게 심각한 정신장애, 신체장애 또는 질환이 있다. ☐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우울(), 기타() ☐ 신체장애 : 장애종류() ☐ 질 환 명 :	- 해당항목 체크 및 해당 장애의 등급 또는 강도, 해당 장애로 인해 아동 양육 가능여부를 기재(사후관리 시 해당 문제로 아동양육 확인) - 해당항목의 강도가 높을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3	부모(최소 1인)의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근로 시간이 일정하다. ☐ 부 ☐ 직업 : ☐ 근로시간 ☐ 모 ☐ 직업 : ☐ 근로시간	- 아동양육 계획서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 근로시간이 길 경우 아동양육 공백시간에 대한 계획에 기재

항목		작성내용
4	부모의 소득이 안정되고, 부채의 정도가 크지 않다. ☐ 소득 : 평균 ☐ 만원 ☐ 부채 : 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여부	- 부모의 총소득액 기재, 소득은 안정적이나 부채의 정도가 클 경우(부채탕감 방식 확인) 특이사항 기재, 소득이 불안정이나, 부채비율이 없거나 낮을 경우 '아동양육 계획서' 확인
5	부모에게 심각한 알콜중독, 약물남용, 도박 등의 문제가 있다 ☐ 알콜중독 ☐ 약물남용 ☐ 도박 ☐ 기타()	- 해당 항목이 아동양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해당 문제에 대해 치료계획 여부 확인, 아동이 분리보호 조치된 사유 중 해당 내용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6	부모의 거주지가 일정하다. ☐ 자가 ☐ 전세(보증금 :) ☐ 월세 : (보증금 :)	- 소득대비 월세비율확인, 부모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 고려
7	부모의 거주지의 안전 및 위생상태가 양호하다. (거주예정 가정환경조사 내용 특이사항 기재)	- 거주지 안정, 위생, 해당 층수, 위생상태, 아동의 독립공간 등 확인(양육계획서 참고) - 거주지가 안전하지 않을 경우 거주지 이전 계획 등 확인
8	부모는 아동의 분리보호 기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 연락 주기 :	- 분리보호 시점 이후 아동과의 만남 정도 체크(활동 내역), 만남 이후 아동의 태도 등 확인(아동이 친부모 만남 이후 아동태도 변화는 담당 상담원(위탁부모) 확인) - 서식 15 '양육상황점검'에서 원가정과의 만남 및 지원 등 확인 - 분리보호조치 후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경우 사유 작성
9	부모는 아동과 재결합하는 것을 원한다.	- 재결합 사유 확인
10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물품, 아동의 독립 공간 여부 등 확인 - 아동물품 구입 필요성 및 구입계획, 아동의 독립공간이 없을 경우 주거지 활용계획, 이사 계획 등

서식 18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 <참고용>

1)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아동용)

영역	문항	평가점수
아동인식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아동준비	주관식) 보호조치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가족(친인척 포함) 면접교섭에 참여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 (예) 월 1회 시설방문(조모, 모), 격월 가정방문(부, 고모, 조부모) 전화통화(주1회, 조부, 삼촌, 이모)	
	주관식) 본인이 가정으로 돌아간다면 언제쯤 돌아가고 싶은가요? ()	
원가정 평가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한 사람은 없다.	
	주관식) 가족원 중에서 본인과 관계가 가장 좋고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환경평가	가족/가정의 주거환경은 내가 함께 지내기에 편하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 능력	주관식) 가족과 함께 살면서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나 선생님을 알고 있다. (도움을 요청할 기관:) (선생님 이름과 연락처 :)	
	나는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	

2)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보호자용)

영역	문항	평가점수
보호자 인식	아동과 함께 사는 것은 나와 가족 모두(분리보호의 이유와 관련된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가 원하는 일이다.	
	아동과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나와 가족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부모 외 가족 및 동거인 포함)	
	아동과 함께 같이 살게 되면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보호자 준비	나와 가족들은 아동과 잘 지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준비해왔다.	
	함께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할 선생님이나 기관, 서비스를 잘 알고 있다. (도움을 요청할 기관:) (선생님 이름과 연락처 :)	
	주관식) 보호조치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가족(친인척 포함) 면접교섭에 참여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 (예) 월 1회 시설방문, 격월 가정방문(고모) 전화통화(주1회)	
환경평가	현재 우리 가족/가정 내(분리보호의 이유와 관련된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에 폭력이나 방임의 위험성이 없다.	
	가족/가정은 경제적 상황이 좋은 편이다.	
	현재 우리 가족/가정은 가족들끼리 관계가 좋다.	
	주관식) 현재 가족기능과 가정환경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염려사항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영역	문항	평가점수
역량평가	나는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내 아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준다.	
	나는 아이의 결정과 선택을 존중한다.	
	아이가 나의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 위협적이지 않게 차분히 설명하고 지도할 수 있다.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주관식) 아동을 키우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이 가진 염려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3) 가정복귀 점검 체크리스트(실무자용)

영역	문항	평가점수
아동관련	아동은 원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	
	아동은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	
	주관식) 아동과 보호자 등 가족원들의 면접교섭이 이루어졌다. () (예) 월 1회 시설방문(조모, 모), 격월 가정방문(부, 고모, 조부모) 전화통화(주1회, 조부, 삼촌, 이모)	
보호자 관련	주양육자는 신체 및 심리·정서적으로 건강하다.(음주 및 약물의 문제 포함)	
	주양육자와 아동의 관계가 불편하지 않다.	
	주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충분하다.	
	주양육자는 아동을 양육할 역량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주양육자는 아동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다.	
	주관식) 주양육자와 관련하여, 실무자가 가진 염려사항이 있으면 아래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	
가족기능과 가정환경	(결합할) 가정의 주거환경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안전하다.	
	(결합할)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	
	(결합할) 가정은 가족들끼리 관계가 좋다.	
	주관식) 가족기능 및 가정환경 관련하여, 실무자가 가진 염려사항이 있으면 아래 빈칸에 해당 내용을 적어주세요. ()	
재보호 가능성과 대처능력	분리보호의 주원인이었던 위험요인이 감소 또는 해소되었다.	
	가족들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방법을 알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아동과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주변의 지지체계나 자원(기관, 학교, 친인척, 이웃, 종교단체 등)이 있다.	
재결합 관련	(종합적으로) 원가정 복귀는 아동과 가족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합적으로) 원가정 복귀는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믿는다.	

④ 작성방법

작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 아동·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작성 * 실무자용의 경우 원가정의 보호기관과 회의를 통해 작성
시 기	- 분리보호된 아동이 원가정복귀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비학대아동)
작성목적	- 아동의 원가정복귀 적합성을 판단
작성방법	- 각 문항에 대해 평가점수 1점(매우 아니다), 2점(아니다), 3점(보통이다), 4점(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 작성
활용방법	- 피해아동이외의 아동이 원가정 복귀시 활용 - 평가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하다고 판단하되,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 - 필요시 관련 서비스 연계

서식 19 가정 복귀 의견서

원가정의 보호기관 공통서식(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환경 조사서' 별도 작성)

○○○○기관

수 신: ○○ 시장

가정 복귀 의견서						
아동	아동명				성별	
	생년월일(연령)	()세			보호조치일	0000. 00. 00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 예정자	성명				성별	
	거주상태	자가/전세/월세			아동과의 관계	
	보호예정 거주지 주소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의견	아동의 의사(부모와의 관계 포함)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내역					
	아동-보호자 면접교섭 실시내역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거주예정 가정환경 포함)					
	원가정의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종합 의견〉						
작성일 0000.00.00 소속 직위 직급 성명						

④ 작성방법

작성자	- 원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
시기	- 분리 보호된 아동이 원가정복귀로 종결하고자 할 경우(비학대아동)
작성목적	- 원가정의 점검 및 아동의 복귀 의사 확인
작성방법	- 원가정의 보호기관 담당자는 보호예정자의 면담(가정방문)을 통해 작성 - 가정 복귀에 대한 아동 의사 확인
활용방법	- 가정 복귀 점검표, 종결심사서 등 ※ 피해아동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원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본 의견서는 해당사항 없음

항목		작성내용
아동	아동명, 성별, 생년월일, 보호조치일, 주소, 보호시설명	- 아동 정보 기재 - 시설입소 날짜 등
보호예정자	성명, 성별, 거주상태, 아동의 관계, 기타	- 보호예정자 정보 기재
가족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 함께 거주하게 될 가족구성원의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등 기재
의견	아동의 의사	- 가정 복귀를 원하는지, 부모와의 관계 및 감정 등을 상담 후 기재
	거주예정 가정환경	- 방 개수, 크기, 위치(안전여부, 층수), 아동물품 등 준비상황 등 기재
	보호자의 양육 능력 및 태도	- 양육계획서 또는 친부모상황점검표 내용 확인(직업, 수입, 근로시간), 아동 양육태도(양육태도 점검리스트 질문 확인)
	원가정의 보호기관(아동보호, 양육시설 등) 의견	- 아동과 부모의 변화정도 및 원가정 복귀에 대한 담당자 의견 기재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 아동이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받은 서비스 내용 및 최종 평가를 기재

서식 20 종결심사서(사례결정위원회 상정)

종 결 심 사 서

관리번호		보호유형	
보호조치일	년 월 일	종결심사일	년 월 일
보호종료일	년 월 일		
종결유형	☐ 원가정 복귀 ☐ 연령도래에 따른 퇴소 ☐ 입양성립 ☐ 기타()		
구분	평 가 영 역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개별보호·관리계획, 재평가 등 과정 등 종합하여 작성〉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종결사례평가	〈서비스 제공과정, 양육환경 조사결과 등 종합하여 작성〉		
사후관리계획			
기타			
		작성일	년 월 일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④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분리보호 된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결하고자 할 경우
작성목적	- 사례결정위원회 상정하여 아동의 보호종결을 심사하기 위함
작성방법	- 양육상황점검, 가정 복귀 점검표, 가정 복귀 의견서, 양육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 - 원가정 외 보호기관 담당자(상담원), 친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면담을 통해 작성
활용방법	- 사례결정위원회 회의자료,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

항목	작성내용
관리번호, 보호유형 보호조치일, 종결심사일	- 관리번호 자동 연동 - 현재 보호되고 있는 유형 기재 예)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 시설입소 날짜, 심사일 기재
종결유형	- 원가정 복귀, 연령도래, 입양성립 등 기재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달성정도	-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및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수립한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제공의 일치성, 재사정 단계(개별보호·관리계획 점검 및 평가) 확인 후 작성 - 아동이 장기 보호되었다가 종결할 경우 최종 개별보호·관리계획 목표, 서비스 제공 계획 및 제공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부모의 양육환경변화 (원가정복귀 시)	- 원가정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만 작성(가정 복귀 의견서, 양육상황점검표 참고)
종결사례평가	- 원가정의 보호기관에서 서비스 제공과정(원가정의 보호기관), 가정 복귀 의견서, 양육계획서, 양육상황점검표, 가정 복귀 점검표 등을 바탕으로 작성
사후관리계획	- 원가정 복귀하는 아동의 경우 1년 이내 4회 사후관리 계획 등 내용 포함 - 연령도래로 종결하는 아동의 경우 사후관리 계획(5년) 등 포함(자립지원정착금, 디딤씨앗통 장, 주택마련, 취업, 학업 등) 작성

서식 2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연령 도래)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앞면)

○○○○ 자립지원전담기관장 귀하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보호종료예정일		연락처	
원가정외 보호기관	기관명		기관주소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본 동의서는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보호종료 후 5년간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사후 관리 진행내용은 내부자료로 보관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개인의 정보가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상자는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자립지원 서비스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 목적에 한하여 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 및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사후관리 동의 획득을 본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의 의무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는 보호종료 후 5년간 관할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실시하는 자립수준 평가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자립상태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을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자립수준평가를 바탕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각종 자립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모든 과정에 대한 사실과 기록을 대상자와 함께 공유해야 하며, 대상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비고	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대상자가 상호 합의한 내용이다. 사후관리의 방식과 주기,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대상자와 사후관리 담당자가 상호 합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다.			
동의확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상기와 같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권자 : (서명 또는 인) 동의확인자(자립지원전담요원) : (서명 또는 인) 동의획득자(자립지원전담인력) : (서명 또는 인)			

○○○○자립지원전담기관장 귀하

서식

서식 21-1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원가정복귀(비학대)/조기종료아동)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동의서

아동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사후관리 담당자	성명		직위	
사후관리 방법	☐ 전화 ☐ 아동(가정)방문 ☐ 시설·기관 내방 ☐ e-mail(사이버) ☐ 기타 _____			
사후관리 기간	☐ 5년 ☐ 1년 ☐ 3개월 ☐ 기타 _____	사후관리 주기	☐ 연 1회 ☐ 6개월마다 ☐ 3개월마다 ☐ 월 1회 ☐ 기타 _____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38조(자립지원)			
개인정보 공개 및 관리	본 동의서는 보호종료 후 5년(1년)간 사후관리(아동복지법 16조의2, 제38조)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하며, 사후관리 진행 내용은 내부 자료로 보관됩니다. 사후관리 담당자는 대상자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원가정 복귀로 보호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1년, 그밖에 사유로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된 경우 5년간 사후관리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 ※ 대상자는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퇴소 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사후관리를 위한 목적에 한하여 대상자 거주지 관할 시·도(시·군·구) 및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대상자 정보 및 사례관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사후관리 담당자의 의무	아동은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응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신상의 어려움이나 변동이 있는 경우 사후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위험(필요)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 담당자는 아동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구성원에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필요로 하는 도움과 자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아동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욕구 또는 문제해결을 위해 본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연계할 수 있습니다.			
비고	본 동의서는 사후관리와 계획에 대하여 본 기관과 아동이 상호 협의한 내용으로, 사례관리에 대한 문제 및 어려움이 있을 시 아동과 사례관리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동의확인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설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절차에 대해 동의하고, 위 절차에 따른 귀 기관의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아동 : (서명 또는 인) 보호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동의획득자(소속) : (서명 또는 인)			

양육 계획서

※ [] 중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아동과의 관계		
	주소				연락처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교육 기관명		
	주소 (시설명 등)				연락처		
양육 계획	주거						
	형태	☐ 자가 ☐ 임대 (전세 / 월세) ☐ 기타()					
	아동과 함께 거주할 곳 주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 (신청인 포함)	아동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아동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아동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소득						
	고용형태	☐ 정규직 ☐ 계약직 ☐ 일용직 ☐ 자영업 ☐ 기타()					
	직업			월 소득			
	출·퇴근 시간						
	취업 준비 중인 경우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교육 및 돌봄						
	주양육자			부양육자			
	교육(돌봄)기관						
	교육기관 이용 전·후 돌봄 계획						
기타 (치료계획 등)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3항에 의거하여 아동 가정복귀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로 본 양육계획을 제출합니다.							
신청인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3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

회의 일자		회의 장소		대면개최 여부	☐ 대면(영상회의 포함) ☐ 서면
회의종류	☐ 보호조치 결정 ☐ 보호조치 변경 ☐ 보호종료 결정 ☐ 기타				
안건					
참석자	이름(소속) 총 명				
회의내용					
의결사항	보호조치 결정				
	보호조치 변경				
	보호종료 결정				
특이사항 등					

④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아동을 분리보호조치 시, 아동의 보호조치 변경 시, 보호종료 시
작성목적	- 심의 결과를 기록하기 위함
작성방법	- 심의 과정 작성
활용방법	- 분리보호조치, 변경, 종료의 결정 근거자료

항목	작성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 사례결정위원회의 일자 및 장소 기재
회의종류	- 아동별로 해당사항에 체크 ※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록은 아동별로 기재
안건	- 회의 종류에 따른 상세 안건 기재 예) 가정위탁보호 중 아동 비행으로 인해 위탁부모와의 잦은 갈등 발생, 위탁부모 소진으로 가정위탁보호 종결 요청하여 아동을 양육시설로 보호조치를 변경하고자 함
참석자	- 사례결정위원회 명단 기재
회의내용	- 안건에 대한 과정 및 주요내용 기재
의결사항	- 회의내용의 결과 기재
특이사항	- 회의내용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기재

서식 24 사례회의록

사 례 회 의 록

회의 일자		회의 장소	
업무단계	☐ 접수상담 ☐ 조사사정 ☐ 개별보호·관리계획 ☐ 보호조치 결정/변경 ☐ 양육상황점검/재평가 ☐ 보호종결 ☐ 사후관리 ☐ 기타		
안전			
참석자	이름(소속) 총 명		
회의내용			
특이사항 등			

④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기	- 시·군·구 사례회의 시(아동보호 모든 단계)
작성목적	- 내부 사례회의 내용을 기록하기 위함
작성방법	- 사례회의 과정 작성
활용방법	- 아동의 보호관련 모든 과정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

항목	작성내용
회의일자, 회의장소	- 사례회의 일자 및 장소 기재
업무단계	- 아동별로 해당사항에 체크 ※ 사례회의록은 아동별로 기재
안전	- 회의 종류에 따른 상세 안전 기재 예) 보호자가 수감됨 이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 계획 논의
참석자	- 사례회의 참석 명단 기재
회의내용	- 안전에 대한 논의 과정 및 주요 결과 기재
특이사항	- 회의내용 이외 특이사항 발생 시 기재

서식 24-1 아동 재보호조치 의견서

아동 재보호조치 의견서				
아 동 인 적 사 항 (아동보호팀 작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만 세)		
	재보호 신청사유	1. ☐ 대학재학 2. ☐ 직업 교육 훈련 3. ☐ 장애· 질병 4. ☐ 심리·정서·주거·경제 어려움 등 5. ☐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인 경우		
자 립 관 련 지 원 내 역	사후관리 기간	(시작일) ~ (마지막 사후관리 실시일)		
	대상자구분	1. ☐ 일반사후관리대상자 2. ☐ 자립지원통합서비스 대상자		
재보호조치 필요 의견	1. ☐ 신청에 따라 필요 2. ☐ 심의 필요 3. ☐ 필요 없음 4. ☐ 기타			
	[그 외 기타의견]			
년 월 일 자립지원전담기관 담당자 000 시·군·구청장 귀하				

(앞쪽)			
보호결정(변경, 종료) 통지서			
심의 후 7일			
대 아 상 동	성명	생년월일 (남, 여)	전화번호
	주소		
보 호 시 설 (기 관)	보호유형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입양		
	시설(기관)명 (피해아동의 경우 미기재)		
결정(변경) 일자		조치 일자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아동보호를 결정(변경, 종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아동·보호자·기관 귀하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보호기간 동안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시설 주소지로 주소지 변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처리 시 현재 가정 내 지원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등의 공공서비스 지원이 중지 또는 감소될 수 있습니다. 3. 시설입소 후 시설과 근접한 교육기관으로 전학처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시설 적응 등으로 인해 전학처리가 지연될 경우 일시적으로 시설과 근접한 교육기관에 교환학습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아동은 입소한 시설 내 생활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생활규칙은 시설마다 상이) 5. 시설 입소 후 보호자의 아동면회가 아동의 시설 부적응 및 정서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시설에서 보호되는 기간 동안 아동에게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설의 장의 동의를 통해 치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특별한 사유로 인해 입소한 시설에서 지속적인 보호가 어려운 경우 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을 재확인하여 전원조치 될 수 있습니다. 8. 추후 보호자가 아동의 가정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따라 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가 진행되며, 동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근거,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합니다.	
※ 사후관리 주기 및 방법 안내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가정방문을 포함, 1년간 4회 사후관리 실시 - 원가정 복귀 후 일주일 이내 가정방문 실시 및 1개월 이내 추가 1회 이상 모니터링(가정방문, 유선), 원가정 복귀 후 6개월부터는 정기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험 요인 발견 시 사후관리 기간 연장	
9.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6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 <개정 2021.6.30.>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심의 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정위탁 또는 입소 연월일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 예정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전화번호	
	주소(소재지)		
퇴소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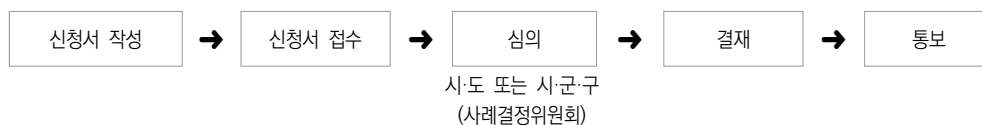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

서식 27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1.6.30.>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심의 후 2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소(가정위탁) 연월일	퇴소(가정 복귀) 예정 연월일	
대상 시설	시설명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주소(소재지)		
가정 복귀 사유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3항에 따라 위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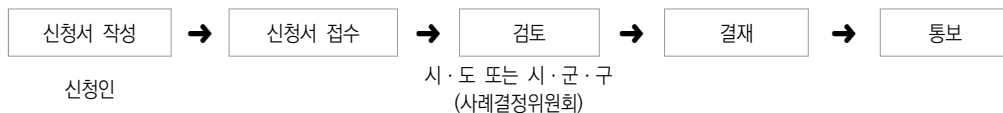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가정 복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아동이 아동학대행위자가 거주하는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상담·교육·심리치료에 참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

사후관리 점검표(원가정 복귀)

사후관리일 년 월 일 ()차

아동	아동명(성별)	(□남 □여)		생년월일(연령)	. . ()세	
	연락처			학교((대학) ()학교(어린이집)()학년(과)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로				
	아동 주요 특징	(장애여부, 피해아동, 질환 등)				
보호자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 . ()세	
	아동과의 관계			거주상태	자가/전세/월세/기타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수급 □미수급		월소득	만원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아동 면담	보호자의 양육태도					
	아동학대 의심상황	□언어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아동 외 가족 갈등상황	□언어폭력 □신체폭력 □부부싸움 □심각한 갈등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 (직장생활 및 사회적 관계)					
	자립지원 점검					
보호자 면담	아동과의 관계	아동에 대한 감정, 양육참여, 상호작용 등				
	아동양육의 어려움 유무					
	기타	필요 서비스(부모육구, 아동육구), 출퇴근시간 등				
종합의견						
○○○시·군·구 소속 년 월 일 직급 성명 : (인)						

사후관리 점검표 (연령 도래에 따른 종결(자립))

사후관리일 년 월 일 ()차

시스템 확인 사항	아동	아동명(성별)	(□남 □여)			생년월일(연령)	. . ()세		
		연락처				학교((대학) ()학교(어린이집)()학년(과)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로						
		아동 주요 특징	(장애여부, 피해아동, 질환 등)						
	보호자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 . ()세		
		아동과의 관계				거주상태	자가/전세/월세/기타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수급 □미수급		월소득	만원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자립 지원 전 담 기 관 확 인 사 항	자립 지원 현황	☐ 자립정착금 (□ 지급 □ 미지급) ☐ 자립수당 (□ 지급(지원기간 : 00.00.00. ~ 00.00.00.) □ 미지급) (* 누적 지급금액 : 원)						
		사후관리 이행 여부	☐ 이행 (가장 최근 이행 날짜 : . . .) ☐ 미이행 (□ 연락두절 □ 미실시) ☐ 이행불가 (□ 사후관리 거부 □ 사망)						
		자립지원통합서비스	☐ 대상 ☐ 비대상						
특이사항 및 담당자 의견									
종합의견 (서비스 연계 등 후속조치 필요사항 등)									
		년 월 일 ○○○시·군·구 소속 직급 성명 : (인)							

사후관리 점검표(입양 성립)

사후관리일 년 월 일 ()차

아동	아동명(성별)	(□남 □여)			생년월일(연령)	. . ()세
	연락처			학교((대학)	()학교(어린이집)()학년(과)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로				
	아동 주요 특징	(장애여부, 피해아동, 질환 등)				
보호 자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 . ()세
	아동과의 관계				거주상태	자가/전세/월세/기타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로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점검 내용	아동 적응 및 발달 등 상태 확인	□ 예 □ 아니오				
	입양가정에서의 아동양육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예 □ 아니오				
	수시 상담 가능한 연락처 제공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시·군·구 소속 직급 성명 : (인)						

사후관리 점검표(타 법 시설 입소)

사후관리일 년 월 일 ()차

아동	아동명(성별)	(□남 □여)		생년월일(연령)	. . ()세		
	연락처	학교((대학)		()학교(어린이집)()학년(과)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로					
	아동 주요 특징	(장애여부, 피해아동, 질환 등)					
보호자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 . ()세		
	아동과의 관계			거주상태	자가/전세/월세/기타		
	주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여부	□수급 □미수급		월소득	만원		
가족 관계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학교)	비고	
점검 내용	건강·의료	☐ 정신장애 : 정신분열증(), 지적장애(), 우울(), 기타() ☐ 신체장애 : 장애종류() ☐ 질환명 : ()					
	교육	☐ 재학(중/고) ☐ 졸업(초/중/고) ☐ 학교밖청소년					
	사회	문제행동 ☐ 음주 ☐ 흡연 ☐ 성범죄 관련 ☐ 폭력 ☐ 절도 ☐ 기타()					
		부채현황 ☐ 무 ☐ 유(기관명 : / 금액 :)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용	- 진학/취업 여부, 취업준비/직업훈련 내용 - 아동의 주거 및 안전 - 서비스 제공내용 - 사회적 지지자원(가족, 친척, 동료 등)					
	향후 계획	☐ 원가정 복귀 ☐ 진학 ☐ 취업 ☐ 직업훈련 ☐ 검정고시 ☐ 기타()					
종합의견(총평)							
년 월 일 ○○○시·군·구 소속 직급 성명 : (인)							

② 작성방법

작 성 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시 기	- (원가정 복귀) 원가정복귀 후 1개월 이내 1차 이후 분기별 점검 - (타 법시설 입소) 타 법시설 입소 후 최초 1주일 내 시설방문 포함하여 5년간 연 1회 점검
작성목적	- 아동이 가정복귀·자립·입양·타 법시설 입소 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함
작성방법	- 가정방문, 시설방문, 유선 등 진행 후 작성
활용방법	- 사후 관리 중 타 서비스 필요시

항목		작성내용
아동		- 아동의 기본 정보 및 현재 학교 정보 기재
보호자		- 보호자 기본정보 기재, 양육계획서와 변경된 사항 확인 ※ 자립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경우 미기재
가족관계		- 가족구성원의 기본 정보 기재, 양육계획서와 변경된 사항 확인
아동 면담	보호자 양육태도	- 아동 면담을 통해 부모(보호자)의 양육태도를 작성 예) 모든 아동이 자기 전에 아동과 대화를 함
	아동학대 의심상황	- 부모(보호자)가 아동학대 의심행동을 하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아동 학대 발견 시 즉시 신고) 예) 부가 아동의 귀가가 늦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함
	아동 외 가족갈등상황	- 보호자 이외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여부 등 작성 ※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이 아동양육에 부정적영향이 있는지 확인
	학교생활 및 친구관계 (직장생활 및 사회적 관계)	- 아동이 학교(어린이집)생활 및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여 작성 - 자립아동의 경우 직장생활과 사회적 관계 작성
	자립지원 점검	- 자립수준평가 등 관련 내용 작성
보호자 면담	아동과의 관계	- 보호자가 가정복귀 후 아동과의 관계정도(아동에 대한 감정, 양육참여, 상호 작용 등)를 작성
	아동양육의 어려움 유무	- 아동 양육의 어려운 점 확인하고 작성, 보호자가 아동의 양육 및 교육 등을 서비스정보 제공
	기타	- 필요 서비스(부모육구, 아동육구), 출퇴근시간 등 작성
종합의견		- 아동과 보호자 면담을 통해 종합적 의견 작성

서식 29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6.30.>

가정위탁보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가정위탁 보호자)	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원	
	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직업	월수입 원	
가구·재산	부동산 [대지 : m ²] [건물 : m ²] [기타 :]			
	동산 원 거주 자가 [] 전세 [] 월세 []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위탁 아동과의 관계	[] 친인척 ([] 친조부 [] 친조모 [] 외조부 [] 외조모 [] 조부모 외(관계 :)) [] 친인척 외 * 친인척 :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위탁유형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가정위탁보호자) 부 모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신청인 가정 조사 → 심의 → 결재 → 통보

신청인

시·도 또는 시·군·구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0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6.30.〉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가족 관계	관계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관계	[]동거	성명	생년월일	직업

가정위탁보호 동기(사회적 이타심, 가족체계 강화, 종교적 이념 실천 등)

가정환경(가족관계, 가족분위기, 물리적 양육환경 등 전반적 가정환경)

가구소득(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소득수준)

충족

미충족

양육 및 교육환경(위탁아동의 종교의 자유 인정 여부 등)

충족

미충족

가정위탁보호자 나이(모두 25세 이상,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충족

미충족

(뒤쪽)		
자녀 수(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4명(위탁아동 포함) 이내, 단 18세 이상 자녀 제외)	총족	미총족
가구원 전력(가구원의 성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마약·알코올·약물중독·정신질환 전력 여부)	총족	미총족
전문가정위탁 기준 총족여부(전문가정위탁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	해당항목 (가목, 나목(1)~7)), 다목 중 표기)	
※ 필요서류 별첨 ※ 별표 1 제1호에 따른 전문가정위탁의 기준 중 해당 항목 별도 표기(예 : 별표 1 제1호가목)		
특이사항		

조사자 의견	총족	미총족

조사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를 신청한 가정에 대한 조사 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1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3.19.〉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가정
위탁보호 희망자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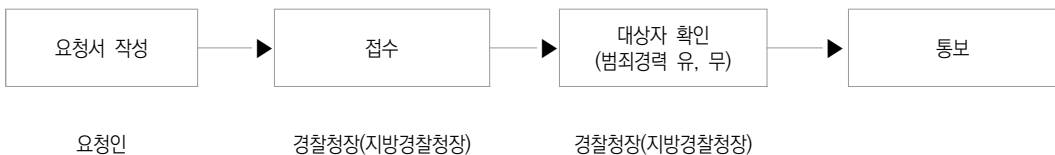
경찰청장(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요청인 제출 서류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 32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3.19.>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		휴대전화: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서식 33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3.19.〉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쪽)

요청인	성명		직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아동 대상 성범죄		[] 있음	[] 없음	
성인 대상 성범죄		[] 있음	[] 없음	
가정폭력 관련 범죄		[] 있음	[] 없음	
아동학대 관련 범죄		[] 있음	[] 없음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한함)		[] 있음	[] 없음	

「아동복지법」 제15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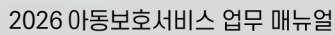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직인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위탁부모 추천서

334 |

가정위탁보호 동의서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동과의 관계	
	연락처	

- 위탁기간 : 위탁보호기간은 담당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결정에 따른다.(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 위탁유형 : ☐ 일반위탁가정 ☐ 전문위탁가정 ☐ 일시위탁가정

본인은 아동복지법에 제15조에 의하여 아동 ()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기간 동안 아동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귀 센터에 위임하며, 기타 아동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36 소재불명조사복명서

소재불명조사복명서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성명)	아동과의 관계	
	(성명)		
3. 조사내용	• 아동이 친권자와 연락이 닿은 지 2주 이상 경과 여부 • 주소지 방문 및 개인 전화·직장 통한 연락에 무응답 여부 • 기타 접촉 조치사항 아래 기재		
4. 조사결과			
5. 조사자	직급	성명	

본인은 아동 ()의 친권자의 소재불명 사실 및 친권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상기 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친권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복명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가정위탁가족 동의서

우리 가족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우리 가정에서 일정기간 보호함에 있어 가족 전원이 전적으로 동의하며, 아동이 친가정에 복귀할 때까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위탁 양육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6				

20 년 월 일

신청인 :

시·군·구청장(가정위탁지원센터장) 귀하

서식 38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조회 동의서

아동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 정보조회 동의서

연번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서명 또는 날인
1	본인				
2					
3					
4					
5					

본인은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및 가족구성원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제2호의 아동학대 판단 정보 확인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39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1.6.30.>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위탁아동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택전화		
가정위탁 보호자	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위탁유형	☐ 일반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 ☐ 일시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결정일	년 월 일		
위탁아동과의 관계	☐ 친인척 ([☐ 친조부 [☐ 친조모 [☐ 외조부 [☐ 외조모 [☐ 조부모 외(관계 :)) ☐ 친인척 외 * 친인척 :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발급용도	(유효기간 : 발행일부터 1개월) ※ 본 확인서는 지정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위 아동은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9-1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가정형 보호 추진 기록지				
아동 정보	성 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장애유무	☐ 유 ☐ 무		
	보호대상아동 행복이음 등록일			
1차 추진 기록	가정위탁 의뢰일			
	미연계 사유, 특이사항 등 기술			
2차 추진 기록	가정위탁 의뢰일			
	미연계 사유, 특이사항 등 기술			
최종의견				

년 월 일

담당자 000 시·군·구/소속 직급 성명 (인) 협조자 00 가정위탁지원센터 직급 성명 (인)

② 작성방법

작성자	- 아동보호전담요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시기	-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회의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 연계 의뢰 후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시 첨부)
작성목적	- 가정형 보호 우선 원칙에 따른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조치 결정(변경) - 보호조치 과정에서의 아동의 가정형 보호 추진 및 가정위탁 연계 가능성 검토
작성방법	- 시설보호(4호) 결정(변경) 시 시·군·구(위탁아동 주소지)는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아동 정보란을 작성한 가정정보추진기록지를 첨부하여 가정위탁(친인척 외) 연계 의뢰 ※ 가정위탁 연계 시 작성 불필요, 일시보호 시 작성 제외 ※ 일반가정위탁(친인척) 또는 아동의 상황·의사 등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 연계 의뢰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사례회의 필수 진행, 내부(통합) 사례회의록으로 갈음 가능 -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의뢰된 아동의 가정위탁 연계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검토 결과를 1차(2차) 추진기록란에 작성 후 협조자 날인 ※ 2차 수 이상 가정위탁 연계 추진 시 서식 칸 추가하여 누적 작성 가능 - 아동 주소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센터의 검토결과 확인 후 최종의견 작성, 담당자 서명 후 사례결정위원회 첨부
활용방법	- 아동의 개별보호 관리계획 수립 및 보호조치 결정(변경) 등

항목		작성내용
아동 정보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 대상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장애유무	- 접수상담, 욕구조사 시 확인된 아동의 장애 유/무를 기재
	보호대상아동 행복이음 등록일	- 접수일자(행복이음 상 접수상담 등록일자)
1차 추진 기록	가정위탁 의뢰일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연계 의뢰 요청일자
	미연계 사유, 특이사항 등 기술	- 아동의 신체/정서 건강상태 및 특성, 위탁가정 미연계 사유 기재
2차 추진 기록	가정위탁 의뢰일	- 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연계 의뢰 요청일자
	미연계 사유, 특이사항 등 기술	- 아동의 신체/정서 건강상태 및 특성, 위탁가정 미연계 사유 기재
최종의견		- 가정형 보호 추진 결과에 따른 담당자(아동보호전담요원)의 종합적 소견 기재(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 추측성 작성 금지)

서식 40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시설입소(이용) 대상자와의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입소 (이용) 대상자	01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 간		
	02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희망입소 (이용)시설		
		주소				희망입소 기 간		
입 소 (이 용) 시 설 안 내	노인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③ 노인요양시설 ④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⑤ 기타()						
	아동복지시설	① 아동양육시설 ② 아동일시보호시설 ③ 아동보호치료시설 ④ 자립지원시설 ⑤ 아동전용시설 ⑥ 아동상담소 ⑦ 공동생활가정 ⑧ 기타()						
	장애인 복지시설	① 지적장애인가주시설 ②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③ 청각·언어장애인가주시설 ④ 지적장애인가주시설 ⑤ 중증장애인가주시설 ⑥ 장애영유아가주시설 ⑦ 장애인공동생활가정 ⑧ 장애인단거주시설 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⑩ 기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① 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② 부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 자립생활지원형) ③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형 □ 공동생활지원형) ④ 일시지원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① 성매매피해지원시설 ② 기 타()						
	노숙인복지시설	① 노숙인재활시설 ② 노숙인요양시설 ③ 기 타()						
	기 타							
입 소 (이 용) 사 유								
통 지 방 법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서면 ☐ 기타()							
위와 같이 시설입소(이용)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 건강진단서 1부(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2. 기타, 관련 증빙자료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입원 (입소) 의뢰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 호 시 설 (기관)	시설(기관) 명칭		시설(기관)의 장 성명	
	소재지			
입원(입소) 의뢰 사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아동을 귀 시설(기관)에 입원(입소)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전문치료기관·요양소의 장 귀하				

서식 42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입양대상아동 결정 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성명	■ 아동과의 관계 ▶ 본인 [] ▶ 친생부모 [] ▶ 후견인 []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입양 대상 아동	성명	보호개시일(입양대상아동 결정일)		
	주민등록번호	보호조치를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첨부서류	신청인과 입양대상아동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아동 본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친생부모 입양동의서

양자가 될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친생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동의자 (친생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본인은 친생부모로서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친생부) (서명 또는 인)

동의자(친생모)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류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43-2 입양 동의·승낙서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입양 동의·승낙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양자가 될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승낙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승낙자) (서명 또는 인)
 동의자(승낙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은 입양에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양자가 될 아동 (서명 또는 인)

☞ 이 부분은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서식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친생부모 입양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후견인이 동의·승낙하는 사유(후견인이 동의·승낙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1. 친생부모가 없는 경우[]
 2. 친생부모가 친권 상실 또는 일시정지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친생부모가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를 받은 경우[]
- (구체적 사유를 기재:)

첨부 서류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후견인이 동의·승낙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44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친생부모 상담기록지											
사례번호 _____											
상담의뢰처		상담장소		상담일시							
내담자		상담차수		상담원							
구 분		친 모					친 부				
인적 사항	이 름										
	생년월일										
	출생지										
	현거주지										
	연락처										
	최종학력										
	결혼상태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 ④ 사별(배우자사망일 :) ⑤ 이혼(이혼일 :)					① 미혼 ② 기혼 ③ 별거 ④ 사별(배우자사망일 :) ⑤ 이혼(이혼일 :)				
	가족관계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거 여부	관계	성명	연령	직업	동거 여부
신체특성	키 / 체중	cm / kg					cm / kg				
	혈액형	RH / 형					RH / 형				
	기타 신체특성										
병력 및 건강상태	성장시 병력										
	현재 건강상태										
	가족의 병력										

구 분		친 모		친 부		
성장배경	가족관계	가족구성 및 가족과의 관계 기록				
	형제자매 관계	형제자매의 구성 및 각 구성원과의 관계 기록 (가장 친한 형제자매 등)				
	사회적 심리적 성장배경	성장과정에서의 심리 사회적 변화 기록 취미 또는 특기, 가족의 경제적 상황 등				
친모와 친부의 관계	만남 ~ 관계 상황	최초 만남 시기, 만남 계기, 동거 여부(기간) 등 기록				
	현재 교제 및 연락여부					
임신 및 출산 관련	분만경험	무 / 유 ()명	분만아동 상황	양육 ()명, 입양 ()명		
	최초 인지시기	임신 ()주				
	산전진료 결과	시기와 횟수 기록, 전반적인 건강상태, 위험상황 기록				
	임신기간 중 질환	병명				
		발병시기				
		치료여부				
	임신 중 음주 및 흡연, 약복용		복용여부	빈도	종류 및 복용량	현재 복용여부
		음주				
		흡연				
		약복용				
	양육관련	직접 양육가능성	매우 가능() 가능함() 잘 모르겠음() 불가능함() 절대 불가함() 상세 사유 :			
경제적 자원		자산 ()원, 월소득()원, (취약계층 구분 등)				
원가정 보호를 위한 양육 도움 지원		가정방문: ()회, 지원내용 기술				
		상담:)회, 지원내용 기술				
		사회적 심리적 지원:)회, 지원내용 기술				
		- 경제적 지원 : ()회, 지원내용 기술				
		- 기타 사항: 양육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				
입양 관련		입양진행 시 바람	아동 장래에 대한 의견			

서식 45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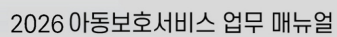
※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친생부모 상담확인서					
아동	성명		생년월일		
내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아동과의 관계	
상담원	성명		총 상담횟수	회	
	소속기관		상담일자	1차	상담횟수만큼
				2차	기록하며
				3차	4회 이상인 경우
				4차	복사하여 사용함
직급					
본 내담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제시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이 법에 따른 입양절차 3. 입양 동의의 요건 및 입양 동의의 철회 4.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의 취소 5.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6.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에 관한 정보 7. (원가정 양육 결정시)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위한 방문 계획 위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괄호 안에 친생부모가 자필로 밑줄 친 내용을 똑같이 옮겨 적도록 함) 년 월 일 친생모(부) 서명 (인)					

서식 46 |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 입양실무매뉴얼 참고서식

입양 상담 후 원가정양육 결정 아동 모니터링 결과				
아동	성명		생년월일 (출생월일)	
	시·군·구명			
친모	성명		생년월일	
	시·군·구명			
입양의뢰 상담 시·군·구 및 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및 연락처	
원가정 양육 결정일				
모니터링 일시				
모니터링 주요 내용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기타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 필요 여부				
기타				
연계서비스 관련기관 연락처				

[illegible]

서식 48 |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입양대상아동 상황 변경 보고서				
아동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구 분	☐ 배치결정 ☐ 보호방식변경 ☐ 원가정 복귀 ☐ 입양 ☐ 기타(가정법원허가신청 등)			
내 용	•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			
사 유	• 상황 변경 발생 사유를 상세히 기록			
계 획	• 향후 조치 계획을 상세히 기록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의 상황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000시·도지사 귀하 직인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입양 동의·승낙 철회서

아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동의자 (승낙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과의 관계 (아동 본인일 경우 '본인' 기재)
철회 사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및 제9조 제2항,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승낙)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승낙) 철회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51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별지 제1호서식]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									
실종 아동 등	성명			성별	남·여	연령			
	소재지								
	연락처								
	중요특징								
신체 및 외적사항	신장	체격	얼굴형	두발		착의사항			그 밖의 신체특징
	cm	1. 야윌 2. 비대 3. 보통	1. 둥근형 2. 긴형 3. 삼각형 4. 역삼각형 5. 네모형	1. 장발 2. 단발 3. 삭발	1. 곱슬 2. 파마 3. 카트	상의	하의	신발	
신고 내용									
처리 결과									
신고자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실종아동 등과의 관계								
년 월 일 접수자 소속 : 직급(위) : 성명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경찰관서 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2 신상카드(실종아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인적 사항 및 기본 사항	성명		성별	번호 ()	1.남 2.여	주민등록번호	(당시 세, 추정/확실)			사진 부착 (3cm×4cm)						
	발견일자	년 월 일			발견지역 (주소)											
	발견 장소	번호 ()	1. 아파트 2. 빌라 3. 주택가 4. 놀이터 5. 학교(유치원 등) 6. 타인의 집 7. 학원 8. 상가(시장) 9. 터미널 역 10. 종교시설(교회 성당 절 등) 11. 공원 12. 산 13. 버스정류장 14. 병원 15. 노상 16. PC방 오락실 17. 자가 18. 화사 19. 기타()													
	보호장소	시설(기관)명:			번호 ()	1. 아동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3.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6. 정신의료기관										
	연락처 :				주소 :											
	입소(원)동기															
	응급진료	최초입원일자			진료기관 (전화번호)		응급진료초치 행정기관명									
	무연고자 확 인	확인일자			확인기관											
	행려병자 선 정	보장기관명			선정 일자		행려병자 번호		의료급여 종 별		() 중					
	신 체 특 징	치 아	번호 ()	1. 정상 2. 틀니 3. 빠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치아 특징		서술:					
눈 모 양		번호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얼 굴 색		번호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흉 터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수술자국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점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문 신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병 력		번호 ()	1. 뇌질환 2. 심장질환 3. 간질환 4. 그 밖의 내과질환 5. 외과질환(골절 등) 6. 기타()					장애 유형		번호 () 예)1-2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급, 급) 5. 기타()				
신 장		cm	체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얼 굴 형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가늘한형 7. 기타()		두발 색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두발 형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머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체 중		kg	번호 ()	1. 특이체형 5. 기타()		번호 ()	1. 특이체형 5. 기타()		번호 ()	1. 특이체형 5. 기타()						
그 밖의 특징								유전자 (DNA)		번호 ()	1. 채취 2. 미채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옷차림 · 소지품 · 그 밖의 정보	실종 (입소) 당시	전체 옷차림	번호 ()	1. 정장차림 2. 군복차림 3. 작업복차림 4. 운동복차림 5. 가족옷차림 6. 한복차림 7. 캐주얼차림 8. 속옷차림 9. 투피스 10. 원피스 11. 교복차림 12. 기타() 13. 알 수 없음					
		상의 의	번호 ()	1. 긴팔	1. 양복 2. 잠바 3. 캐주얼 4. 운동복 5. 속옷차림 6. 원피스 7. 투피스 8. 유니폼 9. 와이셔츠 남방 10. 코트류 11. 티셔츠 12. 카디건(스웨터) 13. 작업복 14. 브라우스 15. 기타() 16. 알 수 없음				
			예) 1-4						
			번호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15. 알 수 없음					
		번호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옷차림 하 의	번호 ()	1. 긴	1. 정장바지 2. 운동복 3. 잠옷 4. 치마 5. 유니폼 6. 면바지 7. 청바지 8. 작업복 9. 속옷 10. 통바지 11. 기타() 12. 알 수 없음					
		예) 1-4							
		번호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15. 알 수 없음						
		번호 ()	1. 가로줄무늬 2. 세로줄무늬 3. 체크무늬 4. 민무늬 5. 물방울무늬 6. 꽃무늬 7. 기타() 8. 알 수 없음						
	상 표 명								
	실종 (입소) 당시 신발	번호 ()	1. 운동화 2. 구두 3. 고무신 4. 장화 5. 샌들 6. 슬리퍼 7. 부츠 8. 단화 9. 등산화 10. 털신 11. 맨발 12. 기타() 13. 알 수 없음					발길이	mm
		번호 ()	1. 흰색계통 2. 검은색계통 3. 회색계통 4. 빨간색계통 5. 파란색계통 6. 갈색계통 7. 녹색계통 8. 노란색계통 9. 풀색계통 10. 보라색계통 11. 분홍색계통 12. 주황색계통 13. 하늘색계통 14. 기타() 15. 알 수 없음						
		상 표 명							
	정 보	안경	번호 ()	1. 미착용 2. 금테 3. 은테 4. 볼테 5. 무테 6. 선글라스 7. 콘택트렌즈 8. 기타()					
모자		번호 ()	1. 미착용 2. 흰색계통 3. 검은색계통 4. 회색계통 5. 빨간색계통 6. 파란색계통 7. 갈색계통 8. 녹색계통 9. 노란색계통 10. 풀색계통 11. 보라색계통 12. 분홍색계통 13. 주황색계통 14. 하늘색계통 15. 기타() 16. 알 수 없음						
신체 장신구		번호 ()	1. 반지 2. 목걸이 3. 귀걸이 4. 팔찌 5. 머리띠 6. 머리핀 7. 기타()			소지품	번호 ()	1. 휴대폰 2. 가방 3. 시계 4. 기타()	
		상세설명()			상세설명()				
보호 아동등 조치 사항	보호 개요	간단하게 서술 - 발생당시 상황 - 입소경위 등							
	연월일	연월일	조치내용	보호시설명	주 소	비고			
작성 자	작성일	년 월 일	작성 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					
				직급 :					
				연락처 :					
				관할경찰서명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08.7.31>

(앞쪽)

신 상 카 드															
인 적 사 항	성명				성별	번호 ()	1. 남 2. 여	주민등록번호	-			출생신고 당시 사진 부착			
	주소														
	출생 일자	년 월 일													
	출생 장소	1. 자택 : 시(도) 구(군) 동(읍, 면)													
		2. 병원(병원명 : 담당의 : 전화 :)													
		3. 기타()													
	아 동 신 체 특 징	치아	번호 ()	1. 정상 2. 틀니 3. 빠드렁니 4. 옹니 5. 금니 6. 은니 7. 의치 8. 때운 이빨 9. 임플란트 10. 기타()									치아 특징	서술:	
		눈모양	번호 ()	1. 특징 없음 2. 쌍꺼풀 있음 3. 쌍꺼풀 없음 4. 기타()											
		얼굴색	번호 ()	1. 보통 2. 검은 편 3. 흰 편 4. 기타()											
		흉터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수술 자국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점		번호 ()	1. 머리 2. 얼굴 3. 팔 4. 손 5. 등 6. 몸통 7. 둔부 8. 다리 9. 발 10. 기타()								모양	서술:			
장애 유무		번호 ()	1. 유 2. 무		장애 유형	번호 () 예)1-2	1. 지적장애(1급, 2급, 3급) 2. 자폐성장애(1급, 2급, 3급) 3. 정신장애(1급, 2급, 3급) 4. 중복장애(급, 급) 5. 기타()								
신장		cm	체 격	1. 비만 2. 건장 3. 보통 4. 왜소 5. 특이체형 6. 기타 ()		얼 굴 형	1. 삼각형 2. 역삼각형 3. 계란형 4. 사각형 5. 둥근형 6. 가름한형 7. 기타 ()		두 발 색 상	1. 흑색 2. 백색 3. 반백 4. 갈색 5. 염색 6. 기타 ()		두 발 형 태	1. 삭발 2. 긴 생머리 3. 짧은 생머리 4. 긴 곱슬머리 5. 짧은 곱슬머리 6. 긴 퍼머머리 7. 짧은 퍼머머리 8. 단발머리 9. 묶음머리 10. 짧은 스포츠형 11. 보통 가르마머리 12. 대머리 13. 기타()		
체중		kg	번호 ()	번호 ()		번호 ()	번호 ()		번호 ()		번호 ()				
그 밖의 특징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부 모	관계	성명	주민번호	주 소		비고
	부					
	모					
신고인	성명			신고일자	년 월 일	
	아동과의 관계	번호 ()	1. 부 2. 모 3. 동거친족 4. 기타()			
	주소			전화번호		
출생신고 기간경과 사 유	※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					
작성자	작 성 연월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소속:		
				직급:		
				연락처:		

[별지 제4호서식]

실종아동등 인수확인서				
인수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실종아동 등과의 관계			
실종아동 등의 관련사항	성명		성별	남·여
	주민등록번호			
	실종 년월일			
	발견일자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아동 등을 인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미성년자	주소					
	보호시설명		보호경위			
	성명		성별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생(세, 월)	
후견인 지정 신청자	주소					
	직업		직장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후견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미성년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56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1.19.>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사진 3cm×4cm
미성년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남 · 여	
			연령	세	
	주소				
	특징				
부양의무자, 그 밖의 보호자	성명		미성년자와의 관계		
보호시설	시설명		대표자		
	보호개시일	년 월 일	소재지		
후견인	성명				
	주소				
참고사항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를 하오니 부양의무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57 피해아동 보호계획(변경)서

피해아동보호계획(변경)서										
I. 아동 기본 정보										
피해아동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지						연락처 (집/휴대전화)			
	실거주지									
사례관리 대상자 (보호자)	관계	성명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주민등록주소지						연락처 (집/휴대전화)		
		실거주지								
	학력 및 직업	월수입	생활 수준			주거				
	/		[]상 []중 []하 []수급자			[]자가 []전세 []월세				
가족유형	[]일반가정		[]부자가정(사별)		[]부자가정(이혼)		[]부자가정(가출)		[]부자가정(별거)	
	[]모자가정(사별)		[]모자가정(이혼)		[]모자가정(가출)		[]모자가정(별거)		[]미혼부가정	
	[]미혼모가정		[]미혼부모가정		[]친부+계모		[]친모+계부		[]친인척보호	
	[]친부+동거녀		[]친모+동거남		[]가정위탁		[]입양가정		[]시설보호	
가족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동거여부		
II. 사건 및 조치 정보										
사건개요 (피해아동)	신고접수일시				신고접수경로	[]112 []행정전화 []방문신고				
	신고접수내용									
	아동학대 조사내용									
	사례판단결과	※ 해당하는 유형 모두 체크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사례판단 소견									
학대 전력 (피해아동)	과거 학대 판단일자/유형	※ 최근 5년(60개월) 이내 전력(본 사건 아동학대행위자와 다른 행위자에 의한 학대 포함) 00년 00월 00일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조치계획	피해아동 조치									
	[]사례관리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명 :)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원단 []읍면동서비스 연계								
	[]보호체계 유지									
	[]응급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제1항)	[]1호-제지 []2호-격리 []3호-보호시설 인도 []4호-의료기관 인도 * (3호 관련) 보호시설·기관명(유형) : () ** (4호 관련) 의료기관 명 :								
		조치일시 :				조치자 :				
	[]일시보호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시설보호 * 보호시설명(시설유형) : () 일시보호 조치일시 :				[]친인척 등 보호 ** 아동과의 관계 :				

	[]보호조치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1호-상담·지도 []2호-친족 []3호-가정위탁 []4호-아동복지시설 []5호-전문치료기관·요양소 []6호-입양 []기타(「아동복지법」 외 타 법상 보호시설 등) * (2호 관련) 아동과의 관계 : 유형 : ** (3-5호 관련) 보호시설·기관명(유형) : () 조치일시 :	
	[]피해아동보호명령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	[]1호-퇴거·격리 []2호-접근금지 []3호-전기통신금지 []4호-보호위탁 []5호-치료위탁 []5의2호-상담·치료위탁 []6호-가정위탁 []7호-친권 제한·정지 []8호-후견권 제한·정지 []9호-의사표시 갈음	
	[]임시보호명령 (「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청구일자 :	청구(결정)법원 :
		결정일자 :	결정결과 : []인용 []기각
	사례관리대상자 조치		
	[]지속관찰		
	[]법적조치 및 관리	[]고발 []고소 []기타요청에 따른 수사 []인지수사 (112 신고, 수사의뢰 등)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 : 사건처리결과 : []수사중 []입건 전 조사종결 []송치	
	[]간접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	[]1호-격리 []2호-접근금지 []3호-전기통신금지	
	[]임시조치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15조)	[]1호-퇴거·격리 []2호-접근금지 []3호-전기통신금지 []4호-친권·후견권 제한 및 정지 []5호-상담·교육 []6호-의료기관 등 위탁 []7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요청(신청)일자 : 법원 : 결정일자 : 결정결과 : []인용 []기각	
	[]친권 제한·상실 (「아동복지법」 제18조)	[]친권행사 제한 []친권상실	
	기타(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치하지 않은 경우)		
	[]기타	[]타 법 시설 입소(시설명 :) []가출 []이 외 ()	
	가정복귀		
	[]가정복귀	[]일시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 종료 []응급조치(「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종료 []퇴소조치(「아동복지법」 제1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종료	

Ⅲ. 대상자 지원 정보					
대상자 육구 (육구조사 결과)	아동의 육구(우선순위)				
	[]안전	[]건강	[]일상생활 유지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보호자의 육구(우선순위)				
	[]안전	[]건강	[]일상생활 유지	[]가족관계	[]사회적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보장
	[]기타()				

	개입필요 욕구·문제	장기목표	단기목표	서비스명
대상자 지원 계획				
가정복귀 지원계획	※ 해당하는 유형 모두 체크(‘기타’ 체크 시 시타 내용 작성(예시 : 복귀 가능 가정 없음 등) []상담 []사례관리 연계 []금품지급 []기타()			
	지원 내용 :			

IV. 담당자 소견

※ 가족 특성, 피해아동 및 사례관리대상자 외 사례관리 지원 필요 대상 및 지원 방향, 사례연계 안내 완료 여부 등

수립일	통보일(결재일)			
담당자	소속 :	사·군·구청	과	직급(직위): 성명 : (서명 또는 인)
결재자	소속 :	사·군·구청	과	직급(직위): 성명 : (서명 또는 인)

가정 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동의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상 아동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정복귀 절차 및 사후관리 안내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에 의거하여 아동이 분리보호된 경우 동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따라 아동의 가정 복귀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5(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에 따라 가정 복귀 신청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다음의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상담·교육 -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 교육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교육 - 그 밖에 아동의 복리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치료 - 시·도 또는 시·군·구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 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 되면 심의를 거쳐 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제28조(사후관리)에 근거하여 가정복귀 이후 시·도 또는 시·군·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고, 아동 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아동 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복귀 신청		② 세부 절차 진행		③ 가정 복귀 결정 및 사후관리	
	아동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아동이 위탁·입소 중인 쉼터 또는 시설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 [구비서류] ·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 양육계획서		아동 의사 확인 ≪ 가정 복귀 기본 요건 확인 ≫ 양육환경점검(심리 평가 및 면담, 가정환경조사) ≫ 가정 복귀 계획 수립 ≫ 가정 복귀 프로그램 진행 ≫ 가정환경 조사서 작성 및 시·군·구 제출 ※ 약 3개월 이상 소요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의 복귀 결정에 따라 아동 귀가 조치 및 사후관리 ※ 단, 가정 복귀가 피해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정될 수 있음	
신청인 및 대상아동 동의	☐ 가정복귀 절차와 사후관리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진행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가정복귀 절차와 사후관리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진행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아동 (서명 또는 인)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아동보호전문기관 귀하						

서식 59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아동보호전담요원용)

제 202○ - ○○호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자 인적사항

아동	성명	생년월일	입소시설 소재지	입소시설명	비고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아동과의 관계	비고

☐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기간 및 결과

일자	대상	진행기관	프로그램 내용

본 대상자는 가정복귀 프로그램 과정을 성실히 이수완료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가정환경 조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담당자				제출일자
아동 (귀가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만 ()세			전화번호
	교육기관 명	학교	학년	기타
	보호조치 내용		보호조치 날짜	
	보호시설 명			
보호자 (귀가신청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소득(월수입)	생활수준 원 []일반 []수급자 []차상위 []저소득	주거 []자가 []전세 []월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 점검결과 내용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란에 √ 체크				
아동 및 보호자 심신상태	[1.아동]			
	1-1. 심리평가 및 면담 실시 결과 (심리정서상태)			
	☐ 실시 - 검사기관명 : - 검사일자 : - 관련 심리 평가자 소견 작성 : ☐ 미실시 (사유기재) / (미실시한 경우 1-2문항 체크하지 않음)			

1-2. 심리치료 진행 결과
☐ 실시 (아래내용 작성) - 치료기관명 : - 치료내용 : - 치료기간 : - 관련 심리치료 소견 작성(심리치료사 작성) : ☐ 미실시(사유기재)
1-3. 신체건강상태 (질병 또는 장애 여부)
☐ 해당 없음 ☐ 질병 (질병명 :) ☐ 장애 (장애유형 및 등급 :)
1-4. 가정 복귀 의사
☐ 있음 ☐ 없음 ☐ 확인불가 (사유)
1-5. 보호시설에서 아동 적응상태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2. 보호자]
2-1. 심리평가 및 상담 결과
☐ 실시 - 검사기관명 : - 검사일자 : - 관련 심리 평가자 소견 작성 : ☐ 미실시 (사유기재)
2-2. 심리치료 실시 여부
☐ 실시 (아래내용 작성) - 치료기관명 : - 치료내용 : - 치료기간 : - 관련 심리치료 소견 작성(심리치료사 작성) : ☐ 미실시(사유기재)
2-3. 신체건강상태 (질병 또는 장애여부)
☐ 해당 없음 ☐ 질병 (질병 명 :) ☐ 장애 (장애유형 및 등급 :)
2-4. 가정 복귀 의사
☐ 있음 ☐ 없음

양육 환경	[1. 보호자 요인]
	1-1. 가정복귀 프로그램 이수 내용 및 결과
	☐ 이수 - 프로그램 진행기간 : ☐ 미이수 (사유작성)
	1-2. 가정복귀 프로그램 참여의지 및 태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1-3. 검찰처분·법원 명령 결정에 따른 이행 결과
	☐ 검찰처분 또는 법원 명령 결정 없음 ☐ 검찰처분 또는 법원 명령 결정 있음 - 결정내용 : - 이행내용 :
	1-4. 보호자가 학대가 발생했던 당시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변화된 내용
	- 긍정적 변화 내용 기재
	1-5. 양육 계획
	- 교육계획 * 교육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 * 등·하원(교) 계획 : * 방과 후 계획 : - 아동이 질병이 있는 경우 치료 계획 :
	1-6. 다른 보호자 여부
	☐ 가정 내 아동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있음 -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의사 확인 ☐ 가정 내 아동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 양육자 없음
종합 소견	[2. 환경 요인]
	2-1. 가정 내 청결 상태(※ 사진 필수 첨부)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2-2. 양육 환경 조성 정도
	☐ 매우양호 ☐ 양호 ☐ 보통 ☐ 불량 ☐ 매우불량
	- 공공연계 사례회의 결과 및 담당자 소견 (가정환경 확인 위해 파악 및 수집한 모든 자료 첨부)

서식 60-1

가정환경 조사서(일시보호)

가정환경 조사서 (일시보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담당자		제출일자		
아동 (귀가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령 만 ()세		전화번호	
	교육기관명	학교	학년	기타
	보호조치 내용		보호조치 날짜	
	보호시설 명			
보호자 (귀가 신청자)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및 직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소득(월수입) 원 [] 일반 [] 수급자 [] 차상위 [] 저소득	생활수준		주거 [] 자가 [] 전세 [] 월세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관계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세)	직업
※ 점검결과 내용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란에 “✓” 체크				
아동 및 보호자 심신상태	[1.아동]			
	1-1. 가정복귀 의사			
	☐ 있음 ☐ 없음 ☐ 확인불가 (사유)			
	1-2. 신체건강상태(질병 또는 장애 여부)			
	☐ 해당 없음 ☐ 질병 (질병명 :) ☐ 장애 (장애유형 및 등급 :)			

양육 환경

서식 6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위한 아동학대 의심 체크리스트			
연번	체크항목	체크란(✓)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	아니오 ☐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	아니오 ☐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	아니오 ☐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	아니오 ☐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	아니오 ☐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	아니오 ☐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	아니오 ☐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	아니오 ☐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	아니오 ☐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	아니오 ☐
14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	아니오 ☐
15	“아동학대의심 체크리스트”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상황 :)	예 ☐	아니오 ☐
1개 문항 이상 “예”로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아동학대신고전화 112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 행 월 : 2026년 4월

발 행 처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http://www.mohw.go.kr>